

<https://whatsnew.moef.go.kr>

이 자료는 2022. 6. 30.(목)  
10:00 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 책자는 2022. 7월초 배포될 예정입니다.

본 책의 내용은 2022년 6월 30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수록된 내용 중 예정인 사안은 추후 변동될 수 있으니, 정확한  
확인을 위해서는 해당 페이지의 담당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 하반기  
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분야별·부처별·시기별 주요 제도  
핵심사항 삽화  
<https://whatsnew.moef.go.kr>

CONTENTS

# 분야별 달라지는 주요제도

## 01 금융·재정·조세

- 유류세 인하폭 37%로 확대 (기획재정부) 4
- 면세농산물 등 의제매입세액공제 적용 한도 확대 (기획재정부) 5
- 단순가공식품 등 부가가치세 면제 한시적 확대 (기획재정부) 6
-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기간 연장 (기획재정부) 7
-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 확대 (기획재정부) 8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세액공제 도입 (기획재정부) 9
- 시내보세판매장(면세점) 국산품 온라인 해외 판매 도입 (관세청) 10
- 해외직구 물품 '구매대행업자 등록제' 본격 시행 (관세청) 11
-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 프로그램 도입 (금융위원회) 12
-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LTV 완화 (금융위원회) 13
- DSR 산정시 장래소득 반영폭 확대 (금융위원회) 14
- 차주별 DSR 3단계 시행 (금융위원회) 15
-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한 특례보증 시행 (금융위원회) 16
- 최저신용자 대상 특례보증 지원 실시 (금융위원회) 17
- 상장사 등록 감사인의 의무 위반 시 불이익 조치 마련 (금융위원회) 18
- 제2금융권 한도성 여신, 지급보증에 대한 총당금 적립 강화 (금융위원회) 19
- 오픈뱅킹 이용편의 제고 (금융위원회) 20
- 금융분야 클라우드 이용 가이드라인 개정 (금융위원회) 21
- 데이터(가명정보) 결합 절차 개선 (금융위원회) 22

<https://whatsnew.moef.go.kr>

에서도 검색이 가능합니다.



## 02 교육·보육·가족

- 교육분야 인공지능 윤리원칙 마련 (교육부) 26
- 학자금대출 저금리 전환 대출 시행 (교육부) 28
- 지능형 나이스 유치원 업무 구축을 위한 민감정보 처리 근거 마련 등 (교육부) 29
-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시범사업 시행 (여성가족부) 30
-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패키지 시범사업 추진 (여성가족부) 31
- 민간 청소년 수련시설 수련활동비 지원 (여성가족부) 32
- 청소년생활기록부 반영 대학 확대 시행 (여성가족부) 33
-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바우처 지원대상 확대 (여성가족부) 34
- 가정 밖 청소년 지원 모바일 서비스 앱 '자립해냄' iOS용 구축·지원 (여성가족부) 35

## 03 보건·복지·고용

- 농업인안전보험 보장 강화 및 연금 방식 지급 추가 가능 (농림축산식품부) 40
- 한국형 상병수당 시범사업 1단계 시행 (보건복지부) 41
- 국민연금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보건복지부) 42
- 긴급복지지원 생계지원금 단가 인상 및 재산기준 완화 (보건복지부) 43
- 입양대상아동 보호비 신규 지원 (보건복지부) 44
- 맞춤형 급여 안내 가입대상 전국민 확대 (보건복지부) 45
- 포스트 코로나시대 적정수혈을 위한 의료기술 개발(R&D)사업 실시 (보건복지부) 46
-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제도 시행 (고용노동부) 47
- 퇴직연금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 도입 (고용노동부) 48
- 유통배송기사 등 특고 산재보험 적용 확대 및 특고 종사자 보조사업장 재해 보상 (고용노동부) 49
-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의 대표성 강화 (고용노동부) 50
- 'K-디지털 기초역량훈련, 지원 대상 확대 (고용노동부) 51
- 플랫폼종사자 일터개선 지원사업 실시 (고용노동부) 52
- 중소기업 건설공사 안전관리 기술지도 의무제도 개편 (고용노동부) 53
- 여성어업인 특화건강검진 시범 실시 (해양수산부) 54
-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 이용 급식소 위생·영양관리 (식품의약품안전처) 55

• 수입 배추김치 해빙(HACCP) 의무화 2단계 시행 (식품의약품안전처)	56
• 임상시험 안전지원기관 운영 (식품의약품안전처)	57
•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 구축·운영 (식품의약품안전처)	58
• 의료기기 보험(공제) 제도 시행 (식품의약품안전처)	59
• 전국단위 대규모 항체양성률 조사 시행 (질병관리청)	60

## 04 문화·체육·관광

•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 (문화체육관광부)	63
• 문화재지능정보화 정책의 기본 체계 마련 (문화재청)	64

## 05 환경·기상

• 기후변화영향평가 제도 시행 (환경부)	68
• 환경표지 인증제도 개편 (환경부)	69
• 탄소중립 지원센터 운영 개시 (환경부)	70
• 측정대행업자의 환경측정분석정보관리시스템 사용 의무화 (환경부)	71
• 상수도분야 법정계획 수립체계 조정 (환경부)	72
• 다이옥신 토양오염기준 신설 (환경부)	73
• 비점오염원관리지역 지정기준 개정 (환경부)	74
• 개인하수처리시설 재질검사 항목 간소화 (환경부)	75
• 생태계교란 생물(2종) 및 유입주의 생물(162종) 추가 지정 (환경부)	76
• 건설폐기물 처리 현장정보 전송 의무화 (환경부)	77
• 생활화학제품 안전·표시기준 강화 시행 (환경부)	78
• 우리동네의 미래 기후변화 전망정보 서비스 제공 (기상청)	79
• 국민생활 편의를 위한 날씨알리미 앱 전면 개편 (기상청)	80
• 기상가뭄 10일 예측정보 제공 (기상청)	81

<https://whatsnew.moef.go.kr>

에서도 검색이 가능합니다.



## 06 산업·중소기업·에너지

• 정보접근성 보장 지능정보제품 우선구매 제도 시행 (과학기술정보통신부)	85
• 대기업인 공사업자의 기준 및 도급 공사금액 하한 신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86
• 기업부설연구소 신고 시 기업의 행정부담 완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87
• 우주산업 경쟁력 확보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88
• 국가첨단전략산업의 체계적·지속적인 육성·지원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 (산업통상자원부)	89
•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시행 (산업통상자원부)	90
• 어린이제품 안전확인 효력상실 제도 시행 (산업통상자원부)	91
• 초광역협력의 성공·확산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산업통상자원부)	92
• 검사생략 고압가스 수입용기의 외국 반송기한 연장 (산업통상자원부)	93
• 전기설비 원격 점검 본격 시행 (산업통상자원부)	95
• 석탄가공업의 승계신고 기간 연장 (산업통상자원부)	96
•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 확대 및 보상수준 강화 등 실시 (중소벤처기업부)	97
• 산업재산권에 대한 질권의 설정등록료 인하 (특허청)	98
• 국제특허출원, 인터넷 웹출원 방식으로 일원화 (특허청)	99
• 장애인방송 확대 (방송통신위원회)	100
• 방송사업자의 기술결합서비스 승인제를 신고제로 완화 (방송통신위원회)	101
• 방송통신 결합상품 원스톱 전환서비스 종합유선방송사업자까지 확대 (방송통신위원회)	102

## 07 국토·교통

• 국내공항 짐배송서비스 적용 공항 확대·운영 (국토교통부)	104
-----------------------------------	-----

## 08 농림·수산·식품

• 농지 임대차계약 등 농지대장 변경신청 의무화 시행 (농림축산식품부)	110
• 지자체 농지위원회 신설 및 투기우려지역 등 농지 취득 심사 시 농지위원회 심사 의무화 (농림축산식품부)	111
• 국립농업박물관 개관 (농림축산식품부)	112
• 동물의 중대진료에 관한 사전 설명 및 서면 동의 의무화 (농림축산식품부)	113
• 축산물 온라인 경매 도입 (농림축산식품부)	114
• 저탄소인증 농산물 구매 시 에코머니 포인트 적립률 확대 (농림축산식품부)	115
• 농업법인 사전신고제 도입 (농림축산식품부)	116
• 식물기반 그린백신 실증지원센터 운영 (농림축산식품부)	117
• 간척지를 임산물 생산·가공·저장·유통단지 용도로 활용가능 (농림축산식품부)	118
• 2022년 세계유기농산업엑스포 개최 (농림축산식품부)	119
• 한국농수산대학 교명 변경 (농림축산식품부)	120
• 가축분뇨 액비 내 질소 함유량 기준 개선 (농림축산식품부)	121
• 모돈 개체별 이력관리 시범운영 (농림축산식품부)	122
• 축산농가 사료구매 비용 부담 완화 (농림축산식품부)	123
• 지역 먹거리 계획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공공급식통합플랫폼' 운영 (농림축산식품부)	124
• 식품가공원료매입·외식업체육성 자금 대출 금리 인하 (농림축산식품부)	125
• 항만안전특별법 시행 (해양수산부)	126
• 다목적 대형방제선 취항 및 배치 (해양수산부)	127
• 갈치, 참조기, 삼치 총허용어획량(TAC) 제도 시행 (해양수산부)	128
• 연근해어업 감척 사업에 정치망어업 신규 도입 (해양수산부)	129
• 어장 내 스티로폼 부표 신규 설치 금지 시행 (해양수산부)	130
• 굴 껍데기 등 수산부산물 재활용 확대 (해양수산부)	131
•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제 시행 (산림청)	132

<https://whatsnew.moef.go.kr>

에서도 검색이 가능합니다.



## 09 국방·병무

• 군사법원법 개정에 따른 군 사법제도 개편 (국방부)	136
• 장병 기본급식비 인상 (국방부)	137
• 장병내일준비적금 온라인 비대면 가입체계 시행 (국방부)	138
• 입영 전, 병역과 진로를 연계한 상담서비스 확대 (병무청)	139
• 입영판정검사 대상 확대 시행 (병무청)	140
• 중앙신체검사소 신체검사 화상 문진 도입 (병무청)	141
• 모집병 지원 대상 기술자격·면허 종류 확대 (병무청)	142
• 국군체육부대 선수 병무청 모집·선발 (병무청)	143
• 장애학생 활동 지원분야 사회복무요원 특별휴가 확대 (병무청)	144
• 병역준비역 편입자 병역이행 절차 등 안내 (병무청)	145
• 예비군 편성자 병역이행 절차 등 안내 (병무청)	146
• 무기체계 연구개발사업 지체상금 면제사유 추가 (방위사업청)	147
• 군용총포·도검·화약류 안전관리 지원사업 시행 (방위사업청)	148

## 10 행정·안전·질서

• 종전 일반여권(녹색) 병행발급 시행 (외교부)	153
• 피해자 국선변호사에 대한 평가 제도 도입 (법무부)	154
• 천안개방교도소 여성수용자 개방시설로의 전환 (법무부)	155
•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 시행 (행정안전부)	156
• 온라인 청원 및 공개청원 전면 시행 (행정안전부)	157
• 지방의원 겸직 현황 등 의정활동 정보공개 확대 (행정안전부)	158
•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 및 사업 시행 (행정안전부)	159
• 주소기반 산업지원 서비스 시행 (행정안전부)	160
• 벤처나라 '예비지정' 사업 시범 운영 (조달청)	161
• 「조달청 제조물품 직접생산확인 기준」 개정 (조달청)	162
• 시·군·자치위, 'e-제안요청 도움' 시스템 오픈 (조달청)	163
• 전문건설사업자의 상호시장 진출실적 평가방안 마련 (조달청)	164
• 민간의 혁신기술을 공공에 도입하는 혁신제품 지정확대 (조달청)	165

• 회전교차로 통행방법 위반 시 범칙금·과태료·벌점 부과 (경찰청)	166
• 보행자 우선도로에서의 보호의무 위반 시 벌칙 규정 (경찰청)	167
• 어린이보호구역 내 무신호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의무 위반 시 벌칙 규정 (경찰청)	168
• 운전자 교통법규 위반 시 고용주등 과태료 부과항목 확대 (경찰청)	169
• 특별교통안전의무교육의 교육시간 및 범칙금 상향 (경찰청)	170
• 중앙선 침범 위반 이륜자동차의 고용주등에 과태료 부과 (경찰청)	171
• 소화기 성능이 정상인 경우 계속하여 연장사용 가능 (소방청)	172
• 위험물운반자 자격 제도 시행 (소방청)	173
• 소방대상물 화재안전조사 결과 공개 (소방청)	174
• 화재예방강화지구 소방시설 설치 지원 (소방청)	175
• 화재안전취약자에 대한 소방용품 및 소방시설 개선지원 (소방청)	176
• 장애인 소방안전교육 법적 의무화 (소방청)	177
• 웨이크서핑보트 안전운항규칙 신설 (해양경찰청)	178
• 수상레저종합정보포털 '상담서비스(햇봇)' 도입 (해양경찰청)	179
• 상향식 표준하도급계약서 제·개정 방식 도입 (공정거래위원회)	180
• 광고·판촉행사 가맹점주 사전동의제 실시 (공정거래위원회)	181
• 가맹·유통·대리점 분야 동의의결제도 도입 (공정거래위원회)	182
• 대리점종합지원센터 출범 (공정거래위원회)	183
• 생협 활성화를 위한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및 시행령 개정 (공정거래위원회)	184
• 공정거래 위반행위 신고서식 전면 개정 (공정거래위원회)	185
• 부패신고자 보호·보상 대폭 강화 (국민권익위원회)	186
• 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 전면 시행 (원자력안전위원회)	187
• 군인권보호관 제도 시행 (국가인권위원회)	188
•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 대책 수립 (개인정보보호위원회)	189
• 가명정보 활용지원 통합 플랫폼 서비스 개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190

<https://whatsnew.moef.go.kr>

에서도 검색이 가능합니다.



## 부처별 달라지는 주요제도

### 기획재정부

• 유류세 인하폭 37%로 확대	4
• 면세농산물 등 의제매입세액공제 적용 한도 확대	5
• 단순가공식품 등 부가가치세 면제 한시적 확대	6
•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기간 연장	7
•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 확대	8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세액공제 도입	9

### 교육부

• 교육분야 인공지능 윤리원칙 마련	26
• 학자금대출 저금리 전환 대출 시행	28
• 지능형 나이스 유치원 업무 구축을 위한 민감정보 처리 근거 마련 등	29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정보접근성 보장 지능정보제품 우선구매 제도 시행	85
• 대기업인 공사업자의 기준 및 도급 공사금액 하한 신설	86
• 기업부설연구소 신고 시 기업의 행정부담 완화	87
• 우주산업 경쟁력 확보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88

### 외교부

• 종전 일반여권(녹색) 병행발급 시행	153
-----------------------	-----

## 법무부

- 피해자 국선변호사에 대한 평가 제도 도입 154
- 천안개방교도소 여성수용자 개방시설로의 전환 155

## 국방부

- 군사법원법 개정에 따른 군 사법제도 개편 136
- 장병 기본급식비 인상 137
- 장병내일준비적금 온라인 비대면 가입체계 시행 138

## 행정안전부

-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 시행 156
- 온라인 청원 및 공개청원 전면 시행 157
- 지방의원 검진 현황 등 의정활동 정보공개 확대 158
-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 및 사업 시행 159
- 주소기반 산업지원 서비스 시행 160

## 문화체육관광부

-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 63

## 농림축산식품부

- 농업인안전보험 보장 강화 및 연금 방식 지급 추가 가능 40
- 농지 임대차계약 등 농지대장 변경신청 의무화 시행 110
- 지자체 농지위원회 신설 및 투기우려지역 등 농지 취득 심사 시 농지위원회 심사 의무화 111
- 국립농업박물관 개관 112
- 동물의 중대진료에 관한 사전 설명 및 서면 동의 의무화 113
- 축산물 온라인 경매 도입 114
- 저탄소인증 농산물 구매 시 에코머니 포인트 적립률 확대 115
- 농업법인 사전신고제 도입 116
- 식물기반 그린백신 실증지원센터 운영 117
- 간척지를 임산물 생산·가공·저장·유통단지 용도로 활용가능 118
- 2022년 세계유기농산업엑스포 개최 119
- 한국농수산대학 교명 변경 120
- 가축분뇨 액비 내 질소 함유량 기준 개선 121
- 모든 개체별 이력관리 시범운영 122
- 축산농가 사료구매 비용 부담 완화 123
- 지역 먹거리 계획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공공급식통합플랫폼' 운영 124
- 식품가공원료매입·외식업체육성 자금 대출 금리 인하 125

## 산업통상자원부

- 국가첨단전략산업의 체계적·지속적인 육성·지원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 89
-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시행 90
- 어린이제품 안전확인 효력상실 제도 시행 91
- 초광역협력의 성공·확산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92
- 검사생략 고압가스 수입용기의 외국 반송기한 연장 93
- 전기설비 원격 점검 본격 시행 95
- 석탄가공업의 승계신고 기간 연장 96

<https://whatsnew.moef.go.kr>

에서도 검색이 가능합니다.



## 보건복지부

• 한국형 상병수당 시범사업 1단계 시행	41
• 국민연금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42
• 긴급복지지원 생계지원금 단가 인상 및 재산기준 완화	43
• 입양대상아동 보호비 신규 지원	44
• 맞춤형 급여 안내 가입대상 전국민 확대	45
• 포스트 코로나시대 적정수혈을 위한 의료기술 개발(R&D)사업 실시	46

## 환경부

• 기후변화영향평가 제도 시행	68
• 환경표지 인증제도 개편	69
• 탄소중립 지원센터 운영 개시	70
• 측정대상업자의 환경측정분석정보관리시스템 사용 의무화	71
• 상수도분야 법정계획 수립체계 조정	72
• 다이옥신 토양오염기준 신설	73
• 비점오염원관리지역 지정기준 개정	74
• 개인하수처리시설 재질검사 항목 간소화	75
• 생태계교란 생물(2종) 및 유입주의 생물(162종) 추가 지정	76
• 건설폐기물 처리 현장정보 전송 의무화	77
• 생활화학제품 안전·표시기준 강화 시행	78

<https://whatsnew.moef.go.kr>

에서도 검색이 가능합니다.



## 고용노동부

•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제도 시행	47
• 퇴직연금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 도입	48
• 유통배송기사 등 특고 산재보험 적용 확대 및 특고 종사자 보조사업장 재해 보상	49
•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의 대표성 강화	50
• 「K-디지털 기초역량훈련」 지원 대상 확대	51
• 플랫폼종사자 일터개선 지원사업 실시	52
• 중소규모 건설공사 안전관리 기술지도 의무제도 개편	53

## 여성가족부

•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시범사업 시행	30
•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패키지 시범사업 추진	31
• 민간 청소년 수련시설 수련활동비 지원	32
• 청소년생활기록부 반영 대학 확대 시행	33
•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바꾸쳐 지원대상 확대	34
• 가정 밖 청소년 지원 모바일 서비스 앱 '자립해냄' iOS용 구축·지원	35

## 국토교통부

• 국내공항 짐배송서비스 적용 공항 확대·운영	104
---------------------------	-----



## 해양수산부

• 여성어업인 특화건강검진 시범 실시	54
• 항만안전특별법 시행	126
• 다목적 대형방제선 취항 및 배치	127
• 갈치, 참조기, 삼치 총허용어획량(TAC) 제도 시행	128
• 연근해어업 감척 사업에 정치망어업 신규 도입	129
• 어장 내 스티로폼 부표 신규 설치 금지 시행	130
• 굴 껍데기 등 수산부산물 재활용 확대	131

## 중소벤처기업부

•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 확대 및 보상수준 강화 등 실시	97
----------------------------------	----

## 식품의약품안전처

•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 이용 급식소 위생·영양관리	55
• 수입 배추김치 해썬(HACCP) 의무화 2단계 시행	56
• 임상시험 안전지원기관 운영	57
•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 구축·운영	58
• 의료기기 보험(공제) 제도 시행	59

## 관세청

• 시내보세판매장(면세점) 국산품 온라인 해외 판매 도입	10
• 해외직구 물품 '구매대행업자 등록제' 본격 시행	11

## 조달청

• 벤처나라 '예비지정' 사업 시범 운영	161
• 「조달청 제조물품 직접생산확인 기준」 개정	162
• 시 기반 발주지원, 'e-제안요청 도움' 시스템 오픈	163
• 전문건설사업자의 상호시장 진출실적 평가방안 마련	164
• 민간의 혁신기술을 공공에 도입하는 혁신제품 지정확대	165

## 병무청

• 입영 전, 병역과 진로를 연계한 상담서비스 확대	139
• 입영판정검사 대상 확대 시행	140
• 중앙신체검사소 신체검사 화상 문진 도입	141
• 모집병 지원 대상 기술자격·면허 종류 확대	142
• 국군체육부대 선수 병무청 모집·선발	143
• 장애학생 활동 지원분야 사회복무요원 특별휴가 확대	144
• 병역준비역 편입자 병역이행 절차 등 안내	145
• 예비군 편성자 병역이행 절차 등 안내	146

## 방위사업청

• 무기체계 연구개발사업 지체상금 면제사유 추가	147
• 군용총포·도검·화약류 안전관리 지원사업 시행	148

## 경찰청

• 회전교차로 통행방법 위반 시 범칙금·과태료·벌점 부과	166
• 보행자 우선도로에서의 보호의무 위반 시 벌칙 규정	167
• 어린이보호구역 내 무신호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의무 위반 시 벌칙 규정	168
• 운전자 교통법규 위반 시 고용주등 과태료 부과항목 확대	169
• 특별교통안전의무교육의 교육시간 및 범칙금 상향	170
• 중앙선 침범 위반 이륜자동차의 고용주등에 과태료 부과	171

<https://whatsnew.moef.go.kr>

에서도 검색이 가능합니다.



## 소방청

• 소화기 성능이 정상인 경우 계속하여 연장사용 가능	172
• 위험물운반자 자격 제도 시행	173
• 소방대상물 화재안전조사 결과 공개	174
• 화재예방강화지구 소방시설 설치 지원	175
• 화재안전취약자에 대한 소방용품 및 소방시설 개선지원	176
• 장애인 소방안전교육 법적 의무화	177

## 문화재청

• 문화재지능정보화 정책의 기본 체계 마련	64
-------------------------	----

## 산림청

•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제 시행	132
--------------------	-----

## 특허청

• 산업재산권에 대한 질권의 설정등록료 인하	98
• 국제특허출원, 인터넷 웹출원 방식으로 일원화	99

## 질병관리청

• 전국단위 대규모 항체양성률 조사 시행	60
------------------------	----

## 기상청

• 우리동네의 미래 기후변화 전망정보 서비스 제공	79
• 국민생활 편의를 위한 날씨알리미 앱 전면 개편	80
• 기상가뭄 10일 예측정보 제공	81

## 해양경찰청

• 웨이크서핑보트 안전운항규칙 신설	178
• 수상레저종합정보포털 '상담서비스(챗봇)' 도입	179

## 공정거래위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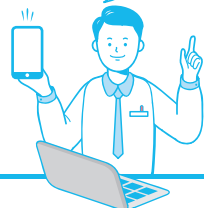
• 상향식 표준하도급계약서 제·개정 방식 도입	180
• 광고·판촉행사 가맹점주 사전동의제 실시	181
• 가맹·유통·대리점 분야 동의의결제도 도입	182
• 대리점종합지원센터 출범	183
• 생협 활성화를 위한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및 시행령 개정	184
• 공정거래 위반행위 신고서식 전면 개정	185

## 금융위원회

•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 프로그램 도입	12
•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LTV 완화	13
• DSR 산정시 장래소득 반영폭 확대	14
• 차주별 DSR 3단계 시행	15
•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한 특례보증 시행	16
• 최저신용자 대상 특례보증 지원 실시	17
• 상장사 등록 감사인의 의무 위반 시 불이익 조치 마련	18
• 제2금융권 한도성 여신, 지급보증에 대한 총당금 적립 강화	19
• 오픈뱅킹 이용편의 제고	20
• 금융분야 클라우드 이용 가이드라인 개정	21
• 데이터(가명정보) 결합 절차 개선	22

<https://whatsnew.moef.go.kr>

에서도 검색이 가능합니다.



## 국민권익위원회

- 부패신고자 보호·보상 대폭 강화 186

## 원자력안전위원회

- 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 전면 시행 187

## 방송통신위원회

- 장애인방송 확대 100
- 방송사업자의 기술결합서비스 승인제를 신고제로 완화 101
- 방송통신 결합상품 원스톱 전환서비스 종합유선방송사업자까지 확대 102

## 국가인권위원회

- 군인권보호관 제도 시행 188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 대책 수립 189
- 가명정보 활용지원 통합 플랫폼 서비스 개시 190

<https://whatsnew.moef.go.kr>

에서도 검색이 가능합니다.



# 시기별 달라지는 주요제도

## 7월

- 유류세 인하폭 37%로 확대 (기획재정부) 4
- 면세농산물 등 의제매입세액공제 적용 한도 확대 (기획재정부) 5
- 단순가공식품 등 부가가치세 면제 한시적 확대 (기획재정부) 6
-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 확대 (기획재정부) 8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세액공제 도입 (기획재정부) 9
- 해외직구 물품 '구매대행업자 등록제' 본격 시행 (관세청) 11
- 차주별 DSR 3단계 시행 (금융위원회) 15
- 제2금융권 한도성 여신, 지급보증에 대한 총당금 적립 강화 (금융위원회) 19
- 데이터(가명정보) 결합 절차 개선 (금융위원회) 22
- 학자금대출 저금리 전환 대출 시행 (교육부) 28
-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시범사업 시행 (여성가족부) 30
-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패키지 시범사업 추진 (여성가족부) 31
- 민간 청소년 수련시설 수련활동비 지원 (여성가족부) 32
- 한국형 상병수당 시범사업 1단계 시행 (보건복지부) 41
- 국민연금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보건복지부) 42
- 긴급복지지원 생계지원금 단가 인상 및 재산기준 완화 (보건복지부) 43
- 입양대상아동 보호비 신규 지원 (보건복지부) 44
- 포스트 코로나시대 적정수혈을 위한 의료기술 개발(R&D)사업 실시 (보건복지부) 46
- 퇴직연금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 도입 (고용노동부) 48
- 유통배송기사 등 특고 산재보험 적용 확대 및 특고 종사자 보조사업장 재해 보상 (고용노동부) 49
- 'K-디지털 기초역량훈련' 지원 대상 확대 (고용노동부) 51
-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 이용 급식소 위생·영양관리 (식품의약품안전처) 55
- 임상시험 안전지원기관 운영 (식품의약품안전처) 57
- 의료기기 보험(공제) 제도 시행 (식품의약품안전처) 59
- 문화재지능정보화 정책의 기본 체계 마련 (문화재청) 64
- 환경표지 인증제도 개편 (환경부) 69
- 탄소중립 지원센터 운영 개시 (환경부) 70
- 상수도분야 법정계획 수립체계 조정 (환경부) 72
- 다이옥신 토양오염기준 신설 (환경부) 73

• 비점오염원관리지역 지정기준 개정 (환경부)	74
• 생활화학제품 안전·표시기준 강화 시행 (환경부)	78
• 국민생활 편의를 위한 날씨알리미 앱 전면 개편 (기상청)	80
• 대기업인 공사업자의 기준 및 도급 공사금액 하한 신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86
•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시행 (산업통상자원부)	90
• 국제특허출원, 인터넷 웹출원 방식으로 일원화 (특허청)	99
• 방송사업자의 기술결합서비스 승인제를 신고제로 완화 (방송통신위원회)	101
• 동물의 중대진료에 관한 사전 설명 및 서면 동의 의무화 (농림축산식품부)	113
• 축산물 온라인 경매 도입 (농림축산식품부)	114
• 간척지를 임산물 생산·가공·저장·유통단지 용도로 활용가능 (농림축산식품부)	118
• 다목적 대형방제선 취항 및 배치 (해양수산부)	127
• 갈치, 참조기, 삼치 총허용어획량(TAC) 제도 시행 (해양수산부)	128
• 연근해어업 감척 사업에 정치망어업 신규 도입 (해양수산부)	129
• 굴 껍데기 등 수산부산물 재활용 확대 (해양수산부)	130
• 군사법원법 개정에 따른 군 사법제도 개편 (국방부)	136
• 장병 기본급식비 인상 (국방부)	137
• 입영 전, 병역과 진로를 연계한 상담서비스 확대 (병무청)	139
• 입영판정검사 대상 확대 시행 (병무청)	140
• 중앙신체검사소 신체검사 화상 문진 도입 (병무청)	141
• 모집병 지원 대상 기술자격·면허 종류 확대 (병무청)	142
• 장애학생 활동 지원분야 사회복무요원 특별휴가 확대 (병무청)	144
• 병역준비역 편입자 병역이행 절차 등 안내 (병무청)	145
• 예비군 편성자 병역이행 절차 등 안내 (병무청)	146
• 군용총포·도검·화약류 안전관리 지원사업 시행 (방위사업청)	148
• 피해자 국선변호사에 대한 평가 제도 도입 (법무부)	154
•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 시행 (행정안전부)	156
• 지방의원 검직 현황 등 의정활동 정보공개 확대 (행정안전부)	158
• 벤처나라 '예비지정' 사업 시범 운영 (조달청)	161
• 회전교차로 통행방법 위반 시 범칙금·과태료·벌점 부과 (경찰청)	166
• 보행자 우선도로에서의 보호의무 위반 시 벌칙 규정 (경찰청)	167
• 어린이보호구역 내 무신호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의무 위반 시 벌칙 규정 (경찰청)	168
• 운전자 교통법규 위반 시 고용주등 과태료 부과목 확대 (경찰청)	169
• 특별교통안전의무교육의 교육시간 및 범칙금 상향 (경찰청)	170
• 소화기 성능이 정상인 경우 계속하여 연장사용 가능 (소방청)	172
• 상향식 표준하도급계약서 제·개정 방식 도입 (공정거래위원회)	180
• 광고·판촉행사 가맹점주 사전동의제 실시 (공정거래위원회)	181
• 가맹·유통·대리점 분야 동의의결제도 도입 (공정거래위원회)	182
• 공정거래 위반행위 신고서식 전면 개정 (공정거래위원회)	185
• 부패신고자 보호·보상 대폭 강화 (국민권익위원회)	186

• 군인권보호관 제도 시행 (국가인권위원회)	188
•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 대책 수립 (개인정보보호위원회)	189

## 8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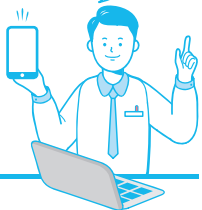
•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제도 시행 (고용노동부)	47
• 중소기업 건설공사 안전관리 기술지도 의무제도 개편 (고용노동부)	53
• 측정대행업자의 환경측정분석정보관리시스템 사용 의무화 (환경부)	71
• 국가첨단전략산업의 체계적·지속적인 육성·지원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 (산업통상자원부)	89
• 어린이제품 안전확인 효력상실 제도 시행 (산업통상자원부)	91
• 초광역협력의 성공·확산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산업통상자원부)	92
• 산업재산권에 대한 질권의 설정등록료 인하 (특허청)	98
• 국내공항 짐배송서비스 적용 공항 확대·운영 (국토교통부)	104
• 농지 임대차계약 등 농지대장 변경신청 의무화 시행 (농림축산식품부)	110
• 지자체 농지위원회 신설 및 투기우려지역 등 농지 취득 심사 시 농지위원회 심사 의무화 (농림축산식품부)	111
• 농업법인 사전신고제 도입 (농림축산식품부)	116
• 가축분뇨 액비 내 질소 함유량 기준 개선 (농림축산식품부)	121
• 항만안전특별법 시행 (해양수산부)	126
•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 및 사업 시행 (행정안전부)	159
• AI기반 발주지원, 'e-제안요청 도움' 시스템 오픈 (조달청)	163
• 수상레저종합정보포털 '상담서비스(햇넷)' 도입 (해양경찰청)	179

## 9월

• 맞춤형 급여 안내 가입대상 전국민 확대 (보건복지부)	45
•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 (문화체육관광부)	63
• 기후변화영향평가 제도 시행 (환경부)	68
• 기상가뭄 10일 예측정보 제공 (기상청)	81
• 2022년 세계유기농산업엑스포 개최 (농림축산식품부)	119
• 지역 먹거리 계획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공공급식통합플랫폼' 운영 (농림축산식품부)	124
• 「조달청 제조물품 직접생산확인 기준」 개정 (조달청)	162
• 민간의 혁신기술을 공공에 도입하는 혁신제품 지정 확대 (조달청)	165

<https://whatsnew.moef.go.kr>

에서도 검색이 가능합니다.



## 10월

•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 프로그램 도입 (금융위원회)	12
• 최저신용자 대상 특례보증 지원 실시 (금융위원회)	17
• 오픈뱅킹 이용편의 제고 (금융위원회)	20
• 금융분야 클라우드 이용 가이드라인 개정 (금융위원회)	21
• 농업인안전보험 보장 강화 및 연금 방식 지급 추가 가능 (농림축산식품부)	40
• 수입 배추김치 해썬(HACCP) 의무화 2단계 시행 (식품의약품안전처)	56
•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 구축·운영 (식품의약품안전처)	58
• 생태계교란 생물(2종) 및 유입주의 생물(162종) 추가 지정 (환경부)	76
• 건설폐기물 처리 현장정보 전송 의무화 (환경부)	77
•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제 시행 (산림청)	132
• 국군체육부대 선수 병무청 모집·선발 (병무청)	143
• 중앙선 침범 위반 이륜자동차의 고용주 등에 과태료 부과 (경찰청)	171

## 11월

• 어장 내 스티로폼 부표 신규 설치 금지 시행 (해양수산부)	130
------------------------------------	-----

## 12월

•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의 대표성 강화 (고용노동부)	50
• 개인하수처리시설 재질검사 항목 간소화 (환경부)	75
• 우리동네의 미래 기후변화 전망정보 서비스 제공 (기상청)	79
• 우주산업 경쟁력 확보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88
• 온라인 청원 및 공개청원 전면 시행 (행정안전부)	157
• 소방대상물 화재안전조사 결과 공개 (소방청)	174
• 화재예방강화지구 소방시설 설치 지원 (소방청)	175
• 화재안전취약자에 대한 소방용품 및 소방시설 개선지원 (소방청)	176

## 기 타 : 2022년 기 시행되었거나 하반기 시행 예정

•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기간 연장 (기획재정부)	7
• 시내보세판매장(면세점) 국산품 온라인 해외 판매 도입 (관세청)	10
•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LTV 완화 (금융위원회)	13
• DSR 산정시 장래소득 반영폭 확대 (금융위원회)	14
•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한 특례보증 시행 (금융위원회)	16
• 상장사 등록 감사인의 의무 위반 시 불이익 조치 마련 (금융위원회)	18
• 교육분야 인공지능 윤리원칙 마련 (교육부)	26
• 지능형 나이스 유치원 업무 구축을 위한 민감정보 처리 근거 마련 등 (교육부)	29
• 청소년생활기록부 반영 대학 확대 시행 (여성가족부)	33
•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바우처 지원대상 확대 (여성가족부)	34
• 가정 밖 청소년 지원 모바일 서비스 앱 '자립해봄' iOS용 구축·지원 (여성가족부)	35
• 플랫폼종사자 일터개선 지원사업 실시 (고용노동부)	52
• 여성어업인 특화건강검진 시범 실시 (해양수산부)	54
• 전국단위 대규모 항체양성률 조사 시행 (질병관리청)	60
• 정보접근성 보장 지능정보제품 우선구매 제도 시행 (과학기술정보통신부)	85
• 기업부설연구소 신고 시 기업의 행정부담 완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87
• 검사생략 고압가스 수입용기의 외국 반송기한 연장 (산업통상자원부)	93
• 전기설비 원격 점검 본격 시행 (산업통상자원부)	95
• 석탄가공업의 승계신고 기간 연장 (산업통상자원부)	96
•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 확대 및 보상수준 강화 등 실시 (중소벤처기업부)	97
• 장애인방송 확대 (방송통신위원회)	100
• 방송통신 결합상품 원스톱 전환서비스 종합유선방송사업자까지 확대 (방송통신위원회)	102
• 국립농업박물관 개관 (농림축산식품부)	112
• 저탄소인증 농산물 구매 시 예코머니 포인트 적립률 확대 (농림축산식품부)	115
• 식물기반 그린백신 실증지원센터 운영 (농림축산식품부)	117
• 한국농수산대학 교명 변경 (농림축산식품부)	120
• 모든 개체별 이력관리 시범운영 (농림축산식품부)	122
• 축산농가 사료구매 비용 부담 완화 (농림축산식품부)	123
• 식품가공원료매입·외식업체육성 자금 대출 금리 인하 (농림축산식품부)	125
• 장병내일준비적금 온라인 비대면 가입체계 시행 (국방부)	138
• 무기체계 연구개발사업 지체사금 면제사유 추가 (방위사업청)	147
• 종전 일반여권(녹색) 병행발급 시행 (외교부)	153
• 천안개방교도소 여성수용자 개방시설로의 전환 (법무부)	155
• 주소기반 산업지원 서비스 시행 (행정안전부)	160
• 전문건설사업자의 상호시장 진출실적 평가방안 마련 (조달청)	164
• 위험물운반자 자격 제도 시행 (소방청)	173

<https://whatsnew.moef.go.kr>

에서도 검색이 가능합니다.



- 장애인 소방안전교육 법적 의무화 (소방청) 177
- 웨이크서핑보트 안전운항규칙 신설 (해양경찰청) 178
- 대리점종합지원센터 출범 (공정거래위원회) 183
- 생협 활성화를 위한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및 시행령 개정 (공정거래위원회) 184
- 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 전면 시행 (원자력안전위원회) 187
- 가명정보 활용지원 통합 플랫폼 서비스 개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190

<https://whatsnew.moef.g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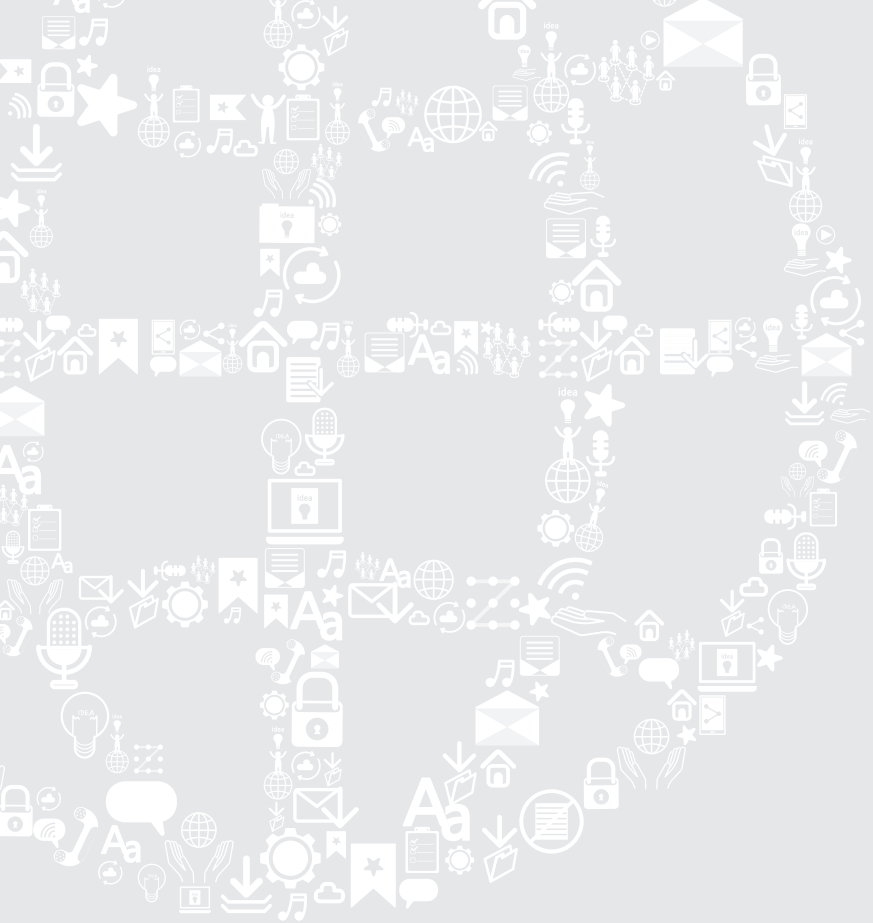
에서도 검색이 가능합니다.



## 2022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 분야별 달라지는 주요제도

- 01 금융·재정·조세
- 02 교육·보육·가족
- 03 보건·복지·고용
- 04 문화·체육·관광
- 05 환경·기상
- 06 산업·중소기업·에너지
- 07 국토·교통
- 08 농림·수산·식품
- 09 국방·병무
- 10 행정·안전·질서



# 2022

2022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 금융·재정·조세



# 01

### 1 기획재정부

자세한 내용은 p.4

#### 유류세 인하폭 37%로 확대

시행일 : 2022년 7월 1일

##### Before

지금까지는 유류세를 30%(탄력세율 기준) 인하해 왔습니다.

유종	인하 전 탄력세율	30%(현행)
휘발유	820	573(△247)
경유	581	407(△174)
LPG부탄	203	142(△61)

(단위 : 원/ℓ)

##### After

앞으로는 유류세 인하 폭을 37%(탄력세율 기준, 대통령령으로 가능한 최대폭)까지 확대합니다.

유종	△37% (개정)	추가 인하폭
휘발유	516(△304)	△57
경유	369(△212)	△38
LPG부탄	130(△73)	△12

(단위 : 원/ℓ)

### 2 금융위원회

자세한 내용은 p.12

####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 프로그램 도입

시행일 : 2022년 10월 1일

#####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 프로그램 도입

· 코로나19 피해 개인사업자, 법인, 소상공인 중 부실이 발생했거나 부실발생 우려가 있는 차주를 대상으로 상환일정 조정, 금리감면, 원금감면 지원



### 3 금융위원회

자세한 내용은 p.13

####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LTV 완화

시행일 : 2022년 3분기

##### Before

지금까지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는 LTV 60~70%를 적용받아 왔습니다.



LTV  
현행 : 60~70%

· (투기·투기과열지구) 60% (조정대상지역) 70%

##### After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한 LTV 상한이 완화됩니다.



완화 80%



## 유류세 인하폭 37%로 확대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 (☎ 044-215-4331)

2022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6개월간 휘발유, 경유, LPG부탄에 대한 유류세 인하폭이 기존 30%에서 7%p 증가한 37%로 확대됩니다.

(‘22.7.1. 개정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시행)

- 고유가 상황 지속에 따른 서민·자영업자들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고 물가 안정화에 기여하고자 유류세 인하폭을 대통령령으로 가능한 최대폭까지 확대하였습니다.
- 이에 따라, 기존 유류세 30% 인하와 대비하여, 휘발유는 57원/ℓ, 경유는 38원/ℓ, LPG부탄은 12원/ℓ의 추가적인 인하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부가가치세 포함).

## 면세농산물 등 의제매입세액공제 적용 한도 확대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 (☎ 044-215-4321)

2023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가 10%p 상향됩니다.

- 연 매출 2억원 이하 음식점업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는 매입세액 계산 시 매출액의 65%까지 매입액을 인정받고 있으나, 10%p 상향 시 75%까지 매입액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개정내용은 2022년 7월 1일 이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제1차 비상경제장관회의”

### 유류세 인하폭 확대

- 추진배경** 고유가 상황 지속에 따른 서민·자영업자의 유류비 부담 완화, 물가 안정화에 기여하고자 유류세 인하폭을 대통령령으로 가능한 최대폭(탄력세율 기준 37%)까지 확대
- 주요내용** 2022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유류세 인하폭을 기존 30%에서 37%로 확대
- 시행일** 2022년 7월 1일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민생안정 10대 프로젝트”

### 면세농산물 등 의제매입세액공제 적용 한도 확대

- 추진배경** 식품제조업계 및 외식업계의 재료비 부담 경감
- 주요내용** •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 10%p 상향 조정

구분	년과세표준	기본	우대 공제한도(~'23.12.31)	
			음식점업	그 외
개인사업자	2억원 이하	과세표준의	65% → 75%	55% → 65%
	2~4억원	50%	60% → 70%	
	4억원 초과	40%	50% → 60%	45% → 55%
법인사업자		30%	40% → 50%	

- 시행일** 2022년 7월 1일

## 단순가공식품 등 부가가치세 면제 한시적 확대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 (☎ 044-215-4322)

그간 독립된 거래단위로 포장되어 공급한 경우 과세된 김치, 간장, 단무지 등 기초식자재와 수입시 과세된 커피 생두와 코코아두 등을 물가 안정을 위해 '23년말까지 한시적으로 면세로 전환합니다.

- '22년 7월부터 '23년말까지 플라스틱, 알루미늄 파우치 등으로 개별포장되어 판매되는 김치, 간장, 단무지, 간장 등을 부가가치세 없이 구매할 수 있습니다.
- 또한, '23년말까지 커피·코코아원두(단, 볶은 것 제외)도 부가가치세 없이 수입할 수 있습니다.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민생안정 10대 프로젝트”

### 단순가공식품 등 부가가치세 면제 한시적 확대

- **추진배경** 생활·밥상물가 안정을 위해 수입원가 및 식재료비 경감 추진
- **주요내용**
  - (단순가공식품 부가가치세 면제 확대) 병·캔 등 개별포장된 가공식품\* 부가가치세를 '23년까지 면제
    - \* 대친 채소류·김치·단무지·장아찌·젓갈류·게장·두부·메주·간장·된장·고추장
  - (수입품 부가가치세 면제) 볶은 것을 제외한 커피·코코아두 수입시 부가가치세를 '23년까지 면제
- **시행일**
  - (단순가공식품 면제 확대): 2022년 7월 1일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 (수입품 부가가치세 면제): 2022년 6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한 날 이후 재화를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기간 연장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 (☎ 044-215-4333)

승용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인하기간이 2022년 6월 30일에서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6개월간 연장됩니다.

- 이에 따라, 금년 12월 31일까지 제조장에서 출고되거나 수입신고된 승용차에 대하여는 법정 개별소비세율에서 30% 인하(5→3.5%)된 탄력세율이 적용됩니다.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민생안정 10대 프로젝트”

###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기간 연장

- **추진배경** 소비자의 납세부담 경감 및 자동차 판매확대 등 내수 진작을 통한 경기 활성화 유도
- **주요내용**
  -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 기간 6개월 연장('22.6.30. → 12.31.)
  - '22.12.31.까지 제조장에서 출고되거나 수입신고된 차량에 대하여는 개별소비세율 30% 인하(5→3.5%)
- **시행일** 2022년

##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 확대

기획재정부 소득정보연계추진단 (☎ 044-215-4373)

2022년 7월 1일부터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 개인사업자가 '직전연도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 합계액(총수입금액, 면세공급가액 포함)이 2억원 이상인 자'로 확대됩니다.

- 개정내용은 2021년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총수입금액, 면세공급가액 포함)을 기준으로 판단하여 2022년 7월 1일 이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 "2020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 보도자료"

###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 확대

- **추진배경**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2020년 12월 23일 발표) 지원을 위한 소득정보 인프라 구축 및 세원투명성 제고
- **주요내용**
  -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대상 개인사업자를 직전연도 사업장별 면세공급가액을 포함한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총수입금액)이 3억원 이상인 사업자에서 2억원 이상인 사업자로 확대
  - \* 2021년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 합계액(총수입금액)을 기준으로 2억원 이상 여부를 판단
- **시행일** 2022년 7월 1일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세액공제 도입

기획재정부 소득정보연계추진단 (☎ 044-215-4373)

2022년 7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직전연도 사업장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 합계액(총수입금액, 면세공급가액 포함)이 3억원 미만인 개인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 공제금액은 발급건수 당 200원이며, 연간 100만원 한도로 적용됩니다.
- 개정내용은 2022년 7월 1일 이후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 "2021년 세법개정안 보도자료"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세액공제 신설

- **추진배경**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 **주요내용**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전송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
  - (공제대상) 직전연도 사업장별 면세공급가액을 포함한 재화·용역의 공급가액 합계액(총수입금액)이 3억원 미만인 개인사업자
  - (공제금액) 발급건수 당 200원
  - (공제한도) 연간 100만원
  - (적용기한) 2022년 7월 1일 ~ 2024년 12월 31일
  - \* 2022년 7월 1일 이후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분부터 적용
- **시행일** 2022년 7월 1일

## 시내보세판매장(면세점) 국산품 온라인 해외 판매 도입

관세청 보세산업지원과 (☎ 042-481-7637)

코로나19 상황에서 외국인이 한국 방문 없이 국산품을 시내보세판매장(면세점) 운영인이 운영하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구매할 수 있도록 하여, 보세판매장의 새로운 매출처를 확보하고 국산품 판매를 촉진하고자 합니다.

- 코로나19가 정상화되면 관광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여 방한 외국인에 한해 귀국 후 일정 기간 내 판매하는 형태로 전환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 (성과 평가) 6개월 마다 운영상황을 분석
- 동 제도 시행을 위한 운영 지침은 2022년 3월 23일부터 시행되었으며, 보세판매장 업계는 플랫폼 개발, 판매국가·물품 선정, 해외배송 계약 등 관련 인프라를 구축한 후 업체별로 7월 이후 사업을 개시할 예정입니다.

### 시내보세판매장(면세점) 국산품 온라인 해외 판매 도입

- **추진배경** 보세판매장(면세점) 업계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국제 관광수요 회복 지연으로 '20년 이후 경영위기 상황 지속
- **주요내용**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해 해외거주 외국인을 대상으로 시내보세판매장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국산품 판매(해외 배송) 허용
- **시행일** 2022년 3월 23일  
(업체별 온라인 해외판매 인프라 구축 후 7월 이후 사업 시행)

## 해외직구 물품 '구매대행업자 등록제' 본격 시행

관세청 전자상거래통관과 (☎ 042-481-7835)

2022년 7월 1일부터 전자상거래 물품 구매대행업자 등록제가 1년간의 등록 유예기간을 거쳐 본격 시행됩니다.

- 해외직구 물품을 구매대행해 수입할 경우 세관신고서에 '구매대행업자 등록번호'를 기입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미리 세관에 등록을 하여 등록번호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 등록대상은 ①통신판매업자로 신고하고 ②직전연도 구매대행한 수입물품의 물품가격이 10억원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는 자입니다.  
※ 총 물품가격이 10억원 미만이라도 등록을 희망할 경우 신청 가능

참고 관세청 누리집>해외직구 여기로>'구매대행업자 등록'

### 구매대행업자 등록제 본격 시행

- **추진배경** 해외직구 구매대행업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국내 소비자 보호 및 통관적법성 확립
- **주요내용**
  - (신청방법) 수입통관 실적이 가장 많은 통관지 세관에 신청서와 첨부서류\* 제출  
\* 통신판매업 신고증 사본, 국제납세증명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 (제출방법) 방문, 우편, 전자메일, 팩스
  - (등록 유효기간) 3년
  - (미등록 시)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시행일** 2022년 7월 1일

##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 프로그램 도입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 ☎ 02-2100-2832)

코로나19 피해로 대출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채무조정 프로그램이 시행됩니다.

※ 최대 30조원 규모로 '소상공인·자영업자 새출발기금(가칭)'을 설립하여 대출채권 매입 등의 방식으로 상환일정 조정 및 채무감면 지원

■ 코로나 피해 개인사업자, 법인 소상공인 중 부실이 발생(90일 이상 장기연체)했거나, 부실발생 우려가 있는 차주가 지원대상이며, 장기간 나누어 갚을 수 있도록 거치기간 부여, 장기 분할 상환 대출 전환 등 상환일정을 조정하고, 금리도 감면합니다.

- 부실차주가 보유한 신용채무는 상환여력에 맞추어 60~90%의 원금감면 조치도 함께 지원합니다.

■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차주는 금년 10월부터 향후 3년간 채무조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채무조정 신청방법 등은 별도 발표)

참고 금융위원회 홈페이지)보도자료)“[보도참고] 제2차 추경예산안 중 금융분야 민생지원프로그램 상세개요”

###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 프로그램 시행

- 추진배경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완전한 회복과 새로운 도약을 위한 채무조정 프로그램 도입
- 주요내용 코로나19 피해 개인사업자, 법인, 소상공인 중 부실이 발생했거나 부실발생 우려가 있는 차주를 대상으로 상환일정 조정, 금리감면, 원금감면 지원
- 시행일 2022년 10월 1일

##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LTV 완화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 ☎ 02-2100-2824, 02-2100-2836)

2022년 3분기 중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비율(LTV) 상한이 완화됩니다.

■ 현행 60~70% 수준\*인 LTV 상한이 주택 소재지역·주택가격·소득과 상관없이 80%로 완화됩니다.

\* (투기·투기과열지구) 60% (조정대상지역) 70%

참고 금융위원회 홈페이지)보도자료)“가계대출 규제 개선방안-새정부 경제정책방향(6.16.) 관련”

###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LTV 완화

- 추진배경 단기간 내 주택가격이 급등하는 상황에서 도입했던 대출규제의 정상화를 추진하여 실수요자의 주거사다리 형성을 지원
- 주요내용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한 LTV 완화를 우선 추진
- 시행일 2022년 3분기 중

## DSR 산정시 장래소득 반영폭 확대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 (☎ 02-2100-2824, 02-2100-2836)

2022년 3분기 중 현재 소득수준이 낮은 청년층 대출이 과도하게 제약되지 않도록 총부채원리금상환 비율(DSR) 산정시 장래소득 반영폭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 보다 실질적인 소득흐름을 반영\*하도록 미래소득 계산방식을 개선할 계획입니다.

- \* (現)대출시와 만기시점간 평균 → (改) ① 대출시~만기시점까지의 각 연령대별 소득흐름의 평균, ② 장래소득 산출시 차주가 유리한 만기를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

## 차주별 DSR 3단계 시행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 (☎ 02-2100-2824, 02-2100-2836)

2022년 7월 1일부터 차주별 DSR 3단계가 시행됩니다.

▣ 총대출액 1억원 초과 차주는 DSR(총부채원리금상환 비율)이 40%(은행)·50%(비은행) 이내인 범위 내에서 신규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전세대출, 중도금대출, 소액 신용대출 등 DSR 적용 예외대출은 제외

참고 금융위원회 홈페이지(보도자료)“가계대출 규제 개선방안-새정부 경제정책방향(6.16.) 관련”

### DSR 산정시 장래소득 반영폭 확대

- 추진배경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대상 LTV 완화와 연계하여, 청년층 대출이 과도히 제약되지 않도록 DSR 산정방식 합리화
- 주요내용 DSR 산정시 장래소득 반영폭을 확대(구체적 방안 등 추후 발표 예정)
- 시행일 2022년 3분기 중

참고 금융위원회 홈페이지(보도자료)“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 발표”

### 차주별 DSR 3단계 시행

- 추진배경 상환능력 중심 대출관행의 확고한 정착을 유도하여 과도한 대출로부터 차주를 보호하고, 가계부채 리스크를 관리
- 주요내용 총대출액 1억원 초과 차주에 대해 DSR 규제를 적용
- 시행일 2022년 7월 1일

##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한 특례보증 시행

금융위원회 산업금융과 (☎ 02-2100-2862)

2022년 하반기부터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정상영업 회복 및 사업경쟁력 제고를 위해 3.25조원 규모의 특례보증 프로그램이 시행됩니다.

- 포스트코로나 대비 특례보증은 향후 소상공인들이 외부여건 변화에도 영업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자생력 강화를 지원하는 자금공급 프로그램입니다.
- 코로나 장기화로 대출감소 등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기업당 1억원(잠정) 한도 내에서 운전자금 및 시설자금을 지원하며, 보증료 차감·심사요건 완화 등 우대사항을 적용할 예정입니다.

참고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보도자료) "제2차 추경예산안 중 금융분야 민생지원프로그램 상세개요"

###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한 특례보증 시행

- **추진배경** 포스트 코로나 대비 정상영업 회복 및 사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맞춤형 금융지원 추진
- **주요내용**
  - 코로나19 피해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한 3.25조원 규모의 특례보증 공급
    - (자금용도) 운전자금 및 시설자금
    - (지원한도) 기업당 1억원(잠정) / (보증방식) 직접보증
    - (우대사항) 보증료 차감, 심사요건 완화 등
- **시행일** 2022년 하반기 시행

## 최저신용자 대상 특례보증 지원 실시

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 (☎ 02-2100-2614)

불법사금융 피해가 우려되는 최저신용자를 위한 특례보증 지원을 실시합니다.

- 금리상승 등으로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최저신용자의 불법사금융 이용에 따른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신용점수 하위 10% 이하이면서 연소득 45백만원 이하인 분들 중 기존 정책서민금융상품을 이용하기 어려운 분들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 이번 특례보증은 '22.10월 중 서민금융진흥원의 보증을 통해 은행, 저축은행 등에서 공급할 예정입니다.

### 최저신용자 대상 특례보증 프로그램

- **지원대상** 신용점수 하위 10% 이하이면서 연소득 4,500만원 이하인 자로 기존 정책서민금융상품 이용이 어려운 자
- **대출심사** 금융정보 위주의 상환능력을 주로 심사하는 일반 금융상품과 달리 비금융정보를 활용한 상환의지 등을 심사에 반영할 예정
- **자금용도** 자금용도를 특정하지 않고 긴급자금·일반생활비 등에 대해 포괄적으로 지원
- **대출한도** 최대 1천만원
- **상환방식** 3년 또는 5년 원리금균등분할상환(거치기간 최대 1년,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 **대출금리** 연 15.9%를 기본으로 성실상환 시 매년 인하\* 예정  
\* 매년 3.0%p 인하(대출기간 3년) / 매년 1.5%p 인하(대출기간 5년)
- **시행일** 2022년 10월 중

## 상장사 등록 감사인의 의무 위반 시 불이익 조치 마련

금융위원회 기업회계팀 (☎ 02-2100-2695)

상장사 등록 감사인이 등록요건 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시정권고 및 감사인 지정제외 점수를 부과하고 시정권고를 미이행한 경우 등록을 취소합니다.

- 특히, 통합 품질관리시스템의 구축이 미비하거나 실질적으로 운영이 되지 않는 감사인에 대해서는 최대 차기년도에 감사인 지정을 받지 못하는 수준까지 지정제외점수를 부과합니다.
- 개정내용은 2022년 5월 3일 이후 등록요건 유지의무 위반 분부터 적용됩니다.

참고 금융위원회 홈페이지(보도자료)“외부감사법 시행령 개정 보도자료”

### 상장사 등록 감사인의 의무 위반 시 불이익 조치 마련

- 추진배경** 회계법인의 부실한 품질관리에 대한 불이익 조치를 마련하여 품질관리향상을 통한 회계투명성 제고를 도모하기 위함
- 주요내용**
  - 회계법인이 상장회사를 감사하기 위해서는 통합품질관리체계 구축 등 일정 요건(등록요건)을 충족하고 계속해서 유지하여야 함
  - 등록요건 유지의무를 위반한 상장사 등록 감사인에 대해서는 시정권고 및 지정제외점수를 부과하고, 시정권고를 미이행한 경우 등록을 취소함
    - 특히, 통합 품질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이 미비한 회계법인은 감사인 지정제외점수가 대폭 부과될 예정
- 시행일** 2022년 5월 3일

## 제2금융권 한도성 여신, 지급보증에 대한 총당금 적립 강화

금융위원회 중소기업과 (☎ 02-2100-2983)

상호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사, 상호금융업권에 대한 건전성을 강화하고 리스크 관리를 위해, 한도성 여신 미사용 잔액 및 지급보증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 다만, 대손충당금 추가 적립에 따른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한도성 여신 미사용액에 대한 신용환산율을 단계적으로 상향\*할 계획입니다.
  - \* (상호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사) '22년 20% → '23년 40%
  - (상호금융) '22년 20% → '23년 30% → '24년 40%
- 개정내용은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참고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알림마당)보도자료

### 제2금융권의 한도성 여신과 지급보증에 대해 총당금 적립

- 추진배경** 제2금융권의 총당금 적립을 강화하여 위험관리를 체계화하고, 금융업권간 총당금 적립에 대한 일관성을 제고
- 주요내용** 제2금융권(상호저축은행, 여신금융전문업, 상호금융)의 한도성 여신 미사용 잔액, 지급보증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 근거를 마련

구 분		한도성 여신 미사용액		지급보증	
		현 행	개 선	현 행	개 선
상호저축은행		대손충당금 X	대손충당금 O	대손충당금 O	(좌 동)
여신 전문 금융	신용 카드	신용판매, 카드대출 O	(좌 동)	부동산PF 채무보증만 대손충당금 적립	모든 지급보증에 대손충당금 적립
	기타 한도성 여신	대손충당금 X	대손충당금 O		
상호금융				해당없음	

시행일 2022년 7월 1일



## 오픈뱅킹 이용편의 제고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과 (☎ 02-2100-2536)

오픈뱅킹을 이용한 출금이체 前 잔여 한도를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을 신설하여 고객 편의성이 제고됩니다.

- 오픈뱅킹 이용고객이 간편송금, 간편결제 시 사전에 출금가능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출금한도 조회 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API)를 신설합니다.
  - ※ 이용고객이 오픈뱅킹을 통해 출금할 수 있는 일간 최대한도는 1천만원(한도 도달 고객의 해당일 추가 출금이체 이용은 자동 중지 처리)
- 신설되는 기능은 오픈뱅킹 참여기관, 유관기관 협의 및 전산 개발을 거쳐 2022년 10월 중 제공됩니다.

참고 금융위원회 홈페이지(보도자료)“오픈뱅킹 시행 2년이 만든 디지털 금융혁신 성과”

### 오픈뱅킹 이용편의 제고

- **추진배경** 오픈뱅킹 이용자 편의 증진 및 한도 초과에 따른 출금실패 관련 민원 해소를 위한 일간 출금이체 한도 조회 기능 제공
- **주요내용** 오픈뱅킹 이용고객이 출금 전 일간 출금 한도 초과 여부를 사전에 조회할 수 있는 잔여 출금한도 조회 API를 신설
- **시행일** 2022년 10월 중

## 금융분야 클라우드 이용 가이드라인 개정

금융위원회 전자금융과 (☎ 02-2100-2975)  
금융보안원 금융혁신지원팀 (☎ 02-3495-9740)

금융권이 외부 서버나 플랫폼 등 IT 자원을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클라우드 이용 가이드라인을 개정합니다.

(‘22.10월 중 금융분야 클라우드 이용 가이드라인(금융보안원) 개정 예정)

- 불명확한 업무 중요도 평가기준을 개정하여, 업무 중요도 평가를 위한 구체적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할 예정입니다.
- 중복·유사한 클라우드 사업자 안전성 평가(CSP) 항목을 정비\*하여 평가절차가 간소화됩니다.
  - \* 평가항목을 141개에서 54개로 축소하고, 비중요 업무의 경우 평가항목을 차등 적용 등
- 금융회사 등이 클라우드를 이용하려는 경우 사전보고를 사후보고로 전환하여 사업 추진의 적시성이 높아집니다.

참고 금융위원회 홈페이지(보도자료)“클라우드 및 망분리 규제 개선방안”

### 금융분야 클라우드서비스 이용 가이드라인 개정

- **추진배경** 금융업무의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클라우드 이용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으며, 지나치게 엄격한 현행 클라우드 이용 규제를 개선하여 금융혁신을 지원할 필요
- **주요내용**
  - 불명확한 업무중요도 평가기준을 개정하여, 업무중요도 평가를 위한 구체적 기준 및 절차를 마련
  - 중복·유사한 클라우드사업자 안전성 평가(CSP) 항목을 정비\*하는 등 평가절차를 간소화
    - \* 평가항목을 141개에서 54개로 축소하고, 비중요 업무의 경우 평가항목 차등 적용
  - 금융회사 등이 클라우드를 이용하려는 경우 사전보고를 사후보고로 전환
- **시행일** 가이드라인 개정 : 2022년 10월 / 제도 시행 : 2023년 1월 1일

## 데이터(가명정보) 결합 절차 개선

금융위원회 금융데이터정책과 (☎ 02-2100-2621)

금융분야 데이터를 결합하고자 하는 기업 등은 필요시 데이터의 일부만 샘플링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데이터를 결합하여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 또한, 데이터전문기관은 보유한 데이터를 일정 요건\*하에 타 기관의 데이터와 스스로 결합하여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 결합된 데이터의 가명처리 적정성 등을 타 데이터전문기관이 평가 등

■ 개정내용은 규제심사 등 개정절차를 거쳐 2022년 7월 중 개정 완료되어 시행될 예정입니다.

참고 금융위원회 홈페이지(보도자료) "신정법 시행령 입법예고 보도자료"

### 데이터(가명정보) 결합 절차 개선

- **추진배경** 금융분야 데이터 결합·활용 활성화 등을 위해 데이터 결합·활용과 관련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
- **주요내용**
  - 정보집합물을 이용하기만 하는 기관이 결합된 데이터를 보다 원활히 활용할 수 있도록 정보집합물 이용기관이 결합신청 및 결합절차에 참여 허용
  - 결합된 정보집합물의 일부만 추출하여 활용하려는 경우, 보다 효율적으로 정보집합물을 결합할 수 있는 절차 도입
  - 데이터전문기관이 보유한 정보집합물을 스스로 결합할 수 있는 요건 확대
- **시행일** 미정(7월 중 개정 완료 추진)



2022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 교육·보육·가족



### 1 교육부

자세한 내용은 p.26

#### 교육분야 인공지능 윤리원칙 마련

시행일 : 2022년 하반기

교육분야 인공지능 윤리원칙이 마련됩니다.

- 인공지능이 교육현장에서 안전하게 학습자의 성장을 지원할 수 있도록 사회적 담론 형성 및 자율규제의 촉매제로서 윤리원칙이 마련됩니다.



### 3 여성가족부

자세한 내용은 p.32

#### 민간 청소년수련시설 수련활동비 지원

시행일 : 2022년 7월 1일

민간 청소년수련시설 수련활동비를 지원합니다.

-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청소년수련시설 운영난 극복 및 청소년활동 활성화 도모를 위하여 2022년 하반기부터 민간 청소년 수련시설을 지원합니다.



### 2 여성가족부

자세한 내용은 p.30

####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시범사업 시행

시행일 : 2022년 7월 1일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시범사업을 시행합니다.

- 청소년기에 임신·출산을 경험하여, 자녀 양육과 학업 또는 취업을 병행해야 하는 청소년부모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아동양육비를 지원합니다.



## 교육분야 인공지능 윤리원칙 마련

교육부 미래교육전략팀 (☎ 044-203-7186)

인공지능이 교육현장에서 안전하고 윤리적으로 개발·활용될 수 있도록 「교육분야 인공지능 윤리원칙」이 마련됩니다. 이미 2022년 1월에 안내된 시안을 바탕으로 하반기에 확정되며, 인공지능 윤리교육 체계화, 안전성 판단 도구 개발 등 정책적·기술적 과제도 제시하고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 이번 윤리원칙은 인공지능의 교육적 활용 증대와 기술 발전에 따른 윤리적 이슈 대두에 대응하여 교육계 및 관련 산업계가 참고할 수 있는 규범을 선제적으로 마련한 것으로, 교육현장의 자발적인 실천과 준수를 독려하는 도덕적 규범 및 자율규제입니다.
- 이 원칙은 4차 산업혁명, 디지털 전환 시대 속에서 인공지능이 교수자(사람)를 도와서 학습자의 성장을 지원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안전 가이드라인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 또한, 인공지능기술 발전, 교육현장의 활용 실태 및 논의의 성숙 등을 점검하여 주기적 개선·검토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 ※ 첫 번째 조치는 3년 이내 실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7조)

참고 교육부 홈페이지>보도자료>“인공지능교육 활성화 100인 포럼 개최”

### 교육분야 인공지능 윤리원칙(시안)

- **추진배경** 인공지능이 교육현장에서 안전하게 학습자의 성장을 지원할 수 있도록 사회적 담론 형성 및 자율규제의 촉매제로서 윤리원칙 마련
- **주요내용**
  - (적용범위) 교육기관\* 및 교육활동을 지원하는 행정기관에서 활용되는 인공지능
    - \* 유·초·중등·고등 및 평생교육 단계에서 정규 및 비정규의 교육을 실시하는 모든 형태의 교육기관(시설)
  - (권리·책임주체) 교육당사자 및 관계자(이용자, 개발자, 관리자)
  - (원칙의 성격) 자발적 실천과 준수를 독려하는 도덕적 규범이자 자율규제
  - (대원칙) 사람의 성장을 지원하는 인공지능
  - (3대 기본원칙) 학습자의 주도성 강화, 교수자의 전문성 존중, 기술의 합목적성 제고
  - (9대 세부원칙) 교육분야 인공지능은
    - 인간성장의 잠재가능성을 이끌어낸다
    - 모든 학습자의 주도성과 다양성을 보장한다
    - 교육당사자 간의 관계를 공고히 유지한다
    - 교육의 기회균등 실현을 통해 공정성을 보장한다
    - 교육공동체의 연대와 협력을 강화한다
    - 사회 공공성 증진에 기여한다
    - 모든 교육당사자의 안전을 보장한다
    - 데이터 처리의 투명성을 보장하고 설명가능해야 한다
    - 데이터를 합목적적으로 활용하고 프라이버시를 보호한다

## 학자금대출 저금리 전환 대출 시행

교육부 대학재정장학과 (☎ 044-203-6271)

2022년 7월부터 2012년 이전에 일반상환 학자금대출을 받은 대출자를 대상으로 저금리 전환대출을 시행합니다.

■ 이번 저금리 전환대출은 경제난과 취업난으로 이중고를 겪는 청년들의 경제 부담 완화를 위해 세번째 시행하는 것으로, 과거 전환대출 시행 시 지원을 받지 못한 2012년 대출자까지 확대\*하고 전환금리는 2.9%를 적용하여, 대출자의 금리 부담은 평균 2%p\*\* 완화됩니다.

\* (제1·2차) 정부보증학자금대출('05~'09.1학기) 및 '09년 2학기 대출자 → (제3차) '09년 2학기 ~ '12년 2학기 대출자

※ 정부보증학자금대출은 주택금융공사 주관으로 전환대출 별도 시행 예정

\*\* (현 부담금리) 평균 4.9%(5.8% ~ 3.9%) → (전환금리) 2.9%

■ 이번 제3차 저금리 전환대출은 2022년 7월 6일부터 2024년까지 시행됩니다.

\* 2023~2024년 신청기간 등의 구체적인 일정은 별도 공지 예정

참고 교육부 홈페이지(교육부소식)보도자료>2022학년도 2학기 학자금대출 시행('22.7월 초 예정)

### 학자금대출 저금리 전환대출 시행

- **추진배경** 과거 대출자의 이자부담 완화를 위한 저금리 전환대출 시행  
※ 한국장학재단에 관한 법률 개정('21.12.28.) 및 동법 시행령 개정('22.7월 초 예정)
- **주요내용** '09년 2학기 ~ '12년 2학기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자 대상 (현 부담금리 5.8~3.9%)으로 2.9%의 저금리로 전환
- **시행일** 2022년 7월 6일 (~ 2024년 12월)  
\* 매년 신청기간 등의 구체적인 일정은 별도 안내

## 지능형 나이스 유치원 업무 구축을 위한 민감정보 처리 근거 마련 등

교육부 유아교육정책과 (☎ 044-203-6712)

「지능형 나이스 유치원 업무(유아교육행정정보시스템)」 구축 및 유아교육관련 업무 수행을 위해 부처간 행정정보 공동활용과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활용 근거가 마련됩니다.

■ 개정내용은 2022년 6월 21일부터 적용됩니다.

### 지능형 나이스 유치원 업무 구축을 위한 민감정보 처리 근거 마련 등

- **추진배경** 「유아교육법 시행령」에 행정정보의 공동이용과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대한 업무를 명확히 하여 불필요한 행정정보 제출을 지양하고, 개인정보 취급 근거 마련
- **주요내용**
  - 유아교육행정관련 사무를 위해 행정정보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부처간 공동이용 대상 행정정보 명시
  - 유아교육행정관련 법에서 정한 권한 및 사무에 따른 민감정보·개인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
- **시행일** 2022년 6월 21일

##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시범사업 시행

여성가족부 가족지원과 (☎ 02-2100-6351, 6342)

2022년 7월부터 청소년부모 가구의 자녀에 대한 아동양육비 지원 시범사업이 시행됩니다.

- 청소년부모 가구란 자녀를 양육하는 부와 모가 모두 만 24세 이하 청소년인 가구로, 가구 자녀 1명당 월 20만원씩 6개월 간(7~12월) 아동양육비를 지원합니다.
- 다만, 청소년부모 가구로서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경우에 한하여 아동양육비를 지원합니다.

##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패키지 시범사업 추진

여성가족부 가족지원과 (☎ 02-2100-6351, 6342)

2022년 7월부터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실질적 자립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각종 지원 정보와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안내 및 연계해 주는 자립지원패키지 시범사업을 추진합니다.

- 만 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의 경우 혼자서 학업과 양육을 병행하면서 정보 부족 등으로 각종 정부 지원 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 시범사업이 시작되면 청소년 한부모에게 보다 체계적인 사례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어 청소년 한부모의 자립 역량 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참고 여성가족부 홈페이지)보도자료)“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관련 보도자료”

###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시범사업 개요

- **추진배경** 청소년기에 임신·출산을 경험하여, 자녀 양육과 학업 또는 취업을 병행해야 하는 청소년부모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아동양육비 지원
- **사업대상** ① 청소년(만9세~24세)부부(사실혼 관계 포함)로서, ② 자녀를 한 명 이상 양육하고 있는, ③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청소년부모 가구의 자녀
- **사업내용**
  - (예산) 국비 총 1,800백만원
  - (지원단가) 자녀 1명당 20만원
  - (지원기간) 6개월(‘22.7~12월)
  - (지원규모) 전국 청소년부모 가구의 자녀 3,000명 이내
- **시행일** 2022년 7월 1일

###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패키지 시범사업 개요

- **추진배경** 생활이 불안정한 청소년 한부모에게 각종 지원 정보를 안내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하여 청소년 한부모 자립기반 마련 지원 필요
- **주요내용**
  - 중위소득 72% 이하의 청소년 한부모를 대상으로 자녀양육, 학업·취업 등 각종 지원 정보를 안내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해 주는 자립지원 패키지 시범사업을 실시하여 청소년 한부모의 자립역량 강화 도모
  - \* 상담, 자녀양육(돌봄), 주거지원, 직업훈련 등
- **시행일** 2022년 7월 1일

## 민간 청소년 수련시설 수련활동비 지원

여성가족부 청소년활동안전과 (☎ 02-2100-6263)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난 극복 및 청소년 활동 활성화 도모를 위하여 2022년 하반기부터 민간 청소년 수련시설을 지원합니다.

- 전국 초·중·고등학교에서 민간 청소년 수련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해당 수련시설에 이용 청소년 1인당 최대 2만원을 지원합니다.
- 지난 2년여 동안 사회적거리두기 조치로 운영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던 청소년 수련시설이 이번 지원으로 다시 활기를 되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 민간 청소년 수련시설 청소년 수련 활동비 지원

- **추진배경**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난 극복 및 청소년활동 활성화 도모
- **주요내용**
  - (지원대상시설) 민간 청소년 수련시설(청소년수련원·유스호스텔)
    - 단, 공공 청소년 수련원·유스호스텔 중 보조금(운영비)을 받지 않은 시설 포함
  - (활동참가대상) 전국 초·중·고등학교(초·중등교육법 제2조)
    -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공민학교,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특수학교, 각종학교
  - (지원방식) 예산(76억원) 소진 시까지 민간 수련시설의 단체 수련 활동에 참여하는 경우 최대 2만원/인 지원
    - 2박3일 활동: 2만원, 1박2일 활동: 1만원, 당일 및 학교방문형 활동: 5천원
- **시행일** 2022년 7월 1일

## 청소년생활기록부 반영 대학 확대 시행

여성가족부 학교밖청소년지원과 (☎ 02-2100-6317)

2023학년도 대학 입시 전형부터는 학교생활기록부 대체 서류인 청소년생활기록부를 통해 수시 전형으로 지원할 수 있는 대학이 전국 11개 대학으로 확대됩니다.

※ ('22학년도 대학입시) 6개 대학 → ('23학년도 대학입시) 11개 대학

- 청소년생활기록부는 전국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서 학습 및 활동한 내용을 대학진학 시 활용하도록 학교 밖 청소년에 관한 정보\*를 기록하는 제도입니다.
  - \* 학교생활기록부 양식을 기반으로 출결상황,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 학업노력상황, 독서활동상황,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등 학교 밖 청소년의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꿈드림센터) 내 다양한 활동내용 기록
- 학교 밖 청소년이 대학 입시 지원에서 겪는 차별을 개선하고, 교육권을 보장 받을 수 있도록 대학 입시에 청소년생활기록부 반영을 확대해 가겠습니다.

### 학교 밖 청소년 청소년생활기록부 반영 대학 확대 시행

- **추진배경** 꿈드림 청소년단 등 학교 밖 청소년들의 대입 지원 차별 개선을 위한 정책 요구에 따라 청소년생활기록부 반영 대학 지속 확대
- **주요내용**
  - 2022학년도 반영 대학
    - 강릉원주대학교,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서울대학교, 차의과학대학교, 한경대학교, 한림대학교
  - 2023학년도 반영 5개교 확대
    - 강릉원주대학교,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서울대학교, 차의과학대학교, 한경대학교, 한림대학교
    - + 인천대학교, 동서대학교, 충남대학교, 전북대학교, 안동대학교
- **시행일** 2023학년도 대학 입시 전형

##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바우처 지원대상 확대

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과 (☎ 02-2100-6232, 6242)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바우처 지원 대상이 만 9~24세로 확대됩니다.

- 그동안 생리용품 바우처는 저소득층\* 만 9~18세 여성청소년에게 지원되었으나,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전체(만 9~24세)로 확대되어 여성청소년의 건강권이 한층 더 강화됩니다.
  - \* 기초생활수급, 법정차상위, 한부모가족 지원대상 가구
- 이에 따라, 2022년 5월부터는 만 19~24세 여성청소년도 생리용품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지원액도 인상되어 보다 다양한 제품을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참고 여성가족부 홈페이지)보도자료

### 사립학교법 개정 주요내용

- **추진배경**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을 통한 청소년의 건강권 및 인권 보장 강화
- **주요내용**
  - 지원대상 : 저소득층 만 9~24세 여성청소년
    - ('22) 저소득층 만 9~18세 여성청소년
    - ('22.5.) 저소득층 만 9~24세 여성청소년
  - 지원내용 : 생리용품을 구매할 수 있는 전자바우처 연 144천원
    - ('21) 연 138천원 → ('22) 연 144천원
  -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누리집 (www.bokjiro.go.kr) 모바일 앱
- **시행일** 2022년 5월 1일

## 가정 밖 청소년 지원 모바일 서비스 앱 '자립해냄' iOS용 구축·지원

여성가족부 청소년자립지원과 (☎ 02-2100-627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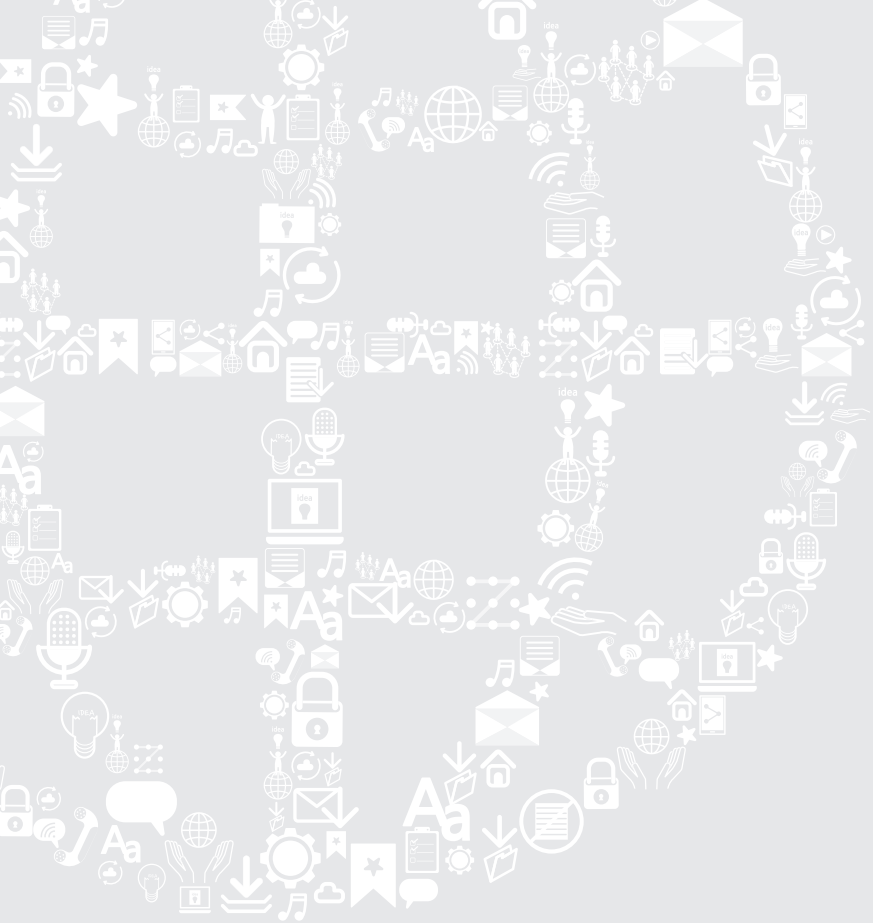
가정 밖 청소년의 청소년쉼터에 대한 정보 접근을 수월하게 하고 맞춤형 자립지원 정보제공, 자립준비 자가진단 및 사이버·전화·문자·카카오톡 상담을 지원하는 모바일 앱(APP) 「자립해냄」 iOS용 버전을 지원합니다.

- '21년에 안드로이드용 버전 지원에 이어 올해 iOS용 버전 추가 개발·지원으로 가정 밖 청소년 서비스 지원 효과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특히, 자립에 성공한 가정 밖 청소년들의 성공담을 공유하는 '멘토멘티 게시판'을 개설하여 가정 밖 청소년들의 자립의지를 북돋고 성공사례를 널리 확산합니다.
- 또한, 청소년쉼터뿐만 아니라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학교밖지원센터 등의 청소년시설을 추가로 검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자립해냄 모바일 앱

- **추진배경** 가정 밖 청소년을 위한 자립지원 서비스 모바일 앱을 개발하여 정보 접근성 제고
- **주요내용**
  - 청소년쉼터 검색, 맞춤형 자립정보, 사이버·전화·문자·카카오톡 상담 기능과 검색 청소년쉼터 입소 가능 여부 및 11개의 자립요인으로 구성된 자립준비 자가진단 서비스 제공
    - 자립요인 11개: 자립의지, 주거관리, 일상생활기술, 음식관리, 직업 준비, 직장적응, 경제관리, 사회기술, 자원활용, 건강관리, 성보호
- **시행일** 2022년 6월 10일(iOS용 서비스 제공)





2022

2022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 보건·복지·고용



03

### 1 농림축산식품부

자세한 내용은 p.40

#### 농업인안전보험 보장 강화 및 연금 방식 수급 강화

시행일 : 2022년 10월 1일

Before

지금까지 농업인안전보험으로 농작업 재해로부터 농업인의 생활안정에 기여해 왔습니다.



After

농업인을 위한 농업인안전보험 보장 강화 및 연금 방식 수급이 가능해집니다.



- (일반1·2·3형)상해질병치료금 한도 : 1천만원 → 5천만원
- (일반2·3형)휴업급여금(4일 이상 입원 시, 120일 한도) : 2~3만원/일 → 6만원
- 유족급여금, 장해급여금 : 일시금 지급 → 일시금 또는 연금 지급

### 2 보건복지부

자세한 내용은 p.41

#### 한국형 상병수당 시범사업 1단계 시행

시행일 : 2022년 7월 4일

한국형 상병수당 시범사업 1단계 시행

- 상병수당이 도입되면 근로자가 아파도 소득 걱정 없이 치료를 받게 되어, 질병 악화와 빈곤을 예방하고 보다 빨리 일자리에 복귀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3 보건복지부

자세한 내용은 p.42

#### 국민연금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시행일 : 2022년 7월 1일

저소득 지역가입자에게 국민연금보험료를 지원합니다.

- 국민연금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노후소득보장 강화를 위해 납부예외자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이 신설됩니다.



연금보험료의 50% (월 최대 45,000원)

### 4 고용노동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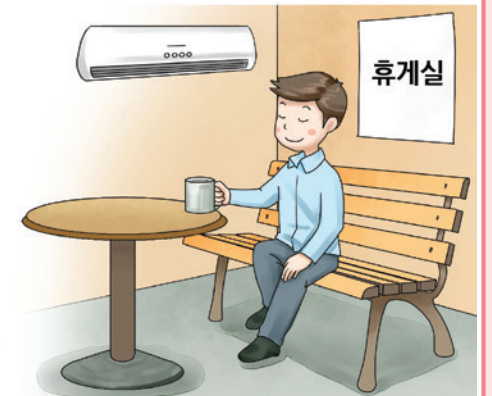
자세한 내용은 p.47

####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제도 시행

시행일 : 2022년 8월 18일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제도를 시행합니다.

- 모든 사업장에 휴게시설 설치의무를 부여하되,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건설현장 포함)에 대해서는 휴게시설 설치 및 설치·관리기준 준수 의무 불이행 시 과태료 부과
- 휴게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근로자 범위에 관계수급인 근로자를 포함



## 농업인안전보험 보장 강화 및 연금 방식 지급 추가 가능

농림축산식품부 재해보험정책과 (☎ 044-201-1796)

2022년 10월 1일부터 농작업 재해의 보장 강화를 위해 농업인안전보험의 보장 한도를 확대하고, 유족급여금 등은 연금 방식으로도 지급하며, 가족단위 가입 시 보험료 할인을 적용합니다.

- 농업인안전보험의 보험금 중 농업인의 지급 요청이 많은 상해질병치료금 한도는 1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휴업급여금은 4일 이상 입원 시 1일당 2~3만원에서 6만원으로 확대합니다.
  - ※ (일반1·2·3형) 상해질병치료금 한도 : 1천만원 → 5천만원
  - (일반2·3형) 휴업급여금(4일 이상 입원 시, 120일 한도) : 2~3만원/일 → 6만원
- 또한, 유족급여금과 장해급여금은 기존의 일시금 방식 외에 농업인 및 유족의 선택에 따라 연금 방식으로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아울러, 영농에 종사하는 가족이 함께 농업인안전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보험료의 5% 할인 금액을 가입자별 납부액에 적용하여 저렴한 보험료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참고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 보도자료 게시 예정(9월 중)

### 농업인안전보험 보장 강화 및 연금 방식 지급 가능

- 추진배경 농작업중 발생하는 재해에 대한 보장 강화 및 보험금 수급 선택권 확대, 보험 가입 접근성 제고로 재해로부터 농업인의 생활안정 기여
- 주요내용
  - 농업인안전보험 상해질병치료금, 휴업급여금 보장수준 강화
  - 농업인안전보험 유족급여금, 장해급여금은 일시금 방식 외에 연금 방식으로도 선택하여 받을 수 있음
  - 농업인안전보험에 가족 단위로 가입 시 가입자별로 보험료 5% 할인
- 시행일 2022년 10월 1일

## 한국형 상병수당 시범사업 1단계 시행

보건복지부 상병수당추진단 (☎ 044-202-2748)

2022년 7월부터 근로자가 아파서 일하기 어려운 경우 생계 걱정 없이 쉴 수 있도록 상병수당을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합니다.

- 코로나 19 이후 '아프면 쉬기'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면서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고 취약계층이 질병으로 인해 빈곤해지는 것을 예방하는 상병수당 도입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 OECD 38개국 중 한국, 미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에서 이미 상병수당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상병수당 시범사업은 공모를 통해 선정된 6개 시·군·구\*에서 시행합니다.
  - \* 서울 종로, 경기 부천, 충남 천안, 경북 포항, 경남 창원, 전남 순천
  - 해당 지역의 취업자는 질병·부상으로 인해 일하지 못하는 경우 그 기간 동안 하루에 43,960원씩 상병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단계별 시범사업(3년, 잠정)을 통해 우리나라 여건과 상황에 맞는 상병수당 제도 도입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 상병수당이 도입되면 근로자가 아파도 소득 걱정 없이 치료를 받게 되어, 질병 악화와 빈곤을 예방하고 보다 빨리 일자리에 복귀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한국형 상병수당 시범사업 1단계 시행

- 추진배경 코로나 19를 계기로 근로자의 아프면 쉴 권리 보장 차원에서 상병수당에 대한 사회적 요구 증대
- 주요내용
  - (목적)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 없는 질병·부상으로 일하기 어려운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상병수당을 지원하는 시범사업 추진
    - 단계별 시범사업 통해 모형별 정책 효과성을 분석·평가하여 바람직한 상병수당 제도 도입방안 마련
  - (규모) 6개 지역(시·군·구 단위) 공모로 선정
    - \* 서울 종로, 경기 부천, 충남 천안, 경북 포항, 경남 창원, 전남 순천
  - (지원대상) 질병·부상으로 일하기 어려운 취업자(임금·비임금근로자)
  - (보장수준) 일 43,960원(최저임금의 60%)
  - (사업모형) 상병수당을 지원하는 질병의 보장범위 및 의료인증 방법을 달리하는 3개의 모형 적용(모형별 2개 지역)
- 시행일 2022년 7월 4일

## 국민연금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 (☎ 044-202-3633)

2022년 7월부터 국민연금 사각지대 완화를 위해 저소득 지역가입자에 대한 국민연금보험료 지원이 신설됩니다.

- 지역가입자 납부예외자\* 중 보험료 납부를 재개하는 자의 신고소득에 대한 연금보험료의 50% (월 최대 45,000원)를 최대 12개월 지원합니다.
  - \* 사업중단·실직·휴직의 사유로 소득이 없어 보험료 납부를 면제받은 자
- 보험료 지원은 2022년 7월 1일 이후 연금보험료 납부재개자에 대해 적용되며, 소재지 관할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신청서 제출(방문·우편·팩스 신청 가능)

### 국민연금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 **추진배경**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을 통해 국민연금 사각지대에 있는 납부예외자의 노후소득보장 강화
- **주요내용**
  - (지원대상) 경제적 사유의 납부예외자\* 중 보험료 납부재개자
    - \* 사업중단·실직·휴직의 사유로 소득이 없어 보험료 납부를 면제받은 자
  - (지원기준) 종합소득(근로·사업소득 제외) 1,680만원 미만 및 재산 6억원 미만
  - (지원수준) 연금보험료의 50%(월 최대 45,000원) 지원
 

〈 세부 지원수준 〉

① 월 소득 100만원 이하 → 연금보험료의 50% 지원

② 월 소득 100만원 초과 → 100만원에 대한 보험료의 50%인 45,000원 지원
  - (지원기간) 최대 12개월
- **시행일** 2022년 7월 1일

## 긴급복지지원 생계지원금 단가 인상 및 재산기준 완화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 044-202-3059)

경제적으로 취약한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 확대를 위해 긴급복지지원 생계지원금 단가를 인상하고 재산기준을 완화합니다.

- 긴급복지지원은 갑작스런 위기상황으로 인해 생계가 곤란한 가구를 신속히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 (지원요건) 기준중위소득 75% 이하의 소득, 일반재산 241백만원 이하(대도시 기준), 금융재산 600만원 이하
  - \* (단가적용) 기준에 충족하는 가구에 대해 가구원 수별 지원 단가를 적용
- 가구원수별 지원 단가를 16~19% 인상하고 주거용 재산에 대한 공제한도액 신설 및 생활준비금 공제율을 상향하여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단가 인상

- **추진배경** 생계곤란 저소득 가구에 대해 최저생활이 보장될 수 있도록 지원 확대
- **주요내용**
  - 생계지원금 단가 인상
    - (현행) 1인가구 488,800원, 4인가구 1,304,900원
    - (변경) 1인가구 583,400원, 4인가구 1,536,300원
  - 재산기준 완화
    - (현행) 생활준비금 공제율(기준중위소득 65%)
    - (변경) 주거용 재산 공제 한도액 신설(대도시 69백만원, 중소도시 42백만원, 농어촌 35백만원), 생활준비금 공제율(기준중위소득 100%)
- **시행일** 2022년 7월 1일

## 입양대상아동 보호비 신규 지원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 ☎ 044-202-3423

2022년 7월부터 입양대상아동이 새로운 가정을 만나기 전까지 보다 더 세심한 보살핌을 받을 수 있도록, 입양대상아동을 보호하는 위탁부모님에 대한 지원이 신설됩니다.

- 입양대상아동을 보호하는 모든 위탁가정 부모님에게 월 1백만원의 보호비를 새롭게 지원합니다.
  - \* '22.7.1.부터 입양대상아동에 대한 위탁가정(일반 및 전제) 보호 종료일이 속하는 월까지 지원
- 또한, 보호기간 동안에 입양대상아동의 발달 상황과 건강 상태 등 성장 스토리를 주기적(일별, 월별)으로 기록하고, 새롭게 만나게 되는 부모님에게 그간의 성장 스토리를 제공하여 긴밀한 애착 형성을 도모할 예정입니다.

### 입양대상아동 보호비 지원

- **추진배경** 입양대상아동이 새로운 가정을 만나기 전까지 위탁가정에서 보다 세심한 보살핌을 받도록 최소 수준 보호비 지원
- **주요내용**
  - (지원대상) 입양대상아동을 보호하는 위탁부모
  - (지원기간) '22.7.1.부터 위탁가정(일반 및 전제) 보호 종료일이 속하는 월까지 지원
  - (지원금액) 월 1백만원
  - (양육상황기록) 입양대상아동의 양육상황 일별·월별 기록지 작성 및 가정법원 입양확정에 따른 위탁 종료시 양부모에게 기록 일체 인계
- **시행일** 2022년 7월 1일

## 맞춤형 급여 안내 가입대상 전국민 확대

보건복지부 급여기준과 ☎ 044-202-3144

2022년 9월부터 개인 및 가구의 소득·재산·인적 특성을 분석해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찾아 선제적으로 안내하는 맞춤형 급여 안내('복지멤버십')를 전국민 대상으로 확대합니다.

- 원하는 모든 국민은 온라인 신청, 방문신청\*을 통해 수급 가능성 있는 급여정보를 문자나 전자우편으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가능
- 국민들의 복지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안내 사업 또한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 \* 중앙부처 사업 중심으로 확대하며('22.9월~), 지자체 사업 또한 안내('23.下)

### 복지멤버십 전국민 확대

- **추진배경** 복지서비스의 종류가 다양하고, 신청한 사람에게만 제공되기 때문에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몰라서 받지 못하는' 상황 발생
- **주요내용**
  - (대상자) 15개 복지사업의 기존 수급자 등을 대상으로 우선 도입('21.9월) → 전국민으로 확대 시행('22.9월)
  - (서비스 내용) 희망하는 개인·가구의 소득·재산·인적 정보를 토대로 받을 수 있는 사회보장급여를 찾아서 문자·복지로(홈페이지) 등을 통해 안내
  - (안내사업 범위) 현장 의견수렴, 시뮬레이션 등 거친 10개 부처 71개 사업('22.6월 기준)
- **시행일** 2022년 9월 5일(잠정)

## 포스트 코로나시대 적정수혈을 위한 의료기술 개발(R&D)사업 실시

보건복지부 혈액장기정책과 (☎ 044-202-2635~6)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혈액부족 사태를 대비하여 환자중심의 안전한 환자혈액관리(PBM) 정착을 위한 의료기술 개발 연구 사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 '22년 ~ '25년(4개년), 총 135~140억원

- 감염병 장기화에 따른 외출 자제, 대면접촉 감소 등으로 인해 헌혈량이 감소하고 있으며, 특히 저출산 고령화로 주요 헌혈층인 10대·20대 인구는 줄어들고 수혈량은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수혈 대체 요법 또는 적정수혈의 효용성·안전성 검증을 위한 임상 연구 및 전향적 코호트 연구를 지원하며, 빈혈·수혈 유발요인 규명을 위한 역학 통계연구와 수혈 대체 요법 또는 적정수혈을 위한 의료기술 개발의 개념증명 연구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 적정수혈을 위한 의료기술개발 사업 개요

- **추진배경** 포스트 코로나시대의 혈액부족사태를 대비하여 환자중심의 안전한 환자혈액관리(PBM) 정착을 위한 의료기술 개발 연구 필요
- **주요내용**
  - (지원대상) 산·학·연 또는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의 병원급 의료기관
  - (지원내용) ▲수혈 대체 요법 또는 적정수혈의 효용성·안전성 검증을 위한 임상 연구지원, ▲전향적 코호트 연구, ▲빈혈·수혈 유발요인 규명을 위한 역학연구, ▲수혈 대체 요법 또는 적정수혈을 위한 의료기술 개발의 개념증명연구
  - (지원규모) 총 135~140억원 / 국비 100%(출연금)
- **시행일** 2022년 7월

##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제도 시행

고용노동부 직업건강증진팀 (☎ 044-202-8893)

2022년 8월 18일부터 모든 사업장에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됩니다.

-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건설현장 포함)에서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휴게시설의 설치·관리 기준을 준수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주는 근로자(관계수급인의 근로자를 포함)가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휴게시설 설치 시 크기, 위치, 온도, 조명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휴게시설 설치·관리 기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주가 휴게시설 미설치시: 1,500만원 이하 과태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설치·관리기준 미준수시: 1,000만원 이하 과태료

참고 고용노동부 누리집>정보공개>“과태료 부과대상 사업주 범위 및 설치관리 기준 입법예고(안)”

### 사업장 내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제도 시행

- **추진배경** 휴게시설 설치 의무 이행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제재규정(과태료 부과) 도입
- **주요내용**
  - 모든 사업장에 휴게시설 설치의무를 부여하되,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건설현장 포함)에 대해서는 휴게시설 설치 및 설치·관리기준 준수 의무 불이행 시 과태료 부과
  - 휴게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근로자 범위에 관계수급인 근로자를 포함
- **시행일** 2022년 8월 18일

## 퇴직연금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 도입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 (☎ 044-202-7557)

2022년 7월 12일부터 퇴직연금제도(DC·IRP)에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 제도)가 도입됩니다.

- 사전지정운용제도는 가입자의 운용지시가 없을 경우 가입자가 사전에 정해 놓은 방법으로 퇴직연금을 운용하는 제도입니다.
- 퇴직연금사업자는 고용노동부장관 소속 심의위원회의 사전심의와 고용노동부 승인을 거쳐 사전지정운용방법을 마련하며, 원리금보장상품 혹은 집합투자증권(펀드)으로 구성이 가능합니다.
- 기업은 퇴직연금사업자가 제시한 사전지정운용방법을 근로자대표 동의를 거쳐(퇴직연금규약 반영) 도입하고, 가입자는 퇴직연금사업자로부터 사전지정운용방법 정보를 제공 받아 그 중 하나의 상품을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지정하게 됩니다.
- 사전지정운용제도를 통한 퇴직연금의 효율적 운용으로 수익률이 제고되어 근로자의 노후소득 확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참고 고용노동부 누리집)보도자료)“퇴직연금 사전지정운용제도도입”

### 사전지정운용제도 도입

- **추진배경** 퇴직연금제도에 대한 무관심, 금융에 대한 전문성 부족으로 저금리 환경 속에서도 예·적금 등 원리금보장상품으로 86% 이상 운용하여 수익률 저조
- **주요내용** 근로자(가입자)가 운용지시를 하지 않는 등 무관심한 경우를 대비해 자동으로 적용되는 운용상품을 미리 정해두는 제도
- **시행일** 2022년 7월 12일

## 유통배송기사 등 특고 산재보험 적용 확대 및 특고 종사자 보조사업장 재해 보상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 044-202-8838)

2022년 7월부터는 ①유통배송기사(물류센터에서 점포·음식점 배송 또는 물류센터·점포에서 소비자 배송), ②택배 지·간선기사(택배사업 물류 터미널 간 물품 운송), ③카캐리어·곡물 특정품목 운송 화물차주(전용차량으로 자동차·곡물 등 운반) 3개 분야에 대하여 산재보험이 추가로 적용됩니다.

- 노무제공 형태가 근로자와 유사하여 업무상 재해로부터 보호 필요성이 높은 특수형태근로 종사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2008년 보험설계사 등 4개 직종을 시작으로, 현재 총 15개 직종\* 79만여 명 특고에게 산재보험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 골프장장캐디, 택배기사, 쿼서비스기사, 대출모집인 등(산재보험법 시행령 제125조)
- 그간 산재보험 특고 전속성 요건 때문에 여러 사업에 노무를 제공하는 종사자의 경우, 산재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 특고 전속성 요건 폐지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산재보험법이 개정되어 2023년 7월 시행 예정이며, 현재 산재보험을 적용받고 있는 특고는 개정법 공포(2022.6.10.) 이후부터 보조사업장 재해에 대해서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참고 (유통배송기사 등 적용) 고용부 누리집)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예고)“산재보험대상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보조사업장 재해 보상) 고용부 누리집)보도자료)“산재보험대상보험법 등 13개 개정 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유통배송기사 등 특고 산재보험 적용 확대 및 특고 종사자 보조사업장 재해 보상

- **추진배경** 산재 취약계층에 대한 안전망 강화
- **주요내용** 유통배송기사, 택배 지·간선기사, 곡물 등 특정품목 운송 화물차주 등 3개 분야의 특고종사자를 산재보험 적용 범위에 추가 (시행: 2022년 7월 1일)  
• 산재보험 특고 전속성 요건 폐지 개정법 공포(2022.6.10.) 이후부터는 보조사업장 재해에 대해서도 산재보상
- **시행일** 적용직종 확대(2022년 7월 1일)  
개정 산재보험법 부칙 시행(2022년 6월 10일)

##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의 대표성 강화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 ☎ 044-202-7395

과반수 노동조합이 없는 사업장에 설치된 노사협의회의 근로자위원을 선출할 때 직접·비밀·무기명 투표 원칙을 법률에 상향 규정하고, 투표로 선출하는 경우 근로자 과반수의 참여를 의무화하여 근로자위원의 대표성과 민주적 정당성을 높였습니다.

▣ 개정내용은 법 시행 이후 근로자위원을 새로 선출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 「K-디지털 기초역량훈련」 지원 대상 확대

고용노동부 신기술인력양성총괄TF ☎ 044-202-7268

2022년 7월부터 전 국민의 디지털 리터러시 제고를 위해 「K-디지털 기초역량훈련」의 지원 대상이 확대됩니다.

- ▣ 만 35세 이상 만 54세 이하 중장년 재직자도 「K-디지털 기초역량훈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 현재, 만 35세 이상 만 54세 미만 중장년 구직자에게만 지원(만 34세 이하 청년은 재직자, 구직자 지원)

참고 고용노동부 누리집)보도자료>“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13개 개정 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의 대표성 강화

- 추진배경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선출방법 법률 상향으로 대표성과 민주성 강화
- 주요내용
  - (근로자위원 선출방법) 과반수 노조가 없는 경우 근로자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되, 관련 내용을 법률에 상향 규정
  - (투표 시 근로자 과반수 참여) 근로자위원의 대표성 확보를 위해 투표로 선출 시 근로자 과반수 참여 의무화
  - (위원선거인 선출) 직접 선출 방식과 동일하게 간접선거 위원선거인 선출 시에도 근로자 과반수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 법률 명시
- 시행일 2022년 12월 11일

참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정책자료>정책자료실

### 「K-디지털 기초역량 훈련」 지원 대상 확대

- 추진배경 청년, 중장년 등이 디지털 역량 부족으로 노동시장 진입·적응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디지털 기초 역량 강화 지원
- 주요내용
  - (지원대상)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은 청년 및 중장년
    - 「K-디지털 기초역량훈련」 수강신청일 기준, 국민내일배움카드의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만 54세 이하 국민
  - (지원방식) 국민내일배움카드 계좌 지원한도(5년간 300~500만원) 외 K-디지털 기초역량훈련에 참여 가능한 50만원(1년 한도) 추가 지원
  - (훈련내용) 빅데이터, 코딩 등 기초 디지털 영역부터 최근 등장한 메타버스까지 다양한 신기술 분야 및 직무융합과정 등 초·중급 수준으로 구성하여 민간의 혁신기관 중심으로 공급
- 시행일 2022년 7월



## 플랫폼종사자 일터개선 지원사업 실시

고용노동부 디지털노동대응TF (☎ 044-202-7075)

플랫폼종사자의 노무제공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플랫폼기업의 맞춤형 일터개선 사업을 지원합니다.

- 플랫폼기업 등이 이동노동자 쉼터 등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소요비용의 일부(50%, 연간 최대 3억원)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중소규모 건설공사 안전관리 기술지도 의무제도 개편

고용노동부 건설산재예방정책과 (☎ 044-202-8938)

총 공사금액 1억원 이상 120억 미만 건설공사에 적용\*되는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과의 기술지도계약 주체가 2022년 8월 18일부터 건설공사도급인(시공사)에서 발주자\*\*로 변경됩니다. ('21.8.17. 개정, '22.8.18. 「산업안전보건법」시행)

- \* 예외: 공사기간 1개월 미만, 육지와 미연결 섬(제주는 제외)
- \*\* 건설공사발주자에는 국가·지자체, 공공기관, 민간발주자 등이 해당됨
- 우월적 지위를 가진 건설공사도급인이 기술지도 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형식적인 기술지도가 이루어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발주자가 기술지도 계약을 체결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 ※ 발주자가 기술지도기관에 직접 대금을 지급하게 될 경우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이 도급인의 무리한 요구 등에 대응할 필요가 없게 됨
- 계약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전산시스템(K2B)에서 발급된 계약서를 사용하여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내용을 전산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합니다.
- 개정사항은 오는 8월 18일 이후 체결되는 기술지도 계약부터 적용됩니다.

참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공고) "2022년 플랫폼종사자 일터개선 지원사업 참여기관 모집 공고"

### 플랫폼종사자 일터개선 지원사업 실시

- 주요내용
  - (지원대상) 플랫폼기업 및 컨소시엄
  - (지원수준) 쉼터 등 소요 비용(임차료, 운영비, 인건비 등)의 최대 50%(연간 3억원 한도)
  - (지원요건) 선정위원회를 통해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사업수행 능력, 사업내용의 적정성, 사업의 효과성을 심사하여 지원 여부 판단
- 시행일 2022년 6월

참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정보공개)법령정보) "입법·행정예고"

### 건설공사발주자 기술지도 계약체결 의무제 개요

- 추진배경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에 대해 우월적 지위를 가진 건설공사도급인이 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형식적인 기술지도 우려
- 주요내용 건설공사발주자가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과 직접 기술지도계약을 체결하도록 의무화
- 시행일 2022년 8월 18일

## 여성어업인 특화건강검진 시범 실시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 (☎ 044-200-5463)

2022년 4분기부터 여성어업인에게 특화건강검진을 지원합니다.

- 검진비용 중 90%를 정부가 지원하며, 여성어업인은 약 2만원의 비용으로 근골격계 질환 등 여성어업인에게 주로 발생하는 질환의 정밀검진을 받게 됩니다.
- 50~69세 여성어업인 1,500명을 대상으로 '22년 4분기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 이용 급식소 위생·영양관리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생활영양안전정책과 (☎ 043-719-2257)

2022년 7월 28일부터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사회복지시설의 급식 위생·영양관리 지원을 본격 시행합니다.

(‘21.7.27. 제정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는 영양사가 없어 체계적인 급식관리가 어려운 소규모 사회복지시설을 지원합니다.
- 센터 소속 영양사가 직접 노인·장애인 복지시설을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급식위생·영양관리 지도, 질환맞춤형 식단, 대상자별 교육 및 이용자 영양관리 등을 제공합니다.

참고 해양수산부 홈페이지(보도자료)“여성어업인 특화건강검진 실시 보도자료(예정)”

### 여성어업인 특화건강검진

- **추진배경**
  - 여성어업인의 모성 보호 및 직업질환에 대한 예방과 치료를 위해 건강검진을 국가에서 시행하도록 법령 개정\*
  - \* 여성농어업인육성법 제11조의3(여성농어업인 건강관리 지원사업의 시행)(‘18.12.)
  - 국정과제(73번) “모든 여성어업인에게 특화건강검진 제공(‘24-)” 관련 여성어업인의 특수한 직업 환경에 대한 정책적 지원 필요
- **주요내용**
  - 지원대상 : 50~69세 여성어업인 1,500명(50~69세 여성어업인 29,625명의 5%)
  - 지원내용 : 유병률 높은 어업작업 기인 질환 검진 지원 / 국비 90%
- **시행일** 2022년 4분기 중

참고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알림·교육)“건강한 급식·행복한 식사,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가 함께 해요”

### 취약계층 이용 급식소 위생·영양관리

- **추진배경** 소규모 사회복지시설(요양원, 주야간보호센터 등)은 대부분 영양사가 없이 급식을 제공하고 있어 적절한 급식 위생·영양관리 취약
- **주요내용**
  - 개인별 영양관리 카드 작성·관리
  - 급식위생·안전 및 영양관리 방문 지도·상담
  - 노인·장애인의 건강상태, 시설의 특성을 고려한 식단·조리법 제공
  - 이용자·조리원·시설장·요양보호사 대상 식생활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 **시행일** 2022년 7월 28일

## 수입 배추김치 해썬(HACCP) 의무화 2단계 시행

식품의약품안전처 현지실사과 (☎ 043-719-6210)

2022년 10월 1일부터 수입 배추김치에 대한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이하 해썬) 의무적용 2단계를 시행합니다.

- 우리나라로 배추김치를 수출하는 해외제조업소는 '21년부터 '24년까지 전전년도 수입량을 기준으로 단계적으로 해썬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 \* (21) 수입량 1만톤 이상 → (22) 5천톤 이상 → (23) 1천톤 이상 → (24) 모든 김치 해외제조업소
- 지난해 수입식품에 대한 해썬 제도를 최초로 도입하여 수입량이 1만톤 이상인 수입 배추김치 해외제조업소 5개소에 대한 해썬 인증평가를 완료하였습니다.
- 올해는 수입규모가 5천톤 이상인 수입 배추김치 해외제조업소 16개소에 대한 해썬 의무적용이 시행되며, 의무적용 대상 업체가 해썬을 인증 받지 않는 경우 배추김치 수입이 중단됩니다.

**참고** 식약처 홈페이지/법령/자료/법령정보>법, 시행령, 시행규칙>「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6조의2\*

### 수입 배추김치 해썬 의무화 2단계 시행

- **추진배경** 수입 배추김치에 대해 국내와 동등한 수준의 안전관리를 위한 해썬 의무화 필요
- **주요내용**
  - 의무적용 1단계('21.10.1.): 2019년 수입량이 1만톤 이상인 경우
  - 의무적용 2단계('22.10.1.): 2020년 수입량이 5천톤 이상인 경우
  - 의무적용 3단계('23.10.1.): 2021년 수입량이 1천톤 이상인 경우
  - 의무적용 4단계('24.10.1.): 모든 수입 배추김치 해외제조업소
- **시행일** 2022년 10월 1일 2단계 시행

## 임상시험 안전지원기관 운영

식품의약품안전처 임상정책과 (☎ 043-719-1861)

2022년 8월부터 임상시험안전지원기관을 지정·운영해 다양한 임상시험 안전지원업무를 수행합니다. (「약사법」 제34조의5제1항 '21.7.20. 개정, '22.7.21. 시행)

- 임상시험안전지원기관에서 중앙임상시험심사위원회(중앙IRB)를 구성하고 운영해 코로나19 치료제·백신 등 개발 중인 신약의 신속한 임상 진입을 지원합니다.
  - 다기관 임상시험에 대하여 공동 심사 인프라를 확대 지원함으로써 행정적 절차를 경감시키고 효율성을 증대할 수 있습니다.
  - ※ 중앙임상시험심사위원회는 시범운영 중('21.7.~)이며, 개정된 「약사법」 시행에 따라 '22년도 7월부터 임상시험안전지원기관의 출범과 함께 본격 운영할 예정입니다.
- 임상시험 대상자 지원센터를 운영해 일반인이 이해하기 어려운 사항에 대하여 임상시험 대상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자발적인 참여 결정을 지원하고, 피해 발생 시 권리를 보호 받을 수 있도록 맞춤형 상담을 제공합니다.

### 참고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보도자료) ①“의약품 개발지원 촉진과 제약산업 경쟁력 강화 기반 마련”, ②“식약처장, 임상시험 안전지원 중장기 정책 방향 논의(사)대한의학회, 중앙임상시험심사위원회 함께 1월 19일 간담회 개최”, ③“식약처, 조건부 허가와 우선심사 세부 규정 등 마련(「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10.19.~12.20.))”

### 임상시험안전지원기관 구성 및 운영

- **추진배경** 임상시험 안전관리 강화 및 임상시험 대상자 권리 보호를 위해 체계적인 임상시험 지원 기관 필요
- **주요내용** 임상시험대상자지원센터 지정 및 중앙임상시험심사위원회(중앙IRB) 구성·운영을 통해 다기관 임상시험에 대하여 공동 심사 인프라를 확대 지원하고 임상시험 대상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맞춤형 상담 제공
- **시행일** 2022년 7월 21일

##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 구축·운영

식품의약품안전처 바이오의약품정책과 (☎ 043-719-3310)

국내 백신 개발을 위한 인프라 확충과 백신 제품화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 (이하 백신센터, 전남 화순 소재)'가 구축·운영됩니다.

- ▣ 백신센터는 지난 2020년 6월 식약처가 설립허가한 재단법인으로, 올해 10월 건물이 준공되면 제품화 기술지원과 컨설팅, 임상검체 분석 및 품질검사 지원사업을 수행하게 됩니다.
- ▣ 아울러, 백신센터에 국가 셀뱅크를 구축해 백신 세포주\*를 보관하고, 세포주를 필요로 하는 개발사에 분양하게 됩니다.
  - \* 체외에서 지속적으로 같은 세포로 배양할 수 있는 특성이 있어 백신 생산용 원료로 사용되는 세포 <“모종”과 유사한 개념>
- ▣ 또한, 백신센터에 교육실습동을 구축할 예정이며, 교육실습동이 완공되면 백신 해외인증 지원을 위한 교육도 이뤄지게 됩니다. ('23년 완공, '24년부터 교육 프로그램 실시 예정)
-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백신센터가 우리나라 백신주권을 확보하고 전세계 감염병 예방을 선도하는 전문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 구축·운영

- **추진배경** 국내 백신 개발을 위한 인프라 확충과 제품화 지원을 위해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 구축(완공) 및 운영
- **주요내용**
  - 백신센터가 완공되면 제품화 기술지원과 컨설팅, 임상검체 분석 및 품질 검사 지원 업무 수행
  - 또한, 국가 셀뱅크, 해외인증 지원 교육 사업추진
- **시행일** 2022년 10월

## 의료기기 보험(공제) 제도 시행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안전평가과 (☎ 043-719-5003)

의료기기로 인한 피해 발생 시, 업체가 사전에 가입한 보험으로 보상할 수 있도록 의료기기 보험(공제) 가입제도가 시행됩니다.

- ▣ 의료기기 보험의 종류, 가입대상, 보험금액 등 사항에 대해서는 의료기기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정하고, '22.7.21.부터 시행합니다.
  - \* 의료기기법 개정('21.7.20.) 시, 1년간 유예기간 부여

참고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보도자료)\*인체이식형 의료기기 책임보험 요건 예고\*

### 의료기기 보험(공제) 제도 시행

- **추진배경** 의료기기로 인한 피해 발생 시, 보험을 통해 보상할 수 있도록 함
- **주요내용**
  - (보험의 종류) 의료기기 배상책임보험
  - (가입대상) 인체이식형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체
    - 수출만을 목적으로 허가받은 의료기기 제조업자는 제외되며, 수입의료기기 해외 제조원 등이 국내 기준을 만족하는 보험에 가입한 경우 인정 가능
  - (보험금액) 업체가 가입해야 할 최소 보험금액은 사고별로 사망 (1억 5천), 부상(3천), 후유장애(1억 5천) 보장
    - 「재난안전법」의 보상한도 및 타 법령 기준과 동일 수준
  - (가입시기) 의료기기 판매 전 가입, 보험기간 만료 시 갱신(또는 재가입)
- **시행일** 2022년 7월 21일

## 전국단위 대규모 항체양성을 조사 시행

질병관리청 백신임상연구과 (☎ 043-913-4312)

2022년 5월부터 신종 변이바이러스 대응 전략 수립을 위한 전국단위 정기적(분기별) 대규모 항체양성을 조사를 실시합니다.

※ (기준) 수도권 약2,000명(성인) ⇒ (확대안) 전국 17개 시·도 분기별 10,000명(만 5세 이상)

▣ 대규모 항체조사를 통해 지역사회의 정확한 자연감염자 규모 확인 및 유행 위험 평가가 가능해집니다.

**참고** 질병관리청 홈페이지(보도자료)“코로나19 자연감염자 규모 및 위험 평가를 위한 대규모 항체조사 시작”

### 전국단위 대규모 항체양성을 조사 시행

- **추진배경** 코로나19 출현이후 다양한 변이바이러스의 확산 및 재감염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신·변종 감염병 대응 전략 및 방역대책 수립을 위해 지역사회 내 백신접종자 및 자연감염자의 정확한 면역도 조사가 필요함
- **주요내용**
  - 전국단위 대규모 항체양성을 조사 확대 및 정기적 지역사회 항체 조사 체계 구축
    - 전국 17개 시·도의 지역 대표 표본\*에 대한 분기별 조사
    - \* 지역, 연령, 유병률 등 특성을 반영한 광역 단위 표본
    - 참여자 모집, 채혈·실문조사\* 및 검사·분석\*\*
      - \* 확진력, 기저질환, 예방접종 등
      - \*\* 자연감염으로 인한 확진자 규모 및 유행과의 상관관계 분석, 유행위험 사전평가
- **시행일** 2022년 5월



2022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 문화·체육·관광



1 문화재청

자세한 내용은 p.64

문화재지능정보화 정책의 기본 체계 마련

시행일 : 2022년 7월 19일

문화재지능정보화 정책의 기본 체계가 마련됩니다.

• 4차 산업혁명 시대와 지능정보사회에 접어들면서 디지털 대전환이 급격하게 이뤄짐에 따라 문화재지능정보화 정책을 수립·시행합니다.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정책과 (☎ 044-203-2728)

2022년 9월 25일부터 예술 표현의 자유와 예술인의 직업적 권리를 보호하고 성평등한 예술환경을 조성하는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이 시행됩니다.(‘21.9.24.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제정)

- 예술 표현의 자유와 직업적 권리 보장을 위해 공무원, 예술지원기관 종사자 등에게 예술지원사업에서 차별 및 공정성 침해, 불공정한 계약 조건을 강요, 예술인조합 활동 방해 행위가 금지됩니다.
- 또한, 예술인에게는 예술활동에서 성별에 따른 차별을 받지 않고, 성희롱·성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부여됩니다.
- 권리를 침해 받은 예술인, 예술인조합은 문화체육관광부 등에 신고할 수 있고, 문화체육관광부는 신고 사건을 조사하여 수사의뢰, 시정명령 등 구제조치를 합니다.

참고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보도자료>「예술인의 권리, 법률로 보장한다」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

- 추진배경 프리랜서가 다수인 예술인은 근로자성을 인정받기 어려워, 기존 법률의 보호 사각지대에 위치
- 주요내용
  - 공무원 및 예술지원기관 종사자에게 예술 표현의 자유 침해 금지, 불공정행위 금지 등 의무 부여
  - 예술인에게 예술활동에서 다른 예술인이나 공무원 및 예술지원기관 종사자로부터 성희롱·성폭력 및 성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 부여
  - 실질적인 권리구제를 위해, 피해 예술인이 신고할 수 있는 창구 및 절차와 신고사건 조사, 구제 조치 등 법적 보호 절차를 규정
- 시행일 2022년 9월 25일

## 문화재지능정보화 정책의 기본 체계 마련

문화재청 디지털문화유산팀 (☎ 042-481-4614)

4차 산업혁명에 따른 디지털 대전환을 위한 문화재지능정보화 정책이 수립·시행됩니다.  
(「문화재보호법」'22.1.18. 일부개정, '22.7.19. 시행)

- 문화재청은 문화재지능정보화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문화재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축적·관리하고 문화재데이터의 연계·공동활용 관련 사업을 추진합니다.
- 문화재지능정보기술의 개발 및 실용화 지원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관련 대학 및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합니다.
- 문화재데이터와 서비스가 문화재 보존·관리·활용 분야와 사회 각 분야에 활용될 수 있도록 문화재지능정보서비스플랫폼을 구축합니다.
- 개정내용은 2022년 7월 19일부터 시행됩니다.

참고 문화재청 홈페이지>행정정보>법령정보>법령

### 문화재지능정보화 정책의 기본 체계 마련

- **추진배경** 4차 산업혁명 시대와 지능정보사회에 접어들면서 디지털 대전환이 급격하게 이뤄짐에 따라 문화재지능정보화 정책을 수립·시행
- **주요내용**
  - 문화재지능정보화의 정의 및 정책의 수립·시행
  - 문화재데이터 연계 및 공동활용 관련 사업 추진
  - 문화재지능정보기술의 개발 및 지원을 위한 사업 추진
  - 문화재지능정보서비스플랫폼 구축 및 운영 등
  - 문화재지능정보화 정책의 세부내용 등 시행령 위임 사항 구체화
- **시행일** 2022년 7월 19일



2022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 환경·기상



# 05

### 1 환경부

자세한 내용은 p.68

#### 기후변화영향평가 제도 시행

시행일 : 2022년 9월 25일(1차)  
2023년 9월 25일(2차)

'22.9.25일 기후변화영향평가 제도가 시행됩니다.

· 중·장기 기후변화영향이 높은 10개 분야 계획 및 사업에 대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이나 기후변화로 인해 받게 되는 영향을 분석·평가합니다.



- 에너지 개발
-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 조성
- 도시개발
- 수자원 개발
- 항만 건설
- 산지 개발
- 하천의 이용·개발
- 도로 건설 (23.9.25일 시행)
- 공항 건설 (23.9.25일 시행)
- 폐기물·가축분뇨 처리시설 (23.9.25일 시행)

### 2 환경부

자세한 내용은 p.69

#### 환경표지 인증제도 개편

시행일 : 2022년 7월

Before

산업제품위주로 구성되어 국민들이 환경표지 인증을 찾기 어려웠습니다.



After

이제는 국민들에게로 환경표지 인증이 더 가까이 다가갑니다.



### 3 기상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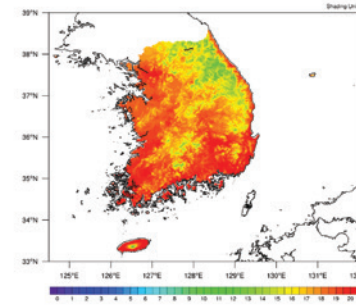
자세한 내용은 p.79

#### 우리동네의 미래 기후변화 전망정보 서비스

시행일 : 2022년 12월

Befor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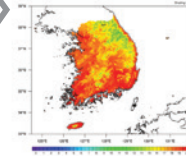
기존에는 격자(해상도)별로 미래 기후변화 전망정보를 제공하였습니다.



After

격자자료 활용이 어려운 일반 사용자를 위해 전국 3,500여 개 읍·면·동별로 미래 기후변화 전망정보도 함께 제공합니다.

<격자별 미래 평균기온>



<광역시도별 미래 평균기온>



+ <서울시 구별 미래 평균기온>



### 4 기상청

자세한 내용은 p.80

#### 국민생활 편의를 위한 날씨알리미 앱 전면 개편

시행일 : 2022년 7월

Before

기존 날씨알리미 앱은 가독성, 편의성 등이 미흡하고, 원하는 정보 확인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After

저시력자, 고령층 등 취약계층도 쉽게 사용할 수 있게 날씨알리미 앱을 전면 개편합니다.





## 기후변화영향평가 제도 시행

환경부 탄소중립이행TF (☎ 044-201-6975)

2022년 9월 25일부터 국가 주요 계획·사업은 기후변화 영향평가를 거쳐야 합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23조)

- 국가 주요 계획·사업에 탄소중립을 내재화 하기 위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이나 기후변화로 인해 받는 영향을 분석·평가하는 ‘기후변화영향평가’ 제도가 시행됩니다.
- 기존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중, 온실가스를 다량 배출하거나 기후위기에 취약한 10개 분야의 계획·사업이 대상입니다.
-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에너지·산단·도시개발·항만(22.9.)부터 도로·공항·폐기물(23.9.)에 대해 순차적\*으로 시행됩니다.
  - \* (22.9.) 에너지 개발,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 조성(50만㎡ 이상), 도시개발(100만㎡ 이상), 수자원, 산지, 항만, 하천(20km 이상)
  - (23.9.) 도로(12km 이상), 공항 건설, 폐기물·가축분뇨 처리시설

참고 환경부 홈페이지>보도자료>“탄소중립 비전과 온실가스 감축 의지 법제화, 2050 탄소중립 사회로 나아갑니다.”

### 기후변화영향평가 신규제도 도입·시행

- **추진배경** 국가 주요 계획·사업에 탄소중립 내재화를 위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이나 기후변화로 받는 영향을 분석·평가토록 하는 신규제도 도입
- **주요내용** 탄소중립 관련 계획과의 정합성,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 및 온실가스 감축방안, 기후변화로부터 받게 되는 영향과 적응 방안 등을 분석·평가
- **시행일** (1차) 2022년 9월 25일 / (2차) 2023년 9월 25일

## 환경표지 인증제도 개편

환경부 녹색산업혁신과 (☎ 044-201-6711)

2022년 7월부터 탄소감축, 자원순환, 환경보전 등 소비자의 관심이 높은 분야의 환경성을 강화한 환경표지 인증제도를 시행합니다. (「환경표지대상제품 및 인증기준」 환경부고시 '22.7월 개정 예정)

- 세계 최고 수준의 환경성 기준을 적용한 프리미엄 인증을 노트북, 모니터, 주방용·세탁용 세제, 샴푸·린스 및 바디워시, 의류 제품군까지 확대할 예정입니다.(4개→10개)
  - ※ 프리미엄 인증 확대 품목의 일반 인증 기준도 연계하여 강화
- 또한, 脫플라스틱 정책과 연계하여, 일반 소비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제품군(텀블러, 다회용기 대여 서비스)에 대한 인증기준을 신설합니다.
- 아울러, 생분해성 수지제품의 생분해 시험조건을 기존 퇴비화 조건에서 일반 토양조건으로 현실화하는 등 일반 인증기준도 국내·외 정책과 연계하여 개선합니다.

참고 환경부 홈페이지>보도자료>“소비자 입맛에 맞게 친환경 제품 만든다(‘22.5.31.)”

### 환경표지 인증기준 강화

- **추진배경** 그린슈머 증가, ESG 경영 확대 등 친환경 제품의 시장 요구가 높아지는 상황으로 환경성에 대한 강화를 위한 환경표지 인증제도 개편
- **주요내용** 일반 환경표지 인증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한 프리미엄 인증 대상제품군 확대, 생활밀착형 제품군(텀블러, 다회용기 대여 서비스) 환경표지 인증기준 신설 등
- **시행일** 2022년 7월

## 탄소중립 지원센터 운영 개시

환경부 기후전략과 (☎ 044-201-6645)

2022년 7월 1일부터 각 지역에서 탄소중립 지원센터가 지정·운영됩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68조)

- 지역의 탄소중립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17개 광역 시·도에서 탄소중립 지원센터가 운영됩니다.
  - ※ 각 시·도별 센터 운영 시작 시기는 지역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탄소중립 지원센터는 지자체의 탄소중립 기획\*, 분야별 사업 이행 등 각 지역의 탄소중립 정책 추진을 체계적으로 지원합니다.
  - \* 지역 탄소중립 기본계획 및 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이행, 탄소중립 조사·연구 등
- 환경부는 '22년 17개 광역 시·도를 시작으로 '23년부터는 시·군·구까지 탄소중립 지원센터가 점진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 측정대행업자의 환경측정분석정보관리시스템 사용 의무화

환경부 녹색기술개발과 (☎ 044-201-6671)

2022년 8월 18일부터 측정대행업 종사자는 '측정대행계약 내용', '시료채취정보' 및 '측정분석결과' 등 측정대행 관련 정보를 '환경측정분석정보관리시스템(이하 "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합니다.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의5)

- 수질·대기 1~2종 배출사업장과 측정대행계약을 체결하는 측정대행업체는 계약을 체결하기 7일 전에 측정대표준계약서, 과업계획서 등 계약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환경측정분석정보관리시스템에 입력해야 합니다.
- 모든 측정대행업체에서는 시료채취에 관한 정보, 측정결과에 관한 정보 및 측정대행업 등록·변경등록 정보 등을 측정분석을 실시한 후 15일 이내에 환경측정분석정보관리시스템에 입력해야 합니다.
- 이 시스템을 통해 부실측정 및 측정조작 등 불법행위를 원천 차단하고 측정대행업 종사자의 자료관리, 대관업무 등 업무 편의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탄소중립 지원센터 운영 개시

- **추진배경** 지역 주도 상향식 탄소중립 이행을 위해 전문성·지속성을 가진 전담기구로 '탄소중립 지원센터' 설립·지정
- **주요내용** 17개 시·도에서 지역 주도 탄소중립 이행을 전문적·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전담기구인 탄소중립 지원센터 운영 개시
- **시행일** 2022년 7월 1일

### 환경측정분석정보 관리시스템 사용 의무화

- **추진배경** 환경분야 측정대행에 관한 정보의 전과정 관리를 위해 환경측정분석정보 관리시스템 도입
- **주요내용** 측정대행업 관리에 필요한 측정대행계약, 측정·분석, 측정대행업 일반정보 등을 측정대행업체에서 환경측정분석정보관리시스템에 입력
- **시행일** 2022년 8월 18일

## 상수도분야 법정계획 수립체계 조정

환경부 물이용기획과 (☎ 044-201-7121)

2022년 7월 12일부터 상수도분야의 법정계획 수립체계가 변경됩니다.

(「수도법」 시행령 4조 및 5조)

- 기존 “전국수도종합계획”과 “광역·공업 수도정비기본계획”이 통합되어 ‘국가수도기본계획’으로 개편됩니다.
- 각 지방자치단체(수도사업자)는 ‘국가수도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수도정비계획\*’을 수립하도록 변경됩니다.
  - \* 지자체가 상수도분야 기본방침, 수도의 정비, 수급, 수도사업의 실시계획 등을 수립하는 행정계획 (10년마다 수립, 5년마다 재검토)
- 국민에게 보다 안전하게 먹는 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상수도분야의 법정계획 수립체계가 정부에서 지자체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으로 재정비됩니다.

참고 환경부 홈페이지)보도자료)“수도법 일부개정안 국회통과(2021.12.9.)”

### 상수도분야 계획수립 체계 조정

- **추진배경** 정부에서 수립하는 상수도분야 계획인 ‘전국수도종합계획’과 ‘광역·공업 수도정비기본계획’을 통합하여 수립(단일화)
- **주요내용** 정부는 ‘국가수도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지자체는 이를 바탕으로 ‘수도정비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여 상수도분야 계획수립을 체계적으로 정비
- **시행일** 2022년 7월 12일

## 다이옥신 토양오염기준 신설

환경부 토양지하수과 (☎ 044-201-7177)

2022년 7월 22일부터 다이옥신에 대한 토양오염기준이 신설됩니다.

(‘22.1.21. 개정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시행)

- 토양오염물질로 지정된 다이옥신에 대해 토양오염 우려기준 및 대책기준이 설정·관리 됩니다.
  - ※ 토양오염물질 우려·대책기준은 기존 22종 물질에 대해 설정·운영 → 다이옥신 신설로 23종 물질에 대해 기준 운영
- 다이옥신으로 인한 토양오염으로부터 국민건강 및 환경상 위해를 예방하고, 오염된 토양을 정화하는 등 토양을 적정하게 관리·보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참고 국가법령정보센터)“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 다이옥신에 대한 토양오염기준 운영

- **추진배경** 토양오염물질로 지정된 다이옥신을 적정하게 관리함으로써 토양생태계를 보전하기 위하여 토양오염의 우려기준\* 및 대책기준\*\* 운영
  - \* 사람의 건강·재산이나 동물·식물의 생육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기준
  - \*\* 사람의 건강·재산과 동물·식물의 생육에 지장을 주어서 토양오염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기준
- **주요내용** 다이옥신에 대한 토양오염 우려기준 및 대책기준 신설
- **시행일** 2022년 7월 22일

## 비점오염원관리지역 지정기준 개정

환경부 수생태보전과 (☎ 044-201-7045)

2022년 7월 1일부터 비점오염원관리지역 지정기준에 불투수면적이 추가됩니다.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76조 개정)

- 강우 시 물이 땅속으로 스며들지 못해 비점오염물질이 유역으로 유출되어 수질 및 수생태계에 악영향을 초래하므로 불투수면적률을 비점오염원관리지역 지정기준에 새롭게 포함했습니다.
- 종전까지는 인구수 100만 이상의 대도시만 비점오염원관리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었으나, 이번 지정기준을 추가함으로써 불투수율이 높은 중소도시도 지정·관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또한, 중점관리저수지 등 기타특별관리지역도 비점오염원관리지역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수질 개선 시너지 효과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참고 국가법령정보센터「물환경보전법 시행령」

### 비점오염원관리지역 지정기준 개정

- **추진배경** 수질오염도가 높아 비점오염원 관리가 필요한 지역이 존재함에도 기존 물환경보전법상 지정기준이 해당 지역들을 포괄하지 못하여 수질개선 효과 제고를 위한 개정의 필요성이 대두
- **주요내용**
  -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76조 개정
  - 비점오염원관리지역 지정기준 구체화(시행령 76조 1항 제2호)
    - 중점관리저수지·특별관리해역·지하수보전구역 등 특별지역을 '비점오염원관리지역'에 포함할 수 있도록 명시
  - 비점오염원관리지역 지정기준 변경(시행령 76조 1항 제3호)
    - 인구기준(100만명 이상)에서 불투수면적률 기준(불투수면적률 25% 이상)으로 변경
- **시행일** 2022년 7월 1일

## 개인하수처리시설 재질검사 항목 간소화

환경부 생활하수과 (☎ 044-201-7032)

2022년 12월부터 폴리에틸렌(PE), 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FRP) 재질의 개인하수처리시설 재질검사가 간소화됩니다.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재질검사기관 및 성능·재질검사의 수수료에 관한 규정」, '22.12월 개정 예정)

- 해당 재질의 자재는 강도, 수밀성 등 안전성 평가에 필요한 항목 중심으로 간소화하여 재질검사가 시행됩니다.
- 이에 따라, 대형시료의 내압강도 시험 시 부력에 의한 시료 전복, 고정장치 풀림 등으로 인한 검사원의 안전사고 위험이 사라지고, 제조업자의 검사 비용(564천원/개→454천원/개) 및 검사 시간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개인하수처리시설 재질검사 항목 간소화 시행

- **추진배경** 개인하수처리시설 재질검사 항목 중 실효성이 없거나 시험 중 검사원의 안전사고 우려가 있어 개선 필요
- **주요내용**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강도, 수밀성 등 안전성 평가에 필요한 항목 중심으로 간소화 및 현실화
- **시행일** 2022년 12월 예정

## 생태계교란 생물(2종) 및 유입주의 생물(162종) 추가 지정

환경부 생물다양성과 (☎ 044-201-7287)

2022년 10월부터 생태계교란 생물(2종) 및 유입주의 생물(162종)이 추가로 지정됩니다. (「생태계교란 생물 지정 고시」 및 「유입주의 생물 지정 고시」 '22.10월 개정 예정)

- 생태계위해성평가 결과 1급(위해성 높음)으로 판정된 늑대거북, 돼지풀아재비 등 총 2종을 생태계교란 생물\*로 추가 지정(누적 34종 1속→36종 1속)할 예정입니다.
  - \* 수입·반입·사육·재배·양도·양수·보관·운반·유통 및 생태계로의 방출·방생·유기·이식 금지,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이번 생태계 교란생물로 지정 예정인 2종은 기존 사육·재배 개체에 한정하여 6개월의 유예기간 동안 사육·재배할 수 있으며, 이 기간 내에 허가를 받아야 그 이후에도 사육·재배가 가능합니다.
- 또한, Cervus canadensis nelsoni(영명 Rocky mountain elk, 국문명 '22.6월말 부여 예정) 등 162종을 유입주의 생물\*로 추가 지정(누적 398종→560종)할 예정입니다.
  - \* 국내 수입·반입 시 승인 필요,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참고 한국 외래생물 정보시스템(<https://kias.nie.re.kr>)>생태계교란 생물&유입주의 생물

### 법정관리 외래생물 지정 확대

- **추진배경** 국내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국내 유입 시 생태계 위해 우려가 있는 외래생물을 선제적으로 관리
- **주요내용** 생태계교란 생물(2종) 및 유입주의 생물(162종) 추가 지정
- **시행일** 2022년 10월 예정

## 건설폐기물 처리 현장정보 전송 의무화

환경부 폐자원관리과 (☎ 044-201-7367, 7362)

2022년 10월 1일부터 건설폐기물 적법처리 감시 강화를 위해 폐기물 처리 현장정보 전송이 의무화됩니다. ('22.1.7. 개정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 건설폐기물 처리자는 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사항에 더하여 폐기물처리 현장정보\*를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으로 전송해야 하는 제도가 시행됩니다.
  - \* (수집·운반자) 수집·운반차량 위치정보, (중간처리업자) 계량값 및 영상정보(처리시설 내 진입로·계량시설·보관시설)
  - 폐기물 수집·운반차량의 실시간 위치정보를 통한 운반경로 탐지로 불법투기 의심지역 경우 등을 원천적으로 방지하고, 계량값과 영상정보를 활용해 배출량 신고 누락여부 및 계량값의 위·변조 여부를 확인해 불법투기를 근절합니다.
- 폐기물 처리자는 규정된 방법에 따라 현장정보를 전송해야 하며, 이를 위해 고시\*된 규격을 만족하는 전송장치를 설치해야 합니다.
  - \* 「폐기물처리 현장정보의 전송방법 등에 관한 고시」('22.6.9. 공포, 환경부고시 제2022-106호)
- 이 제도는 '22. 10월 건설폐기물을 시작으로 폐기물 종류별로 순차적\*으로 확대·적용될 예정입니다.
  - \* 건설폐기물('22.10.) → 지정폐기물('23.10.) → 사업장일반폐기물('24.10.)

### 건설폐기물 처리 현장정보 전송 의무화 전면 시행

- **추진배경** 폐기물처리 현장정보 전송 의무화로 폐기물 부적정 처리 등 예방 ※ 올바로시스템은 사용자들이 폐기물 인계·인수에 관한 사항을 직접 입력하는 방식으로 처리현장을 확인하는 데 한계가 있음
- **주요내용** 건설폐기물 수집·운반하는 자는 차량의 실시간 위치정보를, 중간처리자는 계량값과 영상정보(진입로·계량시설·보관시설)를 전자정보 관리시스템으로 전송
- **시행일** 2022년 10월 1일

## 생활화학제품 안전·표시기준 강화 시행

환경부 화학제품관리과 (☎ 044-201-6826)

2022년 7월 1일부터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해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의 강화된 안전기준 및 표시기준이 시행됩니다.('22.7.1.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시행)

\* 일상 생활공간에서 사람이나 환경에 화학물질의 노출을 유발하여 국민의 건강이나 환경에 위해성이 있다고 우려되어 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한 섬유유연제, 살균제, 세정제, 세탁세제, 표백제 등 39개 생활화학제품

■ 2022년 7월 1일 이후 제조·수입하는 섬유유연제는 계면활성제 관리를 위한 생분해도\* 기준에 적합하여야 합니다.

\* 세제 등의 유기물질이 물 속에 있는 미생물에 의해 탄산가스와 물 등으로 분해되어 완전히 없어지는 정도를 나타내는 척도

■ 또한 제조·수입자는 제품의 겉면 또는 포장에 살균제·세정제의 오·남용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용상 주의사항 문구와 세정제, 세탁세제 및 표백제 내 포함된 형광증백제\*의 명칭을 표시해야 합니다.

\* 주변의 빛을 흡수한 뒤 청색광을 재방출하여 직물, 종이 등이 희게 보이도록 하는 기능을 가지며, 생활화학제품 내에서는 세탁세제 등에 흔히 사용되고 있는 물질

###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강화 시행

- **추진배경** 제품 다양화 및 표시사항 미비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생활화학제품의 안전관리 강화
- **주요내용**
  - 생분해도 규제 품목을 세탁세제에서 섬유유연제까지 확대
  - 살균제·세정제의 필수 사용상 주의사항 문구 추가\*
    - \* "다른 제품과 섞어 사용할 경우 인체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힐 수 있으니 섞어 사용하지 마시오.", "사람 또는 동물에 직접 사용(분사)하지 마시오." 등
  - 세정제, 세탁세제, 표백제의 '형광증백제' 표시사항 도입
- **시행일** 2022년 7월 1일

## 우리동네의 미래 기후변화 전망정보 서비스 제공

기상청 기후변화감시과 (☎ 042-481-7421)

2022년 12월부터 새로운 기후변화 시나리오 기반의 전국 3,500여 개 읍·면·동별 미래 기후변화 전망정보를 제공합니다.

■ 온실가스 감축 여부에 따라 우리 동네 기후가 어떻게 변화할지 기후정보포털에서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기후정보포털(www.climate.go.kr) > 기후변화시나리오 > 미래 기후전망

■ 광역시·도, 시·군·구, 읍·면·동 등 행정구역별로 미래 기온·강수량 뿐 아니라 폭염·열대야·한파일수 등의 극한기후정보\*도 제공합니다.

\* 기후요소 4종(평균/최고/최저기온, 강수량), 극한기후지수 27종(폭염, 여름일수 등), 부문별 기후변화 영향정보 8종(냉난방도일, 건조지수 등)  
[예시] 21세기 후반 서울 폭염일수: (저탄소시나리오) 25일/연, (고탄소) 87일/연

■ 지자체에서는 동네별 미래 기후변화 전망정보를 활용하여 지역 및 부문별로 다르게 나타나는 기후변화의 영향과 취약성을 분석하고, 기후변화 대응 정책 수립을 위한 과학적 근거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우리동네의 미래 기후변화 전망정보 제공

- **추진배경** IPCC 제6차 평가보고서, 새로운 시나리오 기반의 전지구, 한반도, 남한 지역 미래 전망정보 생산 및 제공(2019~)
- **주요내용**
  - 새로운 기후변화 시나리오 기반의 행정구역별\* 미래 기후변화 전망정보 산출 및 제공
  - \* 17개 광역시·도, 220여 개 시·군·구, 3,500여 개 읍·면·동
- **시행일** 2022년 12월

## 국민생활 편의를 위한 날씨알리미 앱 전면 개편

기상청 정보통신기술과 (☎ 02-2181-0720)

지진, 위험기상을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기상청 날씨알리미” 앱을 취약계층이 더 사용하기 편리하도록 개편하고, 위험기상 알림서비스를 확대 제공합니다.

- 취약계층을 고려한 편의성과 접근성 개선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먼저, 앱 실행없이 날씨 확인이 가능하도록 위젯 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시력자, 고령층의 사용 편의를 위해 앱의 글자를 크게 조정하고, 좌우 밀기로 한 손으로도 쉽게 메뉴 이동이 가능하게 개선하였습니다.
- 또한, 시력 보호와 눈부심 방지를 위해 색상반전(다크모드)을 제공하여 야간에 따로 스마트폰 밝기 조절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 여름철 위험기상 시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로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기상레이더 자료를 활용하여 ▶강수시작, ▶강한 비, ▶우박, ▶낙뢰 4종에 대한 알림서비스를 추가로 제공합니다.

### 국민생활 편의를 위한 날씨알리미 앱 전면 개편

- **추진배경** 국민생활 밀착, 안전 등 국민의 시각에서 편리하고, 체감도가 높은 효율적인 기상서비스를 위한 공공앱으로 역할 강화
- **주요내용**
  - 저시력자·고령층 등의 디지털 취약계층 편의성을 고려한 앱 접근성 강화
  - 위험기상에 신속 대응할 수 있게 대국민 위험 알림 기능 강화
- **시행일** 2022년 7월

## 기상가뭄 10일 예측정보 제공

기상청 수문기상팀 (☎ 042-481-74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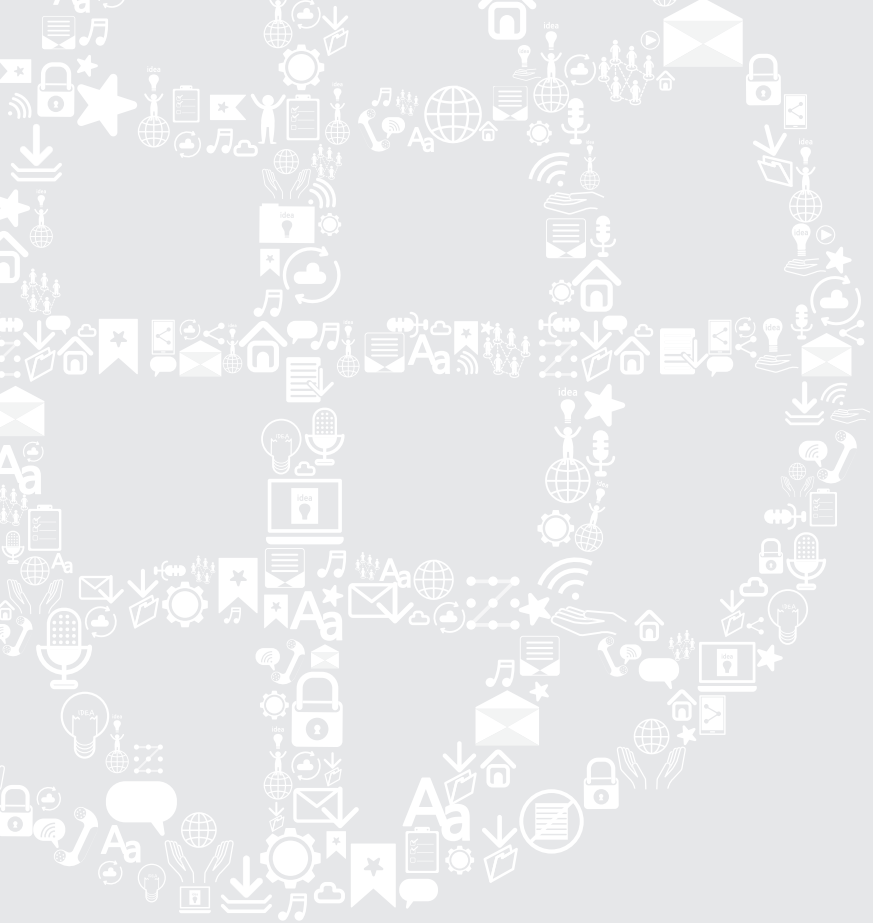
2022년 9월부터 신속하고 효율적인 가뭄 대응을 위해 기상가뭄 10일 예측정보를 제공합니다.

- 기존 1개월(매주)과 3개월(매월) 주기로 제공하던 기상가뭄예보에 열흘(+10일) 후까지 일단위의 상세한 예측정보를 추가로 제공합니다.
- 수치예보모델 기반으로 167개 시·군의 기상가뭄 10일 예측정보를 매일 2회, 일별로 제공합니다.

참고 수문기상 가뭄정보 시스템>기상가뭄>“예측정보”

### 기상가뭄 10일 예측정보 확대 제공

- **추진배경** 상세하고 활용성 높은 기상가뭄 예측정보 확대 제공으로 신속하고 효율적인 가뭄 대응 체계 강화
- **주요내용**
  - 수치예보모델을 활용한 기상가뭄 10일 예측정보 생산 및 제공
  - ※ 지역/주기: 167개 시·군/매일 2회
- **시행일** 2022년 9월



# 22

2022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 산업·중소기업·에너지



---

# 06



<https://whatsnew.moef.go.kr>

## 1 산업통상자원부

자세한 내용은 p.89

### 국가첨단전략산업의 체계적·지속적인 육성·지원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

시행일 : 2022년 8월 4일

국가첨단전략산업의  
체계적·지속적인 육성·지원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합니다.

·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은 경제안보 확보를 위해 첨단산업  
육성 및 공급망 안전화, 기술·인력보호 등을 과감하게  
지원하는 중요한 법적 기반입니다.



전략기술·인력의 보호

## 2 산업통상자원부

자세한 내용은 p.90

###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시행

시행일 : 2022년 7월 5일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을 시행합니다.

· 개인정보보호법 등 기존 권리보호 법령에서 규율하고  
있지 않은 산업데이터 활용·보호 원칙을 제시하여  
기업 불확실성 해소  
· 선도사업 발굴·지원, 계약 가이드라인, 표준화, 플랫폼,  
협업 지원센터 등 민간 디지털 전환을 뒷받침하는  
지원 제도 근거 마련



### 산업 DATA 활용

산업 디지털  
전환

산업 디지털  
전환위원회 구성·운영

산업 디지털  
표준화

산업 디지털  
규제개선

산업 디지털  
활성화 지원

## 정보접근성 보장 지능정보제품 우선구매 제도 시행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포용정책팀 (☎ 044-202-6155)

국가기관등에서 장애인·고령자의 접근 및 활용을 보장한 키오스크 등 지능정보제품을 우선  
구매하는 제도가 시행됩니다.

■ 우선구매대상 지능정보제품의 종류를 키오스크\*로 지정하고, 접근성을 보장한 제품에 대한 검증  
제도를 신설하였습니다.

\*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22.5.11. 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고시)

■ 시행 후 국가기관 등이 키오스크를 설치할 때 접근성 보장 검증을 발급받은 제품이 있는 경우  
우선적으로 구매하게 됩니다.

■ 개정내용은 2022년 5월 11일 이후 신규로 국가기관 등이 키오스크를 구매할 때부터 적용됩니다.

참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 보도자료>「지능정보화기본법시행령 개정」 보도자료

### 정보접근성 보장 지능정보제품 우선구매 제도 시행

· 추진배경 장애인·고령자 등 일반 시민들도 지능정보제품에 대한 접근 및 이용 편의를  
보장한 제품 우선구매 제도 도입

· 주요내용 국가기관 등이 장애인·고령자 등이 정보 접근과 이용 편의를 보장한 지능  
정보제품에 대한 검증기준 및 절차, 검증서 발급 등 우선구매 제도 도입

· 시행일 2022년 5월 11일

## 대기업인 공사업자의 기준 및 도급 공사금액 하한 신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과 (☎ 044-202-6425)

대기업인 공사업자의 기준과 국가 등이 발주하는 공사에 대기업인 공사업자가 도급받을 수 있는 공사금액의 하한을 10억원으로 정하여, 정보통신공사업계의 건전한 시장질서를 확립하고자 합니다.

- 다만, 국가 등이 관련법령에 따라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공사금액의 하한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여, 공사 발주자의 자율성을 보장하도록 하였습니다.
- 이를 통해, 중소 정보통신공사업자의 성장 기반 조성권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참고** 국가법령정보센터)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전문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시행

- **추진배경** 「정보통신공사업법」(시행 '22.7.) 제24조의2제5항 신설 및 최근 정보통신 산업발전과 환경변화로 인해 대기업인 공사업자의 활동 영역이 소규모 정보통신공사까지 진입하여 중소 정보통신공사업자의 생존권이 위협받는 상황임
- **주요내용**
  - (대기업인 공사업자의 기준) ①「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②「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③「지방공기업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지방공기업에 해당하는 공사업자로 설정
  - (도급가능한 공사금액 하한 신설) 국가등이 발주하는 공사에 대기업인 공사업자가 도급받을 수 있는 공사금액의 하한은 10억원으로 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공사금액의 하한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함
- **시행일** 2022년 7월 12일

## 기업부설연구소 신고 시 기업의 행정부담 완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산업진흥과 (☎ 044-202-4732)

기업부설연구소를 새로 설치하려는 기업 또는 연구소 운영 중에 연구개발인력 관련 사항을 변경 신고하려는 기업은 앞으로 연구개발인력의 4대 보험가입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 기존에는 연구개발인력이 해당 기업의 직원임을 증명하기 위한 4대보험 가입증명서를 기업이 제출하였으나, 관련 법령 개정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4대보험 관리기관으로부터 가입정보를 직접 제공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가입정보 제공 관련 법령 개정(2022년 6월 29일 시행)을 바탕으로 기관 간 자료 제공을 위한 시스템 연계 및 관련 서식 개정을 거쳐 2022년 8월경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참고** 국가법령정보센터)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제18646호, 2022.6.29.시행)

###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신고 시 기업의 행정부담 완화

- **추진배경** 부실 기업부설연구소를 방지하고 기업의 행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관련 기관으로부터 자료제공을 받을 수 있는 근거 신설
- **주요내용**
  - 기업부설연구소 등의 효과적 관리를 위해 과기정통부가 국민연금공단 등에 자료의 이용 및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 신설(법률)
  - 과기정통부가 자료의 이용 및 제공요청을 할 수 있는 기관 및 자료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대통령령)
  - 기업부설연구소를 신청하려는 기업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목록에서 4대 보험 가입증명서 또는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삭제(시행규칙)
- **시행일** 2022년 6월 29일(법률, 시행령), 2022년 8월 (시행규칙)

## 우주산업 경쟁력 확보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뉴스페이스팀 (☎ 044-202-4624)

우주산업이 혁신적인 민간 기업 주도로 재편되는 뉴스페이스 시대에 대비하여, 우주산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민간 기업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 먼저, 우주산업을 집약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우주산업클러스터를 지정하고, 우주개발 기반시설을 민간이 개방·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기업들의 수익성을 보장하기 위해, 우주개발 사업에 기업들이 이윤 등을 계상할 수 있도록 계약 방식을 도입하고, 계약 이행 지체 시 발생하는 지체상금은 시행령에서 정하는 범위 내에서 완화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아울러,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한 우주기술을 우주신기술로 지정하고, 신기술 적용제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우주분야 성과의 기술 이전, 인력 양성 및 창업 촉진을 위한 근거 조항도 마련하였습니다.

## 국가첨단전략산업의 체계적·지속적인 육성·지원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과 (☎ 044-203-4203)

2022년 8월 4일부터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시행됩니다.

-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은 공급망 안정화와 첨단산업 육성을 위해 핵심적인 기술·산업을 집중 지원하는 중요한 법적 기반입니다.
- 투자·인력양성·기술혁신\* 등 전방위적으로 기업 노력을 뒷받침하고 국익과 경제안보 관점에서 핵심기술·인력 보호기반\*\*을 강화할 것입니다.
  - \* (투자) 인허가·인프라 등 패키지, (인력) 계약학과·특성화대학 등, (기술) 특허R&D+특례
  - \*\* 국가첨단전략기술 수출·M&A 승인 의무화, 전문인력 지정제도 등 신설

참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 보도자료>“2022년 우주개발진흥법 개정”

### 우주산업 경쟁력 확보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 추진배경 우주산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민간 기업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개정 추진
- 주요내용
  - ① 우주개발 기반시설 확충 및 개방 확대
  - ② 계약방식 도입
  - ③ 우주신기술 지정 및 기술이전 촉진
  - ④ 우주분야 인력양성 및 창업 촉진 등
- 시행일 2022년 12월 (공포 후 6개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

###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전면 시행

- 추진배경 美·中 패권전쟁을 시작으로 급박하게 전개 중인 주요국 “핵심산업 공급망 전쟁”에 신속·강력하게 대응하는 것이 필요함에 따라 공급망 안정화 등 경제안보 실현 및 첨단산업 육성을 위해 체계적·지속적인 육성·지원 시급
- 주요내용
  - 범국가적 정책 추진을 위해 국무총리 주재 위원회 신설
  - 투자·기술혁신·인력 등 전방위적으로 기업 성장 뒷받침
  - 첨단산업 성장 활력 제고를 위해 적극적인 규제개선 지원
  - 국익과 경제안보 관점에서 전략기술·인력의 보호기반 강화
- 시행일 2022년 8월 4일

##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시행

산업통상자원부 산업디지털전환추진단 (☎ 044-203-4542)

2022년 7월 5일부터 산업데이터·AI 등 산업 전반에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법령이 시행됩니다. (‘22.1.4. 제정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시행)

- 이번 법령 제정을 통해 개인정보보호법 등 기존 권리보호 법령에서 규율하고 있지 않은 산업데이터 활용 및 보호 원칙을 제시하였습니다.
  - \* 지능정보화기본법, 공공데이터법 등 기존 법령은 추상적·포괄적 법률이거나 특정 분야·지원 대상을 한정하고 있어 규정상 공백이 존재
- 또한, 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뒷받침하기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산업 데이터 활용 과정에서의 기업의 불확실성을 해소하였습니다.
  - \* 산업·가치사슬 전반의 혁신, 산업 데이터 생태계 및 인프라 조성 등을 망라하는 산업 맞춤형 법률·정책 개요

참고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보도자료)“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공포안 국무회의 의결”

###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시행

- 추진배경 산업데이터·AI 등 지능정보기술 활용 촉진을 위한 ①산업데이터 활용·보호 규범, ②지원 제도, ③추진체계 등 규정
- 주요내용
  - 개인정보보호법 등 기존 권리보호 법령에서 규율하고 있지 않은 산업 데이터 활용·보호 원칙을 제시하여 기업 불확실성 해소
  - 선도사업 발굴·지원, 계약 가이드라인, 표준화, 플랫폼, 협업 지원센터 등 민간 디지털 전환을 뒷받침하는 지원 제도 근거 마련
- 시행일 2022년 7월 5일

## 어린이제품 안전확인 효력상실 제도 시행

산업통상자원부 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 (☎ 043-870-5574)

2022년 8월 4일부터 어린이제품의 효력상실 제도가 시행됩니다. (‘22.2.3. 개정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

- 완구, 학용품 등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의 위해성이 발견되어 수거 등의 명령을 받은 제품은 안전확인 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 대상은 ①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 ②안전기준에 부적합, ③표시 거짓 또는 미표시, ④판매 중지 등의 명령 등의 경우입니다.
  - ※ 위반 시 안전확인 신고의 효력상실 처분,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안전확인표시의 사용금지명령 또는 개선명령 대상이 될 예정
- 효력상실 등의 규제는 시행(8월 4일) 후 안전확인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참고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예산·법령)최근 개정법령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 어린이제품 안전확인 효력상실 제도 시행

- 추진배경 수거 등의 명령을 받은 제품이 시중에 동일한 신고 번호로 유통될 가능성이 있어 안전하지 않은 어린이제품의 재유통 방지를 위해 관련법 개정
- 주요내용 안전확인 신고의 효력상실 처분 및 표시 사용금지명령 등 신설
- 시행일 2022년 8월 4일

## 초광역협력의 성공·확산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산업통상자원부 지역경제총괄과 (☎ 044-203-4419)

2022년 8월 4일부터 초광역권의 개념과 초광역협력 사업 추진에 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됩니다. ('22.2.3. 개정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

■ 단일 행정구역을 넘어서는 지방자치단체 간 연계·협력사업 추진을 위해 '초광역권\*'에 대한 개념을 신설하였으며, 초광역권을 설정한 지자체의 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 단위 초광역권 발전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지역의 경제·생활권역의 발전에 필요한 연계·협력사업 추진을 위해 2개 이상의 지자체가 상호 협의하거나, 「지방자치법」 제199조에 따른 특별지방자치단체가 설정한 권역으로서, 시·도 행정구역을 넘어서는 권역

■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초광역협력사업의 추진 등에 관하여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 검사생략 고압가스 수입용기의 외국 반송기한 연장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 (☎ 044-203-3983)

반도체 제조 등의 용도로 수입되고 있는 특수 산업가스\*를 담아서 국내로 수입되는 고압가스용기의 반송기한이 현행 6개월에서 최대 2년까지 연장됩니다.

\* 디플루오로메탄(CH<sub>2</sub>F<sub>2</sub>, 반도체 식각용), 삼불화붕소(BF<sub>3</sub>, 반도체 도핑용) 가스 등

■ 고압가스용기의 평균 사용기간은 약 2년으로, 6개월 내에 수입용기 반송이 곤란하다는 업계의 애로사항을 반영하여 고압가스용기 반송기한을 연장하게 되었습니다.

- 다만, 반송기한이 연장됨에 따라 안전성 확인도 강화할 필요가 있으므로, 용기의 검사면제 조건에 미국의 DOT 기준, 유럽의 TPED 기준 등 “신뢰성 있는 외국의 검사기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은 용기에 한하도록 하였습니다.

■ 개정내용은 2022년 6월 8일 이후 수입되는 용기부터 적용됩니다.

참고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보도자료)“초광역 협력의 성공·확산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 초광역 협력사업의 추진·지원근거 마련

- 추진배경 지역주도로 추진되고 있는 초광역협력의 성공과 확산 도모
- 주요내용 초광역권 등 정의규정 신설, 초광역권 발전계획의 수립절차 및 초광역협력사업에 대한 추진·지원근거 마련
- 시행일 2022년 8월 4일

## 전기설비 원격 점검 본격 시행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 (☎ 044-203-3982)

2022년 6월 22일부터 디지털방식의 상사·비대면·원격점검이 시행됩니다.

(‘21.12.21. 「전기안전관리법」 개정·공포)

- 그간 전기안전공사에서 1~3년에 한 번씩 방문·대면 형태로 인력중심의 노동집약적 전기안전 점검을 수행하였으나, 전기안전관리의 실효성·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4차 산업기술(ICT·IoT)을 활용, 디지털방식의 상사·비대면·원격점검 체계로 전환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 '24년까지 가로등·신호등, CCTV 등 공공 전기설비(약 215만호)를 대상으로 원격점검 장치를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이후 다중이용시설, 취약계층 거주 노후시설 등으로 점진적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참고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보도자료)「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공포, 원격점검 제도 도입 (2021.12.21.배포)

### 전기설비 원격점검 본격 시행

- **추진배경** 코로나19 확산, 생활방식 변화(1인 가구 증가 등) 등 사회환경 변화를 고려, 전기안전관리의 실효성·효율성 제고를 위해 원격점검 제도 도입
- **주요내용** 기존 인력중심의 주기별·대면·현장방문 방식의 전기안전점검 제도를 4차 산업기술(ICT·IoT)을 활용하여 디지털방식의 상사·비대면·원격 점검 체계로 전환
- **시행일** 2022년 6월 22일

참고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보도자료)「반도체 제조 용도 등의 수입 산업가스」수급안전을 위한 규제개선 시행 등 보도자료

### 검사생략 고압가스 수입용기의 외국 반송기한 연장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는 반도체 제조 등 용도로 수입되고 있는 특수 산업가스의 국내 수급 안정을 위해 개정 추진 중인, 「고압가스안전관리법 등 에너지안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21.11.30.(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동 개정안은, 정부가 발표한 반도체 강국 실현을 위한 「K-반도체 전략(‘21.5.13.)」중 규제개선 사항의 일환 등으로 추진되었다.

• (현황) 「고압가스안전관리법」상 모든 고압가스 용기는 안전 확인을 목적으로 개별적으로 검사를 받은 후 수입되는 것이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고압가스를 담아서 국내로 수입되는 고압가스용기는 6개월 내에 해외로 반송하는 조건 하에 해당 용기 검사를 면제하고 있다.

• (문제점) 최근 일본 수출규제로 인한 비축량 증가와 반도체 제조공정에 사용되는 특수 가스\*가 소량 사용의 특징으로 평균 사용기간이 약 2년 정도로 장기 사용되고 있어서, 6개월 내에 수입용기 반송이 곤란한 상황이 지속되어 업계는 애로를 호소하였다.

\* 디플루오로메탄(CH<sub>2</sub>F<sub>2</sub>, 반도체 식각용), 삼불화붕소(BF<sub>3</sub>, 반도체 도핑용) 가스 등

• (개선)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계의 현실을 고려하여,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검사 생략 고압용기의 반송기한을 “현행 6개월→최대 2년”으로 연장을 허용하였다.

- 다만, 반송기한이 연장됨에 따라 안전성 확인도 강화할 필요가 있으므로, 용기 검사 면제 조건에 “신뢰성 있는 외국의 검사기관\*으로 부터 검사를 받은 용기”에 한하도록 제한하였다.

\* 미국(DOT기준, DOT 인증기관), 유럽(TPED기준, 인증기관), 일본(고압가스보안법, 보안협회) 등

• **시행일** 2022년 6월 8일

## 석탄가공업의 승계신고 기간 연장

산업통상자원부 석탄광물산업과 (☎ 044-203-5261)

석탄가공업자의 지위 승계 시 관할 지자체에 승계 신고하는 기간이 기존 15일에서 30일로 연장됩니다. (「석탄산업법 시행규칙 제12조(석탄가공업의 승계신고 등)」 개정 시행 (예정, '22.6.30.)

- 석탄가공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석탄산업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른 별지 제10호서식의 승계 신고서를 승계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 개정내용은 2022년 6월 30일(잠정) 이후 석탄가공업 승계 신고 시부터 적용됩니다.

### 석탄가공업의 승계신고 기간 연장

- **추진배경** 상속에 의한 지위 승계의 경우 장례 등 사후(死後) 수습과 유족 간 유산분배 협의 등 상속인 확정에 상당 기간이 소요될 수 있어 15일 이내 승계 신고가 부담으로 작용하여 기간을 연장할 필요
- **주요내용**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제1항에 따른 사망신고 기한 (1개월)을 고려하여 석탄가공업 승계 시 신고 기간을 기존 15일에서 30일로 연장
  - 적용대상 : 석탄가공업자가 그 석탄가공업의 전부를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 석탄가공업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 법인인 석탄가공업자가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
- **시행일** 2022년 6월 30일(잠정)

##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 확대 및 보상수준 강화 등 실시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손실보상과 (☎ 044-204-7294)

정부의 직접적 방역조치로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 등이 「소상공인법」 제12조의2에 따라 보상을 받는 경우, 상향된 보정률(90%→100%) 및 하한액(50만원→100만원)을 적용 받게 됩니다.

- 아울러, 손실보상 대상이 소기업·소상공인에서 연매출액 30억원 이하의 중소기업까지 확대됩니다.
- 개정내용은 '22년 1분기분 소상공인 손실보상부터 적용됩니다.

###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 확대 및 보상수준 강화 등 실시

- **추진배경** 온전한 손실보상 등 긴급구조플랜을 추진하여 소상공인 경영지표를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
- **주요내용**
  - (개요) 정부의 직접적 방역조치로 '21.7.7. 이후 발생한 소상공인의 손실을 피해규모에 비례하여 맞춤형으로 보상(소상공인법 제12조의2)
  - (대상) ①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방역조치\*를 이행하여 ② '19년 동월 대비 매출액이 감소한 ③ 소기업·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연매출액 30억원 이하)
    - \* ('21.3분기)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21.4분기 추가) 시설 인원제한 조치
  - (기준) 개별업체 손실(영업이익 감소)에 비례한 맞춤형 보상금 산정 - (산식) 월별 일평균 손실액 x 월별 방역조치 이행일 수 x 보정률

월별 일평균 손실액	×	월별 방역조치 이행일수	×	보정률
'19년 대비 '21년 동월 일평균 매출감소액 x ( '19년 영업이익률 + '19년 매출액 대비 인건비임차료 비중)				

## 산업재산권에 대한 질권의 설정등록료 인하

특허청 정보고객정책과 (☎ 042-481-8336)

산업재산권을 담보로 사업 자금을 대출받고자 하는 개인·중소기업 등의 특허담보대출 활성화를 위하여 담보설정 비용인 질권의 설정등록료를 대폭 인하(8.4만원→2만원)하였습니다.

- 특히, 여러 권리를 공동담보로 하여 대출 받는 경우 6건을 초과하는 건(일곱번째 건)부터 1만원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여 수수료 부담을 더욱 줄였습니다.
- 개선사항은 2022년 8월 19일 신청분부터 적용됩니다.

## 국제특허출원, 인터넷 웹출원 방식으로 일원화

특허청 정보고객정책과 (☎ 042-481-5112)

2022년 7월 1일부터 특허협력조약(PCT)을 통한 국제특허출원은 인터넷 웹출원 방식인 ePCT로 일원화 됩니다.

- 지금까지는 전자출원SW(PCT-SAFE)를 활용하거나, WIPO웹사이트(ePCT)에 접속해 출원 서류를 작성하는 2가지 전자출원 방식을 사용해왔습니다.
- 하지만 7월 1일 이후 전자출원SW(PCT-SAFE)의 갱신이 중지됨에 따라, ePCT를 통해 국제특허 출원을 진행해야 합니다.
- 웹출원 방식은 최신 개정 법·제도나 개선기능이 실시간으로 반영되어 편리합니다.

참고 특허청 홈페이지>보도자료>개인·중소기업의 부담 덜어주기 위해 수수료 감면해드립니다!

### 산업재산권에 대한 질권의 설정등록료 인하

- **추진배경** 산업재산권을 담보로 사업화 자금을 확보하고자 하는 주체에 대한 특허담보 대출을 촉진하기 위함
- **주요내용**
  - (개요)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에 대한 질권의 설정등록료를 매건 8.4만원에서 2만원으로 인하(공동담보인 권리가 6건을 초과하는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건마다 1만원으로 함)
  - (대상) 대상제한 없음
- **시행일** 2022년 8월 19일  
\* 공동담보인 권리가 6건을 초과하는 건마다 1만원으로 적용하는 부분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

참고 특허청 홈페이지>보도자료>국제특허출원, 인터넷 웹출원 방식으로 일원화된다!

### 국제특허출원, 인터넷 웹출원 방식으로 일원화

- **추진배경** WIPO에서 사용자 편의성과 출원시스템 운영 효율화를 위해 인터넷 웹출원 방식으로 통일하기로 결정
- **주요내용**
  - (기존) 2가지 전자출원 방식 사용
    - (PCT-SAFE) WIPO가 제공하는 PC설치용 출원서 작성 소프트웨어
    - (ePCT) WIPO웹사이트에 접속해 출원서류를 작성·제출하는 방식
  - (향후) 인터넷 웹출원 방식(ePCT)으로 일원화
- **시행일** 2022년 7월 1일



## 장애인방송 확대

방송통신위원회 미디어다양성정책과 (☎ 02-2110-1293, 1466)

시각·청각장애인 등 소외계층의 방송접근권이 확대됩니다.

■ 청각장애인을 위한 한국수어방송 의무편성비율을 확대하고, 시각장애인을 위한 화면해설방송 재방송 비율을 축소하여 시각·청각장애인의 방송접근권 확대에 기여하였습니다.

※ 한국수어방송 의무편성비율 상향(5%→7%), 화면해설방송 재방송비율 축소(30%→25%)

■ 비실시간방송(VOD)에서도 장애인방송(폐쇄자막·화면해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제작지원이 확대됩니다.

※ ('21년) KBS·MBC·SBS·EBS → ('22년) KBS·MBC·SBS·EBS·JTBC·TV조선

**참고**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보도자료)“방통위, 디지털 미디어 복지 실현을 위한 「'22년 소외계층 미디어 포용 세부추진계획 수립」”

### 소외계층 미디어 포용 정책

- **추진배경** 미디어 환경 변화와 코로나 비대면 사회로 미디어 이용이 증가함에 따라 국민 누구나라도 미디어 활용에 소외되지 않도록 '미디어 포용' 정책 추진
- **주요내용**
  - 장애인방송 고시 개정을 통해 한국수어방송 의무편성비율 상향(5→7%), 화면해설방송 재방송 편성비율 축소(30%→25%)
  - 비실시간방송(VOD) 장애인방송 제작 지원 사업자 확대
  - 시각·청각장애인용 대상 맞춤형 TV 보급을 저소득층 중심에서 전체 시각·청각장애인으로 확대
- **시행일** 2022년 하반기

## 방송사업자의 기술결합서비스 승인제를 신고제로 완화

방송통신위원회 지상파방송정책과 (☎ 02-2110-1421)

종전에는 지상파방송사업자 등이 기술결합서비스를 제공하려면 방송통신위원회 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던 것이 향후 신고를 받도록 하는 것으로 완화됩니다.

■ 방송기술규제 완화를 통해 방송사업자는 방송기술 발전에 따른 신유형의 방송통신 융합서비스 등장에 능동적으로 대응이 가능하게 됩니다.

■ 개정내용은 2022년 7월 12일 이후 기술결합서비스 신고 사업자부터 적용됩니다.

### 기술결합서비스 승인제를 신고제로 완화

- **추진배경** 방송사업자들의 기술결합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서비스 제공시 정부의 승인을 받도록 하던 것을 신고제로 완화
- **주요내용**
  - 종전에는 지상파방송·종합유선방송·위성방송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의 전송방식을 결합한 기술결합서비스를 제공하려면 방송통신위원회 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던 것을, 신고제로 완화
    - 기술결합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지상파방송사업자 등은 제공 사유 및 제공 방식 등을 포함한 기술결합서비스 제공계획서를 방송통신위원회 등에 제출
    - 기술결합서비스 제공 신고를 받은 방송통신위원회 등은 3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 등을 결정하여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함
  - 종전에는 거짓으로 신고를 하여 기술결합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등의 벌칙으로 처벌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것으로 제재수준을 완화함
- **시행일** 2022년 7월 12일

## 방송통신 결합상품 원스톱 전환서비스 종합유선방송사업자까지 확대

방송통신위원회 통신시장조사과 (☎ 02-2110-1537)

2022년 하반기(10월 예정)에 SKB케이블(구 티브로드), LG헬로비전, 딜라이브, HCN, CMB 등 MSO(Multiple System Operator, 복수 종합유선방송 사업자)에게도 인터넷·유료방송 결합상품 원스톱 전환서비스\*가 시행됩니다.

※ '20년 7월부터 5개 통신사(KT, LGU+, SKB, SKT, KT-Skylife) 기 시행 중

\* 결합상품 원스톱 전환서비스 : 이용자가 기존사업자에 별도의 해지 신청을 하지 않고 신규사업자에게 서비스를 신청하면 해지와 개통을 한번에 처리

■ 종합유선방송사업자(MSO) 이용자는 해당 고객센터를 통해 결합상품 원스톱 전환서비스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방송통신 결합상품 원스톱 전환서비스 종합유선방송사업자 까지 확대 개요

- 추진배경 '20.7월 통신4사 및 KT-Skylife 등에 도입한 결합상품 원스톱 전환서비스를 종합유선방송사업자(MSO) 이용자까지 확대 시행
- 주요내용
  - (시행사업자) SKB케이블(구 티브로드), LG헬로비전, 딜라이브, HCN, CMB
  - (적용서비스) 초고속인터넷, 유료방송 결합상품 등 방송통신서비스
- 시행일 2022년 하반기(10월 예정)



2022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 국토·교통



# 07

## 국내공항 짐배송서비스 적용 공항 확대·운영

국토교통부 항공보안과 ☎ 044-201-4238

코로나-19 여파로 급감한 해외여행 수요 대신, 제주도 등 국내항공 여객증가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국내공항 짐배송서비스를 '22년 8월부터 김해, 청주 등 주요공항으로 확대 운영합니다.

- ▣ 해당 서비스는 김포 출발, 제주공항 도착 승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시범운영('21.7.~'22.7., 1년) 결과를 분석하여, 수하물 접수·보관·이동 등 세부절차를 가다듬고, 출발공항은 지역 거점 공항으로 확대\*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 (출발공항) 1개(김포공항) → 6개(김포·김해·청주·대구·광주·양양공항)

- ▣ 아울러,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여객은 출발 하루 전(오후 8시)까지 짐배송 전용앱(APP)으로 신청한 후, 출발공항에서 수하물을 항공사에 위탁하면 대행업체가 도착공항에서 승객 짐을 대신 찾아 목적지(숙소)까지 배송합니다.

참고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보도자료) "국내공항 짐배송 대행서비스 확대 운영"('22.8월, 보도자료 배포 예정)

### 국내공항 짐배송서비스 확대운영

- 추진배경 코로나-19로 급감한 해외여행 수요 대신, 제주도 등 국내 여객증가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짐배송서비스를 김해 등 주요공항으로 확대 운영
- 주요내용
  - (대상자) 김포·김해·청주·대구·광주·양양공항 등\*을 통해 제주공항에 입도하는 이용객 중 해당 서비스 신청자
  - \* 공항은 이용자 수요조사에 따라 변동 가능
  - 국내선 출발 전 서비스를 신청하면 대행업체가 도착공항에서 승객 짐을 대신 찾아 목적지(숙소)까지 배송
- 시행일 2022년 8월



2022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 농림·수산·식품



### 1 농림축산식품부

자세한 내용은 p.110

#### 농지 임대차계약 등 농지대장 변경신청 의무화 시행

시행일 : 2022년 8월 18일

Before

지금까지 임대차 등 농지 이용현황 정보를 지자체가 직권으로 파악하여 작성하였습니다.



After

앞으로는 농지이용정보 변경 시 신고를 의무화하도록 합니다.



### 2 농림축산식품부

자세한 내용은 p.111

#### 지자체 농지위원회 신설 및 투기우려지역 등 농지 취득 심사 시 농지위원회 심사 의무화

시행일 : 2022년 8월 18일

지자체 농지위원회 신설 및 투기우려지역 등 농지 취득 심사 시 농지위원회 심사가 의무화됩니다.

- 농지법 시행규칙 제7조제3항에서 규정한 대상자는 농지 취득 시 시·구·읍·면에 설치된 농지위원회의 심의를 반드시 거쳐야함



### 3 농림축산식품부

자세한 내용은 p.112

#### 국립농업박물관 개관

시행일 : 2022년 하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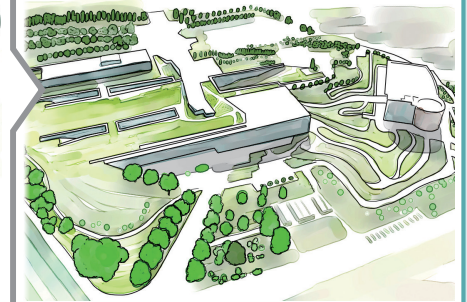
Before

유구한 우리나라 농업의 역사와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보고, 듣고,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 없었습니다.



After

농업·농촌의 역사와 가치, 미래를 함께 보는 '국립농업박물관'을 개관합니다.



### 4 농림축산식품부

자세한 내용은 p.113

#### 동물의 중대진료에 관한 사전 설명 및 서면 동의 의무화

시행일 : 2022년 7월 5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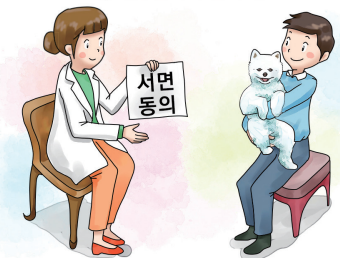
Before

지금까지 수의사가 수술·수혈 등 중대진료를 할 경우, 진료에 관한 설명 및 서면 동의 의무가 없었습니다.



After

앞으로는 수의사가 동물의 수술 등 중대진료를 하는 경우, 동물 소유자 등에게 다음의 사항을 설명하고 서면으로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동물의 생명이 위협해지거나 동물의 신체에 중대한 장애를 가져올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수술 등 중대진료 이후에 설명하고 동의를 받을 수 있음

### 5 농림축산식품부

자세한 내용은 p.114

#### 축산물 온라인 경매 도입

시행일 : 2022년 7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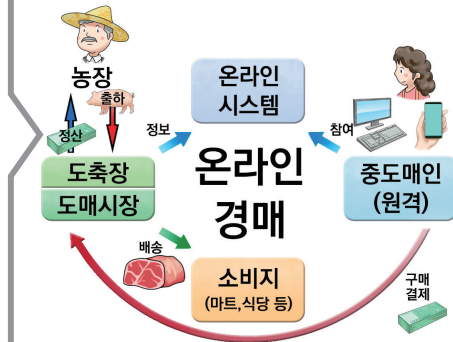
##### Before

종전에는 축산물 온라인 경매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기반 마련에 힘써왔습니다.



##### After

앞으로는 축산물 온라인 경매를 본격 도입합니다.



### 7 해양수산부

자세한 내용은 p.1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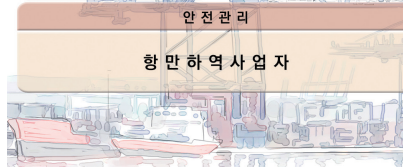
#### 항만안전특별법 시행

시행일 : 2022년 8월 4일

##### Before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개별 업체별로 안전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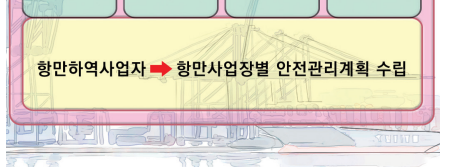
안전관리	안전관리	안전관리	안전관리
항만 용역업체 (화물고정, 줄잡이, 청소 등)	검수·검량 업체	중장비 업체	선용품 공급업체



##### After

'항만안전특별법'에 따라 항만사업장별 총괄 안전관리

항만사업장별 총괄 안전관리			
항만 용역업체 (화물고정, 줄잡이, 청소 등)	검수·검량 업체	중장비 업체	선용품 공급업체



### 6 농림축산식품부

자세한 내용은 p.1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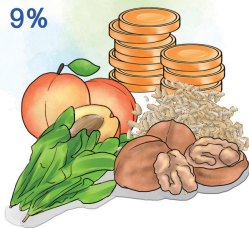
#### 저탄소인증 농산물 구매 시 에코머니 포인트 적립률 확대

시행일 : 2022년 6월 1일

##### Before

지금까지 에코머니 제휴 가맹점에서 저탄소인증 농산물 구매 시 에코머니 포인트를 적립하였습니다.

에코머니 포인트  
적립률 : 9%



##### After

앞으로는 저탄소인증 농산물 구매 시 에코머니 포인트 적립률을 확대합니다.

에코머니 포인트  
적립률 : 15% 확대



### 8 산림청

자세한 내용은 p.132

####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제 시행

시행일 : 2022년 10월 1일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제를  
시행합니다.

- 의무준수사항을 이행하는 임산물생산업 또는 육림업 종사 임업인과 농업법인에게 직접지불금을 지급합니다.



## 농지 임대차계약 등 농지대장 변경신청 의무화 시행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 (☎ 044-201-1742)

2022년 8월 18일부터는 “농지원부” 명칭이 “농지대장”으로 변경되며 농지 임대차계약 등 이용정보 변경 시 농지대장 변경신청이 의무화됩니다.

■ 농지대장 변경신청 대상은 농지법에 따라 농지 임대차계약이 체결·변경·해제되는 경우와 농축산물 생산시설\* 등을 신규로 설치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 농막, 축사, 고정식온실, 버섯재배사, 곤충사육사 등

■ 이러한 변경신청은 농지소유자 또는 임차인이 그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농지소재지 관할 행정청에 변경내용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 지자체 농지위원회 신설 및 투기우려지역 등 농지 취득 심사 시 농지위원회 심사 의무화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 (☎ 044-201-1735)

2022년 8월 18일부터 시·구·읍·면에 농지위원회가 설치됩니다.

■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해당 지역의 농업인, 전문가 등이 참여합니다.

■ 농지위원회는 농지법 시행규칙 제7조제3항에서 규정한 대상\*에 대해 농지 취득자격 심사를 담당할 예정입니다.

- \* 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허가구역에 있는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
- ② 취득대상 농지 소재지 관할 시·군·자치구 또는 연접한 시·군·자치구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그 관할 시·군·자치구에 소재한 농지를 2022년 8월 18일 이후 처음으로 취득하려는 자
- ③ 1필지의 농지를 3인 이상이 공유로 취득하려는 경우 해당 공유자
- ④ 농업법인
- ⑤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등록한 외국인
- ⑥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
- ⑦ 그 밖에 농업경영능력 등을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시·군·자치구의 조례로 정하는 자

참고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보도자료) “5월 18일부터 농지 취득자격심사가 대폭 강화됩니다.”

참고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보도자료) “5월 18일부터 농지 취득자격심사가 대폭 강화됩니다.”

### 농지대장의 변경신청 도입

- 추진배경 모법 개정(21.8.17.)에 따라 농지 임대차 사항 등 농지 이용현황 중 중요 사항 변경 시 농지대장의 변경신청을 의무화
- 주요내용 농지 소유자 또는 임차인은 다음의 변경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60일 이내에 농지소재지 관할행정청에 농지대장 변경신청을 하여야 함
  - 농지의 임대차계약(사용대차계약 포함)이 체결·변경·해제되는 경우
  - 농축산물생산시설(농막·축사·고정식온실·버섯재배사·곤충사육사)을 설치하는 경우
  - 토지의 개량시설(수로·제방)을 설치하는 경우
- 시행일 2022년 8월 18일

### 농지위원회 심의제도 신설

- 추진배경 농지취득자격심사 강화를 위해 지자체 담당자가 단독으로 농지 취득자격 심사를 하는 체계 보완
- 주요내용 농지법 시행규칙 제7조제3항에서 규정한 대상자는 농지 취득 시 시·구·읍·면에 설치된 농지위원회의 심의를 반드시 거쳐야 함
- 시행일 2022년 8월 18일

## 국립농업박물관 개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과 (☎ 044-201-1512)

2022년 하반기에 농업·농촌의 역사와 가치, 미래를 함께 보는 ‘국립농업박물관’을 개관합니다.

- ‘국립농업박물관’은 국가가 설립한 최초의 농업박물관으로, 경기도 수원시 서둔동 (구)농촌진흥청 이전부지 50,000㎡에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조성되어 2022년 하반기에 개관할 예정입니다.
- 농업 관련 유물 전시는 물론이며, 농작물이 자라고, 곤충과 물고기가 노니는 공원형 박물관으로 박물관을 찾는 국민에게 도심 속의 문화 및 농업·농촌을 체험할 수 있는 복합공간<sup>1)</sup>을 제공합니다.
  - \* 구성 : 농업관, 어린이체험관, 식문화관, 식물공장, 유리온실(곤충체험장, 아쿠아포닉스), 다랑이논, 과수원 등

## 동물의 중대진료에 관한 사전 설명 및 서면 동의 의무화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과 (☎ 044-201-2523)

수의사가 동물의 수술 등 중대진료<sup>1)</sup>를 하는 경우, 동물 소유자 등에게 다음의 사항을 설명하고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 동물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수술, 수혈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진료
- 설명 및 동의를 받아야 할 사항은 ①진단명, ②수술등 중대진료의 필요성, 방법 및 내용, ③전형적으로 발생이 예상되는 후유증 또는 부작용, ④동물소유자 등의 준수사항입니다.
- 다만, 수술 등 중대진료가 지체되면 동물의 생명이 위험해지거나 동물의 신체에 중대한 장애를 가져올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수술 등 중대진료 이후에 설명하고 동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개정내용은 2022년 7월 5일부터 시행됩니다.

참고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보도자료, 국립농업박물관 홈페이지

### 2022년 국립농업박물관 개관

- 추진배경 농업 역사와 가치, 미래를 보는 통합적 문화공간 조성
- 주요내용 2022년 하반기에 농업 관련 유물 전시는 물론이며, 농작물이 자라고, 곤충과 물고기가 노니는 공원형 박물관인 국립농업박물관을 개관
- 시행일 2022년 하반기

참고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보도자료)“동물병원 이용자의 알 권리·진료 선택권 보장과 동물의료 발전을 위한 수의사법 개정·공포”

### 동물의 중대진료에 관한 사전 설명 및 서면 동의 의무화

- 추진배경 동물병원 이용자의 알 권리 제고 및 진료선택권 보장
- 주요내용
  - 수의사가 수술 등 중대진료를 하는 경우, 동물 소유자등에게 다음의 사항을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야 함
    - ① 동물에게 발생하거나 발생 가능한 증상의 진단명
    - ② 수술 등 중대진료의 필요성, 방법 및 내용
    - ③ 전형적으로 발생이 예상되는 후유증 또는 부작용
    - ④ 동물소유자 등의 준수사항
- 시행일 2022년 7월 5일

## 축산물 온라인 경매 도입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과 (☎ 044-201-2318)

비대면 거래 확대 등 유통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코로나19, 가축전염병 등 위기 시에도 안정적으로 축산물을 유통하기 위해 온라인 경매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 '21년에는 시범 도매시장을 선정(1개소, 농협나주공판장)하고 장비 지원, 거래 시스템 개발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 올해에는 시스템 시범 운영을 통해 완성도를 높여 7월부터 본격 도입(돼지 우선 추진)할 예정이며, 시범 도매시장을 확대(+3개소)하고, 부분육 경매를 활성화하여 정책효과를 높여갈 예정입니다.
  - \* (22.7월) 농협나주공판장(지육) → (22년말) 농협고령공판장(지육), 도드람(지육), 협신식품(지육, 부분육)

참고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보도자료)“축산물온라인경매 도입 보도자료(7월 잠정)”

### 축산물 온라인 경매 플랫폼 구축

- 추진배경 비대면 경제 확대 등 유통 여건 변화에 대응하고, 안정적인 축산물 유통을 위해 온라인 거래(경매) 시스템 조기 구축
- 주요내용
  - 온라인으로 축산물 영상, 등급 등 정보를 제공하고, 구매자가 온라인에서 경매에 참여하는 시스템 도입(돼지 우선 추진, '22.7월~)
  - 시범 도매시장을 확대(+3개소)하고 부분육 경매 도입 등 추진
  - \* 예산규모: ('21)2,550백만원(신규) → ('22)1,310백만원(2년차) → ('23년)전년 동



## 저탄소인증 농산물 구매 시 에코머니 포인트 적립률 확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재생에너지팀 (☎ 044-201-2914)  
환경부 신기후체제대응팀 (☎ 044-201-6966)

2022년 6월 1일부터 저탄소인증 농산물 구매 시 에코머니 포인트 적립률이 현행 9%→15%로 확대됩니다.

- 에코머니란 에코머니 제휴카드(그린카드 등)를 통해 에너지 절약 및 다양한 친환경 활동\*시 경제적 혜택을 소비자에게 돌려드리는 포인트 리워드 서비스입니다.
  - \* (친환경활동) 가정에서 전기·수도·도시가스 등 생활에너지 절약, 친환경 제품을 에코머니 제휴 카드로 결제 등
- 금년 6월 1일부터 에코머니 제휴 가맹점에서 저탄소인증 농산물을 그린카드로 구매할 경우 15%의 에코머니가 적립됩니다.
  - \* 에코머니 제휴 가맹점에서 일부 제품은 포인트 적립이 제외될 수 있음

참고 스마트그린푸드(www.smartgreenfood.org)그린소식)공지사항

### 저탄소인증 농산물 에코머니 포인트 적립률 확대 추진

- 추진배경 저탄소인증 농산물 소비 확대를 위해 저탄소인증 농산물 구매 시 에코머니 포인트 적립률 확대 추진
- 주요내용
  - 에코머니 제휴카드(그린카드 등)로 저탄소인증 농산물을 구매하는 소비자에게 구매 금액의 일부를 포인트로 지급해주는 에코머니 포인트 적립률을 현행 9%→15%로 확대
  - 에코머니 제휴 가맹점에서 일부 제품은 포인트 적립이 제외될 수 있음
  - \* 에코머니 서비스 이용과 관련한 문의는 에코머니 홈페이지 온라인 상담 또는 고객센터(1566-2929) 이용
  - \* 저탄소인증 농산물 구매 시 에코머니 포인트 적립 관련 공지
  - ☎ '스마트그린푸드(www.smartgreenfood.org)그린소식)공지사항' 확인
- 시행일 2022년 6월 1일



## 농업법인 사전신고제 도입

농림축산식품부 경영인력과 (☎ 044-201-1537)

2022년 8월 18일부터 농업법인의 설립·변경·해산등기 전에 법인의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에 신고할 의무가 부과됩니다.

※ 종전에는 법인 설립·변경등기 완료 후 시·군·구 통지 의무를 부과

■ 신고 시에는 신고서에 정관, 조합원·주주 명부, 총회의사록 등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 또한, 신고 후 지자체가 발급한 신고확인증을 농업법인 설립·변경·해산등기 시 첨부하여야 합니다.

참고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보도자료) > 농업법인 관리 강화를 위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 농업법인 사전신고제 도입

- 추진배경 농업법인 관리 강화를 위해 설립·운영현황 파악 강화
- 주요내용
  - 농업법인 설립·변경·해산등기 전 시·군·구 신고 의무 부과
  - 농업법인 설립·변경·해산등기 시 지자체가 발급한 신고확인증을 첨부
- 시행일 2022년 8월 18일

## 식물기반 그린백신 실증지원센터 운영

농림축산식품부 종자생명산업과 (☎ 044-201-2475)

식물백신\*의 연구지원 및 바이오 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식물기반 그린백신 실증지원센터\*\*'를 구축(22.3월~)하고, 시범운영을 거쳐 하반기에 본격 운영을 시작합니다.

\* 식물체에 바이러스의 유전자를 도입하여 백신 원료물질(항원)을 생산하는 차세대 기술로, 신속한 백신 생산 가능(기존 유정란 백신: 6개월) 식물백신 1~2개월)

\*\* (주요시설) 식물세포 배양시설, 단백질 정제시설, 동물효능 평가시설, 공동 연구시설, 완전 밀폐형 식물재배 시설 등

■ 실증지원센터에는 바이오 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기반시설을 구축하여, 백신 시제품 생산 및 동물용 의약품 독성·효능평가 등 그린백신 생산기업의 활동을 적극 지원할 예정입니다.

참고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보도자료) > 국내최초 '그린백신 실증지원센터' 구축·운영

### 그린백신 실증지원센터 개요

- 추진배경 식물백신\*의 연구지원 및 바이오벤처 육성을 위한 시설 구축
- \* 식물체에 바이러스의 유전자를 도입하여 백신 원료물질(항원)을 생산하는 차세대 기술로 신속한 백신 생산 가능 (기존 유정란 백신: 6개월) 식물백신 1~2개월)
- 주요내용
  - (사업위치/기간) 포항융합기술산업지구 내 부지/2018 ~2022
  - (사업규모) 부지 6,840㎡(2,070평), 연면적 4,695㎡(1,400평)
  - (사업명) 식물백신 기업지원시설 구축(건축: 본관 지상3층, 별관)
  - (총사업비) 부지매입비 포함 177억원(국비 60억원)
- 시행일 2022년 6월

## 간척지를 임산물 생산·가공·저장·유통단지 용으로 활용가능

농림축산식품부 간척지농업과 (☎ 044-201-1877)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22.7.)으로 간척지에서 임산물의 생산, 가공, 저장 및 유통시설 단지를 조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그 동안은 간척지활용사업에 농산물·축산물·수산물의 생산, 가공, 저장 및 유통단지만 할 수 있었으나, 이번 법 개정으로 임산물을 추가하여 간척지활용사업의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참고**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보도자료)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및 시행(22.7.5.)"

### 임산물 추가에 따른 간척지활용사업 범위 확대

- **추진배경**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의 "농업"이란 농작물재배업, 축산업, 임업 및 이들과 관련된 산업으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간척지법」 제2조제3호의 간척지활용사업에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이외에 임산물을 추가하여 간척지활용사업의 범위를 확대
- **주요내용**
  - 간척지활용사업에 농산물·축산물·수산물 이외에 임산물의 생산, 가공, 저장 및 유통시설 단지를 추가
  - 간척지활용사업으로 조성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임대대상 자격자에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를 추가
  - 임산물의 범위를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5조제1항에 따른 농산물 중 임업활동으로부터 생산되는 산물(목재와 그 가공품 및 토석은 제외한다)"로 규정
    - ※ 간척지는 준공 이후 농업진흥구역으로 지정·관리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농지법 시행령에 규정된 농업진흥구역 안에서의 행위 제한 내용을 반영
- **시행일** 2022년 7월 5일

## 2022년 세계유기농산업엑스포 개최

농림축산식품부 친환경농업과 (☎ 044-201-2443)

2022년 9월 30일부터 10월 16일까지 17일간 「2022년 세계유기농산업엑스포」가 충청북도 괴산군 동진천 일원에서 개최됩니다.

- '유기농이 여는 건강한 세상'이라는 주제로 주제전시관, 국제 협력관, 유기농산업관, 유기농곤충관, 야외전시 체험장\*, 진로체험관 등이 마련될 예정입니다.
  - \* 가공식품, 화장품, 농자재, 펫케어, 의류, 생활용품 등 국내 320개, 해외 100개 유치 예정
  - \*\* 유기농생활정원, 노지 스마트 농업 소개, 동물농장, 첨단 농기계 시연 및 시승 등
- 이번 세계유기농산업엑스포를 계기로 국내 유기농식품 가치소비를 촉진하고, 지속가능한 친환경 농업 실천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참고** 2022 괴산세계유기농산업엑스포(2022goesan-organic.co.kr)

### 2022년 세계유기농 산업엑스포 행사개요

- **추진배경** 2022년 세계유기농산업엑스포 개최를 통해 유기농식품 가치소비를 촉진하고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업 기반 확대
- **주요내용**
  - (기간) '22.9.30.~10.16.(17일간)
  - (장소) 충청북도 괴산군 유기농엑스포 공원
  - (규모) 796천㎡(241천평)
  - (주제) '유기농이 여는 건강한 세상'
    - 토양·수질보전, 생물다양성 증진, 탄소발생 감축효과 등
  - (내용) 전시관 운영, IFOAM 50주년 학술행사, 체험행사, 공연 등
- **시행일** 2022년 9월 30일

## 한국농수산대학 교명 변경

농림축산식품부 경영인력과 (☎ 044-201-1535)

2022년 6월 1일부터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농어업대학으로서의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 '한국농수산대학'이 '한국농수산대학교'로 교명 변경을 합니다.

- 한국농수산대학은 이번 교명 변경을 계기로 대학 이미지 제고와 청년 농어업인을 양성하는 기관으로서 역할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참고 한국농수산대학교)보도자료) "한국농수산대학, 한국농수산대학교로 새롭게 출발"(6.2)

### 한국농수산대학 교명 변경

- **추진배경** 한국농수산대학은 미래 농어업을 이끌 정예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국내 유일의 농어업 전문대학으로 대학의 위상 강화 필요
  - 대부분 전문대학이 고등교육법 개정('11.5.19.) 이후 대학교로 변경하였으나, 한농대는 교명 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아, 우리나라 대표 농어업 대학으로서 대학 위상 및 이미지 제고 한계
    - \* 학교의 명칭을 정함에 있어 학교의 종류와 다르게 "대학" 또는 "대학교"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
- **주요내용** 대학 명칭을 '한국농수산대학'에서 '한국농수산대학교'로 변경
- **시행일** 2022년 6월 1일

## 가축분뇨 액비 내 질소 함유량 기준 개선

농림축산식품부 축산환경자원과 (☎ 044-201-2362)

가축분뇨 액비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액비 내 질소 최소함유량 기준을 완화합니다.

- 「가축분뇨의 자원화 및 이용 촉진에 관한 규칙」개정을 통해 불필요한 액비 내 질소 함량 기준을 삭제하고 비료공정규격의 가축분뇨 발효액 기준만을 적용할 예정입니다.
  - \* (현행) 질소 함량 0.1% 이상이면서 질소, 인산, 칼리 성분의 합계 0.3% 이상→(개선) 질소, 인산, 칼리 성분의 합계 0.3% 이상
- 개정내용은 2022년 8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참고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보도자료) "액비 활용처 다각화로 새로운 경축순환농업 이끈다(가축분뇨 자원화 및 이용 촉진에 관한 규칙 개정 추진)"(5.30)

### 가축분뇨 액비 내 질소 함유량 기준 개선

- **추진배경** 악취민원 증가, 부숙도 기준 도입, 관수시설(시설원예, 골프장 등) 활용 등 액비 생산 및 이용 여건이 변화하여, 액비내 질소 함량 기준 개선 필요성 증대
- **주요내용** (내용) 최근 액비화 여건 변화에 맞게 불필요한 질소 기준을 삭제
  - (현행) 질소 함량 0.1% 이상이면서 질소, 인산, 칼리 성분의 합계 0.3% 이상 → (개선) 질소, 인산, 칼리 성분의 합계 0.3% 이상
  - \* '22.8월 「가축분뇨의 자원화 및 이용 촉진에 관한 규칙」 개정 예정
- **시행일** 2022년 8월

## 모든 개체별 이력관리 시범운영

농림축산식품부 축산경영과 (☎ 044-201-2346)

농장의 기록관리를 강화하고 사육현황의 정확도를 높여 수급관리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소와 같이 어미돼지(모돈)에도 귀표를 붙여 개체별로 관리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합니다.

- 종돈장 전체와 모돈을 사육하는 농장 중에 희망 농가를 대상으로 모돈에 귀표를 붙여 등록하고 이동·출하·폐사 시에 모바일 앱 등으로 간편하게 신고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 \* 현행 축산물이력제의 돼지는 매일 전체 사육 마릿수를 신고
- 모돈이 많이 성장하여 귀표 부착이 어려운 경우 한시적으로 QR코드(인쇄하여 개체현황판에 부착)로 관리하고, 농가에 모돈 개체별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시범운영의 성과를 높일 계획입니다.

참고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보도자료)“모든 개체별 이력관리 시범운영 개시”(6.8.)

### 모든 개체별 이력관리 시범운영

- **추진배경** 농장의 기록관리를 강화하고 사육현황의 정확도를 높여 수급관리 등에 활용하고자 모든 개체별 이력관리 필요성 대두(현재 농장별 관리)
- **주요내용**
  - (개요) 모돈(후보돈 포함)에 귀표를 부착하여 축산물이력관리시스템(웹)에 등록하고 이동·출하·폐사 시 신고하여 사육변동현황을 관리하는 시범사업
    - \* 모돈과 후보돈에 귀표를 부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귀표 부착이 어려운 경우는 한시적으로 모돈 개체현황표에 QR코드를 인쇄하여 관리
    - \*\* 사육변동현황 신고는 이력관리시스템 뿐만 아니라 모바일 앱으로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여 지원
  - (대상) 종돈장 전체(139개)와 모돈을 개체별로 전산관리하는 농장(약 960개) 중심으로 참여를 희망하는 농장
- **시행일** 2022년 6월 9일

## 축산농가 사료구매 비용 부담 완화

농림축산식품부 축산환경자원과 (☎ 044-201-2359)

최근 국제 공급망 문제 등으로 인한 사료가격의 급격한 인상에 대응하여 축산농가 사료구매 자금의 저리 지원을 통해 농가의 경영안정과 축산물 가격안정을 도모할 예정입니다.

- 가축 생산비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사료비가 올라 농가는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생산비의 증가는 물가 상승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 이에 기존 사료구매자금 3,550억원의 금리를 1%로 인하하고, ‘특별사료구매자금’ 11,450억원(금리 1%) 추가 확보(추경 예산 국회 확정, 5.29.)로 총 1.5조 원의 사료구매자금을 지원하여 농가의 사료비 부담을 완화할 계획입니다.
  - \* (현행) 규모 3,550억 원(금리 1.8%) → (개선) 15,000억원(1.0%)

참고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보도자료)“농식품부, 특별사료구매자금 1.5조 지원”(5.31.)

### 축산농가 사료구매 비용 부담 완화

- **추진배경** 최근 국제 공급망 문제 등으로 인한 사료가격의 급격한 인상에 대응하여 축산농가 경영비 부담 완화 및 축산물 가격안정 도모 필요
- **주요내용** (내용) 축산농가의 신규 및 기존 외상 사료 구매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기존 사료구매자금 3,550억원 외에 11,450억원(금리 1%)을 추가 확보(추경 예산 국회 확정, 5.29.)하여 총 1.5조 원 규모로 지원
  - \* (현행) 규모 3,550억원(금리 1.8%) → (변경) 15,000억원(1.0%)
- **시행일** 2022년 6월 3일 ~ 하반기

## 지역 먹거리 계획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공공급식통합플랫폼' 운영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사회복지과 (☎ 044-201-1527)

로컬푸드의 공공급식 확대 등 지역 먹거리 계획의 성공적 정착과 식재료의 안정적 수급 관리를 위해 공공급식통합플랫폼을 운영합니다.

- 지역 먹거리 계획을 통해 기존의 학교급식 외에 유치원·어린이집·군부대·사회복지시설·공공기관 등으로 로컬푸드가 공급되는 공공급식 영역 확대에 발맞추어 플랫폼 운영으로 지역 농산물의 효율적 관리와 공급·수요자 간 유기적 연계로 먹거리의 체계적 관리와 지역의 식재료 공급현황 관리가 가능해집니다.
- 또한, 플랫폼을 통해 국민에게 공공급식 식재료의 산지정보·지역특산·식품안전·식단레시피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식품가공원료매입·외식업체육성 자금 대출 금리 인하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진흥과 (☎ 044-201-2139)

2022년 6월부터 식품가공원료매입·외식업체육성 정책자금 지원 시 대출 고정금리가 0.5%p 인하됩니다.

- 국제곡물가격 상승 등 원자재비 비용이 증가한 식품·외식업계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고정금리를 인하합니다.
- 고정금리 인하는 6월 이후 대출이 시행되는 업체를 대상으로 적용될 예정입니다.
- 6월에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사업공고가 게시되고, 2주간 신청을 받아 융자지원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 공공급식 통합 플랫폼 구축

- **추진배경** 지역 먹거리순환 체계 구축의 일환으로 공공급식에 우수한 식재료 공급, 맞춤형 영양식단 편성·수발주·정산 기능 등 원스톱 처리로 편리성 제고 및 지자체 등의 중복 투입예산 절감
- **주요내용**
  - (거래시스템) 수요·공급자간 수·발주, 계약은 물론, 정산, 공급자의 재고 관리 기능과 급식지원센터 간의 정보교환 등의 기능 구현
  - (관리시스템) 지역별, 급식지원센터별 품목·계약량·재고량 등의 집계를 통해 국내(지역) 식재료 유통 현황 관리(통계기능)
  - (정보서비스) 공공급식 관계자뿐만 아니라, 플랫폼을 대국민에게 공개하여 산지정보·지역특산·식품안전·식단레시피 등 정보 제공
- **시행일** 2022년 9월

### 식품가공원료매입·외식업체육성 금리인하

- **추진배경** 국제곡물가격 상승에 따른 식품·외식업체의 비용부담 완화를 위해 금융지원 추진
- **주요내용**
  - (용도) 식품제조·가공업체 및 외식업체의 국산 원료 농산물 매입 등
  - (사업의무) 대출액의 125% 이상 국산 원료 농산물 구매 등
  - (금리) 고정금리 또는 변동금리 중 택일
    - 고정금리 : 농업경영체 2.5%, 일반업체 3.0%
    - \* 물가관계장관회의('22.3.4.), 업계 부담 완화를 위한 일시적인 금리 인하 (2.5~3.0% → 2.0~2.5)
    - \*\* 22년 2차 추경 협의('22.5월), 업계 부담 완화를 위한 추가 금리 인하 (2.0~2.5% → 1.5~2.0)
  - 변동금리 : 농협은행고시 농업정책자금대출 변동금리(변동주기 6개월)
- **시행일** 2022년 6월 2일

## 항만안전특별법 시행

해양수산부 항만운영과 (☎ 044-200-5774)

2022년 8월 4일부터 「항만안전특별법」이 시행(21.8.3. 제정)됨에 따라 '항만사업장별 총괄 안전관리시스템'이 도입됩니다.

- 항만하역사업자는 소속 직원뿐만 아니라 항만서비스업 종사자, 화물차 기사, 항운노조원 등 항만에 출입하는 모든 근로자에 대한 안전관리"를 총괄하게 됩니다.
  - \* 항만하역사업자는 모든 항만 출입자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각 항만에 배치된 항만안전점검관이 이행 여부를 수시로 점검
- 아울러, 항만근로자 안전교육이 의무화되어 하역사, 항만서비스 업체 등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를 대상으로 작업내용, 안전규칙, 위험요소 등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참고 해양수산부 홈페이지)보도자료)“항만안전특별법 시행”(예정)

### 항만안전특별법 시행

- 추진배경 항만하역사업장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항만사업장 안전대책' 수립(21.7.) 및 이를 뒷받침하는 「항만안전특별법」 제정(21.8.)
- 주요내용 항만사업장별 총괄 안전관리시스템 도입
  - 하역사는 항만사업장별로 모든 항만 출입자를 포함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관리청의 승인을 받아야 함
  - 항만안전점검관 제도가 도입되어 항만사업장별 안전관리계획서의 승인, 이행 여부 상시점검 등 항만재해 예방 전담
  - 항만근로자 안전교육 의무화로 하역사, 항만서비스 업체 등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를 대상으로 작업내용, 안전규칙, 위험요소 등에 대한 교육 실시
  - 항만별 노·사·정 항만안전협의체가 구성되어 항만안전사고 예방 활동
- 시행일 2022년 8월 4일

## 다목적 대형방제선 취항 및 배치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과 (☎ 044-200-5283)

대규모 해양 기름 유출사고 발생 시 심각한 해양환경오염과 경제적 피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다목적 대형방제선을 국내 최초로 건조하여 배치합니다.

- 다목적 대형방제선은 기상 악화로 인한 높은 파도에도 원활한 방제가 가능하며, 예인능력과 화재진압 설비를 갖추어 복합적으로 발생한 해양사고에도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합니다.
- 해양오염사고 발생 위험도와 전국적인 사고 대응 신속성을 고려하여 여수항(신북항)에 배치하고, 2022년 7월부터 24시간 비상근무 대응체계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참고 해양수산부 홈페이지)보도자료)“다목적 대형방제선 취항”(예정)

### 다목적 대형방제선 취항 및 배치

- 추진배경 악천후 및 외해 등에서 대규모 해양오염사고 시 선제적인 대응을 위한 5천톤급 다목적 대형방제선 건조사업 추진('18~'22)
- 주요내용
  - (주요제원) 총톤수 5,566톤(약 길이 104×폭 20.6×깊이 8.3m), 최대속력 13노트, 회수유 저장탱크 총 5.1천㎡, 건조사 HJ중공업, 정계지 여수항(신북항)
  - (운영) 해양환경공단 소유·운영, 대형 오염사고 시 투입하고 평상시에는 해양부유쓰레기 관련 수거사업 등에 활용
  - (기존 방제선과 차별성) 해양경찰청, 해양환경공단의 방제정(선)이 최대 500톤 수준으로서 연근해지역에서 활동하며, EEZ 해역 및 악천후 시 활용이 어려우므로 5천톤급 방제선 국내 최초 건조
- 시행일 2022년 7월 1일

## 갈치, 참조기, 삼치 총허용어획량(TAC) 제도 시행

해양수산부 수산자원정책과 ☎ 044-200-5534

2022년 7월 1일부터 갈치, 참조기, 삼치에 대해 총허용어획량(TAC, Total Allowable Catch) 제도가 적용됩니다.

- TAC 제도는 지속가능한 어업을 위해 수산자원관리가 필요한 어종에 대해 연간 어획할 수 있는 양을 정하여 관리를 하는 선진 수산자원 관리 제도입니다.
- 지금까지는 고등어, 살오징어, 전갱이 등 12개 어종에 대해 연근해 어획량의 30% 이하로 TAC 제도를 적용하였으며, '22년 7월 1일부터 갈치, 참조기, 삼치에 새롭게 TAC 제도를 적용하게 되면, 15개 어종을 대상으로 연근해 어획량의 40% 수준까지 TAC 제도의 적용이 확대됩니다.
- 정부는 2027년까지 연근해 어획량의 60% 수준까지 TAC 제도 적용을 확대하여 자원관리형 어업관리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며, TAC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TAC 제도 참여 어업인에 대한 경영개선자금, 직불금 지원 등 지원대책도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 총허용어획량(TAC) 단계적 확대

- **추진배경** 자원관리형 어업구조 정착을 위해 연간 어획 총량을 제한하는 TAC 제도 확대 추진
- **주요내용** TAC 관리대상 어종 및 업종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22년 하반기부터 갈치, 참조기, 삼치에 대해 새롭게 TAC 제도를 적용
- **시행일** 2022년 7월 1일

## 연근해어업 감척 사업에 정치망어업 신규 도입

해양수산부 어업정책과 ☎ 044-200-5516

2022년 7월부터 그간 허가어업\*만을 대상으로 하였던 연근해어업 감척 사업 대상에 '정치망어업\*\*'이 최초로 도입됩니다.

- \* 근해·연안·구획어업
- \*\* 정치망어업: 수산업법 제8조(면허어업)에 따라 일정한 수면을 구획하고 어구를 설치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으로 현재 전국 485개의 면허어장에서 활어용 어류, 멸치, 오징어 등 수산자원 조업
- 정치망어업 감척 사업에 참여하는 어업인은 평년수익액 3년분에 해당하는 폐업지원금과 어선·어구 잔존가액, 어선원 생활안정지원금 등을 지원받게 됩니다.

###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추진배경** 정치망어업의 비선택적 어법 특성상 연안의 어린물고기 및 포유류의 혼획률이 높고, 정부의 수산자원관리 제도 강화에 따라 단속 적발 증가하여 정치망 어업이 면허어업임에도, 어업경쟁력 제고와 수산자원 회복을 위해 감척 대상에 포함
- **주요내용** 연근해어업 구조개선법 감척 지원 대상에 정치망어업 포함
  - 연근해어업의 정의에 근해, 연안, 구획어업과 함께 정치망어업을 포함
  - 어업실태조사 대상에 정치망어업을 포함
  - 정치망어업 감척 시행계획은 정치망어업의 면허권자인 시·도지사가 수립
  - 정치망어업을 자율감척 대상에 포함하고 직권감척 대상에서는 제외
- **시행일** 2022년 7월 12일

## 어장 내 스티로폼 부표 신규 설치 금지 시행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과 ☎ 044-200-5623

2022년 11월 13일부터 양식장 등에서 사용되는 스티로폼 부표(EPS, 발포폴리스티렌)의 신규 설치가 단계적으로 금지됩니다.

- 어장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스티로폼 부표는 사용 중에 쉽게 파손되어 미세플라스틱으로 변하기 때문에, 어장환경을 훼손하고 해양 생태계를 위협하는 주요원인으로 지적되어 왔습니다.
- 이에, 김, 굴 등의 수하식양식장에서는 2022년 11월 13일부터, 그 외 모든 어장에서는 2023년 11월 13일부터 스티로폼 부표 사용이 금지됩니다.

참고 해양수산부 홈페이지(보도자료)“스티로폼 부표 없는 양식장 만들어간다”

### 어장 내 스티로폼 부표의 신규 설치 금지 시행

- 추진배경 환경친화적인 부표의 사용을 활성화하고 쉽게 변형되는 발포폴리스티렌 부표로 인한 어장환경 오염 예방
- 주요내용 어장관리법 시행규칙 제5조 개정(2021.11.12.)
  - (현행) 발포폴리스티렌(EPS) 부표의 경우 파손을 줄일 수 있는 고밀도(0.020g/cm<sup>3</sup> 이상) 제품
  - (개정) 발포 부표의 경우 발포폴리스티렌(EPS)이 포함되지 않은 제품 사용
- 시행일
  - 2022년 11월 13일: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면허를 받은 양식업 중 수하식양식업에 해당하는 양식업
  - 2023년 11월 13일: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면허를 받은 양식업 및 「수산업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면허를 받거나 같은 법 제41조제3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어업

## 굴 껍데기 등 수산부산물 재활용 확대

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 ☎ 044-200-5633

2022년 7월 21일부터 굴 패각 등 수산부산물의 친환경적인 처리와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지난해 7월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시행됩니다.

- 수산부산물 재활용 유형\*을 대폭 확대하여 석회석 대체재, 종자 배양용 인공채묘판, 인공어초, 화장품, 의약품, 식품 및 식품첨가물 등으로 수산부산물을 재활용할 수 있습니다.
  - \* (기존 재활용 유형) 건축차재 원재료, 비료, 사료, 공유수면 매립지역 성토재
- 또한 수산부산물의 최대 보관기간 연장\*, 처리업 허가 요건 완화\*\* 등 보관·처리에 관한 규제는 최소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 \* (배출) 기존 최대 90일→최대 180일 / (처리) 기존 최대 30일→최대 1년
  - \*\* (기존) 전용차량(밀폐, 압축·압착), 보관시설, 처리설비, 1일 처리능력, 인력 요건 (완화) 일반차량(덮개 설치), 보관시설, 처리설비, 인력 요건

참고 해양수산부 홈페이지(보도자료)“굴 껍데기 등 수산부산물 재활용,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 수산부산물법 제정 후속조치

- 제도정비 법률 제정(21.7.) 이후, 정책추진단 구성\* 및 하위법령 제정안을 마련(22.3.) 하고 입법예고 및 권역별 설명회\*\* 개최(22.3.~4.)
  - \* 국립수산물과학원, 한국어촌여행항공단, 법제연구원, 환경연구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수협 등
  - \*\* 전남권(3.28.), 경남권(3.29.), 충남권(4.12.), 제주권(4.15.)
- 향후계획
  - 「수산부산물법」 하위법령 마련(~22.7월), '제1차 수산부산물 재활용 기본계획' 수립\* 및 신규사업 편성(~22.12월)
  - \* 기본계획 수립연구(21.12월~22.6월)→초안 마련(~22.9월)→계획 수립(22.12월)



##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제 시행

산림청 임업직불제긴급대응반 (☎ 042-481-1242)

2022년 10월 1일부터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어 11월부터 임업인에게 임업직불금을 드립니다.

- 임업직불제는 산림의 공익기능을 증진하고 낮은 임가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매년 일정 금액을 임업인에게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임업직불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22.9.30.까지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로 등록하여야 하며, 국·공유림, 주거·상업·공업지역의 산지, 산업단지 내의 산지 등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임업직불금을 받기 위해서는 산지의 형상 유지, 산림보호활동, 공익교육이수 등의 의무사항을 매년 이행하여야 하며, 판매금액과 실제 종사한 일수 등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지급됩니다.
- 2022년 임업직불금은 6월 등록 신청 공고 후 7월부터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받을 예정이며, 8월~9월 자격요건 검증과 의무사항 이행점검 후 11월부터 지급할 예정입니다.

참고 산림청 홈페이지>행정정보>보도자료>“임업직불제 통과”

###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제 시행

- 추진배경 임업인의 소득보장과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에 대한 임업인의 기여를 보상하기 위한 임업직불제 도입
- 주요내용 의무준수사항을 이행하는 임산물생산업 또는 육림업 종사 임업인과 농업법인에게 직접지불금 지급
- 시행일 2022년 10월 1일(11월 지급 예정)



2022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 국방·병무



### 1 국방부

자세한 내용은 p.136

#### 군사법원법 개정에 따른 군 사법제도 개편

시행일 : 2022년 7월 1일

##### Before

- 군인 등이 범한 모든 범죄에 대해 군사법원이 재판권 행사
- 국방부와 각 군에 군사법원을 설치 및 운영
- 지휘관이 군사법원의 행정사무를 관장하는 관할관제도 운영
- 군사법원의 재판부를 군판사와 심판관으로 구성
- 장성급 장교가 지휘하는 부대에 보통검찰부 설치



##### After

- 성폭력범죄, 군인등의 사망사건의 원인이 되는 범죄 및 군인등이 그 신분을 취득하기 전에 저지른 범죄를 군사법원의 재판권에서 제외
- 군사재판 항소심(2심)을 서울고등법원으로 이관하고, 각 군 군사법원을 통합하여 국방부 장관 소속으로 각 지역 군사법원을 설치 및 운영
- 관할관제도 폐지
- 심판관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재판부를 군판사 3명으로 구성
- 국방부 장관 및 각 군 참모총장 소속으로 검찰단 설치



### 3 국방부

자세한 내용은 p.138

#### 장병내일준비적금 온라인 비대면 가입체계 시행

시행일 : 2022년 6월

##### Before

기존에는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 시 국방망 인사정보체계에서만 가입 자격확인서 발급 승인이 가능하였으며, 직접 은행에 방문하여 가입할 수밖에 없어 적시에 은행 가입이 제한되는 불편사항이 있었습니다.



##### After

앞으로는 '가입자격확인서 메일링서비스' 및 '온라인 비대면 가입체계'를 시행하여 '나라사랑포털'을 통해 은행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 장병내일 준비적금가입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 온라인 비대면 가입체계 적용 : 국민은행, 기업은행 시험 적용

### 2 국방부

자세한 내용은 p.137

#### 장병 기본급식비 인상

시행일 : 2022년 7월 1일

##### Before

기존에는 장병 1인당 1일 기본급식비 단가는 11,000원이었습니다.



##### After

장병의 급식만족도 향상을 위해 1인당 1일 기본급식비 단가를 13,000원으로 2,000원을 인상합니다.



### 4 병무청

자세한 내용은 p.139

#### 입영 전, 병역과 진로를 연계한 상담서비스 확대

시행일 : 2022년 7월

##### Before

서울·대구·광주·대전 병역진로설계지원센터에서 병역진로설계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 After

앞으로, 부산·춘천에 병역진로설계지원센터를 추가 설치하여 병역진로설계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군사법원법 개정에 따른 군사법제도 개편

국방부 법무담당관실 (☎ 02-748-6811)

2022년 7월 1일부로 군사법개혁 추진으로 군사법원법이 개정되어 군사법원, 군검찰, 군사경찰 관련 제도 및 조직이 개편됩니다.

- 군인 등이 범한 범죄에 대해서는 군사법기관에서 수사 및 재판을 담당하였으나, 그 중 성폭력범죄, 사망하거나 사망의 원인이 되는 범죄, 그리고 입대 전 범죄에 대해서는 민간 사법기관에서 수사 및 재판을 담당하게 됩니다.
- 군사재판에 대한 항소심(2심)은 고등군사법원에서 담당하였으나, 고등군사법원이 폐지되고 항소심은 민간법원(서울고등법원)으로 이관됩니다.
- 각 군에 설치된 군사법원을 국방부장관 직속의 군사법원으로 통합하고, 전국 5개 권역에 지역군사법원을 설치하여 1심 재판을 담당합니다.

참고 국방부 홈페이지(보도자료)“군 사법제도, 이렇게 달라집니다”

### 군사법원법 개정에 따른 군사법제도 개편

- 추진배경 군 장병의 재판받을 권리와 군조직의 특수성이 조화된 사법체계를 확립하는 동시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 주요내용
  - 성폭력범죄, 군인등의 사망사건의 원인이 되는 범죄 및 군인등이 그 신분을 취득하기 전에 저지른 범죄를 군사법원의 재판권에서 제외
  - 군사법원 항소심의 민간법원 이관 및 국방부 장관 소속의 군사법원 설치
  - 군판사 3명을 재판관으로 하고, 관할관 확인제도 및 심판관 관련 규정을 삭제하여 군판사에 의한 심판권 행사
  - 국방부 장관 및 각 군 참모총장 소속의 검찰단 설치, 군검사에 대한 구체적 지휘권 행사 제한
  - 군검사와 군사법경찰관의 협조업무 명시
- 시행일 2022년 7월 1일

## 장병 기본급식비 인상

국방부 물자관리과 (☎ 02-748-7485)

2022년 7월 1일부터 장병 1인당 1일 기본급식비 단가를 11,000원에서 13,000원으로 인상합니다. (\*22.5.29. 제2차 추경예산 국회 본회의 의결)

- MZ세대 장병의 급식만족도 향상을 위한 ‘선택형 급식체계\*’ 도입(국정과제)과 식재료 물가 상승 등 급식비 상승요인을 고려, 장병 기본급식비를 7월 1일부로 13,000원으로 인상하여 시행합니다.
  - \* 先 식단편성·後 식재료 경쟁조달 시스템 도입 등 ‘장병 급식 선택권’과 ‘식단편성의 자율성’ 확대를 내용으로 하는 장병 中心 급식 조달체계
- 급식비 인상을 통해 선호품목 확대(육류 등), 채소·과일 등 균형있는 영양공급, 조리하기 편리하고 품질이 보장된 식재료를 조달함으로써 장병에게 맛있고 질 좋은 급식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 정부는 장병 급식비의 지속적인 인상과 함께 현대화된 조리기구 도입 확대, 병영식당 환경개선, 조리인력 전문성 강화 등을 통해 장병들의 급식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 장병 기본급식비 인상

- 추진배경 MZ장병들의 급식만족도 향상을 위한 ‘선택형 급식체계’ 도입 및 식재료 물가상승 등을 고려하여 기본급식비 인상 추진
- 주요내용 장병 기본급식비를 1일 11,000원에서 13,000원으로 인상
- 시행일 2022년 7월 1일

### 장병내일준비적금 온라인 비대면 가입체계 시행

국방부 복지정책과 (☎ 02-748-6613)

2022년 6월부터 장병내일준비적금 온라인 비대면 가입체계가 시행됩니다.

- 기존에는 가입자격확인서가 국방망 인사정보체계에서만 발급승인이 가능하여 발급지연 또는 미발급 시 최초 은행가입이 제한되는 불편사항이 있었습니다.
- 이를 개선, 2022년 5월 12일부터 '가입자격확인서 메일링서비스'를 시행하여 가입자가 '나라사랑 포털 앱'을 통해 가입자격확인서를 직접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또한, 6월부터는 장병내일준비적금을 '나라사랑포털앱'을 통해 은행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 비대면 가입 가능하도록 국민은행과 기업은행에 한하여 시행합니다.
-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여건 개선을 통해 부대별 행정부담이 감소되고 장병 가입률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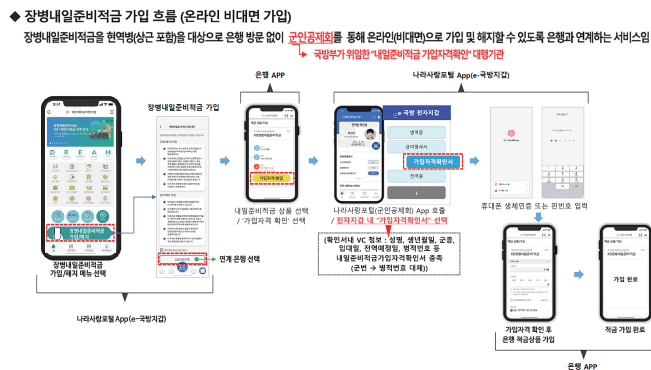
### 입영 전, 병역과 진로를 연계한 상담서비스 확대

병무청 현역모집과 (☎ 042-481-2722)

입영을 앞둔 청년들의 병역과 진로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개인 적성에 맞는 분야에서 군 복무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병역진로설계」 서비스가 확대됩니다.

- 종전에는 서울, 대구, 광주, 대전 등 4곳에 병역진로설계지원센터를 운영하였으나, 2022년 7월, 부산과 춘천에도 병역진로설계지원센터를 추가 설치하여 더 많은 지역의 병역의무자가 가까운 곳에서 전문 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상시 상담센터가 설치되지 않은 지역은 직업계 학교 등을 직접 방문하여 대면상담 등을 실시하고 온라인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 \* 병무청 누리집(www.mma.go.kr) → 청춘디딤돌 병역진로설계

#### 장병내일준비적금 온라인 비대면 가입체계 시행



#### 「병역진로 설계지원센터」 프로그램 운영

- 추진배경: 입영 전 병역진로설계 서비스를 통하여 군복무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해소하고 군복무가 성공적 사회진출의 디딤돌이 되도록 지원
- 주요내용:
 

1:1 병역진로상담	- 군 특기 연계, (온라인) 직업 선호도 검사 실시 - 전문상담관 1:1 심층 상담 → 적성·전공에 맞는 군 특기 추천
입영 정보제공	- 병역이행과정 절차 소개(취업맞춤특기병, 기술행정병 지원 등)
군 적응 체험교육	- 입영 전부터 전역까지 병역이행 전 과정에 대한 전사·체험관 운영 * 군 생활용품·사전 전사, 군 전투 장비 모의체험·군복·전투사량 사식 체험 등
- 센터 운영: 서울·대구·광주·대전센터(연중), 부산·춘천센터('22년 7월부터)  
\* 온라인 서비스 이용 : 병무청누리집) 퀵 메뉴>청춘디딤돌 병역진로설계 >개인·단체신청

## 입영판정검사 대상 확대 시행

병무청 병역판정검사와 (☎ 042-481-2918)

입영 후 군부대 신체검사를 대체하는 입영 전 병무청 입영판정검사 대상이 확대됩니다.

- 그 동안은 육군 제2작전사령부 예하 사단(충북 이남지역) 입영자에 대해 입영판정검사를 실시 하였으나, 앞으로는 지상작전사령부 동부권역 6개 사단(강원 일부지역) 입영자까지 확대됩니다.
- 이를 통해, 입영 후 귀가로 인한 국민불편을 해소하고 조기 사회진출을 지원하여 병역의무자의 편익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 입영판정검사는 2025년까지 연차별로 확대 시행할 계획입니다.

### 〈병무청 입영판정검사 연차별 실시 계획(안)〉

연도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대상 부대	2작사	2작사 + 지상작전사령부 일부 (舊 1군)	2작사 + 지상작전사령부 (舊 1, 3군)		전면시행 (육군훈련소, 해공군, 해병)

### 입영판정검사 대상 확대 시행

- 추진배경 입영판정검사 대상자 확대로 귀가로 인한 불편해소 및 조기 사회진출 지원
- 주요내용 입영판정검사 대상자 확대
  - (종전) 육군 제2작전사령부 예하 사단 입영자
  - (확대) 육군 제2작전사령부 예하 사단 + 지상작전사령부 6개 사단 입영자
- 시행일 2022년 7월

## 중앙신체검사소 신체검사 화상 문진 도입

병무청 병역판정검사와 (☎ 042-481-2918)

신체등급 5·6급 대상자, 정밀검사대상자 등이 대구에 소재한 중앙신체검사소를 방문하지 않고 화상 문진을 통해 신체등급 판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그 동안은 중앙신체검사소 신체검사대상자는 질병에 관계없이 직접 방문하여 대면 문진을 하였으나, 앞으로는 신체접촉을 통한 진단이 필요없는 질병\*에 대해서는 본인이 원하는 경우 거주지 인근 지방병무청에서 중앙신체검사소를 연결하여 화상 문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화상 문진 대상 질환 : (내과) 아나필락시스, 직업성 폐질환, 미만성 간질성 폐질환, 염증성 장질환, 지방간, 조직학적으로 확진된 만성간염 5급 대상 (신경과) 뇌성마비 5·6급 대상

- 이를 통해, 장거리 이동에 따른 시간적, 경제적 비용 절감 등 신체적 약자에 대한 편익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 중앙신체검사소 신체검사 화상 문진 도입

- 추진배경 중앙신체검사소로 방문을 위한 장거리 이동에 따른 시간적, 경제적 비용 절감 등 국민 편익 제고
- 주요내용 아래의 질병을 가진 사람 중 희망시 화상 문진 실시
  - (내 과) 아나필락시스, 직업성 폐질환, 미만성 간질성 폐질환, 염증성 장질환, 지방간, 조직학적으로 확진된 만성간염 5급 판정 대상
  - (신경과) 뇌성마비 5·6급 판정 대상
- 시행일 2022년 7월

## 모집병 지원 대상 기술자격·면허 종류 확대

병무청 현역모집과 (☎ 042-481-2719)

모집병에 지원할 수 있는 기술자격·면허 종류가 확대됩니다.

- 그 동안은 군 특기와 연계된 분야 전공자나 국가기술자격(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또는 일반자격(공인, 일반) 취득자만 모집병에 지원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일학습병행자격 취득자도 모집병 지원이 가능하고 국가기술자격과 동등한 수준으로 평가점수가 부여됩니다.
- 이를 통해, 산업현장 인재들이 모집병에 지원하여 기술자격과 연계된 군사특기 분야에서 군 복무를 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 모집병 지원 대상 기술자격·면허 종류 확대

• 추진배경 일학습병행자격증 취득자가 모집병 지원 시 기술자격 평가점수 부여, 기술자격 관련 군사특기 분야에서 군복무 기회 확대

• 주요내용 • 국가기술자격증과 동등 수준의 군사특기 관련 평가배점

국가기술자격 등급(육군 배점 예시)	일학습병행자격 등급
기사 등(50점)	L6, L5
산업기사(45점)	L4, L3
기능사(40점)	L2

• 모집분야 : (육군) 기술행정병, 전문특기병  
(해·공군, 해병대) 일반/기술행정병, 전문특기병

• 시행일 2022년 7월

## 국군체육부대 선수 병무청 모집·선발

병무청 현역모집과 (☎ 042-481-2719)

국군체육부대(상무)에서 운동선수로 복무하는 일반병(선수)을 병무청에서 모집·선발합니다.

- 그 동안은 국군체육부대 선수는 군에서 직접 선발하였으나, 앞으로는 병무청에서 '체육특기병'으로 모집·선발합니다.
- 지원서 접수는 병무청 누리집을 통해 편리하게 할 수 있고, 관계기관간의 협업으로 구비서류도 대폭 간소화됩니다.
- 이를 통해, 지원자들의 편익을 제고하고 병역자원을 더욱 정확하게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 국군체육부대 선수(병) 병무청에서 모집·선발

• 추진배경 국군체육부대 선수(병) 모집·선발 업무를 병무청으로 인수, 정확한 병역자원 관리 및 지원자들의 편익 증진

• 주요내용 • 모집분야/특기명 : 육군 전문특기병/체육특기병

• 지원자격  
- 대한체육회 회원종목 단체 또는 프로경기단체에 등록된 27세 이하 신체등급 1~4급인 현역 입영대상자

• 모집종목 \*종목별 연 1회 접수

레슬링, 유도, 태권도, 복싱, 역도, 사격, 체조, 근대5종, 육상, 펜싱, 수영, 바이애슬론, 양궁, 사이클, 남자축구, 럭비, 배구, 농구, 하키, 핸드볼, 야구, 배드민턴, 테니스, 탁구

\* 모집종목 및 인원 등 자세한 사항은 '22. 9월 병무청 누리집을 통해 확인 가능

• 시행일 2022년 9월

## 장애학생 활동 지원분야 사회복지무요원 특별휴가 확대

병무청 사회복지관리과 (☎ 042-481-3010)

장애학생 활동 지원분야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무요원의 특별휴가가 확대됩니다.

- 그동안 사회복지무요원의 특별휴가는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경우 연 10일 이내, 그 외 분야는 연 5일 이내로 부여하였으나, 장애학생 활동 지원분야\*의 경우 장애학생 일상생활 및 재활지원 등 업무환경 및 난이도가 다른 분야에 비해 높은 점을 고려하여 사회복지시설 근무자와 같이 연 10일 이내로 확대하였습니다.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의 활동 지원을 위해 유치원·초·중·고등학교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무요원

- 이를 통해, 장애학생 활동 지원분야에 근무하는 사회복지무요원의 사기진작 및 성실복무 유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장애학생 활동지원분야 사회복지무요원 특별휴가 확대

- 추진배경 복무분야별 업무난이도에 따른 특별휴가 기준을 정비하여 사회복지무요원 사기진작 및 성실복무 유도
- 주요내용 특수교육대상자의 활동지원을 위하여 유치원·초·중·고등학교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무요원은 연 10일 이내로 특별휴가 확대  
\* 종전 특별휴가 기준 : 연 5일 이내
- 시행일 2022년 7월

## 병역준비역 편입자 병역이행 절차 등 안내

병무청 병역판정검사과 (☎ 042-481-2916)

2022년 7월부터 병역준비역으로 편입된 사람에게 병역이행 절차 등을 안내합니다.

- 안내대상은 매년 18세가 되는 사람으로, 2023년에는 2005년생에게 1월 중 안내문이 발송될 예정이며, 주요내용은 병역준비역 편입 사실, 현역·보충역 복무제도, 병역이행절차 등입니다.
- 이를 통해, 병역이행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학업, 진로 등 미래 설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 병역준비역 편입자 병역이행 절차 등 안내

- 추진배경 병역준비역 편입자에게 병역정보 제공으로 궁금증 해소 및 학업, 진로 등 미래 설계에 도움을 주기 위함
- 주요내용 병역준비역에게 편입된 사실과 병역의무 이행을 위한 절차를 안내  
- 병역판정검사, 현역·보충역 등의 복무 등 병역이행 절차 포함
- 시행일 2022년 7월

## 예비군 편성자 병역이행 절차 등 안내

병무청 동원관리과 ☎ 042-481-2803

현역 등의 복무를 마친 후 예비군으로 편성된 사람에게 병역이행 절차 등을 안내합니다.

- 안내 대상은 2022년 7월 5일 이후 예비군에 편성된 사람으로, 편성 후 1~2개월 이내 안내문이 발송됩니다.
- 주요내용은 예비역 편입 사실, 예비군 복무기간, 비상시 병력동원소집, 평상시 병력동원훈련소집 및 연기, 병역처분변경 신청절차 등입니다.
- 이를 통해, 예비군으로서의 병역이행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 무기체계 연구개발사업 지체상금 면제사유 추가

방위사업청 조달기획과 ☎ 02-2079-6916

업체의 도전적 연구개발(국산화 개발 포함) 또는 업체주관 연구개발을 유도하고 업체가 개발 실패의 두려움 없이 개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체상금 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

- 업체의 도전적·창의적 연구개발사업 추진 간 가혹한 시험조건 또는 도전적 연구개발 수행에 따른 기술적 한계로 인해 개발이 지연된 경우 지체상금 면제사유를 추가하였습니다.
-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에 대한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계약상대자가 지체상금 면제 신청을 한 경우, 계약팀장은 연구개발 사업 추진 간 가혹한 시험조건 또는 도전적 연구개발 수행에 따른 기술적 한계 여부에 대해 국방기술품질원의 검토·확인을 받아 처리하도록 면제사유 확인 절차를 마련하였습니다.
- 금번 제도개선은 방위사업청 훈령 ‘군수품조달관리규정’ 개정 시행일(22.3.22.) 이후 면제원이 최종 결정되는 계약 분부터 적용됩니다.

### 예비군 편성자 병역이행 절차 등 안내

- 추진배경 예비군 편성자에게 병역정보 제공으로 궁금증 해소 및 학업·경제활동 등 일상생활에 도움을 주기 위함
- 주요내용
  - 내용 : 예비역 편입 사실, 예비군 복무기간, 병력동원소집, 병력동원훈련소집 및 연기 등 병역이행 절차에 대한 안내문 발송
  - 발송 시기 : 예비군에 편성된 날의 다음 달 말일까지
  - 발송 방법
    - 모바일 앱 : 모바일 수신에 대한 동의를 한 사람
    - \* 수신동의 신청방법 : 병무청 누리집(병무민원)접속하기)본인인증)병역의무 부과 통지서 모바일앱과 전자우편 수신동의) 또는 병무민원상담소 전화 ☎1588-9090
    - 일반 우편 : 모바일 수신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은 사람
- 시행일 2022년 7월

### 지체상금 제도개선

- 추진배경 최근 무기체계 연구개발사업 주관기관을 전환(국과연→업체)하여 업체주관 연구개발 사업을 장려하고 있으나, 주관기관 전환 시 업체는 개발 Risk 증가로 사업 참여를 기피하고 있어 연구개발 참여 업체의 부담 경감을 통한 사업참여 유도
- 주요내용 업체가 개발 실패의 두려움 없이 개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체상금 면제 사유 추가 및 면제사유 확인절차 마련
- 시행일 2022년 3월 22일



## 군용총포·도검·화약류 안전관리 지원사업 시행

방위사업청 방산정책과 (☎ 02-2079-6451)

「방위사업법 시행령」제66조의2에 따라 군용총포·도검·화약류(이하 “군용총포등”) 제조시설 사용허가 또는 저장허가를 받은 업체를 대상으로 안전관리 지원사업을 시행합니다.

- 지원사업은 ①안전보건경영시스템(ISO45001) 인증컨설팅 지원 ②안전보건경영시스템(ISO45001) 인증심사 지원 ③안전진단 지원 등의 세부사업으로 시행됩니다.
- 각 세부사업을 수행할 전문기관 선정이 완료(6월)되면 지원대상업체 선정절차(7~8월)를 거쳐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참고 「군용총포등 안전관리 지원사업 운영규정」

### 군용총포등 안전관리 지원사업 운영규정

- 추진배경 타 제조업 대비 중대재해 위험성이 현저한 군용총포등 제조업체의 자율적인 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함
- 주요내용
  - (지원규모) 업체당 연간 최대 3,000만원 한도 내 규모별 차등 지원
    - 지원대상업체가 대기업인 경우 : 총사업비의 50% 이내
    - 지원대상업체가 중견기업인 경우 : 총사업비의 60% 이내
    - 지원대상업체가 중소기업인 경우 : 총사업비의 70% 이내
  - (지원 우선순위) 안전보건경영시스템 미인증 업체, 종사자 수가 적은 업체, 중소기업, 당해 안전진단 지원사업 미지원 업체 우선
  - (세부사업)
    -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 지원사업 : 안전보건 관련 인증획득 지원 (컨설팅, 인증심사)
    - 안전진단 지원사업 : 각종 안전관리 상태에 대한 전문기관 주관 진단 지원
- 시행일 2022년 7월 1일



2022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 행정·안전·질서



# 10

### 1 외교부

자세한 내용은 p.153

#### 종전 일반여권(녹색) 병행발급 시행

시행일 : 2022년 5월 31일

##### Before

차세대일반 전자여권을 전면 도입하는 내용으로 「여권법시행령」이 시행(2021.12.21.)되었습니다.



##### After

종전 일반여권의 재고를 저렴한 발급 수수료로 병행발급이 가능하도록 「여권법시행령」을 개정합니다.



### 3 행정안전부

자세한 내용은 p.157

#### 온라인 청원 및 공개청원 전면 시행

시행일 : 2022년 12월 23일

##### Before

지금까지는 청원은 청원기관에 서면으로만 제출이 가능하였고, 공개청원제도는 없었습니다.



##### After

앞으로는 서면으로 제출하던 청원을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하고, 공개청원제도도 새롭게 시행됩니다.



### 2 행정안전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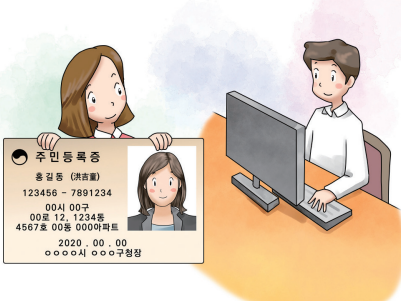
자세한 내용은 p.156

####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 시행

시행일 : 2022년 7월 12일

##### Before

지금까지 신분 확인이 필요할 때 본인이 소지하고 있는 실물 주민등록증을 통해 신분을 확인하였습니다.



##### After

앞으로는 주민등록증의 내용을 본인의 스마트폰으로 확인할 수 있는 모바일 확인서비스가 시행됩니다.



### 4 공정거래위원회

자세한 내용은 p.180

#### 상향식 표준하도급계약서 제·개정 방식 도입

시행일 : 2022년 7월 12일

##### Before

기존에는 공정위가 표준하도급계약서를 마련하여 보급하였습니다.



##### After

앞으로는 사업자·사업자단체 등이 표준하도급계약서를 마련하여 공정위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5 공정거래위원회

자세한 내용은 p.181

광고·판촉행사 가맹점주 사전동의제 실시

시행일 : 2022년 7월 5일

Before

기존에는 가맹본부가 광고·판촉행사를 실시한 경우 비용 분담금을 가맹사업자에게 통보하였습니다.



After

앞으로는 비용을 부담하는 광고·판촉행사에 대해 일정비용 이상 가맹점주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6 국가인권위원회

자세한 내용은 p.188

군인권보호관 제도 시행

시행일 : 2022년 7월 1일

Before

지금까지 군인권 개선에 힘써왔습니다.



진정사건 조사  
직권조사  
군구급시설 방문조사

After

앞으로는 군인권보호관 제도가 시행됩니다.



군부대 장병면담 및  
군인권상황 조사

1년  
경과사건  
조사

1년 이상 경과하여도  
이를 각하하지 아니하고 조사함

중전 일반여권(녹색) 병행발급 시행

외교부 여권과 ☎ 02-2002-0133

외교부는 올해 5월 31일부터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중전 일반여권(녹색) 병행발급을 개시합니다.(’22.5.31. 개정 「여권법 시행령」 시행)

- 차세대일반 전자여권을 전면 도입하는 내용으로 「여권법시행령」이 시행(2021.12.21.)되었으나, 중전 일반여권의 재고분을 재활용 및 소진하는 방안으로 국민들이 중전 일반여권 신청 시 저렴한 발급 수수료로 일반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중전 일반여권도 병행발급이 가능하도록 「여권법 시행령」을 개정하였습니다.
- 이에 따라, 중전 일반여권의 발급을 원하는 우리 국민은 재고 소진 시까지(최장 2024년 12월 31일) 유효기간이 5년 미만(4년 11개월)인, 여권발급수수료(15,000원)가 저렴한 중전 일반여권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 아울러, 정부24(www.gov.kr)를 통하여 여권 재발급 신청 시 중전 일반여권 선택이 가능합니다.  
※ 조폐공사(우체국)를 통한 여권 개별 우편배송서비스 이용은 불가

중전 일반여권(녹색) 병행발급 시행

- 추진배경 중전 일반여권의 재고 소진 및 예산 낭비 방지
- 주요내용 중전 일반여권의 발급을 원하는 사람에게 유효기간이 5년 미만인 일반여권 발급이 가능하도록 필요한 사항을 개정 (재고 소진 시까지(최장 2024년 12월 31일))
- 시행일 2022년 5월 31일

## 피해자 국선변호사에 대한 평가 제도 도입

법무부 여성아동인권과 (☎ 02-2110-3648)

형사절차에서 피해자의 권익 보장 및 2차 피해 방지를 위하여 피해자 국선변호사의 활동에 대한 평가 제도가 도입됩니다.

- 2022.5.9. 일부개정된 검사의 국선변호사 선정 등에 관한 규칙에 의하면 피해자 국선변호사를 선정한 검사에 의해 반기마다 피해자 국선변호사의 활동에 대한 종합 평가가 이루어집니다.
- 개정 내용은 2022년 7월 1일 이후 검사에 의해 선정된 피해자 국선변호인부터 적용되며, 다음 연도 국선변호사 명부 작성 시 참고자료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참고 법무부 홈페이지>법무뉴스>보도자료>“해명자료/설명자료”

### 피해자 국선변호사에 대한 평가 제도 도입

- 추진배경** 형사절차에서 피해자의 권익 보장을 위하여 피해자 국선변호사의 활동에 대한 평가제도 도입 필요
- 주요내용**
  - (평가 주체 및 시기) 피해자 국선변호사를 선정한 검사에 의해 반기별 평가
  - (평가 내용)
    - 의견서 제출
    - 형사 절차 참여 성실도
    - 피해자 권익 보호를 위한 노력
  - (결과 활용) 검사장 및 지청장이 다음 연도 국선변호사 명부 작성 시 참고자료로 활용
- 시행일** 2022년 7월 1일

## 천안개방교도소 여성수용자 개방시설로의 전환

법무부 교정혁신추진단 (☎ 02-2110-3792)

여성수용자의 과밀수용 완화와 처우개선을 위해 천안개방교도소를 여성수용자 개방시설로 전환하고 개방처우를 획기적으로 확대합니다.

- 법무부는 남성수용자 개방시설이었던 천안개방교도소를 여성수용자 개방시설로 전환을 하여 2022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 이에 따라 여성친화적 시설조성을 위해 화장실·샤워실 개선, 거실 내 침대사용, 화장대 비치 등 전면적인 시설개선을 실시하였습니다.
- 아울러 공동휴게실, 도서실, 디지털 정보화실, 자율조리 시설, 실내 체육시설 등을 조성하여 사회와 유사한 수용환경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 여성수용자에 대한 처우에 있어서도 귀휴 확대(주말 귀휴, 미성년 자녀 돌봄 귀휴), 사회견학 및 봉사활동, 외부기업체 통근, 외부직업훈련, 외부 종교행사 참석, 라디오 반입 허용 등 사회와의 경계를 허물기 위한 획기적 변화를 시도합니다.
- 천안개방교도소의 전환은 여성수용자의 과밀수용 완화뿐만 아니라 성공적인 사회복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천안개방교도소 여성수용자 개방시설로의 전환

- 추진배경** 여성수용자 과밀완화 및 처우개선
- 주요내용**
  - (시설개선) 샤워실·화장실, 거실 내 침대·화장대 등 여성친화적 시설 조성
  - (처우개선) 귀휴 확대, 외부 직업훈련·종교행사 참석 등 사회적 처우 확대
- 시행일** 2022년 하반기부터 본격 운영

##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 시행

행정안전부 주민과 ☎ 044-205-3155

2022년 7월부터 지갑 속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다니지 않아도 됩니다.(22.7.12. 「주민등록법」 일부 개정안 시행).

- 주민등록증의 수록 내용\*을 본인의 스마트폰으로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가 시행됩니다.
  -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사진, 발급일자, 주민등록증 발급기관
- 신분 확인이 필요할 때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를 이용하여 확인된 경우 주민등록증으로 확인한 것과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 ①민원서류를 접수할 때 또는 자격을 인정하는 증서를 발급할 때, ②편의점, 식당 등 일상생활에서 성년자 여부를 확인할 때(멤버십 등 민간서비스 영역 포함), ③공항, 여객터미널에서 탑승 시 신분확인이 필요할 때, ④사인 간 계약이나 거래 시에 주민등록증 대신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 서비스’를 이용하여 본인 여부를 확인할 때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주민등록이 말소되거나 주민등록증이 분실 등으로 유효하지 않은 경우 서비스 이용이 제한됩니다.

**참고** 행정안전부 홈페이지(보도자료)“이제 스마트폰으로 주민등록증 확인 가능해진다.”

###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 도입

- **추진배경**
  - 주민등록증 분실시 개인정보 유출 및 위·변조 우려에 따른 대책 필요
    - \* '21년 주민등록증 재발급 188만건 중 분실로 인한 경우가 125만건(67%)
  - 스마트기기 사용자 증가에 따른 새로운 신분확인체계 요구 증가
- **주요내용**
  - 전자정부 모바일 서비스 플랫폼(정부24 앱)을 이용하여 주민등록증 수록사항 확인 및 이에 대한 진위확인 기능 제공
    - (수록사항 확인) 주민등록시스템의 주민등록증 정보를 활용하여, 본인의 주민등록증 수록사항(지문정보 제외)을 스마트폰으로 표출
    - (진위확인) 타인의 스마트폰에 표출된 QR코드를 촬영하여, 주민등록증 수록사항에 대한 진위여부 확인
    - \* 스마트폰에는 개인정보 등이 저장되지 않아 분실에 따른 보안사고 예방
- **시행일** 2022년 7월 12일

## 온라인 청원 및 공개청원 전면 시행

행정안전부 국민참여혁신과 ☎ 044-205-2429

2022년 12월 23일부터는 서면으로 제출하던 청원을 온라인으로도 청원이 가능하게 됩니다. (‘20.12.22. 전부개정된 「청원법」시행)

- 지금까지는 청원기관에 서면으로만 제출이 가능했으나, 법률 개정을 통해 연말부터는 편리하게 온라인으로 청원을 신청할 수 있는 온라인 청원제도가 시행됩니다.
  - ※ 청원신청: (현행) 방문, 우편, 팩스 → (개정) 현행 방법 + 온라인 신청
- 온라인 청원을 시행하기 위해 온라인청원시스템\*을 구축 중에 있으며 시범운영을 거쳐 12월 23일부터 온라인 청원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 \* 청원 접수·분류·통지·이송 등 청원업무를 통합적으로 처리하는 전자 시스템

시스템 구축으로 청원사항에 대해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처리하는 공개청원도 12월 23일부터 시행됩니다.

- 공개청원은 법령 제·개정 또는 폐지나 공공의 제도·신설 운영에 관한 사항은 공개로 청원(공개청원) 할 수 있고, 시스템을 통해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 청원이 처리됩니다.

**참고** 행정안전부 홈페이지(보도자료)“청원법 60년 만에 전면개정으로 국민 청원권 대폭 강화(‘20.12.15.)”, “「청원법 시행령」제정안 국무회의 의결(‘21.12.14.)”

### 온라인 청원·공개청원 시행

- **추진배경** 국민이 편리하게 청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다양한 국민 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하여 온라인 청원 및 공개청원 도입
- **주요내용**
  - 온라인 청원 도입 :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청원 신청 가능
  - 공개청원 도입 : 법령 제·개정이나 공공시설·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해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공개적으로 처리
- **시행일** 2022년 12월 23일

## 지방의원 겸직 현황 등 의정활동 정보공개 확대

행정안전부 선거의회자치법규과 (☎ 044-205-3372, 3373)

2022년 7월 13일부터 지방의회 홈페이지 등을 통해 소속 의원의 겸직 신고 현황이 공개됩니다.(’21.1.12. 개정 「지방자치법」 부칙 제17조)

- 지방의회 의장은 지방자치법 제43조제5항, 부칙 제17조에 따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6.1.)에서 선출된 지방의회의원의 겸직 현황을 신고 받아 그 결과를 지방의회 홈페이지 등에 공개해야 합니다.

지방의회 의정활동에 대한 정보공개도 확대됩니다.

- ‘지방의회 의정활동 정보공개 가이드라인’에 따라 지방의회별로 상이한 정보공개 범위·내용·방법을 통일하고, 지방자치정보시스템을 통해 지방의회 의정활동 정보를 비교 가능한 형태로 주민에게 알기 쉽게 공개할 예정입니다.(’23~)

**참고** 지방자치법 제43조제4항

### 지방의회 의원 겸직 신고 사항 공개

- **추진배경** 정보공개를 통해 지방의회의원의 부적절한 겸직 등에 대한 책임성 확보 필요
- **주요내용** 의장에게 지방의회의원의 겸직 신고 내용을 연 1회 이상 해당 지방의회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의무 부여
 

제43조(겸직 등 금지) ④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3항에 따라 지방의회의원의 겸직신고를 받으면 그 내용을 연 1회 이상 해당 지방의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 **시행일** 2022년 7월 1일 (제9기 지방의회 임기 개시일부터)

##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 및 사업 시행

행정안전부 지역균형발전과 (☎ 044-205-3508)

2022년 8월부터 향후 10년간 연 1조원 규모로 운영되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의 금년도 배분액이 확정되고, 자치단체에서는 기금을 활용한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됩니다.

※ 2022년도는 총 7,500억원(기초 75%, 광역 25%)으로 운영

- 자치단체가 인구감소 실태 및 여건 분석을 토대로 수립한 기금 투자계획(안) 대해 전문가 평가와 기금심의위원회의 협의·자문 및 조합의 확정 절차를 거쳐 자치단체별 배분액이 결정되는 구조입니다.

- 기금배분액은 8월에 확정되고 자치단체에 배분됩니다.

**참고** 행정안전부 홈페이지>법령정보>「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 등에 관한 기준 고시」

###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 및 사업 시행

- **추진배경** 지역이 주도하여 인구감소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설치하여, 인구감소지역 집중 지원
- **주요내용**
  - (개요) 지역(인구감소지역 등) 주도의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재정 지원
  - (법적 근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
  - (규모/기간) 연 1조원(기초 75%, 광역 25%), 10년간 총 10조원 규모로 지원
    - ※ 다만, '22년도는 총 7,500억원(기초 75%, 광역 25%)으로 운영
  - (운용 주체) 17개 사도로 구성된 기금관리조합이 관리·운영
  - (배분방법) 기초는 투자계획을 평가\*하여 결과에 따라 차등 배분
    - \* 평가의 객관성, 공정성을 위해 전문가로 구성된 '투자계획 평가단'(조합) 구성·운영
    - 광역은 인구감소지수, 재정·인구 여건 등을 고려하여 정액 배분
- **시행일** 2022년 8월

## 주소기반 산업지원 서비스 시행

행정안전부 주소정책과 ☎ 044-205-3560

2022년 6월 9일부터 주소정보누리집(www.juso.go.kr)을 통해 주소기반 산업지원 서비스를 시행합니다.

주소기반 산업지원 서비스는 주소정보 활용 지원 정책, 주소정보의 공개·연계·제공, 주소검색 솔루션, 주소정보산업 동향 공유 등의 기능을 확대합니다.

- (주소정보 제공) 종전 9종의 주소정보를 「공개하는 주소정보」, 「제공하는 주소정보\*」로 구분하여 50종으로 확대
- \* 공간적 위치, 형상을 식별할 수 있는 자료는 보안 심사를 위해 신청 → 심사 → 제공 절차 도입

- (주소정보 산업지원) 공공데이터 변화 예측이 가능한 주소정책, 국제표준, 산업계 동향 및 비즈니스 모델 등 공유 채널 제공



### 주소기반 산업지원 서비스

- **목적**
  - 「주소정보 제공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국민 모두가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주소정보 제공
  - 정부와 기업 간 주소관련 산업계 소통창구 제공을 통해 주소와 위치 기반 산업계 활성화 및 신산업창출 지원
- **서비스 내용**
  - 「주소정보 제공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공개·제공하는 주소정보를 50종으로 확대·제공
  - 최신의 주소정보를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원격접근서비스(API) 제공
  - 올바른 주소정보의 활용방법과 시스템 구축에 관한 기술적 지원 등
- **기대효과**
  - 기업과 정부간 소통에 의한 효율적 주소정책 수립에 기반한 주소정보 생산, 공공재로서 주소정보 활용 활성화
  - 주소기반 산업의 생태계 조성, 주소관련 기업의 동반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통한 국민경제에 이바지

## 벤처나라 '예비지정' 사업 시범 운영

조달청 혁신조달운영과 ☎ 042-724-7121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기업의 상품을 기술품질심사 없이 벤처나라에 등록하도록 하여, 창업-벤처기업의 판로를 신속하게 지원합니다.

현재 벤처나라에 상품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외부전문가들의 기술품질평가에서 70점 이상 획득해야 가능하나, 청년기업(만 39세 이하)과 제조능력을 갖춘 초기 창업-벤처기업(3년 이내)은 최소한의 자격요건을 갖춘 경우, 심사없이 신속하게 벤처나라에 상품을 등록하여 홍보·판매할 수 있게 됩니다.

\* 법적·무인증 보유 여부, 초기 창업-벤처기업의 제조 여부 등

해당 상품은 6개월간 벤처나라에서 시범적으로 판매가 가능하며, '예비지정' 이후 벤처나라 상품으로 정식 지정될 경우 최대 5년 간 벤처나라에서 상품을 판매할 수 있습니다.

벤처나라 '예비지정' 사업은 2022년 7월부터 개시합니다.

### 벤처나라 '예비지정' 사업 시범 운영

- **추진배경** 전문가들의 기술품질심사 없이 벤처나라에 상품을 등록할 수 있는 패스트 트랙을 신설하여,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기업들의 판로를 신속하게 지원
- **주요내용**
  - 청년기업(만 39세 이하)과 제조능력을 갖춘 초기 창업-벤처기업(3년 이내)은 최소한의 자격요건을 갖춘 경우, 심사없이 신속하게 벤처나라에 상품을 등록하여 홍보·판매
  - 해당 상품은 6개월간 벤처나라에서 시범적으로 판매가 가능하며, '예비지정' 이후 벤처나라 상품으로 정식 지정될 경우 최대 5년 간 벤처나라에서 상품 판매 가능
- **시행일** 2022년 7월

## 「조달청 제조물품 직접생산확인 기준」 개정

조달청 조달품질원 조사분석과 (☎ 054-716-8161)

창업·벤처기업의 조달시장 진입 요건을 완화하고, 제도 운영 과정에서 도출된 현행 기준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직접생산확인 기준을 개정합니다.

- 직접생산확인 제도는 타사제품 납품 등 부당납품 업체를 차단하여 기술력 있는 건전·성실한 국내 제조업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2007년 이래로 도입 및 시행되어 왔습니다.
- 금번 개정내용으로는 ①창업·벤처기업 협업대상 확대, ②소프트웨어의 직접생산기준 완화, ③시정조치 요구 대상 확대, ④품명별 세부 직접생산확인 기준 적용시점 명확화 등이 있습니다.
- 이에 따라, 영세 중소기업들의 공공시장 진입이 한층 용이해지고, 제조등록 및 직접생산확인 점검에 대한 부담을 완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개정내용은 2022년 9월 1일 이후부터 적용됩니다.

### 「조달청 제조물품 직접생산확인 기준」 개정

- **추진배경** 창업·벤처기업 협업대상 확대 및 제도 운영 과정에서 도출된 현행 기준의 미비점 등에 대한 보완 및 정비 필요
- **주요내용**
  - 창업·벤처기업의 협업 대상을 (현행)중소기업에서 (개정)중견기업까지 확대
  - 소프트웨어의 경우 소프트웨어 기술자격을 갖춘 대표자 1인으로도 직접 생산이 가능하도록 예외 규정 신설
  - 자체기준표와 실제 생산방법이 상이한 경우 시정조치 기회 부여
  - 품명별 세부 직접생산확인 기준 적용시점 명확화 등
- **시행일** 2022년 9월 1일

## AI기반 발주지원, 'e-제안요청 도움' 시스템 오픈

조달청 정보기술계약과(☎ 042-724-7075)

인공지능을 활용한 공공SW사업 제안요청 발주지원을 위하여 AI기반 발주지원(e-제안요청 도움) 시스템을 구축·운영합니다.

- 「e-제안요청 도움」은 발주기관에 SW사업 제안요청서 자동생성 및 자가진단, 지능형 검색 기능을 제공하는 플랫폼입니다.
- 발주기관은 SW사업의 규모와 유형에 적합한 참가자격과 평가항목 등 제안요청서 표준서식을 받아들 수 있으며,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하여, 작성된 제안요청서 법령준수 및 요구사항 오류 등 조달요청 자가진단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 발주기관에 AI기반 제안요청서 자가진단 서비스 등을 제공하여 정보화사업 발주에 따른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고, 공공기관의 사업발주 편의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e-제안요청 도움'은 2022년 8월부터 서비스 개시합니다.

### AI기반 발주지원, 'e-제안요청 도움' 시스템 오픈

- **추진배경** SW사업 제안요청서를 쉽고, 빠르게, 정확히 작성·검토를 지원하기 위한 조달청 AI기반 발주지원 시스템('e-제안요청 도움')을 구축·운영하여 ICT발주 체계 선진화
- **주요내용**
  - 발주기관의 제안요청서 작성 단계에서 '참가자격', '평가항목' 등 공통사항을 Rule기반 제안요청서 자동생성 도구 제공
  - 조달발주 지식베이스 및 유형별 제안요청서 비교진단 모델을 구축하여 AI기반 학습데이터를 통해 제안요청서 자가진단기능 제공
  - 공공정보화사업에 대한 유형별 제안요청서 지능형 검색서비스 제공
- **시행일** 2022년 8월



## 전문건설사업자의 상호시장 진출실적 평가방안 마련

조달청 시설총괄과 (☎ 042-724-7350)

2022년 6월부터 국토교통부 실적인증기준\*에 따라 전문건설사업자가 상대시장(종합공사)에서 수행한 실적은 종합공사실적(21.1.1. 이후 진출실적)으로 시공경험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 「종합-전문업종 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건설공사실적 인증기준」제2조제1항제2호

〈상호시장진출 시 시공경험 평가(최근 5년 시공경험 평가)〉

참여공사	종합건설사업자		전문건설사업자	
	종합공사실적		종합공사실적(진출실적)	전문공사실적
종합공사	최근5년 시공경험		최근1년 시공경험	최근2년~5년 시공경험
전문공사	최근1년 시공경험	최근2년~5년 시공경험	최근5년 시공경험	
	전문공사실적(진출실적)	전문공사(전환)실적	전문공사실적	

■ 전문건설사업자가 상대시장(종합공사)에 진출하는 경우 최근 5년 시공경험 평가 시 '21년 실적(종합공사)과 '17~'20년 실적(전문공사)의 업종기준이 상이해 이에 대한 평가방법이 필요하여, '종합공사실적+전문공사실적' 평가가 가능하도록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을 개정합니다.

■ 개정내용은 2022년 6월 20일부터 적용됩니다

### 전문건설사업자의 상호시장 진출실적 평가기준 마련

- **추진배경** 전문건설사업자의 상대시장(종합공사) 진출실적 평가방안 마련을 위해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개정
- **주요내용**
  - 전문건설사업자의 종합 및 전문공사실적에 대해 병행평가 가능토록 기준 개정
  - 종합공사 실적을 보유한 전문건설사업자의 상호시장 진출 지원
- **시행일** 2022년 6월 20일

## 민간의 혁신기술을 공공에 도입하는 혁신제품 지정확대

조달청 혁신조달과 (☎ 042-724-7203)

기술혁신과 공공서비스 개선 효과가 높은 혁신적 제품을 공공이 선도적으로 구매하여 시범 사용하는 혁신제품 지정이 확대\*됩니다.

\* '21년 5회(상반기 3회, 하반기 2회)→'22년 10회(상반기 5회, 하반기 5회)

■ '22년 하반기에는 공급자제한형 3회, 수요자제한형 2회가 시행되며, 특히 국방부, 행정안전부 등 5개 기관과 협력하여 통합·발굴 기획한 수요자제한형 과제 공모가 시행됩니다.(9월 예정)

■ 혁신제품이 지정되면 3년간 수익계약으로 공공에 납품하고 조달청 시범구매 대상이 됩니다.

\* 22년도 시범구매(조달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5개 기관) 예산 525.1억원

[2022년 혁신제품 지정 공모 일정]

구분	차수	기간	지정 분야
공급자 제한	1차	(접수) '22.02.04.~'22.03.0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혁신성장 지원 분야</li> <li>• 국민생활문제 해결 분야</li> <li>• 한국판 뉴딜 2.0분야 등</li> </ul>
	2차	(접수) '22.05.16.~'22.06.16.	
	3차	(접수) '22.08.30.~'22.09.29.	
	수시	'22년 상·하반기	• 혁신제품 추천위원 추천제품
수요자 제한	1차	제품공모1차 (접수) '22.03.14.~'22.04.07.	• 공공기관 제안 과제
	2차	제품공모2차 (접수) '22.04.28.~'22.05.26.	• 공공수요 육성지원 과제 (수요 자유제한형, 수요 기획·개발형)
	<b>과제 공모 선정</b>		<b>(접수) '22.05.09.~'22.07.08.</b>
	3차	제품공모3차 (접수) '22.08.08.~'22.08.25.	• 공공기관 제안 과제
	수시	제품공모 '22년 하반기	• 공공수요 육성지원 과제 (수요 자유제한형, 수요 기획·개발형)
<b>과제 공모 선정</b>		<b>(접수) '22.10.17.~'22.12.09.</b>	• '23년 상반기 제품 공모

### 민간의 혁신기술을 공공에 도입하는 혁신제품 지정확대

- **추진배경** 기술혁신과 공공서비스 개선효과가 높은 제품의 선도적 구매를 위하여 기업의 혁신제품 참여기회 확대
- **주요내용**
  - 21년도 5회 지정 공모하던 것을 22년도에는 10회로 대폭 확대
  - \* (21년 상반기 3회, 하반기 2회) → (22년 상반기 5회, 하반기 5회).
  - 하반기에는 특히 국방부, 행안부 등 5개 기관과 협력하여 통합·발굴 기획한 수요자제한형 과제 공모 시행
- **시행일** 2022년 9월

## 회전교차로 통행방법 위반 시 범칙금·과태료·벌점 부과

경찰청 교통안전과 ☎ 02-3150-2252

2022년 7월 12일부터 회전교차로에 대한 정의 및 회전교차로 내 통행방법이 명확히 규정됩니다. (‘22.1.11. 「도로교통법」 개정)

- 기존 「도로교통법」은 일반교차로에 대한 정의만 존재하고 회전교차로에 대한 정의가 없었으나, 회전교차로에 대한 정의 규정이 도입되는 동시에 회전교차로 통행방법 규정이 도입되었습니다.
  - 차의 운전자는 회전교차로에서 △반시계방향 통행 △이미 진행하는 차량에 진로를 양보 △신호하는 경우 뒤차의 운전자는 앞차의 진행에 대한 방해금지의 의무를 집니다.
- 또한 회전교차로 통행방법을 위반하는 경우 근거 법률에 따라 범칙금·과태료·벌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률	범칙금(승용차)	과태료(승용차)	벌점
도로교통법 제25조의2 제1항	6만원	9만원	30점
도로교통법 제25조의2 제2항	4만원	5만원	-
도로교통법 제25조의2 제3항	4만원	-	-

## 보행자 우선도로에서의 보호의무 위반 시 벌칙 규정

경찰청 교통안전과 ☎ 02-3150-2252

차도와 보도가 분리되지 아니한 도로 중 보행자의 안전 등을 보장하기 위해 보행자 통행이 차마 통행에 우선하도록 지정한 “보행자우선도로”에 대한 정의가 신설되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 제31호의2 및 「보행안전법」 제2조 제3호)

- 보행자우선도로에서는 보행자가 ①도로의 전 부분으로 통행할 수 있고 ②경찰서장 등이 속도제한할 수 있으며 ③보행자 보호의무가 부과됩니다.
  - 차의 운전자는 보행자우선도로에서 보행자의 옆을 지나는 경우 안전한 거리를 두고 서행하거나, 통행에 방해가 되는 경우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해야하는 보행자 보호의무가 부과됩니다.
- 이를 위반할 경우 범칙금(승용차 기준) 4만원(보호구역 8만원),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
- 개정내용은 2022년 7월 12일부터 적용됩니다.

### 회전교차로 통행방법 위반 시 범칙금·과태료·벌점 부과

- 추진배경 회전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준수해야 하는 통행방법을 명확히 규정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안전을 확보
- 주요내용 회전교차로 통행방법 규정 및 위반 시 범칙금·과태료·벌점 규정
- 시행일 2022년 7월 12일

### 보행자 우선도로에서의 보호의무 위반 시 벌칙 규정

- 추진배경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아 보행자의 보행안전이 우려되는 구간 중 보행자우선도로로 지정된 곳에서 운전자에게 보행자 보호의무를 부과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안전을 확보
- 주요내용 보행자우선도로에서 보행자 보호의무 불이행 시 범칙금·벌점 규정
- 시행일 2022년 7월 12일

## 어린이보호구역 내 무신호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의무 위반 시 벌칙 규정

경찰청 교통안전과 ☎ 02-3150-2252

운전자에게 어린이보호구역 내 설치된 무신호 횡단보도 앞에서 보행자의 횡단 여부와 관계 없이 일시정지하는 내용의 보행자 보호 의무가 부과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범칙금 6만원·과태료 7만원이 부과됩니다.

■ 개정내용은 2022년 7월 12일부터 적용됩니다.

## 운전자 교통법규 위반 시 고용주등 과태료 부과항목 확대

경찰청 교통안전과 ☎ 02-3150-2252

운전자의 교통법규 위반 시 고용주등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항목이 현행 13개 항목에서 26개 항목으로 확대됩니다.

■ 영상기록매체에 의하여 교통법규 위반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근거 법률에 따라 고용주등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추가 항목	적용 법조(도로교통법)	과태료(승용차 기준)
통행금지 위반	제6조	5만원
안전지대 등 진입금지 위반	제13조	7만원
진로변경 금지 위반	제14조	4만원
유턴·횡단·후진 금지 위반	제18조/제62조	7만원/5만원
진로변경 방법 위반	제19조	4만원
앞지르기 금지 위반	제21조·제22조	7만원
등화점등 조작 불이행	제37조	3만원
진로변경 신호 불이행	제38조	4만원
승차인원, 적재용량 초과	제39조	7만원/5만원
안전운전 의무위반	제48조	5만원
운전중 휴대전화 사용 등	제49조	7만원
이륜차 안전모 미착용	제50조	3만원(이륜차)
차 밖으로 물건 던지는 행위	제68조	6만원

■ 개정내용은 2022년 7월 12일부터 적용됩니다.

### 어린이보호구역 무신호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위반 시 벌칙 규정

- 추진배경 어린이 보호구역 내 무신호 횡단보도 앞에서 보행자 보호의무를 강화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안전을 확보
- 주요내용 어린이보호구역 내 무신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도록 규정한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시 범칙금·과태료 부과
- 시행일 2022년 7월 12일

### 운전자 교통법규 위반 시 고용주등 과태료 부과항목 확대

- 추진배경 운전자의 교통법규 위반 시 고용주등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항목을 확대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안전을 확보
- 주요내용 운전자의 교통법규 위반 시 고용주등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항목 확대
- 시행일 2022년 7월 12일

## 특별교통안전교육의 교육시간 및 범칙금 상향

경찰청 교통기획과 ☎ 02-3150-2253

특별교통안전교육의 최대 교육시간이 48시간으로 상향되고, 교육을 이수하지 않는 경우 부과되는 범칙금액이 6만원 또는 4만원에서 15만원 또는 10만원으로 각각 상향됩니다.

- 특별교통안전교육의 실효성 확보와 음주운전 재범 예방을 위해 교육시간과 범칙금액이 상향됩니다.
  - 최근 5년 동안 처음 음주운전한 경우(종전 6시간→) 12시간, 최근 5년 동안 2번 음주운전한 경우(종전 8시간→) 16시간, 최근 5년 동안 3번 이상 음주운전한 경우(종전 16시간→)48시간으로 특별교통안전교육 교육시간이 상향됩니다.
  -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처분기간 내 미이수하는 경우 범칙금액이 6만원→ 15만원(5년 이내 2번 이상 음주운전), 4만원→10만원(5년 이내 처음 음주운전)으로 상향됩니다.
- 개정내용은 2022년 7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 특별교통안전교육의 교육시간 및 범칙금 상향

- 추진배경 특별교통안전교육의 실효성 확보와 음주운전 재범 예방을 위해 교육시간과 범칙금액 상향
- 주요내용 특별교통안전교육 시간이 최대 48시간으로 상향되고, 범칙금액이 15만원 또는 10만원으로 상향
- 시행일 2022년 7월 1일

## 중앙선 침범 위반 이륜자동차의 고용주등에 과태료 부과

경찰청 교통안전과 ☎ 02-3150-2252

이륜자동차등 운전자가 중앙선 침범 위반 시 고용주등에게도 과태료 부과가 가능해집니다.

- 기존 도로교통법령에서는 이륜자동차의 중앙선 침범 위반에 대한 과태료 금액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과태료 부과가 불가능했습니다.
  - 하지만 앞으로는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이륜자동차의 중앙선 침범 위반에 대한 과태료 금액(7만원)이 규정되어, 과태료 부과가 가능해집니다.
- 개정내용은 2022년 10월 20일부터 적용됩니다.

### 중앙선 침범 위반 이륜자동차의 고용주등에 과태료 부과

- 추진배경 이륜자동차등 운전자가 중앙선 침범 위반하는 경우에 대한 과태료 금액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과태료 부과가 불가능하여, 도로교통법령 개정을 통해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도록 규정
- 주요내용 이륜자동차등 운전자의 중앙선 침범 위반 시 고용주등에게 과태료 7만원 부과
- 시행일 2022년 10월 20일

## 소화기 성능이 정상인 경우 계속하여 연장사용 가능

소방청 소방산업과 (☎ 044-205-7511)

성능확인검사에 합격한 분말소화기는 계속하여 연장사용이 가능합니다.

- 기존 분말소화기의 경우 내용연수가 10년이 지나면 교체를 하게 되어있으며, 성능확인검사에 합격한 경우 1회에 한하여 3년 연장사용이 가능하였습니다.
- 이번 행정규칙 개정으로 내용연수 경과한 소화기는 성능확인검사를 통하여 합격한 경우 경과연수 20년 미만은 3년, 20년 이상은 1년을 계속하여 연장사용이 가능하게 됩니다.
- 관련 규정은 행정규칙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으로 2022.7월 중 시행 예정이며 발령일부터 적용됩니다.

### 내용연수 경과한 소화기 성능 정상인 경우 연장사용 제도 도입

- 추진배경 내용연수가 경과한 성능이 정상인 분말소화기의 지속적인 연장사용을 위한 제도 개선

- 주요내용
  - (현행) 분말소화기 내용연수(10년) 경과시 성능이 정상인 경우 1회에 한하여 3년 연장사용 가능
  - (개정) 성능확인검사에 합격한 경우 계속해서 연장사용 가능

현행	개정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용기간) 성능확인검사에 합격한 경우 1회에 한하여 3년 연장사용</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용기간) 성능확인검사에 합격한 경우 계속해서 연장사용이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과연수 20년 미만 : 3년</li> <li>- 경과연수 20년 이상 : 1년</li> </ul> </li> </ul>

- 시행일 2022년 7월(예정)

## 위험물운반자 자격 제도 시행

소방청 위험물안전과 (☎ 044-205-7482)

2022년 6월 10일부터 위험물운반자 자격 제도가 시행됩니다.

- ‘위험물운반자’는 화재 또는 폭발의 위험성이 강한 물질을 담은 용기를 대량 적재하여 수송하는 차량(화물트럭)의 운전자 또는 동승자를 의미하며 위험물 관련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 \* 휘발유, 등·경유, 윤활유, 페인트 등 도료류 등
  - \*\* 국가기술자격(위험물 기능장·산업기사·기능사) 또는 위험물운반자 교육 이수자(한국소방안전원)
- 위험물운반자 관련 「위험물안전관리법」이 2020년 6월 9일에 공포되면서, 2년 유예기간을 두어 2022년 6월 10일부터 시행되며, 자격없이 위험물을 수송할 경우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 위험물안전관리법 제37조 제4의2

### 위험물운반자 자격제 개요

- 추진배경 위험물을 운반하는 차량의 안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시행
- 주요내용 위험물을 수납한 용기를 운반하는 차량의 운전자 등은 일정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위험물 운반자로 종사한 이후부터 3년마다 보수 교육을 받도록 하는 제도임
- 시행일 2022년 6월 10일
  - 신규 종사자(‘21.6.10. 이후 신규로 종사하려는 자) : 종사 전 자격 취득
  - 종전 종사자(‘21.6.10. 당시 종사하고 있는 자) : ‘22.6.9.까지 관련 자격 취득

## 소방대상물 화재안전조사 결과 공개

소방청 화재예방총괄과 (☎ 044-205-7442)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소방대상물에 대한 화재안전조사 결과를 공개합니다.

- 기존에는 화재안전조사 이후 조치명령 불이행 등 제한적 사항만을 정보공개 하였으나, 관계인으로 하여금 자발적으로 소방시설 등의 보강을 유도하고 국민들의 알권리 및 안전선택권을 강화하기 위해 조사결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합니다.
- 2022년 12월 1일 이후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한 대상부터 적용되며 관계인은 화재안전조사 결과 공개에 대한 “공개내용”을 통보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관할 소방서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화재안전조사 결과 공개

- 추진배경** 화재안전조사 결과를 공개함으로써 관계인의 자발적 소방시설 등 화재안전 성능 보강을 유도하고 국민 알권리 부여
- 주요내용**
  - (기준) 화재안전조사 실시 결과 전부 또는 일부
  - (방법) 인터넷 홈페이지나 전산시스템
    - 소방대상물의 위치, 연면적, 용도 등 현황
    - 소방시설등의 설치 및 관리 현황
    -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설치 및 관리 현황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시행일** 2022년 12월 1일

## 화재예방강화지구 소방시설 설치 지원

소방청 화재예방총괄과 (☎ 044-205-7442)

화재예방강화지구에 소방시설 설치 명령시 화재예방 강화를 위한 소방시설 설치 등을 관계인에게 지원합니다.

- 지원 조건은 소방시설 설치 명령에 따라 화재예방강화지구 안의 소방대상물 및 지구의 부지 내에 설치하는 것이며, 시·도의 예산범위 내에서 관계인에게 지원하거나 소방관서에서 직접 설치하는 방식으로 2022년 12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화재예방강화지구		총 152개소(21.12.31. 기준)
① 시장지역 : 95개소	② 공장·창고 밀집지역 : 9개소	
③ 목조건물 밀집지역 : 18개소	④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밀집지역 : 21개소	
⑤ 석유화학제품을 생산하는 공장 지역 : 3개소	⑥ 산업단지 : 3개소	
⑦ 소방시설 및 소방용수시설 등이 없는 지역 : 0개소	⑧ 소방관서장 지정 : 3개소	

### 화재의 예방 등에 대한 지원

- 추진배경** 화재의 예방강화를 위해 관계인에게 화재안전 성능향상을 위한 설비의 설치를 명한 경우 이에 필요한 지원의 근거와 행정기관의 협조체제를 마련
- 주요내용**
  - (대상) 화재예방강화지구
    - 시장지역 / 공장·창고가 밀집한 지역 / 목조건물이 밀집한 지역
    -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
    - 위험물의 저장 및 처리 시설이 밀집한 지역
    - 석유화학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이 있는 지역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 소방시설·소방용수시설 또는 소방출동로가 없는 지역
  - (조건) 소방설비등 설치를 명하는 경우
  - (소방설비등) 소방설비와 안전설비
    - (소방설비) 소화기구, 자동소화장치, 단독경보형 감지기, 비상경보설비, 누전경보기, 가스누설경보기, 피난기구, 피난유도등, 비상소화장치 등
    - (안전설비) 아크차단기, 누전차단기, 가스차단기, 방화포 등
- 시행일** 2022년 12월 1일

## 화재안전취약자에 대한 소방용품 및 소방시설 개선지원

소방청 화재예방총괄과 (☎ 044-205-7442)

화재로부터 취약한 대상자에 대한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소방용품의 제공 및 소방시설의 개선사항을 지원합니다.

- 화재안전취약자는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홀로 사는 노인, 다문화 가족 등이며, 지원내용은 소방시설 안전점검, 소방시설 설치 및 개선, 소방용품 제공, 화재안전용품 제공 및 안전시설 개선 등입니다.

### 화재안전취약자에 대한 지원

- 추진배경 화재로부터 취약한 대상에 대하여 화재발생 시 필요한 최소한의 시설을 지원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의 보호와 안전생활환경 조성
- 주요내용
  - (화재안전취약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중증장애인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 대상자
    - 「노인복지법」에 따른 홀로 사는 노인
    -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 (지원사항)
    - 화재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소방시설 등의 안전점검
    - 화재안전취약자의 화재안전 확보를 위한 소방시설의 설치 및 개선
    - 화재예방 및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소방용품의 제공
    - 전기·가스 등 화재안전용품의 제공 및 안전시설의 개선
- 시행일 2022년 12월 1일

## 장애인 소방안전교육 법적 의무화

소방청 생활안전과 (☎ 044-205-7662)

소방안전교육 대상에 “장애인”을 법적으로 의무화하고 장애유형별로 소방안전교육과 훈련을 실시합니다.

- 교육대상은, “장애인복지시설에 거주하거나 이용하는 장애인”으로 사전에 장애인복지시설의 장과 협의하여 진행합니다.
- 관련 법률 개정과 함께 장애인 맞춤형 교육과정 및 교육자료를 연구·개발 중입니다.

### 장애인 소방안전교육 법적 의무화

- 추진배경 장애인은 비장애인보다 신체·인지능력 저하로 안전사고 발생 시 사고율과 사망률이 높음
- 주요내용
  - (교육대상)
    - 기존 : 영유아, 초·중·고등학생
    - 추가 : 장애인복지시설에 거주하거나 이용하는 장애인
  - (입법계획) 「소방기본법」제17조(소방안전교육·훈련) 제2항 개정
    - ※ 이종성 의원(국힘) 대표발의(4.8.), 행안위 회부(4.11.), 의건조회(4.22.), 상임위 상정(22년 하반기)
  - (교육내용) 장애인 맞춤형 교육과정 및 교육자료 연구·개발
- 시행일 2022년 하반기

## 웨이크서핑보트 안전운항규칙 신설

해양경찰청 수상레저과 (☎ 032-835-2560)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2022년 7월 시행 예정)을 통하여 수상레저시설·선착장 등이 밀집한 좁은 수면에서의 웨이크서핑보트활동에 대한 운항규칙이 신설됩니다.

- 인위적으로 파도를 생성하는 기구(웨이크서핑보트 등) 운항 시 계류장, 사업장 등 수상레저시설 및 선착장으로부터 150미터 이내의 구역에서는 5노트(kt, mile/h) 이하의 속력으로 운항하여야 하고 파도생성장치를 작동해서는 안됩니다.
- 운항규칙을 위반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 수상레저종합정보포털 ‘상담서비스(챗봇)’ 도입

해양경찰청 수상레저과 (☎ 032-835-2652)

수상레저종합포털(<https://boat.kcg.go.kr>)에서는 정부·민간 정보망 연계를 통해 수상레저 활동과 관련된 안전, 행정절차 등의 정보를 한 공간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 ‘수상레저종합포털’에 ‘수상레저상담서비스(챗봇)’을 도입하여 궁금한 민원사항을 24시간 365일 레저 활동을 즐기는 국민들에게 즉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현재 챗봇 서비스는 2022년 7월부터 시범운영하고, 2022년 8월부터 전 국민들에게 수상레저 상담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 웨이크서핑보트 안전운항규칙 마련

- 추진배경 인공파도 생성 보트(웨이크서핑보트 등)의 무분별한 활동 증가에 따른 주변 수상레저시설·선착장 등의 인적·물적 피해 속출
- 주요내용
  - (원칙) 수상레저시설·선착장 등으로부터 150미터 이내의 구역에서 인위적으로 파도를 생성하는 기구 운항 금지
  - (예외) 5노트 이하의 속력으로 운항하며, 파도생성장치를 작동하지 않을 경우 운항 가능
  - (처분) 위반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시행일 2022년 하반기
  - \* 현재 법제처 심사 중, 심사 완료시 즉시 공포·시행 예정

### 수상레저상담서비스(챗봇) 구축

- 추진배경 민원신청의 불편함과 증가하는 상담·민원을 위한 대책 필요
- 주요내용
  - (서비스 대상) 수상레저 활동을 하는 사람
  - (서비스 내용) 자주 묻는 질문 및 단순정보 안내를 챗봇으로 24시간 365일 온라인으로 서비스
- 시행일 2022년 8월



## 상향식 표준하도급계약서 제·개정 방식 도입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정책과 (☎ 044-200-4584)

사업자, 사업자단체 등이 표준하도급계약서 제·개정안을 제출하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승인하는 방식의 상향식 표준하도급계약서 제·개정절차가 도입되었습니다.

- 이로 인해 긴급한 수요나 현장에서의 필요성을 즉각 반영한 시의성 있는 표준하도급계약서가 마련·배포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개정내용은 2022년 7월 12일 이후부터 적용됩니다.

**참고**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공정위 뉴스>공정위 소식>보도>“하도급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게시일 2021.12.9.)

### 상향식 표준하도급계약서 제·개정 방식 도입

- **추진배경** 사업자등이 긴급한 수요나 현장에서의 필요성을 즉각 반영할 수 있도록 표준하도급계약서 제·개정방식을 개선
- **주요내용**
  - 사업자, 사업자단체가 표준하도급계약서 제·개정안을 마련하여 공정위에 심사청구 가능
  - 공정위는 수급사업자의 피해가 우려되거나 표준하도급계약서 정비가 필요한 경우 사업자에게 표준하도급계약서 제·개정안 심사청구를 요청할 수 있음
- **시행일** 2022년 7월 12일

## 광고·판촉행사 가맹점주 사전동의제 실시

공정거래위원회 가맹거래과 (☎ 044-200-4934)

가맹점사업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광고 또는 판촉행사를 가맹본부가 실시하려는 경우 그 비용 부담에 관하여 법정 비율 이상(광고 50% 이상, 판촉행사 70% 이상)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다만, 가맹본부 및 가맹점사업자가 광고·판촉행사와 관련하여 법정 요건을 갖춘 약정을 체결한 경우 별도의 동의 없이 시행 가능합니다.
- 또한, 판촉행사의 경우에는 해당 판촉행사의 비용 부담에 동의한 가맹점사업자만을 대상으로 하여 판촉행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 개정내용은 2022년 7월 5일 이후 실시하는 광고·판촉행사부터 적용됩니다.

**참고**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공정위 뉴스>공정위 소식>보도>“가맹사업법, 대규모유통업법, 방문판매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게시일 2021.12.9.),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게시일 2022.5.31.)

### 광고·판촉행사 가맹점주 사전동의제 실시

- **추진배경** 가맹본부의 일방적 광고·판촉행사 실시로 가맹점주가 예측하지 못한 비용을 부담하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함
- **주요내용**
  - 가맹점주가 비용을 부담하는 광고·판촉행사를 가맹본부가 실시하려는 경우 사전에 일정 비율 이상(광고 50%, 판촉행사 70% 이상)의 가맹점주 동의를 얻어야 함
  - 다만, 광고·판촉행사와 관련하여 법정 요건을 갖춘 약정을 체결한 경우 별도 동의 없이 시행 가능
- **시행일** 2022년 7월 5일

## 가맹·유통·대리점 분야 동의의결제도 도입

공정거래위원회 가맹거래과 (☎ 044-200-4934)

공정거래·소비자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는 동의의결제도가 가맹·유통·대리점 분야에도 도입됩니다.

- 동의의결제도란 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사업자가 스스로 피해구제·원상회복 등 자진시정 방안을 제안하면, 이해관계인 등 의견수렴을 거쳐 시정방안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입니다.
- 이를 통해 가맹점·납품업자·대리점 등 소상공인에 대한 신속하고 효과적인 피해구제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 가맹·유통 분야의 개정내용은 2022년 7월 5일 이후부터, 대리점 분야의 개정내용은 2022년 6월 8일부터 적용됩니다.

**참고**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공정위 뉴스>공정위 소식>보도>“가맹사업법, 대규모유통업법, 방문판매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게시일 2021.12.9.), “대리점법, 가맹사업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게시일 2021.11.11.)

### 가맹·유통·대리점 분야 동의의결제도 실시

- 추진배경** 가맹점·납품업자·대리점 등 소상공인에 대한 신속하고 효과적인 피해구제책 마련 필요
- 주요내용** 가맹·유통·대리점 분야에 동의의결제도 도입
- 시행일** 2022년 7월 5일(대리점법: 2022년 6월 8일)

## 대리점종합지원센터 출범

공정거래위원회 대리점거래과 (☎ 044-200-4966)

2022년 9월부터 교육·상담·분쟁해결 등 대리점과 공급업자(본사)에게 다양한 지원을 하기 위해 대리점종합지원센터가 시범 운영을 개시합니다.

- 공급업자의 법 위반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공급업자에게 대리점법 관련 교육 및 상담을 제공합니다.
- 대리점이 공급업자와 분쟁을 겪고 계실 경우 무료 상담과 사안에 따른 맞춤형 해결방안(분쟁조정 신청, 공정위 신고, 민사 소송 등)을 제시해주며, 관련 서류 작성도 도와드립니다.
- 공급업자와 대리점 간 협상을 중재하거나 정기회의체를 구성하는 등 갈등을 완화하는 역할도 수행합니다.

**참고**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공정위 뉴스>공정위 소식>보도>“개정 대리점법·시행령 및 관련 고시 시행”(게시일 2022.6.8.)

### 대리점종합지원센터 출범

- 추진배경** 대리점 및 공급업자 등을 대상으로 대리점법을 교육·상담하고, 대리점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어려움이나 분쟁 등을 신속하게 해결할 상시기관 필요
- 출범 일정**
  - 2022.6.8. : 대리점종합지원센터 지정 및 위탁고시 시행
  - 2022.7.-8. : 대리점종합지원센터 지정계획 공고 및 지정(예정)
  - 2022.9. : 대리점종합지원센터 시범 운영(예정)

## 생협 활성화를 위한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및 시행령 개정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과 (☎ 044-200-4407)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하 “생협”)의 원활한 운영과 활성화를 위해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이하 “생협법”) 및 시행령을 개정하였습니다.

- 생협은 ①지자체 및 학교로부터 시설·물품 사용료 면제를 받을 수 있게 되고, ②전자·서면 등 비대면 총회 및 이사회 개최가 허용되며, ③사업 유형별로 전국연합회를 설립할 수 있게 됩니다.
- 개정내용은 2022년 6월 8일 이후 적용됩니다.

**참고**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공정위 뉴스>공정위 소식>보도>“생협법 및 방판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게시일 2021.11.11.)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및 시행령 개정

- **추진배경** 생협의 지역사회 등에 대한 기여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제도적 지원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음에 따라 생협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 **주요내용**
  - 생협의 지원주체 및 내용 확대
  - 생협 발전계획 수립 근거 마련
  - 서면·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선거권 행사 허용
  - 원격통신수단을 이용한 이사회 개최 허용
  - 연합회 및 전국연합회 임원정수 상한 확대 및 비조합원 임원 허용
  - 사업 유형별 전국연합회 도입
- **시행일** 2022년 6월 8일

## 공정거래 위반행위 신고서식 전면 개정

공정거래위원회 심판총괄담당관실 (☎ 044-200-4122)

2022년 7월 29일부터 공정거래 위반행위를 신고하는 신고인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 신고서식이 개정됩니다.(’22.7.29. 개정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시행)

- 일반 국민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법 위반 혐의 사실을 신고하고자 할 때, 신고서 작성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주요 위반행위별로 신고서 작성 예시를 제공합니다.
- 아울러, 신고하고자 하는 행위가 법률에 따른 위반행위에 해당하는지 신고인 스스로 점검할 수 있도록 체크리스트 형식의 사전점검표를 제공합니다.
- 변경된 신고서식은 2022년 7월 29일 이후부터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공정위 뉴스>공정위 소식>보도>“사건절차규칙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게시일 2022.6.13.)

### 공정위 신고서식(15종) 전면 개정

- **추진배경** 신고인에게 공정위 소관 법률의 숙지 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신고서식 작성의 편의성 제고
- **주요내용**
  - 신고서 작성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주요 위반행위별로 신고서 작성 예시 제공
  - 신고하고자 하는 행위가 법률에 따른 위반행위에 해당하는지 신고인 스스로 점검할 수 있도록 체크리스트 형식의 사전점검표를 제공
- **시행일** 2022년 7월 29일

## 부패신고자 보호·보상 대폭 강화

국민권익위원회 심사기획과 (☎ 044-200-7694, 7697)  
국민권익위원회 보호보상정책과 (☎ 044-200-7754)

2022년 7월 5일부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 변호사를 통한 부패행위 비실명 대리신고가 가능해지고 부패신고자에 대한 책임 감면범위 및 구조금 지급이 확대됩니다.

- 부패신고자는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고 대리인인 변호사의 이름으로 안심하고 부패행위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 또한, 부패신고자가 신고와 관련해 자신의 위법행위가 발견된 경우 형사처벌과 징계처분 감면뿐만 아니라 행정처분까지 감면할 수 있도록 책임감면 범위가 확대됩니다.
- 아울러, 현재 신고로 인한 해고 등의 원상회복과 관련된 소송비용에 대해서만 지급되던 구조금이 명예훼손, 무고 등의 신고로 인한 모든 소송비용에 대해서도 지급됩니다.

**참고**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보도자료)「국민권익위, 부패행위도 변호사 통한 대리신고 가능해져...부패신고자 보호·보상 대폭 강화」

### 부패신고자 보호·보상 대폭 강화

- **추진배경** 부패행위 신고자에 대한 보호·보상을 강화하기 위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 **주요내용**
  - 부패행위 비실명 대리신고제 도입
  - 부패신고자가 신고와 관련해 자신의 위법행위가 발견된 경우, 형사처벌과 징계처분 감면뿐만 아니라 행정처분까지 감면할 수 있도록 책임감면 범위를 확대
  - 구조금 지급범위가 기존 부패신고로 인한 원상회복과 관련된 소송비용에서 부패신고로 인한 모든 소송비용으로 확대
- **시행일** 2022년 7월 5일

## 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 전면 시행

원자력안전위원회 안전정책과 (☎ 02-397-7267)

2022년 6월 9일부터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원자력안전에 대한 신뢰 증진을 위한 「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원자력안전정보 공개가 크게 확대됩니다.

- 이 법률의 시행으로 앞으로는 원자력사업자를 포함한 정보 생산기관은 일부 비공개 정보를 제외한 모든 원자력안전정보를 직접 공개해야 합니다.
- 또한, 원안위는 온라인과 지역별 오프라인 원자력안전정보공유센터를 구축(~2023년)하여, 수요자별 맞춤형 정보 콘텐츠를 제공(2024년~)함으로써 국민의 정보 접근성을 개선할 예정입니다.

**참고** 원자력안전위원회 홈페이지(보도자료)「원자력안전정보, 누구나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 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 전면 시행

- **추진배경** 원자력이슈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활발해지면서, 원자력안전정책에 대한 정부의 신뢰구축을 위한 투명한 정보공개 필요성 제기
- **주요내용**
  - 규제기관, 사업자 등 정보를 생산하는 기관이 해당 정보를 직접 공개하도록 공개주체를 확대하여 적극적인 정보공개 유도
  - 원칙적으로 모든 원자력안전 관련 정보를 공개하고(Negative 방식), 공개대상 정보도 규제 최종단계 외에 중간단계 정보까지 확대
  - 온라인으로 정보를 공개할 뿐만 아니라 원자력시설 주변지역에 오프라인 정보공유센터를 설치하여 지역주민의 정보 접근성 개선
  - 원자력시설 주변지역의 지자체 및 지역주민과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원자력안전협의체 설치 및 법적 근거 마련
- **시행일** 2022년 6월 9일

## 군인권보호관 제도 시행

국가인권위원회 군인권보호총괄과 (☎ 02-2125-9661)  
국방부 군인권총괄담당관 (☎ 02-748-6831)

2022년 7월 1일부터 군인권보호관 제도가 시행됩니다.

(‘22.1.4.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 법률안」 개정)

- 군인권보호관은 군인권보호위원회의 위원장이 되고, 국방부장관은 군인들의 인권 침해와 차별행위 진정권을 보장하기 위해 우편·전화·인터넷 등 진정수단을 제공하고 이를 홍보하여야 합니다.
- 국가인권위원회는 1년이 지난 군인권침해사건도 각하하지 않고 조사합니다. 기존 국가인권위원회는 1년이 경과된 진정은 각하를 원칙으로 하였으나, 군인의 경우 군 복무 중에 진정하는 것이 제한될 수 있음을 고려하여 군인의 경우 전역 후 1년내에 진정하면 이를 조사하기로 한 것입니다.
- 군인권보호관은 군부대 방문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군인권보호관과 조사관이 직접 군부대를 방문하여 군인권상황을 살피고, 군인들을 면담하거나 자료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기존 방문조사는 군 교도소 등 구금시설에 한정되어 시행되었습니다.
- 국방부장관은 2022.7.1.부터 복무 중인 군인의 사망사실을 군인권보호관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군인권보호관은 군인의 사망사실을 통보받고 조사·수사에 입회할 수 있습니다.

### 군인권보호관 제도 시행

- 추진배경 국방의 의무를 수행 중인 군인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하여 군인권 종합 권리구제 기구인 군인권보호관 제도를 시행
- 주요내용 군인들의 인권 침해와 차별행위 조사구제, 군부대를 방문하여 군인을 면담하고 군인권상황을 조사, 사망사건을 통보받고 조사에 입회 등
- 시행일 2022년 7월 1일

##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 대책 수립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정책과 (☎ 02-2100-3052)

디지털 시대 아동·청소년이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주체로서 권리를 행사하고 안전하게 보호 받을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한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을 '22년 7월내 발간하겠습니다.

- 사업자가 준수해야하는 개인정보 처리단계별 체크리스트 제공 및 상황별 서비스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개인정보처리에 대한 실효성을 제고할 것입니다.
- 또한, 보호자를 대상으로 개인정보 보호 교육 방법 및 보호자가 아동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세어런팅’ 방지 중요성 등을 안내하여 보호자의 인식을 개선할 것입니다.
- 아동·청소년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연령대별·상황별 보호 수칙을 마련하겠습니다.

###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

- 추진배경 아동·청소년의 온라인 활동의 증가로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증가하고 정보 주체로서의 인식이 부족해, 아동·청소년의 인식개선 및 환경 개선의 필요
- 주요내용
  -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 자율점검표(사업자편)」  
- 아동·청소년의 개인정보 처리단계별 체크리스트를 제공
  -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 수칙(아동·청소년 및 보호자편)」안내  
- 아동·청소년에게 연령대별·상황별 보호 수칙 안내  
- 보호자·교사 등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보호 교육 방법 및 아동의 프라이버시 보호방법 안내
- 시행일 2022년 7월

## 가명정보 활용지원 통합 플랫폼 서비스 개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데이터안전정책과 (☎ 02-2100-3074)

가명처리 시스템이 없는 개인·기업·연구자가 가명정보를 활용하거나 가명정보 처리기술을 훈련할 수 있는 “가명정보 활용 종합플랫폼”이 구축되어, 2022년 하반기 중 서비스를 개시합니다.

- 가명정보 활용 종합플랫폼을 통해 비대면으로 가명처리·적정성 검토를 지원받을 수 있고, 다양한 재현데이터를 활용해 가명정보 활용기술을 훈련할 수 있습니다.
- 또한 가명정보 결합신청자를 위한 사전결합률 확인, 결합하려는 데이터 매칭을 지원하는 서비스도 제공됩니다.

### 가명정보 활용 종합플랫폼 구축

- 추진배경 가명처리 시스템이 없는 기업·연구자 등이 편리하게 가명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온라인 인프라 구축
- 주요내용
  - (기술지원) 비대면 가명처리 및 적정성 검토 지원
  - (자가훈련) 가명·익명처리 사이버 훈련장 및 대용량 재현데이터 구축
  - (결합지원) 가명정보 결합신청자를 위한 사전결합률 확인, 데이터매칭지원
- 시행일 2022년 하반기

분야별 달라지는 주요제도  
신구대비표

기획재정부

구분	종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유류세 인하폭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별소비세법 시행령</li> <li>• (LPG부탄)인하 전 : 275원/kg '22.5.1.~7.31. : 193원/kg</li> <li>■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li> <li>• (휘발유)인하 전 : 529원/ℓ '22.5.1.~7.31. : 370원/ℓ</li> <li>• (경유)인하 전 : 375원/ℓ '22.5.1.~7.31. : 263원/ℓ</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별소비세법 시행령</li> <li>• (LPG부탄)인하 전 : 275원/kg '22.7.1.~12.31. : 176.4원/kg</li> <li>■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li> <li>• (휘발유)인하 전 : 529원/ℓ '22.7.1.~12.31. : 332.5원/ℓ</li> <li>• (경유)인하 전 : 375원/ℓ '22.7.1.~12.31. : 238원/ℓ</li> </ul>	<p>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22.7.1.)</p> <hr/> <p>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 (044-215-4331)</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면세농산물등 의제매입세액 공제 적용 한도</li> <li>• 개인사업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음식점업: 매출액의 50~65%</li> <li>- 음식점업 외 사업자: 매출액의 45~55%</li> </ul> </li> <li>• 법인사업자: 매출액의 40%</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면세농산물등 의제매입세액공제 적용 한도 10%p 상향</li> <li>• 개인사업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음식점업: 매출액의 60~75%</li> <li>- 음식점업 외 사업자: 매출액의 55~65%</li> </ul> </li> <li>• 법인사업자: 매출액의 50%</li> </ul>	<p>부가가치세법시행령 ('22.7.1.)</p> <hr/> <p>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 (044-215-4321)</p>
면세농산물 등 의제매입세액공제 적용 한도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면세농산물등 의제매입세액 공제 적용 한도</li> <li>• 개인사업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음식점업: 매출액의 50~65%</li> <li>- 음식점업 외 사업자: 매출액의 45~55%</li> </ul> </li> <li>• 법인사업자: 매출액의 40%</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면세농산물등 의제매입세액공제 적용 한도 10%p 상향</li> <li>• 개인사업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음식점업: 매출액의 60~75%</li> <li>- 음식점업 외 사업자: 매출액의 55~65%</li> </ul> </li> <li>• 법인사업자: 매출액의 50%</li> </ul>	<p>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 (044-215-4321)</p>

기획재정부

구분	종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단순가공식품품 등 부가가치세 면제 한시적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단순가공식품품 부가가치세</li> <li>• (면세) 단순 운반편의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포장한 경우만 면세</li> <li>• (과세) 제조시설을 갖춰 판매 목적으로 독립된 거래단위로 포장 시 과세</li> <li>■ 면세하지 않는 수입 미가공 식품품</li> <li>• 관세율표 제0901호에 해당하는 물품 중 커피 및 커피의 껍데기·껍질과 웨이스트(waste)</li> <li>• 코코아두(원래 모양이나 부순 것으로서 볶은 것을 포함한다)</li> <li>• 코코아의 껍데기와 껍질과 코코아 웨이스트(waste)</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단순가공식품품 부가가치세 면제 확대 ('23년말까지)</li> <li>• (면세) 포장유무와 상관없이 면세</li> <li>■ 면세하지 않는 수입 미가공식품품도 면세 ('23년말까지)</li> <li>• 관세율표 제0901호에 해당하는 물품 중 커피(원래 모양이나 분쇄한 것으로서 볶은 것은 제외한다) 및 커피의 껍데기·껍질과 웨이스트(waste)</li> <li>• 코코아두(원래 모양이나 부순 것으로 한정한다)</li> <li>• 코코아의 껍데기와 껍질과 코코아 웨이스트(waste)</li> </ul>	<p>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22.7.1.)</p> <hr/> <p>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22.6. 공포시)</p> <hr/> <p>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 (044-215-4322)</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li> <li>• (내용) 개별소비세율 30% 인하 (5→3.5%)</li> <li>• (기한) '22.6.30.까지 제조장에서 반출되거나 수입신고된 차량에 적용</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별소비세 인하기간 연장</li> <li>• (좌 동)</li> <li>• '22.12.31.까지 제조장에서 반출되거나 수입신고 된 차량에 적용</li> </ul>	<p>기획재정부 시행령 ('22.7.1.)</p> <hr/> <p>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 (044-215-4333)</p>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기간 연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li> <li>• (내용) 개별소비세율 30% 인하 (5→3.5%)</li> <li>• (기한) '22.6.30.까지 제조장에서 반출되거나 수입신고된 차량에 적용</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별소비세 인하기간 연장</li> <li>• (좌 동)</li> <li>• '22.12.31.까지 제조장에서 반출되거나 수입신고 된 차량에 적용</li> </ul>	<p>기획재정부 시행령 ('22.7.1.)</p> <hr/> <p>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 (044-215-4333)</p>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 사업자</li> <li>• 모든 법인사업자</li> <li>• 직전연도 사업장별 재화·용역의 공급가액 합계액(총수입금액)이 3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무발급 개인사업자 확대</li> <li>• (좌 동)</li> <li>• 3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 2억원 이상</li> </ul>	<p>소득세법 시행령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2.7.1.)</p> <hr/> <p>기획재정부 소득정보 연계추진단 (044-215-4373)</p>

## 기획재정부

구분	종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세액공제 신설	〈신 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전송에 대한 세액 공제</li> <li>• (공제대상) 직전연도 사업장별 면세공급가액을 포함한 재화·용역의 공급가액 합계액(총수입금액)이 3억원 미만인 개인사업자</li> <li>• (공제금액) 발급건수 당 200원</li> <li>• (공제한도) 연간 100만원</li> <li>• (적용기한) '22.7.1. ~ '24.12.31.</li> </ul>	<p>소득세법 및 부가가치세법 ('22.7.1.)</p>
		<p>☞ (참고) 기획재정부홈페이지) 보도자료&gt; "2021년 세법 개정안 보도자료"</p>	<p>기획재정부 소득정보 연계추진단 (044-215-4373)</p>

## 관세청

구분	종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시내보세판매장 (면세점) 국산품 온라인 해외 판매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내보세판매장(면세점) 국산품 온라인 해외 판매 도입</li> <li>• (내용)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해 해외거주 외국인을 대상으로 시내보세판매장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국산품 판매(해외 배송) 허용</li> <li>• (시행) 업체별 온라인 해외판매 인프라 구축 후 7월 이후 사업 시행 예정</li> </ul>	<p>관세법, 온라인 해외판매 운영지침 ('22.3.23.)</p>
			<p>관세청 보세산업지원과 (042-481-7637)</p>
구매대행업자 등록제 신설	〈신 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에게 등록해야 하는 업자 추가</li> <li>• 구매대행업자 중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에 따라 '통신판매업자'로 신고한 자로서 - 직전연도 구매대행한 수입물품의 총 물품가격이 10억원 이상인 자</li> </ul>	<p>관세법 ('22.7.1.)</p>
		<p>☞ (참고) 관세청 누리집) '해외직구 여기로'&gt; 구매대행업자 등록</p>	<p>관세청 전자상거래통관과 (042-481-7835) 기획재정부 관세제도과 (044-215-4412)</p>

## 금융위원회

구분	종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 프로그램 도입	〈신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실(우려) 소상공인·자영업자 부실채권에 대한 상환일정 조정, 금리·원금감면 등 채무조정</li> </ul>	<p>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 (02-2100-2832)</p>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LTV 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LTV 상한 60~70%*</li> <li>* (투기투기과열지구): 60%(~6억원), 50%(6~9억원) (조정대상지역): 70%(~5억원), 60%(5~8억원)</li> </ul>	<p>업권별 감독규정 및 가계대출에 관한 리스크 관리기준 (행정지도) (2022.7.1.)</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LTV 상한 80%</li> </ul>	<p>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 (02-2100-2824) (02-2100-2836)</p>
DSR 산정시 장래소득 반영폭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래소득 산정시 현재 및 만기 시점간 소득 평균으로 산정</li> </ul>	<p>업권별 감독규정 및 가계대출에 관한 리스크 관리기준 (행정지도) (2022.7.1.)</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출시-만기시점까지의 각 연령대별 소득흐름의 평균으로 산정하고, 장래소득 산출시 차주가 유리한 만기를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li> </ul>	<p>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 (02-2100-2824) (02-2100-2836)</p>



### 금융위원회

구분	종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차주단위 DSR 3단계 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차주별 DSR 적용대상</li> <li>• 총 대출액 : 2억원 초과</li> <li>• 주담대 : 전 규제지역 6억원 초과 주택</li> <li>• 신용대출 : 1억원 초과</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차주별 DSR 적용대상</li> <li>• 총 대출액 : 1억원 초과</li> <li>• &lt;폐지&gt;</li> <li>• &lt;폐지&gt;</li> </ul>	<b>업권별 감독규정 및 가계대출에 관한 리스크 관리기준</b> (행정지도) (2022.7.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li> <li>(02-2100-2824)</li> <li>(02-2100-2836)</li> </ul>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한 특례보증 시행	<신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포스트 코로나 대비 맞춤형 금융지원 신규 추진</li> <li>• 코로나19 피해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한 2조원 규모의 특례보증 공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금용도) 운전자금 및 시설자금</li> <li>- (지원한도) 기업당 1억원(잠정)</li> <li>- (보증방식) 직접보증</li> <li>- (우대사항) 보증료 차감, 심사요건 완화 등</li> </ul> </li> </ul> <p>☞ (참고) 금융위원회홈페이지)보도자료) "제2차 추경예산안 중 금융분야 민생지원프로그램 상세개요"</p>	('22년 하반기)  <b>금융위원회 산업금융과</b> (02-2100-2862)
최저신용자 대상 특례보증 프로그램 가동	<신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목적) 금리상승 등으로 제도권금융 이용이 어려운 최저신용자의 불법사금융 피해를 방지</li> <li>• (지원대상) 신용점수 하위 10% 이하이면서 연소득 4,500만원 이하인 자로 기존 정책 서민금융상품 이용이 어려운 자</li> <li>• (대출심사) 비금융정보를 활용한 상환의지 등을 심사</li> <li>• (자금용도) 긴급자금·일반생활비 등에 대해 포괄적으로 지원</li> <li>• (대출한도) 최대 1천만원</li> <li>• (상환방식) 3년 또는 5년 원리금균등분할 상환(거치 1년, 중도상환수수료 없음)</li> <li>• (대출금리) 연 15.9%, 성실상환 시 매년 인하 예정</li> </ul>	('22.10월 중)  <b>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b> (02-2100-2614)

### 금융위원회

구분	종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상장사 등록 감사인의 의무 위반 시 불이익 조치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장사 등록 감사인이 등록요건 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받는 조치</li> <li>• 등록취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장사 등록 감사인이 등록요건 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받는 조치</li> <li>• 등록취소</li> <li>• 시정권고</li> <li>• 지정제외점수 부과</li> </ul> <p>☞ (참고) 금융위원회홈페이지) 보도자료) "외부감사법 시행령 개정 보도자료"</p>	<b>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b> (‘22.5.3.)  <b>금융위원회 기업회계팀</b> (02-2100-2695)
제2금융권의 한도성 여신과 지급보증에 대한 총당금 적립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2금융권 중 일부 금융업권에 대해서만 대손충당금을 적립하도록 규정</li> <li>• (한도성 여신) 신용카드사의 신용판매, 카드대출 미사용액정만 대손충당금을 적립</li> <li>• (지급보증) 여신전문금융사의 부동산 PF 관련 채무보증만 대손충당금을 적립*</li> <li>* 상호저축은행은 지급보증 규제가 이미 있고, 상호금융업권은 지급보증이 제한되어 규제 불필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2금융권의 한도성 여신 미사용잔액, 지급보증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 근거를 마련</li> <li>• (한도성 여신) 상호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사(신용카드 중 기타 한도성 여신, 비카드), 상호금융업권의 한도성 여신 미사용잔액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 근거를 마련</li> <li>• (지급보증) 여신전문금융사의 부동산 PF 이외 지급보증에 대해서도 대손충당금을 적립하도록 개선</li> <li>■ 다만, 대손충당금 추가 적립에 따른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한도성 여신 미사용액에 대한 신용환산율을 단계적으로 상향*할 계획</li> <li>* (상호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사) : '22년 20%→'23년 40% (상호금융) : '22년 20%→'23년 30% → '24년 40%</li> </ul> <p>☞ (참고) 금융위원회홈페이지) 알림마당) 보도자료)상호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업, 상호금융업의 리스크 관리를 위한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여신전문금융업감독 규정」, 「상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 금융위 의결"</p>	<b>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b> (‘22.7.1.)  <b>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b> (‘22.7.1.)  <b>상호금융업 감독규정</b> (‘22.7.1.)  <b>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b> (02-2100-2983)

### 금융위원회

구분	종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오픈뱅킹 이용편의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오픈뱅킹 출금이체 前 출금 잔여 한도 조회 불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오픈뱅킹 출금이체 前 일간 출금 한도 조회 기능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오픈뱅킹 출금한도 조회 API 신설</li> </ul> </li> </ul>	(‘22.10월)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과 (02-2100-2536)
금융분야 클라우드서비스 이용절차 개선 및 이용 가이드라인 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이용업무의 중요도 평가 기준이 불명확하고, 비중요업무도 중요 업무와 유사한 수준의 이용절차를 준수해야 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이용업무의 중요도 평가 기준을 구체화하고, 업무 중요도에 따른 이용 절차를 차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중요도 평가 기준을 구체화하여 제시</li> <li>비중요 업무의 경우 클라우드 CSP 평가, 업무 연속성 계획 및 안전성 확보조치 절차를 차등화하여 적용</li> </ul> </li> </ul>	금융분야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이용가이드 개정 (‘23.1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CSP평가 항목간 유사·중복 사항이 많고, IaaS 방식의 클라우드 중심으로 평가항목이 구성되어 새로운 형태의 클라우드를 포괄할 수 없었음</li> <li>중요업무의 경우 클라우드 이용하려는 날의 7영업일 이전에 금감원에 보고 필요</li> <li>클라우드 이용시 제출해야 할 서류가 중복·과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CSP 평가 정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CSP 평가항목 중 유사·중복사항을 제거</li> <li>소프트웨어 기반 클라우드(SaaS) 대상 별도 기준 마련 등</li> </ul> </li> <li>클라우드 이용시 사전보고를 사후보고로 전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신규 계약 체결, 계약 내용의 중대한 변경 등의 경우 3개월 이내 사후보고하도록 규정</li> </ul> </li> <li>클라우드 이용시 제출해야 할 서류를 간소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정보처리업무위탁규정, 업무위탁 운영 기준 보완사항에 분산·중복되어 있던 제출 서류를 간소화하여 필수 항목만을 감독규정에 반영</li> </ul> </li> </ul>	금융위원회 전자금융과 (02-2100-2975)

### 금융위원회

구분	종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데이터(가명정보) 결합 절차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정보집합물을 이용하기만 하는 기관은 결합신청 및 결합절차 참여 불가</li> <li>정보집합물의 일부만 추출하여 결합 불가</li> <li>데이터전문기관이 보유한 정보 집합물을 스스로 결합하여 활용 불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정보집합물을 이용하기만 하는 기관의 결합신청 및 결합절차 참여 허용</li> <li>정보집합물의 일부만 추출하여 결합가능한 절차 도입</li> <li>일정요건하 데이터전문기관이 보유한 정보 집합물을 스스로 결합하여 활용하는 것을 허용</li> </ul>	신용정보업 감독규정 (‘22.7월 중 개정완료 추진)
		<p>☞ (참고) 금융위원회 홈페이지)보도자료 "신정법 시행령 입법예고 보도자료"</p>	금융위원회 금융데이터정책과 (02-2100-2621)

교육부

구분	종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교육분야 인공지능 윤리원칙 마련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교육현장에서 인공지능이 안전하고 윤리적으로 개발·활용될 수 있도록 「교육분야 인공지능 윤리원칙」 마련</li> </ul>	<p>교육부 미래교육전략팀 (044-203-7186)</p>
학자금대출 저금리 전환대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09.2학기~'12.2학기에 일반상환 학자금대출을 받은 사람은 5.8~3.9% 금리 부담 중</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학자금대출 저금리 전환대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09.2학기~'12.2학기 일반상환 학자금대출자의 금리를 2.9%로 전환</li> <li>(신청기간) 2022. 7. 6. ~ 2024. 12월</li> <li>* 매년 신청기간 등의 구체적인 일정은 별도 안내</li> </ul> </li> <li>☞ (참고) 교육부 홈페이지(교육부소식) 보도자료 '2022학년도 2학기 학자금대출 시행'(22.7월 초 예정)</li> </ul>	<p>한국장학재단법 시행령 (22.7월 초 예정.)</p> <p>교육부 대학재정장학과 (044-203-6271)</p>
행정정보 공동이용 활용 근거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행정정보공동 활용</li> <li>유아학비지원을 위한 근거는 있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유아학비지원 외에도 유아교육행정정보 시스템등의 업무 처리를 위해 유아 주소정보 등 공동 활용 근거 마련</li> </ul>	<p>유아교육법 (20.3.1.)</p> <p>교육부 유아교육정책과 (044-203-6712)</p>
민감정보 및 개인식별 정보 처리 근거 마련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민감정보 등 처리 근거</li> <li>원장 등은 건강검진 및 교육비용 수납 등을 위해 건강정보 및 개인 식별정보 처리 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원장 등은 건강검진 및 교육비용 수납 외에도 학적, 생활기록부 등을 위해 시스템으로 개인식별정보를 처리하는 등 근거 마련</li> </ul>	<p>유아교육법 (20.3.1.)</p> <p>교육부 유아교육정책과 (044-203-6712)</p>

여성가족부

구분	종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시범사업 실시	■ 해당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신규)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실시</li> <li>(대상) ① 청소년(만9세~24세)부부(사실혼 관계 포함)로서, ② 자녀를 한 명 이상 양육하고 있는, ③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청소년부모 가구의 자녀</li> <li>(지원기간) '22.7월~12월</li> <li>(지원내용) 청소년부모 가구 자녀 1명당 월 20만원의 아동양육비 지원</li> <li>(지원규모) 전국 3천명 이내</li> <li>(신청방법)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시·군·구 방문 신청</li> <li>☞ (참고) 여성가족부홈페이지) 보도자료 &lt;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관련 보도자료"</li> </ul>	<p>청소년복지지원법 (21.9.24.)</p> <p>여성가족부 가족지원과 (02-2100-6351, 6342)</p>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패키지 시범사업 추진	■ 해당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신규) 2022년 하반기부터 중위소득 72% 이하의 청소년 한부모를 대상으로 자녀양육, 학업·취업 등 각종 지원 정보를 안내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해 주는 자립지원 패키지 시범사업을 통해 청소년 한부모 자립역량 강화</li> </ul>	<p>한부모가족지원법</p> <p>여성가족부 가족지원과 (02-2100-6351, 6342)</p>
민간 청소년 수련시설 수련활동비 지원	(신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원대상) 민간 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수련원·유스호텔)</li> <li>(지원방식) 민간 청소년수련시설의 단체수련활동 참여시 최대 2만원/인 지원</li> </ul>	<p>2022.7.1.</p> <p>여성가족부 청소년활동안전과 (02-2100-6263)</p>

### 여성가족부

구분	종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청소년생활기록부 반영 대학 확대 시행	■ 청소년생활기록부 도입 대학 (22학년도 입시) : 6개 대학	■ 청소년생활기록부 도입 대학(23학년도 입시) : 11개 대학	2023학년도 대입 입시
			여성가족부 학교밖청소년지원과 (02-2100-6319, 6317)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바우처 지원대상 확대	■ 저소득층 만 9~18세 여성청소년 대상 생리용품 바우처 연 144천원 지원	■ 저소득층 만 9~24세 여성청소년 대상 생리용품 바우처 연 144천원 지원  ☞ (참고)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보도자료	청소년복지지원법 (22.5.1.)
			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과 (02-2100-6232, 6242)
가정 밖 청소년 자원 모바일 서비스 앱 '자립해냄' iOS용 버전 출시	■ 가정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모바일 앱(APP) '자립해냄' 안드로이드용 버전 출시 (21.12월)	■ '자립해냄' iOS용 버전 출시	2022.6.10.
			여성가족부 청소년자립지원과 (02-2100-6278)

### 농림축산식품부

구분	종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농업인안전보험 보장 강화 및 연금 방식 지급 추가 가능	■ 농업인안전보험 보장수준, 보험금 수급 및 보험 가입 방식  • 보장 수준 - 상해질병치료금(일반1,2,3형) 한도 : 1천만원 - 휴업급여금(일반2,3형) : 2~3만원/일(4일 이상 입원 시, 120일 한도)  • 보험금 수급 - 유족급여금, 장해급여금 : 일시금 방식 지급  • 보험 가입 방식 - 개인 또는 부부형(보험료 할인 없음)	■ 농업인안전보험 보장수준, 보험금 수급 및 보험 가입 방식  • 보장 수준 - 상해질병치료금(일반1,2,3형) 한도 : 5천만원 - 휴업급여금(일반2,3형) : 6만원/일 (4일 이상 입원 시, 120일 한도)  • 보험금 수급 - 유족급여금, 장해급여금 : 일시금 또는 연금 방식 지급  • 보험 가입 방식 - 개인 또는 가족형(1인당 보험료 5% 할인)	농어업인안전보험법 (22.10.1.)
			☞ (참고)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 보도자료 게시 예정(9월중)
			농림축산식품부 재해보험정책과 (044-201-1796)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구분	종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한국형 상병수당 시범사업 1단계 시행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근로자가 업무 외 질병·부상으로 일하기 어려운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상병수당을 지원하는 시범사업 추진(6개 지역)</li> </ul>	<p>국민건강보험법 (‘22.7.4.)</p>
			<p>보건복지부 상병수당추진단 (044-202-2748)</p>
국민연금 저소득 지역 가입자 보험료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어업인 외 지역가입자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 부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가입자 납부예외자* 중 보험료 납부재개자의 신고소득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li> <li>* 사업중단·실직·휴직의 사유로 소득이 없어 보험료 납부를 면제받은 자</li> <li>• (지원기준) 종합소득(사업·근로소득 제외) 1,680만원 미만 및 재산 6억원 미만</li> <li>• (지원수준) 연금보험료의 50% (월 최대 45,000원)</li> <li>• (지원기간) 최대 12개월</li> <li>• (시행일) 2022.7.1.</li> </ul>	<p>국민연금법 (‘22.7.1.)</p>
			<p>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 (044-202-3633, 3636)</p>

구분	종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긴급복지지원 생계지원금 단가 인상 및 재산기준 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생계지원 금액 (원/월)</li> <table border="1"> <thead> <tr> <th>가구구성원수</th> <th>지원금액</th> </tr> </thead> <tbody> <tr><td>1인</td><td>488,800</td></tr> <tr><td>2인</td><td>826,000</td></tr> <tr><td>3인</td><td>1,066,000</td></tr> <tr><td>4인</td><td>1,304,900</td></tr> <tr><td>5인</td><td>1,541,600</td></tr> <tr><td>6인</td><td>1,773,700</td></tr> </tbody>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7인 이상의 경우, 1인 증가시 마다 232,000원씩 추가 지급</li> </ul> <li>■ 재산기준 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생활준비금공제율 : 기준중위소득 65%</li> </ul> </li> </ul>	가구구성원수	지원금액	1인	488,800	2인	826,000	3인	1,066,000	4인	1,304,900	5인	1,541,600	6인	1,773,7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생계지원 금액 (원/월)</li> <table border="1"> <thead> <tr> <th>가구구성원수</th> <th>지원금액</th> </tr> </thead> <tbody> <tr><td>1인</td><td>583,400</td></tr> <tr><td>2인</td><td>978,000</td></tr> <tr><td>3인</td><td>1,258,400</td></tr> <tr><td>4인</td><td>1,536,300</td></tr> <tr><td>5인</td><td>1,807,300</td></tr> <tr><td>6인</td><td>2,072,100</td></tr> <tr><td>7인</td><td>2,334,100</td></tr> </tbody>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8인 이상의 경우, 1인 증가시마다 262,000원씩 추가 지급</li> </ul> <li>■ 재산기준 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설) 주거용 재산 공제한도액 : 대도시 69백만원, 중소도시 42백만원, 농어촌 35백만원</li> <li>- 생활준비금 공제율 : 기준중위소득 100%</li> </ul> </li> </ul>	가구구성원수	지원금액	1인	583,400	2인	978,000	3인	1,258,400	4인	1,536,300	5인	1,807,300	6인	2,072,100	7인	2,334,100	<p>긴급지원 지원금액 및 재산의 합계액 기준 (고시) (‘22.7.1.)</p>
	가구구성원수	지원금액																															
1인	488,800																																
2인	826,000																																
3인	1,066,000																																
4인	1,304,900																																
5인	1,541,600																																
6인	1,773,700																																
가구구성원수	지원금액																																
1인	583,400																																
2인	978,000																																
3인	1,258,400																																
4인	1,536,300																																
5인	1,807,300																																
6인	2,072,100																																
7인	2,334,100																																
입양대상아동 보호비 신규 지원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입양대상아동 보호비 지원</li> <li>• (지원대상) 입양대상아동을 보호하는 위탁부모</li> <li>• (지원기간) ‘22.7.1부터 위탁가정(일반 및 전제) 보호 종료일이 속하는 월까지 지원</li> <li>• (지원금액) 월 1백만원</li> <li>• (양육상황기록) 입양대상아동 양육상황 일별·월별 기록지 작성 및 가정법원 입양확정에 따른 위탁 종료시 양부모에게 기록 일체 인계</li> </ul>	<p>입양특례법 (‘22.7.1.)</p>																														
			<p>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 (044-202-3423)</p>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구분	종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맞춤형 급여 안내 가입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5개 복지사업의 기존 수급자</li> <li>* 소득·재산조사를 실시하는 15개 사업(기초생활보장, 한부모가족, 기초·장애인연금 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모든 국민이 맞춤형 급여 안내 가입 가능 (*22년 9월 5일부터)</li> </ul>	<p>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p>
			<p>보건복지부 급여기준과 (044-202-3143, 3144)</p>
포스트코로나시대 적정수혈을 위한 의료기술 개발	(신 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환자혈액관리 임상연구</li> <li>환자혈액관리 전향적 코호트 연구</li> <li>환자혈액관리 역학 통계연구</li> <li>적정수혈 의료기술 개발</li> </ul>	<p>혈액관리법 (*22.7월 예정)</p>
			<p>보건복지부 혈액장기정책과 (044-202-2635-6)</p>

구분	종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제도 도입	(신 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그간 휴게시설의 설치 의무를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고용노동부령)에 규정하였으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휴게시설의 구체적인 설치와 관리 기준이 규정되어 있지 않고</li> <li>- 불이행 시 제재 규정 없이 운영</li> </ul> </li> </ul>	<p>산업안전보건법 (*22.8.18.)</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모든 사업장에 휴게시설의 설치를 의무화</li> <li>• 일정규모 이상 사업장(건설 현장 포함)이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크기, 위치, 온도, 조명 등 휴게시설 설치·관리 기준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하여</li> <li>- 휴게시설 설치의무 이행의 실효성 확보</li> </ul> </li> <li>• 또한, 사업주가 휴게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휴게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근로자 범위에 관계수급인 근로자도 포함</li> </ul> <p>☞ (참고) 고용부 누리집 &gt; 정보공개 &gt; 과태료 부과대상 사업주 범위 및 설치관리 기준 입법예고(안)</p>	<p>고용노동부 직업건강증진팀 (044-202-8893)</p>
퇴직연금 사전지정운영제도 도입	(신 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전지정운영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입자가 적립금 운용방법을 스스로 선정하지 못한 경우 사전 지정한 운용방법으로 적립금을 운용하는 제도</li> </ul> </li> </ul>	<p>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22.7.12.)</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전지정운영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전지정운영제도에 따라 적립금을 운용하기 위하여 고용부 승인 받은 운용방법</li> </ul> </li> <li>사전지정운영제도의 설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퇴직연금사업자는 사전지정 운용방법에 고용부 장관의 승인 받고, 사용자에게 제시</li> <li>• 사전지정운영방법을 제시받은 사용자는 사전지정운영 방법을 설정하여 근로자대표 동의를 받아 확정기여형퇴직연금규약에 반영</li> </ul> </li> <li>사전지정운영제도의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퇴직연금사업자는 사전지정 운용제도를 설정한 사업의 가입자에게 제공</li> <li>• 가입자는 제공받은 사전지정 운용방법 중 하나를 사전지정운영방법으로 선정</li> </ul> </li> </ul> <p>☞ (참고) 고용부 누리집(보도자료) "퇴직연금 사전지정운영제도"</p>	

### 고용노동부

구분	종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유통배송기사 등 특고 산재보험 적용 확대 및 특고 종사자 보조사업장 재해 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퀵서비스 기사 등 15개 직종 산재보험 당연적용</li> <li>■ 주로 하나의 사업에 종사해야 하는 '특고 전속성 요건'으로 인해 여러 사업에 노무를 제공하는 특고종사자의 경우, 보조사업장 재해는 산재보상 혜택을 받지 못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통배송기사, 택배 지·간선기사, 카 캐리어·곡물 특정품목 운송 화물차주 특고 산재보험 적용</li> <li>■ '특고 전속성 요건' 폐지 개정법 공포 (2022.6.10.) 이후부터는 보조사업장 재해에 대해서도 산재 보상</li> </ul>	<p><b>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b> (*22.7월)</p> <p><b>개정부칙 시행</b> (*22.6.10.)</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참고) (유통배송기사 등 적용) 고용부 누리집 &gt; 정보공개 &gt; 법령정보 &gt; 입법예고 &gt;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li> <li>☞ (참고) (보조사업장 재해 보상) 고용부 누리집 &gt; 보도자료 &gt; 산업재해보상 보험법 등 13개 개정 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li> </ul>	<p><b>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b> (044-202-8838)</p>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의 대표성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행령으로 근로자위원 선출 투표에 대한 직접·비밀·무기명 투표 원칙만 규정하였을 뿐 선출투표 성립요건에 대한 규정 부재</li> <li>■ 시행령으로 위원선거인을 선출하여 근로자위원을 선출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을 뿐 위원 선거인 선출방법에 대한 구체적 규정 부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근로자위원 선출투표에 관한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고 근로자 과반수 참여를 의무화</li> <li>■ 위원선거인에 의한 근로자위원 선출규정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고 위원선거인 선출시 근로자 과반수의 참여를 의무화</li> </ul>	<p><b>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b> (*22.11.1.)</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참고) 고용부 누리집 &gt; 보도자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13개 개정 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li> </ul>	<p><b>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b> (044-202-7395)</p>
「K-디지털 기초역량훈련」 지원 대상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원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은 청년(재직·구직 여부 무관) 및 중장년 구직자</li> <li>• K-디지털 기초역량훈련과정 수강신청일 기준 △만 34세 이하 청년(재직·구직 여부 무관), △만 35세 이상 만 54세 이하 중장년 구직자</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원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은 청년·중장년</li> <li>• K-디지털 기초역량훈련과정 수강신청일 기준 만 54세 이하 청년·중장년 =&gt; 만 35세 이상 만 54세 이하 중장년 재직자도 지원</li> </ul> </li> </ul>	<p><b>국민내일 배움카드 운영규정</b> (*22.7.)</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참고) 고용부 누리집 &gt; 정책자료실</li> </ul>	<p><b>고용노동부 신기술인력양성총괄TF</b> (044-202-7268)</p>

### 고용노동부

구분	종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플랫폼종사자 일터개선 지원사업 실시	(신 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플랫폼종사자 일터개선 지원사업 신설</li> <li>• (대상) 플랫폼 기업 또는 컨소시엄</li> <li>• (내용) 플랫폼종사자의 노무제공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쉼터 등 일터 개선 시 소요 비용 일부 지원</li> <li>• (지급) 소요 비용의 최대50%(연간 3억원 한도)</li> </ul>	<p><b>고용노동부 디지털노동대응TF</b> (044-202-7075)</p>
중소규모 건설공사 안전관리 기술지도 의무제도 개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설공사도급인(시공업체)이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과 기술지도 계약 체결</li> <li>• (대상) 1~120억 미만 건설공사</li> <li>• (예외) 공사기간 1개월 미만, 육지와 미연결 섬(제주는 제외), 전담 안전관리자 선임 현장유해 위험방지계획서 대상 현장</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술지도계약 체결의무 주체가 건설공사도급인(시공업체)에서 건설공사발주자(자기공사자 포함)가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과 기술지도 계약을 체결하도록 의무화</li> <li>• (대상 및 예외) 변경 없음</li> </ul>	<p><b>산업안전 보건법</b> (*22.8.18.)</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참고) 고용노동부홈페이지&gt;정보공개&gt; 법령정보&gt;입법·행정예고</li> </ul>	<p><b>고용노동부 건설산재예방정책과</b> (044-202-8938)</p>

### 해양수산부

구분	종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여성어업인 특화건강 검진 시범 실시	(신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여성어업인 특화건강검진 지원</li> </ul>	<p><b>여성농어업인육성법</b> (*22년 하반기)</p>
			<p><b>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b> (044-200-5463)</p>

### 식품의약품안전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구분	종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 이용 급식소, 위생·영양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규모 사회복지시설(요양원, 주간보호센터 등)은 대부분 영양사가 없이 급식을 제공하고 있어 적절한 급식 위생·영양관리 취약</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영양사가 없는 소규모 사회복지급식소를 대상으로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급식위생·영양관리 지원</li> <li>• (주요 지원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인별 영양관리카드 작성 관리</li> <li>- 급식위생 안전 및 영양관리 방문 지도·상담</li> <li>- 노인·장애인의 건강상태, 시설의 특성을 고려한 식단·조리법 제공</li> <li>- 이용자·조리원·시설장·요양보호사 대상 식생활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li> </ul> </li> </ul> <p>☞ (참고)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알림·교육) “건강한 급식·행복한 식사,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가 함께 해요”</p>	<p>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22.7.28.)</p>
			<p>식품의약품안전처 식생활영양안전정책과 (043-719-2257)</p>
수입 배추김치 해법 (HACCP) 의무화 2단계 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입식품 HACCP 적용대상 품목 지정</li> <li>• 김치류 중 배추김치</li> <li>■ 수입 배추김치 HACCP 의무화 1단계 시행</li> <li>• '19년 기준 배추김치 수입량 1만톤 이상 해외제조업소 5개소 인증</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입 배추김치 HACCP 의무화 2단계 시행</li> <li>• '20년 기준 배추김치 수입량 5천톤 이상 해외제조업소 인증평가 실시</li> </ul> <p>☞ (관련규정) 식약처 홈페이지(법령/자료) 법령정보&gt;법, 시행령, 시행규칙)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6조의2</p>	<p>수입식품 안전관리 특별법 ('22.10.1.)</p>
			<p>식품의약품안전처 현지실사과 (043-719-6210)</p>

구분	종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임상시험안전지원기관 및 중앙임상시험심사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34조의5(임상시험안전지원기관 및 중앙임상시험심사위원회) ① 식품의약품 안전처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를 임상시험안전 지원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 심사위원회의 운영에 대한 자문 등 지원</li> <li>- 2. 제2항에 따른 중앙임상시험심사위원회 운영에 대한 지원</li> <li>- 3. 임상시험 안전성 정보에 대한 분석 및 연구</li> <li>- 4. 임상시험 대상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상담 및 정보 제공</li> <li>- 5. 임상시험 관련 홍보 및 교육 지원</li> <li>- 6.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업무</li> </ul> </li> <li>② 제1항에 따른 임상시험안전지원 기관은 제34조의2제3항제5호 단서에 따라 위탁받은 임상시험 실시에 관한 심사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중앙임상시험심사위원회(이하 “중앙심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li> <li>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임상시험 안전지원기관 및 중앙심사위원회의 운영과 업무 수행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li> <li>④ 임상시험안전지원기관의 지정·운영 및 중앙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li> </ul> <p>☞ (참고)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보도자료) “의약품 개발지원 촉진과 제약산업 경쟁력 강화 기반 마련”</p>	<p>약사법 ('22.7.21.)</p>
			<p>식품의약품안전처 임상정책과 (043-719-1861)</p>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 구축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내 백신 개발 인프라 확충 및 제품화 지원을 위해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 구축 운영</li> </ul>	<p>(‘21.10월)</p> <p>식품의약품안전처 바이오의약품정책과 (043-719-3310)</p>



### 식품의약품안전처

구분	종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의료기기 보험(공제) 제도 시행을 위한 보험의 종류, 가입대상, 보험금액 등 규정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료기기 보험(공제) 제도 시행을 위한 의료기기법 위임사항 규정</li> <li>• (보험의 종류) 의료기기 배상책임보험</li> <li>• (가입대상) 인체이식형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출만을 목적으로 허가받은 의료기기 제조업자는 제외되며, 수입의료기기 해외 제조원 등이 국내 기준을 만족하는 보험에 가입한 경우 인정 가능</li> </ul> </li> <li>• (보험금액) 업체가 가입해야 할 최소 보험금액은 사고별로 사망(1억 5천), 부상(3천), 후유장애(1억 5천) 보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난안전법」의 보상한도 및 타 법령 기준과 동일 수준</li> </ul> </li> </ul>	<p><b>의료기기법 시행령</b> (개정 중)</p>
		<p>☞ (참고)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gt; 보도자료&gt; 인체이식형 의료기기 책임보험 요건 예고('22.3.17.)</p>	<p><b>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안전평가과</b> (043-719-5003)</p>

### 질병관리청

구분	종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전국단위 대규모 항체양성을 조사 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도권 지역 항체양성을 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상자) 수도권 지역 만 19세 이상 성인</li> <li>• (표본수) 연간 2,072명</li> <li>• (내용) 조사원 자택방문을 통한 설문조사 및 채혈</li> <li>• (횟수) 1회, 단발성조사</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국단위 대규모 항체양성을 조사 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상자) 전국 17개 시도, 만 5세이상</li> <li>• (표본수) 분기별 10,000명, 연간 40,000명</li> <li>• (내용) 보건소 내소, 조사원 자택방문을 통한 설문조사 및 채혈</li> <li>• (횟수) 4회, 분기별조사</li> </ul> </li> </ul>	<p><b>질병관리청 백신임상연구과</b> (043-913-4312)</p>
		<p>☞ (참고) 질병관리청 홈페이지&gt;보도자료&gt; “코로나19 자연감염자 규모 및 위험 평가를 위한 대규모 항체조사 시작” ('22.05.17.)</p>	

### 문화체육관광부

구분	종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예술인 권리침해 행위 규정 및 법적 보호 절차 부재</li> <li>• 표현의 자유 침해, 예술 분야 성희롱·성폭력 규정 부재</li> <li>• 불공정행위 금지 규정이 있지만, 신고·조사에 대한 규정만 존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예술인 권리에 대한 규정과 법적인 보호 절차 마련</li> <li>• 공무원 등의 예술 표현의 자유 침해, 불공정행위 금지에 대한 규정과 예술인의 성희롱·성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부여</li> <li>• 신고·조사 이후 조사결과에 대한 심의와 구제조치 발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사의뢰, 징계의뢰, 시정명령, 분쟁조정 등</li> </ul> </li> </ul>	<p><b>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b> ( '22.9.25.)</p>
		<p>☞ (참고) 문화체육관광부홈페이지&gt; 보도자료&gt; 예술인의 권리, 법률로 보장한다</p>	<p><b>문화체육관광부 예술정책과</b> (044-203-2728)</p>

### 문화재청

구분	종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문화재지능정보화 정책의 기본 체계 마련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화재지능정보화에 대한 종합적인 정책을 추진할 수 근거 마련</li> <li>• 문화재지능정보화의 정의</li> <li>• 문화재지능정보화 정책의 수립·시행</li> <li>• 문화재데이터 연계 및 공동활용 관련 사업 추진</li> <li>• 문화재지능정보기술의 개발 및 지원을 위한 사업 추진</li> <li>• 문화재지능정보서비스플랫폼 구축 및 운영 등</li> </ul>	<p><b>문화재보호법, 문화재보호법시행령</b> ( '22.7.19.)</p>
		<p>☞ (참고) 문화재청 홈페이지&gt;행정정보&gt; 법령정보&gt;법령</p>	<p><b>문화재청 디지털문화유산팀</b> (042-481-4614)</p>

환경부

환경부

구분	종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기후변화영향평가 제도 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후변화영향평가 제도 신규 도입 시행</li> <li>• (대상)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중, 중·장기적 기후변화영향(감축·적응)이 높은 10개 분야*의 계획·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에너지 개발,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 조성, 도시개발, 수자원 개발, 항만 건설, 산지 개발, 하천의 이용·개발, 도로·공항 건설, 폐기물·가축분뇨 처리시설</li> </ul> </li> <li>• (평가) 계획·사업별 온실가스 감축방안, 적응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탄소중립 관련 계획과의 정합성</li> <li>-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 및 온실가스 감축방안</li> <li>- 기후변화로부터 받게 되는 영향과 적응 방안</li> </ul> </li> <li>• (시기)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때 기후변화영향평가를 포함해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2.9.25일 이후 새로 전략·환경영향 평가준비서를 작성하는 계획·사업부터 적용</li> </ul> </li> </ul> <p>☞ (참고) <a href="#">환경부 홈페이지</a> &gt; "2022년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 시행령제정 보도자료"</p>	<p>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22.9.25.)</p>
			<p>환경부 탄소중립이행TF (044-201-6978)</p>
프리미엄 환경표지 인증 대상제품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프리미엄 환경표지 인증기준 4개 품목</li> <li>• 페인트, 에어컨, 세탁서비스, 가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프리미엄 환경표지 인증기준 10개 품목으로 확대</li> <li>• (6개 품목 신규) 노트북컴퓨터, 컴퓨터용 모니터, 세탁용 세제, 주방용 세제, 삼푸린스 및 바디클렌저, 의류</li> </ul> <p>☞ (참고) <a href="#">환경부 홈페이지</a> &gt; 보도자료 &gt; "소비자 입맛에 맞게 친환경 제품 만든다('22.5.31.)"</p>	<p>환경표지대상제품 및 인증기준(환경부고시) ('22.7월말 개정 예정)</p>
			<p>환경부 녹색산업혁신과 (044-201-6711)</p>

구분	종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생활밀착형제품 인증 기준 신설(2개품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증기준 신설) 다화용기 대어 서비스, 텀블러</li> </ul>	<p>환경표지대상제품 및 인증기준(환경부고시) ('22.7월말 개정 예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증기준 폐지) 형광램프, 형광램프용 안정기, 안정기 내장형 램프, 방전램프용 안정기, 모조귀금속, 비디오 재생·기록기, 낚시줄, 낚시미끼</li> </ul>	<p>환경부 녹색산업혁신과 (044-201-6711)</p>	
시장성을 상실, 타부처 지원 제품 인증기준 폐지(8개품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연상태에서 분해되는 토양 생분해 조건</li> <li>• 20~28℃ 24개월 이내 90% 이상 분해</li> </ul> <p>☞ (참고) <a href="#">환경부 홈페이지</a> &gt; 보도자료 &gt; "소비자 입맛에 맞게 친환경 제품 만든다('22.5.31.)"</p>	<p>환경부 녹색산업혁신과 (044-201-6711)</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퇴비화 생분해 조건</li> <li>• 58℃ 180일 이내 90% 이상 분해</li> </ul>		
생분해성 수지 인증기준(생분해조건)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도 탄소중립지원센터 운영</li> <li>• 지자체의 탄소중립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각종 정책·기술 지원 전담기구로서 역할 수행</li> </ul>	<p>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68조 ('22.7.1.)</p>
	<p>탄소중립 지원센터 운영 개시</p>		<p>환경부 기후전략과 (044-201-6645)</p>
측정대행업자의 환경측정분석정보관리 시스템 사용 의무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측정대행 관련 정보 등 자료관리 부재</li> <li>• 측정결과 조작, 측정능력 초과 계약 체결 등의 문제점 감사원 등 관련 자료 전산인력 의무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측정대행 관련 정보 전산관리 시행</li> <li>• 측정대행계약관련, 시료채취정보, 측정결과정보, 측정대행업체 일반정보 등 관련 자료 전산인력 의무화</li> </ul> <p>☞ 오염물질 부실측정 예방 및 측정대행업체 관리체계 구축</p>	<p>환경시행검사법 ('22.8.18.)</p>
			<p>환경부 녹색기술개발과 (044-201-6671)</p>

환경부

환경부

구분	종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상수도분야 계획수립 체계 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도분야 계획수립체계</li> <li>• (정부) 2개의 상수도분야 계획을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전국수도종합계획</li> <li>② 광역·공업 수도정비기본계획</li> </ul> </li> <li>• (지자체) '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립</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도분야 계획수립체계</li> <li>• (정부) 1개 상수도분야 계획을 수립으로 확대개편 → 국가수도기본계획</li> <li>• (지자체) 국가 계획을 바탕으로 한 '수도정비계획'을 수립</li> </ul> <p>☞ (참고) 환경부 홈페이지) 보도자료) "수도법 일부개정안 국회통과 (보도참고자료)"</p>	<p>수도법 ('22.7.12.)</p>												
			<p>환경부 물이용기획과 (044-201-7121)</p>												
다이옥신에 대한 토양 오염우려기준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카드뮴 등 22종 물질*에 대한 토양오염우려기준 및 대책기준 운영</li> <li>* 카드뮴, 구리, 비소, 수은, 납, 6가크롬, 아연, 니켈, 불소, 유기인화합물,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시안, 페놀, 벤젠, 톨루엔, 에틸벤젠, 크실렌, TPH, TCE, PCE, 벤조(a)피렌, 1,2-디클로로에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이옥신의 토양오염우려기준 및 대책기준 신설로 23종 물질에 대한 기준 운영</li> <li>• (기준) 카드뮴 등 22종 물질</li> <li>• (신설) 다이옥신</li> </ul>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1지역</th> <th>2지역</th> <th>3지역</th> </tr> </thead> <tbody> <tr> <td>우려기준</td> <td>160</td> <td>340</td> <td>1,000</td> </tr> <tr> <td>대책기준</td> <td>500</td> <td>1,000</td> <td>3,000</td> </tr> </tbody> </table> <p>※단위 : pg-TEQ/g</p> <p>☞ (참고) 국가법령정보센터)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3, 별표7</p>	구분	1지역	2지역	3지역	우려기준	160	340	1,000	대책기준	500	1,000	3,000	<p>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3, 별표7 ('22.7.22.)</p>
	구분	1지역	2지역	3지역											
우려기준	160	340	1,000												
대책기준	500	1,000	3,000												
		<p>환경부 토양지하수와 (044-201-7177)</p>													

구분	종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비점오염원관리지역 지정기준 개정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물환경보전법 제76조 제1항 제2호</li> <li>• 비점오염물질에 의하여 자연 생태계에 중대한 위해가 초래되거나 초래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설)</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물환경보전법 제76조 제1항 제2호</li> <li>• 비점오염물질에 의하여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점관리저수지를 포함하는 지역</li> <li>- 특별관리해역을 포함하는 지역</li> <li>- 지하수보전구역을 포함하는 지역</li> <li>- 어류폐사(斃死) 및 녹조발생이 빈번한 지역으로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등</li> </ul> </li> </ul>	<p>물환경보전법 시행령 ('22.7.1.)</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물환경보전법 제76조 제1항 제3호</li> <li>• "인구 100만명 이상인 도시"로서 비점오염원 관리가 필요한 지역</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물환경보전법 제76조 제1항 제3호</li> <li>• "불투수면적률이 25퍼센트 이상인 지역"으로서 비점오염원 관리가 필요한 지역</li> </ul> <p>☞ (참고) 국가법령정보센터) 물환경보전법 시행령</p>	<p>환경부 수생태보전과 (044-201-7045)</p>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재질검사 항목 간소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인하수처리시설 재질검사 항목 및 수수료</li> <li>• (검사항목수) 19개</li> <li>• (수수료) 564천원/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인하수처리시설 재질검사 항목 및 수수료</li> <li>• (검사항목수) 15개</li> <li>• (수수료) 454천원/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외항목) 내압강도, 내약품성, 소음, 용량</li> </ul> </li> </ul>	<p>「개인하수처리시설의 재질검사기관 및 성능 재질검사의 수수료에 관한 규정」 고시 ('22.12월 개정 예정)</p>
			<p>환경부 생활하수와 (044-201-7032)</p>
생태계교란 생물(2종) 및 유입주의 생물(162종) 추가 지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생태계교란 생물</li> <li>• 황소개구리 등 34종 1속</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생태계교란 생물</li> <li>• 늑대거북, 돼지풀아재비 2종을 추가 지정 (36종 1속)</li> </ul>	<p>생태계교란 생물 지정 고시 ('22.10. 개정 예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입주의 생물</li> <li>• 태평양취 등 398종</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입주의 생물</li> <li>• Cervus canadensis nelsoni (영명 Rocky mountain elk) 등 162종 추가 지정(560종)</li> </ul> <p>☞ (참고) 한국 외래생물 정보 시스템 (<a href="https://kias.nie.re.kr/">https://kias.nie.re.kr/</a>) 생태계교란 생물&amp;유입주의 생물</p>	<p>유입주의 생물 지정 고시 ('22.10. 개정 예정)</p> <p>환경부 생물다양성과 (044-201-7287)</p>

환경부

기상청

구분	종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건설폐기물 처리 현장정보 전송 의무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장폐기물을 배출·처리하는 자는 폐기물 인계·인수사항을 올리시스템에 입력해야 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장폐기물을 처리하는 자는 추가로 폐기물 처리 현장정보를 전자정보처리 프로그램으로 전송해야 함</li> </ul> <p>〈처리자별 전송 대상 현장정보〉</p> <table border="1"> <thead> <tr> <th rowspan="2">처리자</th> <th rowspan="2">현장정보</th> <th rowspan="2">계량값</th> <th rowspan="2">위치 정보 (GPS)</th> <th colspan="3">영상정보(CCTV)</th> </tr> <tr> <th>처리정보 (번호)</th> <th>계량 시설</th> <th>보관 장소</th> </tr> </thead> <tbody> <tr> <td>수집·운반</td> <td>X</td> <td>○</td> <td>X</td> <td>X</td> <td>X</td> <td>X</td> </tr> <tr> <td rowspan="2">처분 및 재활용</td> <td>계량 시설 설치 의무자</td> <td>○</td> <td>X</td> <td>○</td> <td>○</td> <td>○</td> </tr> <tr> <td>그 외의 자</td> <td>○</td> <td>X</td> <td>○</td> <td>X</td> <td>○</td> </tr> </tbody> </table>	처리자	현장정보	계량값	위치 정보 (GPS)	영상정보(CCTV)			처리정보 (번호)	계량 시설	보관 장소	수집·운반	X	○	X	X	X	X	처분 및 재활용	계량 시설 설치 의무자	○	X	○	○	○	그 외의 자	○	X	○	X	○	<p>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22.1.7.)</p>
	처리자	현장정보					계량값	위치 정보 (GPS)	영상정보(CCTV)																								
처리정보 (번호)			계량 시설	보관 장소																													
수집·운반	X	○	X	X	X	X																											
처분 및 재활용	계량 시설 설치 의무자	○	X	○	○	○																											
	그 외의 자	○	X	○	X	○																											
생활화학제품 안전·표시기준 강화 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생분해도 규제 품목 확대</li> <li>• 세탁세제만 생분해도 규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생분해도 규제 품목 확대</li> <li>• 섬유유연제도 생분해도 규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필수 사용상 주의사항 문구 신설(살균제)</li> <li>• 사람 또는 동물에 직접 사용(분사)하지 마시오. 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형광증백제' 표시사항 도입</li> <li>• 세정제, 세탁세제 및 표백제 내 사용된 형광증백제 물질의 명칭을 제품에 표시</li> </ul>	<p>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 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22.7.1.)</p>																														
			<p>환경부 폐자원관리과 (044-201-7362)</p>																														
			<p>환경부 화학제품관리과 (044-201-6826)</p>																														

구분	종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우리동네의 미래 기후 변화 전망정보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격자(해상도)별 기후변화 시나리오 제공</li> <li>• 전지구(135km/2019년), 한반도(25km/2020년), 남한(1km/2021년) 지역의 기후변화 시나리오 제공</li> <li>- 기온, 강수량 등 기후요소 격자자료 웹 제공</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행정구역별 기후변화 시나리오 제공</li> <li>• 광역시도, 시군·구, 읍면·동별 기후변화 시나리오 제공(2022. 12.-)</li> <li>- 지역별 기온, 강수량 등 기후요소 뿐 아니라 극한기후지수, 영향정보 웹 제공</li> <li>- 누구나 쉽게 기후변화를 이해하고 분석할 수 있는 기능 및 시각화 제공</li> <li>※ 지자체별 기후위기 및 탄소중립 정책에 실질적으로 활용 가능</li> </ul>	<p>기상청 기후변화감시과 (042-481-7421)</p>
국민 생활 편의를 위한 날씨알리미 앱 전면 개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민간 및 해외앱과 비교하여 가독성, 편의성 미흡으로 지적</li> <li>• 한 화면에 많은 정보제공으로 복잡하고, 직관적이지 않음</li> <li>• 집중호우 발생시 예측기반의 강수알림 제공으로 신속성에 한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용자 친화적인 쉽고 직관적인 앱으로 개편</li> <li>• 취약계층을 고려한 앱 편의성과 접근성 기능 강화</li> <li>- 저시력자, 고령층을 고려한 글자크기 조정 및 좌우 밀기 등 기능 추가</li> <li>- 시력보호를 위한 '색상반전(다크모드)' 화면 제공</li> <li>- 앱 실행없이 날씨정보 확인 가능한 위젯 추가 제공</li> <li>• 위험기상에 신속 대응할 수 있게 대국민 위험 알림 기능 강화 및 확대</li> <li>- 레이더 상황 기반의 강수알림 (강수 시작, 강한 비) 제공</li> <li>- 우박, 낙뢰알림 신규 추가 제공</li> </ul>	<p>기상청 정보통신기술과 (02-2181-0720)</p>
기상가뭄 10일 예측정보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67개 시·군별 1·3개월 기상가뭄예보 제공</li> <li>• (1개월 전망) 기상가뭄 현황 및 5주 후 일요일의 가뭄 전망(매주)</li> <li>• (3개월 전망) 기상가뭄 현황 및 1-3개월 간 월별 전망(월 2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67개 시·군별 10일 기상가뭄 예측정보 추가 제공</li> <li>• 일 2회, 열흘(+10일) 후까지 일단위 예측 정보</li> </ul>	<p>기상청 수문기상팀 (042-481-7431)</p>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구분	종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정보접근성 보장 지능정보제품 우선구매 제도 시행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우선구매대상지능정보제품의 검증제도 시행</li> <li>• (검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우선구매 대상지능정보제품에 대한 검증을 할 수 있다</li> </ul> </li> <li>• (검증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손 또는 팔 동작을 보완하는 기능</li> <li>- 반응시간을 보완하는 기능</li> <li>- 시력을 보완하거나 대체하는 기능</li> <li>- 색상 식별 능력을 보완하는 기능</li> <li>- 청력을 보완하거나 대체하는 기능</li> <li>※ 음성입력 대체, 인지능력 보완, 깜빡거림의 사용을 제한하는 기능 등</li> </ul> </li> <li>• (우선구매대상 종류 및 세부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우선구매대상지능정보제품의 종류, 세부사항은 장관이 고시</li> <li>※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 개정 ('22.5.11.)</li> </ul> </li> <li>• (검증절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검증 신청서 제출, 검증기준 충족 여부, 검증서 발급 등</li> </ul> </li> <li>• (우선구매 촉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가기관 등에 우선구매 요청 및 촉진에 공적이 있는 자에 대한 포상</li> </ul> </li> </ul>	지능정보화기본법 시행령 ( '21.6.10.)
		<p>☞ (참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 보도자료) '지능정보화기본법 시행령 개정 보도자료'</p>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포용정책팀 (044-202-6155)

구분	종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대기업인 공사업자의 기준 및 도급 공사금액 하한 신설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24조의2(대기업인 공사업자의 기준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법 제24조의2제5항에 따른 대기업인 공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공사업자</li> <li>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인 공사업자</li> <li>3. 「지방공기업법」 제33제1항에 따른 지방공기업인 공사업자</li> </ol> </li> <li>② 법 제24조의2제5항에 따라 국가등이 발주하는 공사에 대기업인 공사업자가 도급받을 수 있는 공사금액의 하한은 10억원으로 한다. 다만, 법 제24조의2 제2항에 따른 국가 등이 관련 법령에 따라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공사금액의 하한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li> </ul> </li> </ul>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4조의2 개정 ( '22.7.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업부설연구소 등을 효과적 관리를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국민연금공단 등 4대보험관리기관에 자료의 이용 및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 신설</li> <li>■ 위 개정사항을 바탕으로 기업부설연구소를 신청하려는 기업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목록에서 4대보험 가입증명서 삭제</li> </ul>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과 (044-202-6425)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신고 시 기업의 행정부담 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업부설연구소를 신청하려는 기업은 기업부설연구기관 직원이 해당 기업의 직원임을 증명하기 위한 4대보험 가입증명서 제출</li> </ul>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 '22.6.2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 개정사항을 바탕으로 기업부설연구소를 신청하려는 기업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목록에서 4대보험 가입증명서 삭제</li> </ul>	시행규칙 ( '22.8월 예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산업진흥과 (044-202-473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구분	종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계약방식 도입 및 지체상금 관련	〈신 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제18조의3(우주개발사업 추진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다음 각 호의 계약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정부가 제2항에 따라 계약을 통해 우주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그 계약</li> <li>우주개발사업시행기관이 제4항에 따라 우주개발사업의 일부를 다른 기관이나 단체로 하여금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 그에 관한 계약</li> <li>우주개발사업시행기관이 체결하는 연구 시설·장비·재료 등의 구매 또는 용역에 관한 계약</li> </ul> </li> </ul> </li> <li>정부 및 우주개발사업시행기관은 제5항 각 호의 계약을 체결할 때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의 이행을 지체한 계약상대방으로 하여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상금을 내도록 하여야 한다.</li> </ul>	우주개발진흥법 (‘22.12월 예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제18조의4(우주개발사업 성과의 확산 및 기술이전 등의 촉진)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우주개발사업 성과를 확산시키고, 기술이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li> <li>제18조의5(창업촉진) 정부는 우주개발과 관련된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li> <li>제18조의6(전문인력 양성)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우주개발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li> </ul>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뉴스페이스팀 (044-202-4624)

구분	종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우주신기술 지정	〈신 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제18조의7(우주신기술의 지정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우주기술 중에서 국내에서 신규성·진보성 등이 있다고 인정되고, 그 기술을 보급·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기술을 새로운 우주기술(이하 “우주신기술”이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우주기술</li> <li>외국에서 도입하여 익히고 개량한 우주기술</li> <li>다른 분야에 적용하여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우주기술</li> </ol> </li> </ul> </li> </ul>	우주개발진흥법 (‘22.12월 예정)
우주산업클러스터 지정	〈신 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제22조(우주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특정 지역을 우주산업클러스터로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사도지사”라 한다)와 협의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역을 우주산업클러스터로 지정할 수 있다.</li> </ul> </li> </ul>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뉴스페이스팀 (044-202-4624)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

구분	종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신 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부는 전략산업 등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육성·보호를 위하여 5년 단위로 전략산업 등의 육성·보호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li> <li>●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전략산업등의 육성·보호에 관한 기본방향</li> <li>2. 전략산업 등의 중장기 및 발전 전망에 관한 사항</li> <li>3. 전략산업 등의 육성·보호를 위한 제도의 수립 및 정비에 관한 사항</li> <li>4. 전략산업 등의 육성·보호를 위한 혁신 기반 및 생태계 조성에 관한 사항</li> <li>5. 전략산업의 기술력 향상, 특화단지 지정계획, 전문인력 양성·보호 등에 관한 사항</li> <li>6. 필요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li> <li>7. 그 밖에 전략산업 등의 육성·보호와 관련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li> </ol> </li> </ul>	국가첨단 전략산업법 ('22.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참고)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 &gt; 예산·법령 &gt; 최근개정법령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li> </ul>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과 (044-203-4203)

구분	종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산업데이터·AI 등 지능정보기술 활용 촉진을 위한 산업데이터 활용·보호 규범, 지원 제도, 추진체계 등 규정	(신 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총칙, 종합계획·위원회, 산업데이터 활용 생태계 조성, 디지털 전환 지원 등 구성</li> <li>● (총칙) 법의 목적과 산업데이터, 산업 디지털 전환 등 주요 개념을 정의하고, 국가 책무 및 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 포함</li> <li>● (추진체계) 산업 디지털 전환 종합계획 수립, 산업 디지털 전환위원회 구성·운영 및 기능 등 규정</li> <li>● (산업데이터 생태계 조성) 산업데이터 활용·보호 원칙, 활용 촉진 지원 및 계약 가이드라인, 활용지원 전문회사, 표준화 등 규정</li> <li>● (선도사업 지원) 디지털 전환 파급효과가 큰 선도사업을 발굴·선정하여 행정·기술·재정적 지원 및 법령정비 등 규제개선 지원</li> <li>● (디지털 전환 활성화 지원) 협업지원센터, 기술·서비스 개발, 전문인력 양성, 금융·세제, 국제협력 등</li> </ul>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22.7.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참고)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 &gt; 보도자료 &gt;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공포안 국무회의 의결"</li> </ul>	산업통상자원부 산업디지털전환추진단 (044-203-4542)
어린이제품 안전확인 효력상실 제도 시행	(신 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안전확인 신고의 효력상실 처분 및 표시 사용금지명령 등 신설</li> <li>● 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 ② 안전기준에 부적합, ③ 표시 거짓 또는 미표시, ④ 판매 중지 등의 명령 등의 경우</li> </ul>	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 ('22.8.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참고)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 &gt; 예산·법령 &gt; 최근개정법령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li> </ul>	산업통상자원부 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 (043-870-5574)

산업통상자원부

구분	종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초광역협력의 성공·확산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신 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초광역권 등 정의규정 신설</li> <li>• (초광역권) 지역의 경제 및 생활권역의 발전에 필요한 연계·협력사업 추진을 위해 2개 이상의 지자체가 상호 협의하거나 특별지방자치단체가 설정한 권역으로, 시·도 행정구역은 넘어서는 권역</li> <li>• (초광역권 산업) 국가균형발전 및 국가 경쟁력 향상에 기여도가 높고 지역경제·산업 발전을 촉진할 초광역 범위의 협력 산업</li> </ul>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22.8.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초광역권 발전계획 수립</li> <li>• (절차) 초광역권설정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협의하여 5년 단위 초광역권발전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며, 계획 수립 시 1년 단위 시행계획 수립 및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평가 절차 마련</li> <li>• (내용) 초광역권의 범위·발전목표·현황·여건분석, 초광역 협력사업 및 초광역권 산업 관련 사항, 투자자원 조달에 관한 사항 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초광역협력사업 추진</li> <li>• (초광역협력사업)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도 권역을 넘는 초광역협력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재정적·행정적 지원 가능</li> <li>• (초광역권산업 선정) 초광역권 수립 주체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요건을 충족하는 산업을 초광역권산업으로 선정 가능</li> </ul>	산업통상자원부 지역경제총괄과 (044-203-44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참고)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 보도자료) "초광역 협력의 성공·확산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li> </ul>	

산업통상자원부

구분	종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검사생략 고압가스 수입용기의 외국반송 기한 연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6개월 이내에 반송되는 수입 용기는 용기 등의 검사를 생략</li> <li>• 고압가스를 수입할 목적으로 수입되어 6개월 이내에 반송되는 외국인 소유의 용기로서 외국에서 검사를 받은 것</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용기의 경우 최대 2년까지 반송기한을 연장</li> <li>• 고압가스를 수입할 목적으로 수입되어 1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용기의 경우에는 2년) 이내에 반송되는 외국인 소유의 용기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외국의 검사기관으로부터 검사를 받은 것</li> </ul>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22.6.8.)
전기설비 원격점검 본격 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력중심의 주기별·대면·현장방문 방식의 전기안전점검 수행</li> <li>• (수행) 전기안전공사</li> <li>• (주기) 1~3년 / 업종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4차 산업기술(ICT·IoT) 활용, 디지털방식의 상시·비대면·원격 점검 체계로 전환</li> <li>• 관제센터 설치·운영(전기안전공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원격점검 장치를 통해 측정된 데이터의 전산처리 등 효율적 관리(수집, 저장, 분석, 경보 등)를 위한 '관제센터' 구축</li> </ul> </li> <li>• 원격점검 장치를 활용하여 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현행 정기점검 대체 또는 정기점검 시기 조정</li> </ul>	전기안전 관리법 ('22.6.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참고)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 보도자료) "전기안전관리법 일부 개정법률안, 공포, 원격점검 제도 도입"</li> </ul>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 (044-203-3982)



### 산업통상자원부

구분	종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석탄가공업의 승계신고 기간 연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제12조(석탄가공업의 승계신고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법 제20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석탄가공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계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10호서식의 신고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제12조(석탄가공업의 승계신고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법 제20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석탄가공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0호서식의 신고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li> </ul> </li> </ul>	석탄산업법 시행규칙 (’22.6.30.)
			산업통상자원부 석탄광물산업과 (044-203-5261)

### 중소벤처기업부

구분	종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소상공인 손실보상시 보장률 상향, 하한액 인상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보상금 산정시 보장률 90% 및 하한액 50만원 적용</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보상금 산정시 보장률 100% 및 하한액 100만원, 중소기업(연매출액 30억원 이하) 포함 적용</li> </ul>	소상공인법 (’21.10.8.)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손실보상과 (044-204-7294)

### 특허청

구분	종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산업재산권에 대한 질권의 설정등록료 인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산업재산권에 질권을 설정하고자 하는 경우 매건 8.4만원의 납부 부담 발생</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질권의 설정등록료를 매건 2만원으로 인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요)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에 질권을 설정하는 경우의 수수료를 매건 2만원으로 인하 조정</li> <li>• (기타) 6건이 초과하는 권리를 공동담보로 하여 신청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건마다 1만원으로 함</li> <li>* 기타 부분은 '26.12.31.까지 한시 적용</li> </ul> </li> </ul>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22.8.19.)
		☞ (참고) 특허청 홈페이지(보도자료) "개인·중소기업의 부담 덜어주기 위해 수수료 감면해드립니다"	특허청 정보고객 정책과 (042-481-8336)
국제특허출원, 인터넷 웹출원 방식으로 일원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2가지 전자출원 방식 사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PCT-SAFE) WIPO가 제공하는 PC설치용 출원서 작성 소프트웨어</li> <li>• (ePCT) WIPO웹사이트에 접속해 출원서류를 작성·제출하는 방식</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전자출원 방식 일원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ePCT) WIPO웹사이트에 접속해 출원서류를 작성·제출하는 방식</li> </ul> </li> </ul>	(’22.7.1.)
		☞ (참고) 특허청 홈페이지(보도자료) "국제특허출원, 인터넷 웹출원 방식으로 일원화된다"	특허청 정보고객정책과 (042-481-5112)

### 방송통신위원회

구분	종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장애인방송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애인방송 의무편성 비율(필수 지정사업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수어방송) 5%이상</li> <li>• (화면해설방송 재방송 비율) 30% 이하</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애인방송 의무편성 비율(필수지정사업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수어방송) 7%이상</li> <li>• (화면해설방송 재방송 비율) 25% 이하</li> </ul> </li> </ul>	<p><b>장애인방송 편성 및 제공 등 장애인 방송접근권 보장에 관한 고시</b> (*22년 하반기)</p> <hr/> <p>방송통신위원회 미디어다양성정책과 (02-2110-1466)</p>
기술결합서비스 신고제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방송사업자가 기술결합서비스를 하고자 하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 승인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효기간 만료 시 재승인 필요</li> <li>- 거짓 신고 시 2년 이하의 징역</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방송사업자가 기술결합서비스를 하고자 하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 신고 필요</li> <li>■ 별도 유효기간 없음</li> <li>■ 거짓 신고 시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li> </ul>	<p><b>방송법</b> (*22.7.12.)</p> <hr/> <p>방송통신위원회 지상파방송정책과 (02-2110-1421)</p>
방송통신 결합상품 원스톱 전환서비스 종합유선방송사업자까지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년 7월부터 5개 통신사 (KT, LGU+, SKB, SKT, KT-Skylife) 시행</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SKB케이블(구 티브로드), LG헬로비전, 달라이브, HCN, CMB 등 종합유선방송 사업자(MSO) 대상 방송통신 결합상품 (인터넷·유료방송 등) 원스톱 전환서비스 도입 및 시행</li> </ul>	<p>방송통신위원회 통신시장조사과 (02-2110-1537)</p>

### 국토교통부

구분	종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국내공항 짐배송서비스 적용 공항 확대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출발공항 : 1개 (김포공항)</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출발공항 : 6개 (김포·김해·청주·대구·광주·양양공항)</li> </ul>	<p>국가항공보안계획 (지침)</p> <hr/> <p>국토교통부 항공보안과 (044-201-4238)</p>

농림축산식품부

구분	종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농지 임대차계약 등 농지대장 변경신청 의무화 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임대차 등 농지 이용현황 정보를 지자체가 직권으로 파악하여 작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농지소유자 또는 임차인이 농지 임대차 계약 등 농지이용정보 변경 시 신고를 의무화하도록 함</li> <li>농지대장 변경신청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농지 임대차계약을 체결·변경·해제 시</li> <li>농막·축사 등 농축산물생산시설을 신규로 설치 시</li> <li>수로 등 토지개량시설을 신규로 설치 시</li> </ul> </li> </ul> <p>☞ (참고) 농식품부 홈페이지) 보도자료) "5월 18일부터 농지 취득자격 심사가 대폭 강화됩니다."</p>	<p><b>농지법 시행규칙</b> (*22.8.18.)</p> <p><b>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b> (044-201-1742)</p>
지자체 농지위원회 신설 및 투기우려지역 등 농지 취득 심사 시 농지위원회 심사 의무화	<p>(신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토지거래허가구역의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 등은 농지 취득 시 지자체 농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도록 함</li> </ul>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허가구역에 있는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li> <li>취득대상 농지 소재지 관할 시·군·자치구 또는 연접한 시·군·자치구 내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그 관할 시·군·자치구에 소재한 농지를 2022년 8월 18일 이후 처음으로 취득하려는 자</li> <li>1필지의 농지를 3인 이상이 공유로 취득하려는 경우 해당 공유자</li> <li>농업법인</li> <li>「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등록된 외국인</li> <li>「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li> <li>그 밖에 농업경영능력 등을 심사할 필요가 있어 시·군·자치구의 조례로 정하는 자</li> </ol> <p>☞ (참고)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 보도자료) "5월 18일부터 농지취득자격심사가 대폭 강화됩니다."</p>	<p><b>농지법 시행규칙</b> (*22.8.18.)</p> <p><b>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b> (044-201-1735)</p>

농림축산식품부

구분	종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국립농업박물관 개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농업의 유구한 역사와 공익적기능 등을 종합적으로 보고, 느끼고,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 없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립농업박물관 개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22년 하반기에 농업·농촌의 역사와 가치, 미래를 함께 보는 '국립농업박물관' 개관 * (위치) 경기도 수원시(구. 농촌진흥청) (규모) 부지50천㎡, 건축연면적 18천㎡ (구조구성) 농업관, 체험관, 식문화관, 식물공장 및 온실</li> </ul> </li> </ul> <p>☞ (참고) 농림축산식품부 및 국립농업박물관 홈페이지</p>	<p>(*22년 하반기)</p> <p><b>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과</b> (044-201-1512)</p>
동물의 중대진료에 관한 사전 설명 및 서면 동의 의무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수의사가 수술·수혈 등 중대진료를 할 경우, 진료에 관한 설명 및 서면 동의 의무 없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수의사가 동물의 수술등중대진료를 하는 경우, 동물 소유자에게 다음의 사항을 설명하고 서면으로 동의를 받아야 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설명 및 서면 동의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진단명, ② 수술등중대진료의 필요성, 방법 및 내용, ③ 전형적으로 발생이 예상 되는 후유증 또는 부작용, ④ 동물소유자 등의 준수사항</li> <li>다만, 수술등중대진료가 지체되면 동물의 생명이 위협해지거나 동물의 신체에 중대한 장애를 가져올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수술 등중대진료 이후에 설명하고 동의를 받을 수 있음</li> </ul> </li> </ul> <p>☞ (참고)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 보도자료) "동물병원 이용자의 알권리·진료 선택권 보장과 동물의료 발전을 위한 수의사법 개정 공표"</p>	<p><b>수의사법</b> (*22.7.5.)</p> <p><b>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과</b> (044-201-2523)</p>

농림축산식품부

구분	종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축산물 온라인 경매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축산물 온라인 경매 시스템 구축 추진(21-)</li> <li>시범 도매시장 공모 및 선정 (1개소, 농협나주공판장), 시스템 구축 등 기반 마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축산물 온라인 경매 본격 도입</li> <li>시스템 시범 운용을 거쳐 온라인 경매 시작</li> <li>시범 도매시장 3개소* 추가, 부분육 경매 도입</li> <li>* 농협고령공판장(지육), 도드람(지육), 협신식품(지육, 부분육)</li> </ul> <p>☞ (참고) 농식품부 홈페이지)보도자료 "축산물온라인경매 도입 보도자료 (7월 잠정)"</p>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과 (044-201-2318)
저탄소인증 농산물 구매 시 에코머니 포인트 적립률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에코머니 제휴카드(그린카드 등)로 에코머니 제휴 가맹점에서 저탄소인증 농산물 구매 시 에코머니 포인트 9% 적립</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에코머니 포인트 적립률 15%로 확대</li> </ul> <p>☞ (참고) 스마트그린푸드 (www.smartgreenfood.org) 그린소식)공지사항</p>	탄소중립기본법 제66조 ('22.6.1.)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재생 에너지팀 (044-201-2914)
농업법인 사전신고제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농업법인 설립·변경등기 후 지자체(시·군·구) 통지 의무 부과</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농업법인 설립·변경·해산등기 전 지자체(시·군·구) 신고 의무 부과</li> <li>신고 후 지자체가 발급한 신고확인증을 등기시 첨부</li> </ul> <p>☞ (참고)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 보도자료) "농업법인 관리 강화를 위한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p>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2.8.18.)  농림축산식품부 경영인력과 (044-201-1537)

농림축산식품부

구분	종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식물기반 그린백신 실증지원센터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식물백신의 연구지원 및 바이오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시설 구축(22.3.)</li> <li>(주요시설) 식물세포 배양시설, 단백질 정제시설, 동물효능 평가시설과, 공동 연구시설, 완전 밀폐형 식물재배 시설</li> <li>(기능) 바이오 벤처기업 입주, 백신 시제품 생산 및 동물용 의약품 특성·효능평가</li> </ul> <p>☞ (참고) 농식품부 홈페이지)보도자료) "국내최초 '그린백신실증지원센터' 구축·운영"</p>	농림축산식품부 종자생명산업과 (044-201-2475)
간척지를 임산물 생산·가공·저장·유통 단지 용도로 활용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간척지활용사업에 농산물·축산물·수산물의 생산, 가공, 저장 및 유통단지 용도로 활용</li> <li>임대대상 자격자</li> <li>(현행) 해당 시·군·구의 농어업법인, 지자체, 한국농어촌공사, 농협, 수협, 피해농어업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간척지활용사업에 농산물·축산물·수산물 이외에 임산물의 생산, 가공, 저장 및 유통 시설 단지를 추가하여 간척지활용사업 범위 확대</li> <li>임대대상 자격자</li> <li>(추가)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li> <li>임산물 범위 규정</li> <li>(신설)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5조제1항에 따른 농산물 중 임업활동으로부터 생산되는 산물(목재와 그 가공품 및 토석은 제외한다)로 규정</li> </ul> <p>☞ (참고)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 보도자료)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및 시행('22.7.5.)"</p>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22.7.5.)  농림축산식품부 간척지농업과 (044-201-1877)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

구분	종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2022년 세계유기농산업엑스포 개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세계유기농산업엑스포 개최를 통해 친환경농업의 필요성 인식을 확산하고, 환경가치기반 소비문화 조성</li> </ul> <p>☞ (참고) 2022 과산세계유기농산업엑스포 (2022goesan-organic.co.kr)</p>	농림축산식품부 친환경농업과 (044-201-2443)
한국농수산물대학교명 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교명 : 한국농수산물대학</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교명 : 한국농수산물대학교</li> <li>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농어업대학으로서의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 '한국농수산물대학'이 '한국농수산물대학교'로 교명 변경</li> </ul> <p>☞ (참고) 한국농수산물대학교)보도자료) "한국농수산물대학, 한국농수산물대학교로 새롭게 출발(6.2.)"</p>	한국농수산물대학설치법 ('22.6.1.)  농림축산식품부 경영인력과 (044-201-1535)
가축분뇨 액비 내 질소 함유량 기준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축분뇨 액비 내 질소 최소 함유량 기준 설정</li> <li>질소 함량 0.1% 이상이면서 질소, 인산, 칼리 성분의 합계 0.3% 이상</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축분뇨 액비 내 질소 최소 함유량 기준 삭제</li> <li>질소, 인산, 칼리 성분의 합계 0.3% 이상</li> </ul> <p>☞ (참고)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 보도자료) "액비 활용처 다각화로 새로운 경축순환농업 이끈다(가축분뇨 자원화 및 이용 촉진에 관한 규칙 개정 추진)(5.30.)"</p>	가축분뇨의 자원화 및 이용 촉진에 관한 규칙 ('22.8월)  농림축산식품부 축산환경자원과 (044-201-2362)
모든 개체별 이력관리 시범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축산물이력제에서 돼지 사육현황은 농장별로 관리</li> <li>농장별로 돼지 사육마릿수를 매월 신고토록 하여 축산물이력 관리시스템으로 관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모든(후보돈 포함)은 개체별로 귀표를 부착하여 관리</li> <li>축산물이력관리시스템에 개체별로 등록하고 이동·출하·폐사 시 신고하여 사육변동현황을 관리</li> </ul> <p>☞ (참고) 농식품부 홈페이지)보도자료) "모든 개체별 이력관리 시범운영 개시(6.8.)"</p>	농림축산식품부 축산경영과 (044-201-2346)

구분	종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축산농가 사료구매 비용 부담 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료구매자금지원 3,500억원 (금리 1.8%) 지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료구매자금 총 1.5조원 규모 확대 및 대출이자 1%로 인하</li> <li>(규모) 용자 사업 3,550억원 외 특별사료 구매자금(이자보전)을 통해 11,450억원 추가 지원</li> <li>* 이차보전 예산 109억원 추가 확보 (추경 예산 국회 확정, 5.29)</li> <li>(금리) 기존 용자사업(소급) 및 신규 특별사료구매자금(이자보전) 동일하게 1% 적용</li> </ul> <p>☞ (참고) 농식품부, 특별사료구매자금 1.5조 지원 보도자료 배포(5.31.)</p>	농림축산식품부 축산환경자원과 (044-201-2359)
지역 먹거리 계획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공공급식통합플랫폼'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학교급식전자조달</li> <li>시스템 운영(eaT)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학교급식 식재료 구매 계약, 수발주 시스템으로 운영</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공급식통합플랫폼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ICT활용 공공급식 관련 플랫폼 제공으로 지역 농산물 소비기반 마련, 먹거리 안전성 제고, 식재료 균형 수급</li> <li>* (소비기반) 다양한 공공급식 수요처와 생산자를 급식지원센터로 중심으로 연결하여 지역 먹거리의 식재료 공급확대 지원</li> <li>* (안전먹거리) 농·수·축산물 이력정보, 친환경 HACCP 등 시스템과 연계하여 안전한 먹거리 공급 및 식재료 품질 제고</li> <li>* (수급관리) 지역별·센터별 품목·계약량·재고량 등의 집계를 통해 지역(국내) 식재료 유통현황 파악 및 센터간 균형 수급 관리</li> </ul> </li> </ul> <p>☞ (참고) 농림축산식품부 및 aT 홈페이지</p>	('22.9월)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사회복지과 (044-201-1527)
식품가공원료매입·외식업체육성 고정금리 0.5%p 인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고정금리) 농업경영체 2.0% (시설자금 2.0%), 일반업체 2.5%</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고정금리) 농업경영체 1.5% (시설자금 2.0%), 일반업체 2.5%</li> </ul>	('22.5.31.)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진흥과 (044-201-2139)

## 해양수산부

구분	종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항만사업장별 총괄 안전관리시스템 도입	■ 산업안전에 관한 사무는 고용노동부가 관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항만사업장 재해예방 사무를 해양수산부가 주도적으로 관리</li> <li>• 2022년 8월 4일부터 「항만안전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항만사업장별 총괄 안전관리 시스템'이 도입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하역사는 항만사업장별로 모든 항만 출입자를 포함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관리청의 승인을 받아야 함</li> <li>- 항만안전점검관 제도가 도입되어 항만사업장별 안전관리계획서의 승인, 이행 여부 상시점검 등 항만재해 예방 업무 전담</li> <li>- 항만근로자 안전교육 의무화로 하역사, 항만서비스 업체 등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를 대상으로 작업내용, 안전규칙, 위험요소 등에 대한 교육 실시</li> <li>- 항만별 노·사·정 항만안전협의체가 구성되어 주기적인 합동점검 실시 등 항만안전사고 예방 활동</li> </ul> </li> </ul> <p>☞ (참고) 해양수산부 홈페이지(보도자료) "항만안전특별법 시행(예정)"</p>	<p><b>항만안전특별법</b> (*22.8.4.)</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약천후 및 외해 등에서 대규모 해양오염사고 시 선제적인 대응 가능</li> <li>• 유출유를 회수하면서 기름띠를 포집하여 피해최소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양식장, 해양시설 등으로 유입 시 심각한 해양환경오염 및 경제적 피해 예방</li> </ul> </li> <li>• 기상악화 시에도 운항가능하고, 높은 파고에도 유회수기 운영 가능</li> <li>• 예인능력과 타선 화재 진압설비로 복합 해양사고 시 환경오염 방지</li> </ul> <p>☞ (참고) 해양수산부 홈페이지(보도자료) "2022년 다목적 대형방제선 취항 보도자료(예정)"</p>	<p><b>해양수산부 항만운영과</b> (044-200-5774)</p>
다목적 대형방제선 취항 및 배치	■ 허베이스피리트호 사고 (07.12. 12,547t)와 같은 대형오염사고 시 약천후로 인해 대응 미흡한 측면이 있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약천후 및 외해 등에서 대규모 해양오염사고 시 선제적인 대응 가능</li> <li>• 유출유를 회수하면서 기름띠를 포집하여 피해최소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양식장, 해양시설 등으로 유입 시 심각한 해양환경오염 및 경제적 피해 예방</li> </ul> </li> <li>• 기상악화 시에도 운항가능하고, 높은 파고에도 유회수기 운영 가능</li> <li>• 예인능력과 타선 화재 진압설비로 복합 해양사고 시 환경오염 방지</li> </ul> <p>☞ (참고) 해양수산부 홈페이지(보도자료) "2022년 다목적 대형방제선 취항 보도자료(예정)"</p>	<p><b>해양환경관리법</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양식장 등 어장에서는 발포폴리스티렌(EPS) 부표의 경우 파손을 줄일 수 있는 고밀도 (0.020g/cm³ 이상) 제품을 사용해야 함</li> </ul>	<p><b>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과</b> (044-200-5283)</p>

## 해양수산부

구분	종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총허용어획량(TAC) 단계적 확대	■ 12개 어종, 14개 업종에 대한 TAC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갈치, 참조기, 삼치 등 3개 어종에 TAC 제도를 추가 적용, 15개 어종, 17개 업종에 대해 TAC를 적용</li> </ul>	<p><b>총허용어획량 관리 및 시행계획</b> (*22.7.1.)</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근해어업구조개선법에 따라 감척, 실태조사 대상이 되는 연근해어업은 근해어업, 연안어업, 구획어업 및 정치망어업으로 함</li> <li>• 연근해어업은 자율감척 및 직권감척 대상이 됨</li> <li>• 근해어업은 해양수산부 장관이, 연안 및 구획어업은 시·도지사가 감척 시행계획을 수립</li> </ul>	<p><b>해양수산부 수산자원정책과</b> (044-200-5533)</p>
연근해어업 감척 사업에 정치망어업 신규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근해어업구조개선법에 따라 감척, 실태조사 대상이 되는 연근해어업은 근해어업, 연안어업, 구획어업 및 정치망어업으로 함</li> <li>• 연근해어업은 자율감척 및 직권감척 대상이 됨</li> <li>• 근해어업은 해양수산부 장관이, 연안 및 구획어업은 시·도지사가 감척 시행계획을 수립</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근해어업구조개선법에 따라 감척, 실태조사 대상이 되는 연근해어업은 근해어업, 연안어업, 구획어업 및 정치망어업으로 함</li> <li>• 연근해어업 중 근해·연안·구획어업은 자율감척 및 직권감척 대상이 되고,</li> <li>• 정치망어업은 자율감척 대상에는 포함되나 직권감척 대상에서는 제외</li> <li>• 근해어업은 해양수산부 장관이, 연안·구획 및 정치망어업은 시·도지사가 감척 시행계획을 수립</li> </ul>	<p><b>연근해어업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b> (*22.7.12.)</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양식장 등 어장에서는 발포폴리스티렌(EPS) 부표의 경우 파손을 줄일 수 있는 고밀도 (0.020g/cm³ 이상) 제품을 사용해야 함</li> </ul>	<p><b>해양수산부 어업정책과</b> (044-200-5516)</p>
어장 내 스티로폼 부표의 신규 설치 금지 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양식장 등 어장에서는 발포폴리스티렌(EPS) 부표의 경우 파손을 줄일 수 있는 고밀도 (0.020g/cm³ 이상) 제품을 사용해야 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양식장 등 어장에서는 발포 부표의 경우 발포폴리스티렌(EPS)이 포함되지 않은 제품을 사용해야 함</li> <li>• '22.11.13.~ : 수하식양식업</li> <li>• '23.11.13.~ : 모든 양식업, 정치망어업, 구획어업</li> </ul>	<p><b>어장관리법 시행규칙</b> (*22.11.13.)</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양식장 등 어장에서는 발포 부표의 경우 발포폴리스티렌(EPS)이 포함되지 않은 제품을 사용해야 함</li> </ul>	<p><b>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과</b> (044-200-5623)</p>

### 해양수산부

구분	종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굴 껍데기 등 수산부산물 재활용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사업장 폐기물로 분류되어 제한적 재활용</li> <li>* 건축자재 원재료, 비료, 사료, 공유수면 매립지역 성토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수산부산물법」에 따라 수산부산물로 분류되어 재활용 유형 대폭 확대*</li> <li>* 석회석 대체재, 종자 배양용 인공채묘판, 인공어초, 화장품, 의약품, 식품·식품첨가물 등으로 확대</li> </ul>	수산부산물법 및 하위법령 시행 ('22.7.21.)
			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 (044-200-5633)

### 산림청

구분	종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제 시행	(신 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안 시행</li> </ul>	('22.10.1.)
			산림청 임업직불제 긴급대응반 (042-481-1242)

### 국방부

구분	종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재판권(수사권) 민간 이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군인등의 신분취득 전 범죄에 대해 군사법원이 재판권 행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성폭력범죄, 군인등의 사망사건의 원인이 되는 범죄 및 군인등이 그 신분을 취득하기 전에 저지른 범죄를 군사법원의 재판권에서 제외</li> </ul>	군사법원법 ('22.7.1.)	
군사법원 조직 개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방부와 각 군에 고등 및 보통군사법원을 설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군사재판 항소심(2심)을 서울고등법원으로 이관하고, 각 군 군사법원을 통합하여 국방부 장관 소속으로 각 지역 군사법원을 설치</li> </ul>		
평시 관할관제도 폐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휘관이 군사법원의 행정사무를 관장하는 관할관제도 운영</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관할관제도 폐지</li> </ul>	국방부 법무담당관실 (02-748-6811)	
재판부 구성 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군사법원의 재판관을 군판사와 심판관으로 구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심판관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재판관을 군판사 3명으로 구성</li> </ul>		
군검찰 조직 개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장성급 장교가 지휘하는 부대에 보통검찰부 설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방부 장관 및 각 군 참모총장 소속으로 검찰단 설치</li> </ul> <p>☞ (참고) 국방부 홈페이지&gt;보도자료&gt; "군 사법제도, 이렇게 달라집니다"</p>		
장병 기본급식비 인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장병 1인당 1일 기준 기본급식비 단가(3끼) 11,000원 ('22년 상반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장병 1인당 1일 기준 기본급식비 단가(3끼) 13,000원(18.2% 인상, '22년 하반기)</li> <li>※ 기본급식비 단가 인상을 위해 1,125억원 급식비 증액</li> </ul>	('22.7.1.)	
장병내일준비적금 비대면 가입체계 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장병내일준비적금은 가입자가 직접 은행에 방문하여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가입</li> <li>가입자격확인서를 국방인사정보체계에서 신청하여 승인받고 출력하여 제출(원본)</li> <li>대리 가입 시 가입자격확인서(원본)을 우편으로 접수받아 부모님에 한하여 가족관계증명서를 지참하여 가입 가능</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온라인 비대면 가입도 가능</li> <li>• '나라사랑포털 앱'을 통해 가입자격확인서 메일링서비스 가능(2022.5.12.시행)</li> <li>• 국민은행, 기업은행에 한하여 온라인 비대면 가입가능(2022.6월 시행)</li> </ul>	('22.6월)
			국방부 복지정책과 (02-748-6613)	

병무청

구분	종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입영 전, 병역과 진로를 연계한 상담서비스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서울, 대전, 대구, 광주에 병역진로설계지원센터 운영</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부산, 춘천에 병역진로설계지원센터 추가 설치</li> </ul>	<p><b>제도 개선</b> (‘22.7월)</p>
			<p><b>병무청</b> <b>현역모집과</b> (042-481-2722)</p>
입영판정검사 대상 확대 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입영판정검사 대상</li> <li>육군 제2작전사령부 예하사단 입영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입영판정검사 대상 확대</li> <li>제2작전사령부 예하사단+지상작전사령부 동부권역 입영자</li> </ul>	<p><b>제도 개선</b> (‘22.7월)</p>
			<p><b>병무청</b> <b>병역판정검사과</b> (042-481-2918)</p>
중앙신체검사소 신체검사 화상 문진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중앙신체검사소 방문을 통한 문진, 신체등급 판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신체접촉 불필요 질병자 중 희망자에 대하여 화상 문진 실시</li> <li>아나필락시스 5급 대상, 뇌성마비 5·6급 대상 등 7개 질환</li> </ul>	<p><b>제도 개선</b> (‘22.7월)</p>
			<p><b>병무청</b> <b>병역판정검사과</b> (042-481-2918)</p>
모집병 지원 대상 기술자격·면허 종류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모집병 지원 대상 : 군 특기 연계 분야 전공자, 국가 기술자격 또는 일반자격 취득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모집병 지원 대상 : 군 특기 연계 분야 전공자, 국가 기술자격 또는 일반자격 취득자 + 일학습병행 자격 취득자</li> </ul>	<p><b>제도 개선</b> (‘22.7월)</p>
			<p><b>병무청</b> <b>현역모집과</b> (042-481-2719)</p>

병무청

구분	종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국군체육부대 선수(일반병) 병무청 모집·선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군체육부대 선수 군에서 직접 선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군체육부대 선수 병무청에서 ‘체육특기병’으로 모집·선발</li> </ul>	<p><b>제도 개선</b> (‘22.9월)</p>
			<p><b>병무청</b> <b>현역모집과</b> (042-481-2719)</p>
장애학생 활동지원 분야 사회복지무원 특별휴가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특별휴가</li> <li>사회복지시설 근무자 : 연 10일 이내</li> <li>사회복지시설 외 근무자 : 연 5일 이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특별휴가</li> <li>사회복지시설 및 장애학생 활동 지원분야 근무자 : 연 10일 이내</li> <li>그 외 분야 근무자 : 연 5일 이내</li> </ul>	<p><b>병역법</b> <b>시행령 제59조</b> (‘22.7월)</p>
			<p><b>병무청</b> <b>사회복무관리과</b> (042-481-3010)</p>
병역준비역 편입자 병역이행 절차 등 안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9세) 병역판정검사대상자에게 본인선택안내문 최초 발송</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8세) 병역준비역 편입자에게 안내문 발송</li> <li>병역판정검사, 현역·보충역 등의 복무 등 병역이행 절차 안내</li> </ul>	<p><b>병역법</b> <b>제6조의2</b> (‘22.7월)</p>
			<p><b>병무청</b> <b>병역판정검사과</b> (042-481-2916)</p>
예비군 편성자 병역이행 절차 등 안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예비군 편성 시 병역이행 안내에 대한 규정 없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현역·보충역 복무를 마친 후 예비군 편성자에게 안내문 발송</li> <li>예비군의 복무기간, 병력동원소집, 병력동원훈련소집 및 연기 등 병역이행 절차 안내</li> </ul>	<p><b>병역법</b> <b>제6조의2</b> (‘22.7월)</p>
			<p><b>병무청</b> <b>동원관리과</b> (042-481-2803)</p>



방위사업청

방위사업청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무기체계 연구개발사업 지체상금 면제사유 추가 및 면제사유 확인절차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39조(계약기간 연장 및 지체상금 면제 등)</li> <li>• ① 해당 계약관은 ~ 지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 할 수 있다. 단, 제3호 차목의 경우에는 지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 면제에만 적용할 수 있다.</li> <li>3.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이 납품이 지연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 차. (생략) 카. (신 설)</li> <li>• ②~⑥ (생략)</li> <li>• ⑦ (신 설)</li> <li>■ 부 칙</li> <li>• (신 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39조(계약기간 연장 및 지체상금 면제 등)</li> <li>• ① 해당 계약관은 ~ 지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 할 수 있다. 단, 제3호차목 및 카목의 경우에는 지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 면제에만 적용할 수 있다.</li> <li>3.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이 납품이 지연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 차. (현행과 같음) 카. 연구개발 사업 추진 간 가혹한 시험조건 또는 도전적 연구개발 수행에 따른 기술적 한계로 개발이 지연됨을 기품원이 확인하는 경우</li> <li>• ②~⑥ (현행과 같음)</li> <li>• ⑦ 제1항제3호카목에 따른 사유로 계약상대자가 지체상금 면제 신청을 한 경우, 계약팀장은 기품원에 연구개발 사업 추진 간 가혹한 시험조건 또는 도전적 연구개발 수행에 따른 기술적 한계 여부를 검토 요청한다.</li> <li>■ 부 칙</li> <li>•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li> <li>• 제2조(지체상금 면제 등에 관한 적용례) 제39조제1항 단서, 같은 항 제3호차목 및 같은 조 제7항 개정규정은 이 훈령 시행 이후 면제원이 최종 결정되는 계약부터 적용한다.</li> </ul>	<p>군수품조달관리규정 (2022.3.22.)</p> <p>방위사업청 주 계약부서</p>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군용총포·도검·화약류 안전관리 지원사업 시행	(신 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군용총포·도검·화약류 안전관리 지원사업 시행</li> <li>• (지원대상) -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66조의2에 따라 군용총포·도검·화약류(이하 "군용총포등") 제조시설 사용허가 또는 저장허가를 받은 업체</li> <li>• (사업범위) -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컨설팅 지원 : ISO45001 인증 획득을 위한 컨설팅 등 기술지원 -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컨설팅 지원 : ISO45001 인증심사(최초, 사후, 갱신) 지원 - 안전진단 지원 : 설비·공정 등에 대한 위험 인자 식별 및 해결방안 제시</li> </ul>	<p>방위사업법 (‘22.4.1.)</p> <p>방위사업법 시행령 (‘22.7.1.)</p> <p>군용총포·도검·화약류 안전관리 지원사업 운영규정 (‘22.3.22.)</p> <p>방위사업청 방산정책과 (02-2079-6451)</p>

외교부

구분	종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종전 일반여권(녹색) 병행발급 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차세대일반 전자여권(남색) 전면 도입(2021.12.21.)</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차세대일반 전자여권(남색) 및 종전 일반여권(녹색)의 병행발급 시행</li> <li>• 종전 일반여권의 발급을 원하는 사람에게는 재고 소진 시까지 (최장 2024년 12월 31일) 유효기간이 5년 미만인 일반여권 발급</li> </ul>	여권법시행령 ('22.5.31.)
			외교부 여권과 (02-2002-0133)

법무부

구분	종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천안개방교도소 여성수용자 개방시설로의 전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남성수용자 개방시설</li> <li>■ 개방처우 실시</li> <li>• 시설 내 접견</li> <li>• 일반 귀휴</li> <li>• 시설내 종교행사</li> <li>• 직업훈련 미실시</li> <li>• 봉사원 인솔</li> <li>• 음성전화</li> <li>• 라디오 소지 불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여성수용자 개방시설</li> <li>• 시설 전면 리모델링</li> <li>• 거실내 침대·화장대 비치</li> <li>■ 개방처우의 획기적 확대</li> <li>• 외부 가족 접견</li> <li>• 주말귀휴, 미성년 자녀 돌봄 귀휴까지 확대</li> <li>• 외부 종교행사 참석</li> <li>• 외부 직업훈련 실시</li> <li>• 자율보행 및 운동</li> <li>• 음성 및 영상전화</li> <li>• 라디오 소지 허용</li> </ul>	본격운영 ('22년 하반기)
			법무부 교정혁신추진단 (02-2110-3792)

법무부

구분	종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피해자 국선변호사에 대한 평가 제도 도입	(신 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형사절차에서 피해자의 권리 보장을 위하여 피해자 국선변호사의 활동에 대한 평가제도 도입</li> <li>• (평가 주체 및 시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피해자 국선변호사를 선정한 검사에 의해 반기별 평가</li> </ul> </li> <li>• (평가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견서 제출</li> <li>- 형사 절차 참여 성실도</li> <li>- 피해자 권리 보호를 위한 노력</li> </ul> </li> <li>• (결과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검사장 및 지청장이 다음 연도 국선변호사 명부 작성 시 참고자료로 활용</li> </ul> </li> </ul> <p>☞ (참고) 법무부홈페이지)법무뉴스&gt; 보도자료)*해명자료/설명자료*</p>	검사의 국선변호사 선정등에 관한 규칙 ( '22.7.1.)
			법무부 여성아동 인권과 (02-2110-3648)

행정안전부

구분	종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분확인이 필요한 경우 본인이 소지하고 있는 실물 주민등록증을 통해 신분확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민등록증의 수록 내용을 본인의 스마트폰으로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 시행</li> <li>• (효과) 주민등록증 상시 소지 불편 해소, 분실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및 범죄 악용 예방</li> </ul> <p>☞ (참고) 행정안전부 홈페이지)보도자료&gt; "이제 스마트폰으로 주민등록증 확인 가능해진다."</p>	주민등록법 ('22.7.12.)
			행정안전부 주민과 (044-205-3155)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구분	종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온라인 청원 및 공개청원 제도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면으로만 청원 신청이 가능</li> <li>■ 공개청원 제도 없었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온라인으로 청원 신청 가능</li> <li>• 기존의 방법(방문, 우편, 팩스) 외에 온라인 청원 시스템을 통해 편리하게 청원 신청이 가능</li> <li>■ 공개청원 제도 시행</li> <li>• 법령 제개정 및 폐지와 공공 제도·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은 공개로 청원하여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청원을 처리</li> </ul> <p>☞ (참고) 행정안전부 홈페이지)보도자료) "청원법 60년 만에 전면개정으로 국민 청원권 대폭 강화 ('20.12.15.)", "「청원법 시행령」 제정안 국무회의 의결('21.12.14.)"</p>	<p>청원법 ('22.12.23.)</p> <hr/> <p>행정안전부 국민참여혁신과 (044-205-2429)</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방의회의원 검직 신고 현황은 지방의회 재정적으로 공개</li> <li>■ 지방의회별 의정활동 정보공개 범위·내용·방식이 상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방의회별 검직 신고 현황 의무 공개</li> <li>■ 지방의회 의정활동 정보공개 가이드라인을 통해 의정활동 정보공개 확대</li> </ul>	<p>지방자치법 ('22.7.13.)</p> <hr/> <p>행정안전부 선거의회자치법규과 (044-205-3372, 3373)</p>

구분	종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 및 사업 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및 지역별 배분액 미확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확정 및 사업 본격 시행</li> <li>• (개요) 지역(인구감소지역 등) 주도의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재정 지원</li> <li>• (법적 근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li> <li>• (규모/기간) 연 1조원(기초 75%, 광역 25%), 10년간 총 10조원 규모로 지원</li> <li>• (운용 주체) 17개 시·도로 구성된 기금관리조합이 관라·운영</li> <li>• (배분방법) 기초는 투자계획을 평가하여 결과에 따라 차등 배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광역은 인구감소지수, 재정·인구 여건 등을 고려하여 정액 배분</li> </ul> </li> </ul> <p>☞ (참고) 행정안전부 홈페이지)법령정보)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 등에 관한 기준 고시」"</p>	<p>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 기본법 ('22.1.13.)</p> <hr/> <p>행정안전부 지역균형발전과 (044-205-3508)</p>
주소기반 산업지원 서비스 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소정보 제공(9종)</li> <li>• 주소DB, 영문주소DB, 상세주소DB, 건물DB, 위치정보요약DB, 내비게이션용 DB 등 9종 주소정보 제공</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소정보 확대 제공 및 산업 지원</li> <li>• 공개·제공하는 주소정보를 사물주소, 사물주소 시설의 기준점 등 50종으로 확대·제공</li> <li>• 정부와 기업 간 주소관련 산업계 소통창구 제공을 통해 주소와 위치 기반 산업계 활성화 및 신산업창출 지원</li> </ul>	<p>행정안전부 주소정책과 (044-205-3554)</p>

조달청

조달청

구분	종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벤처나라 '예비지정' 사업 시범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전문가들의 기술품질 심사를 거친 제품만 벤처나라 등록 가능</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청년기업, 제조능력을 갖춘 초기 창업-벤처기업은 최소한의 자격요건만 확인 후, 신속하게 벤처나라에 상품 등록</li> </ul>	「벤처나라 등록 물품·서비스 지정 관리 규정」 (‘22.3.1.)  조달청 혁신조달기획관 혁신조달운영과 (042-724-7121)
창업-벤처기업 협업대상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는 창업-벤처기업 협업승인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협업승인 대상은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업체</li> </ul>	「조달청 제조물품 직접생산확인 기준」 (‘22.9.1. 시행)
소프트웨어의 직접생산확인 기준 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생산인력은 상시근로자(대표자 제외) 최소 1명 이상 보유</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소프트웨어 제조의 경우 생산인력은 소프트웨어 기술자인 상시근로자 (대표자 포함) 최소 1명 이상 보유</li> </ul>	
시정조치 요구 대상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시정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유효한 제조공장 증명이 일부 부족한 경우</li> <li>생산시설, 생산인력, 또는 생산 공정 일부를 갖추지 않은 경우</li> <li>동일 소재지에 복수의 업체가 제조공장을 운영하는 경우</li> <li>독립적 운영 등과 같은 기준 미충족한 경우</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시정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유효한 제조공장 증명이 일부 부족한 경우</li> <li>생산시설, 생산인력, 또는 생산공정 일부를 갖추지 않은 경우</li> <li>동일 소재지에 복수의 업체가 제조공장을 운영하는 경우 독립적 운영 등과 같은 기준 미충족한 경우</li> <li>자체기준표와 실제 생산방법이 상이한 경우</li> </ul> </li> </ul>	조달청 조달품질원 조사분석과 (054-716-8161)
품명별 세부 직접생산 확인 기준 명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등록업체에 대한 직접생산 확인 시, '품명별 세부기준'에 대한 적용시점 정의 없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제조물품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등록일 당시 적용되는 '품명별 세부기준'에 따라 직접생산 확인 조사</li> </ul>	

구분	종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시기반 발주지원, 'e-제안요청 도움' 시스템 오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공SW사업 조달발주에 따른 시간과 비용이 증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발주기관에 SW사업 제안요청서 자동생성 및 자가진단, 지능형 검색기능을 제공 → SW사업발주 업무지원</li> </ul>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제27조 (조달업무의 지원 및 대행)」  조달청 정보기술계약과 (042-724-7075)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 실적에 참여하는 경우 시공경험 평가방법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전문건설사업자가 보유한 종합공사 실적 평가</li> <li>전문건설사업자가 보유한 상대시장(종합공사) 진출실적에 대한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 부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전문건설사업자가 보유한 종합공사 실적 평가기준 마련</li> <li>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 실적을 보유한 경우 해당 종합공사실적을 우선평가(종합공사실적/평가기준규모X배점)하고</li> <li>배점한도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전문공사실적을 평가(전문공사실적/평가기준규모X배점)하여 종합공사실적과 합산</li> </ul>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조달청 시설사업국 시설총괄과 (042-724-7350)
민간의 혁신기술을 공공에 도입하는 혁신제품 지정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혁신제품 지정을 위한 공모를 연간 5회 시행하였으나,</li> <li>기술혁신 및 공공서비스 개선효과가 높은 혁신제품 발굴기회 부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정규모 횟수 대폭확대로 기업의 혁신제품 참여기회 확대</li> <li>기술혁신 및 공공서비스 개선효과가 높은 혁신적 제품 지정을 위하여 국방부, 행안부 등 기관협력 과제 공모시행</li> </ul>	('22년 하반기)
			조달청 혁신조달기획관 혁신조달운영과 (042-724-7203)

경찰청

경찰청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회전교차로 통행방법 위반 시 범칙금·과태료·벌점 부과	〈신 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회전교차로에 대한 정의 및 회전교차로 통행방법 규정에 따른 위반 시 범칙금·과태료·벌점 부과</li> </ul>	도로교통법 ('22.7.12.)
			경찰청 교통안전과 (02-3150-2252)
보행자 우선도로에서 의 보호의무 위반 시 벌칙 규정	〈신 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보행자우선도로의 정의 및 운전자가 보행자우선도로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 불이행 시 범칙금·벌점 부과</li> </ul>	도로교통법 ('22.7.12.)
			경찰청 교통안전과 (02-3150-2252)
어린이보호구역 내 무신호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의무 위반 시 벌칙 규정	〈신 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어린이보호구역 내 무신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도록 규정한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시 범칙금·과태료 부과</li> </ul>	도로교통법 ('22.7.12.)
			경찰청 교통안전과 (02-3150-2252)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운전자 교통법규 위반 시 고용주등 과태료 부과항목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운전자의 교통법규 위반 시 고용주등에게 부과할 수 있는 과태료 항목은 신호위반, 속도위반 등 13개 항목</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운전자의 교통법규 위반 시 고용주등에게 부과할 수 있는 과태료 항목에 통행금지 위반, 안전운전 의무위반 등이 추가되어 26개 항목으로 확대</li> </ul>	도로교통법 ('22.7.12.)
			경찰청 교통안전과 (02-3150-2252)
특별교통안전교육 교육시간 및 범칙금 상향	〈신 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특별교통안전교육 교육시간 및 범칙금액이 상향됨</li> </ul>	도로교통법 ('22.7.1.)
			경찰청 교통기획과 (02-3150-2253)
중앙선 침범 위반 이륜자동차의 고용주등에 과태료 부과	〈신 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이륜자동차 운전자의 중앙선 침범 위반 시 고용주등에게 과태료 부과</li> </ul>	도로교통법 ('22.10.20.)
			경찰청 교통안전과 (02-3150-2252)

소방청

구분	종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내용연수 경과한 소화기 성능이 정상인 경우 연장사용 제도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분말소화기 내용연수(10년) 경과시 성능검사에 합격한 경우 → 1회에 한하여 3년 연장 사용 가능</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분말소화기 내용연수(10년) 경과시 성능 확인검사에 합격한 경우 → 계속해서 연장사용 가능</li> <li>※ 연장 사용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품검사 후 경과연수 20년 미만 : 3년</li> <li>- 제품검사 후 경과연수 20년 이상 : 1년</li> </ul> </li> </ul>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22.7월 예정)
			소방청 소방산업과 (044-204-7512)
위험물운반자 자격제 시행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험물운반자 자격 제도 신설</li> <li>● 운반용기에 수납된 위험물을 지정수량 이상으로 차량에 적재하여 운반하는 차량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함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국가기술택자격법」에 따른 위험물 분야의 자격을 취득</li> <li>2. 위험물 운반자 교육을 수료</li> </ol> </li> </ul> <p>☞ (참고) 한국소방안전원홈페이지&gt; 공지사항&gt; "위험물 운반자" 강습교육 실시안내"</p>	위험물 안전관리법 ('22.6.10.)
			소방청 위험물안전과 (044-205-7482)
화재안전조사 결과 공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li> <li>● 소방관서장은 소방특별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명령의 미이행 사실 등을 관계인에게 미리 알리고 공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li> <li>● 소방관서장은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터넷 홈페이지나 전산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소방대상물의 위치, 연면적, 용도 등 현황</li> <li>2. 소방시설등의 설치 및 관리 현황</li> <li>3.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설치 및 관리 현황 등</li> </ol> </li> </ul>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22.12.1.)
			소방청 화재예방총괄과 (044-205-7442)

소방청

구분	종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화재예방강화지구 소방시설 설치 지원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원대상 : 화재예방강화지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정지역, 공장·창고 및 목조건물이 밀집한 지역</li> <li>-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li> <li>- 위험물의 저장 및 처리 시설이 밀집한 지역</li> <li>- 석유화학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이 있는 지역</li> <li>- 산업단지 및 소방시설·소방용수시설 또는 소방출동로가 없는 지역</li> </ul> </li> <li>■ 지원조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방설비등 설치를 명하는 경우</li> </ul> </li> <li>■ 지원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설비등의 설치에 필요한 지원 등</li> </ul> </li> </ul>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22.12.1.)
			소방청 화재예방총괄과 (044-205-7442)
화재안전취약자에 대한 소방용품 및 소방시설 개선 지원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원대상 : 화재안전취약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li> <li>-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중증장애인</li> <li>-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 대상자</li> <li>- 「노인복지법」에 따른 홀로 사는 노인</li> <li>-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li> </ul> </li> <li>■ 지원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화재안전취약자의 화재안전 확보를 위한 소방시설의 안전점검 및 설치·개선 등</li> <li>- 전기·가스 등 화재안전 소방용품의 제공 및 안전시설의 개선</li> </ul> </li> </ul>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22.12.1.)
			소방청 화재예방총괄과 (044-205-7442)
장애인 소방안전교육 법적 의무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방안전교육 법적 의무화 대상 → 영유아 및 학생</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방안전교육 법적 의무화 대상에 장애인 추가 → 영유아 및 학생 + 장애인</li> <li>※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 복지시설에 거주하거나 이용하는 장애인</li> </ul>	소방기본법 ('22년 하반기)
			소방청 생활안전과 (044-205-7662)

### 해양경찰청

구분	종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웨이크서핑보트 안전운항규칙 신설	■ 웨이크서핑보트 운항규정 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웨이크서핑보트 운항규칙 신설</li> <li>• (원칙) 수상레저시설·선착장 등으로부터 150미터 이내의 구역에서 인위적으로 파도를 생성하는 기구 운항 금지</li> <li>• (예외) 5노트 이하의 속력으로 운항하며, 파도생성 장치를 작동하지 않을 경우 운항 가능</li> <li>• (처분) 위반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li> </ul>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22년 하반기)  해양경찰청 수상레저과 (032-835-256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상레저종합포털서비스 이용문의 방법</li> <li>• 전화, 문의게시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상레저활동자 대상 24시간 대응, 동시다수 문의 접수의 어려움 발생</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상레저종합포털서비스 이용문의 방법</li> <li>• 챗봇, 전화, 문의게시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주 묻는 질문 및 단순정보 안내를 챗봇으로 유도하여 중요하고 긴급한 문의사항을 적시에 처리</li> </ul> </li> </ul>	해양경찰청 수상레저과 (032-835-2652)

### 공정거래위원회

구분	종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상향식 표준하도급계약서 제개정 방식 도입	■ 공정위가 표준하도급계약서를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자·사업자단체 등이 표준하도급계약서를 마련하여 공정위에 제개정 심사청구 가능</li> <li>• 공정위는 사업자 의견수렴, 자문 등을 통해 관련 내용을 검토한 뒤 승인여부 판단</li> <li>• 수급사업자의 피해가 우려되거나 정비 필요성이 있는 경우 표준하도급계약서 마련 및 심사청구를 권고 가능</li> </ul>	하도급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22.7.12.)
		≪ (참고)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공정위 뉴스>공정위 소식>보도> “하도급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21.12.9.)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정책과 (044-200-4584)

### 공정거래위원회

구분	종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가맹·유통·대리점 분야 동의의결제도 도입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의의결제도 도입</li> <li>• (신청요건) 행위를 특정할 수 있는 사실관계, 행위의 중화·완상회복 등 경쟁질서 회복 및 거래질서의 적극적 개선을 위한 시정방안, 피해구제 및 예방을 위한 시정방안 등을 기재하여 신청</li> <li>• (의결요건) 해당행위가 법위반 행위로 판단될 경우 예상되는 시정조치 등 제재와 균형을 이루는지,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 질서나 거래질서를 회복시키거나 거래 당사자간 상호보완적이고 균형있는 발전에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지 등을 고려</li> <li>• (예외) 고발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동의의결을 하지 아니하고 조사·심의 진행</li> <li>• (실효성 확보수단)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의결 시 정한 이행기간까지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 가능</li> </ul>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22.7.5.)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22.7.5.)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22.6.8.)
		≪ (참고)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공정위 뉴스>공정위 소식>보도> “가맹사업법, 대규모유통업법, 방문판매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21.12.9.)”, “대리점법, 가맹사업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21.11.11.)	공정거래위원회 가맹거래과 (044-200-4934)  공정거래위원회 유통거래과 (044-200-4949)  공정거래위원회 대리점거래과 (044-200-4960)
광고·판촉행사 가맹점주 사전동의제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맹본부 가맹점사업자가 비용을 분담하는 광고·판촉행사를 실시한 경우 집행 내역을 가맹사업자에게 통보하고 가맹점사업자 요구 시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함</li> <li>• 위반 시 과징금 부과 가능</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맹본부 가맹점사업자가 비용을 분담하는 광고·판촉행사를 실시할 경우, 가맹점사업자와 약정을 체결하거나, 사전에 법정 비율 이상(광고 50% 이상, 판촉행사 70% 이상)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받을 것을 의무화</li> <li>• 위반 시 과징금 부과 가능</li> </ul>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22.7.5.)
		≪ (참고)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공정위 뉴스>공정위 소식>보도> “가맹사업법, 대규모유통업법, 방문판매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21.12.9.)”,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22.5.31.)	공정거래위원회 가맹거래과 (044-200-4934)





### 국민권익위원회

구분	종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부패신고자 보호·보상 대폭 강화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패행위 비실명 대리신고</li> <li>• 신고자는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아니하고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리신고</li> </ul>	<b>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b> (‘22.7.5.)
			<b>국민권익위원회 심사기획과</b> (044-200-7694, 769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책임의 감면 등</li> <li>• 신고자의 범죄행위가 발견된 경우 그 신고자에 대하여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책임의 감면 등</li> <li>• 신고등과 관련하여 발견된 위법행위 등을 이유로 신고자에게 징계나 불리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그 징계나 불리한 행정처분을 감경(면제)</li> <li>• 위원회는 신고자의 징계권자 등에게 그 징계나 행정처분의 감경(면제)를 요구할 수 있고, 이 경우 요구받은 자는 그 요구를 따라야 함</li> <li>• 신고등의 내용에 직무상 비밀이 포함된 경우에도 다른 법령 등의 관련 규정에 불구하고 직무상 비밀준수의무를 위반하지 아니한 것으로 봄</li> </ul>	<b>국민권익위원회 보호보상정책과</b> (044-200-775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구조금 지급사유</li> <li>• 원상회복 관련 정송절차에 소요된 비용</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구조금 지급사유</li> <li>• 부패행위 신고등을 이유로 한 정송절차에 소요된 비용</li> </ul>	※ (참고) 국민권익위 홈페이지)보도자료) “국민권익위, 부패행위도 변호사 통한 대리신고 가능해져... 부패신고자 보호·보상 대폭 강화”	<b>국민권익위원회 보호보상정책과</b> (044-200-7754)

### 원자력안전위원회

구분	종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 전면 시행	<b>법적 근거</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원자력안전법 제103조의2 (정보공개의무)</li> </ul>	<b>법적 근거</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원자력안전소통법</li> </ul>	<b>원자력안전소통법</b> (‘22.6.9.)
	<b>목적</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보의 투명한 공개를 통한 국민 신뢰 제고</li> </ul>	<b>목적</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보 제공으로 원자력안전에 대한 국민 불안감 해소 및 신뢰 회복</li> </ul>	
	<b>공개 대상 정보</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원자력안전법 제103조의2에 따라 원안위가 보유 관리하는 원전 관련 정보 (Positive 방식)</li> </ul>	<b>공개 대상 정보</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원자력안전소통법에 따라 원자력안전 정보관계기관이 보유 관리하는 모든 원자력안전정보 (Negative 방식)</li> </ul>	
	<b>비공개 범위</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보공개법 제9조 (비공개 대상 정보)</li> </ul>	<b>비공개 범위</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보공개법 비공개 대상 정보의 범위보다 축소하여 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li> <li>- 국민 생명·신체 지장을 초래할 우려</li> <li>- 개인정보</li> <li>-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른 영업비밀</li> </ul> </li> </ul>	
<b>공개 방법</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원전 심·검사보고서 등 원자력안전법에 따른 일부 공개대상 정보를 원문 그대로 온라인 공개</li> </ul>	<b>공개 방법</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어렵고 전문적인 내용의 원자력안전 정보를 국민 눈높이에 맞게 만들어 온·오프라인 공개·제공 ※ 가공 정보</li> <li>• 모든 원자력안전정보의 원소통 공개 서비스 제공 ※ 원본 정보</li> </ul>	<b>원자력안전위원회 안전정책과</b> (02-397-7267)	

### 국가인권위원회

구분	종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군인보호호관 제도 도입 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방문조사</li> <li>• 금급 시설(군 교도소 등)에 한정하여 방문하여 조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군부대 방문조사</li> <li>• 국가인권위원회 의결로써 군부대를 방문하여 장병면담 및 군인권상황을 조사함</li> </ul>	<b>국가인권위원회법</b> (‘22.7.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군인 사망사건</li> <li>• 국방부장관의 통보의무나 국가인권위원회의 입회권한 없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군인 사망사건</li> <li>• 국방부장관에게 통보의무 부과, 국가인권위원회에 입회권한 부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년 경과사건 각하</li> <li>• 진정원인 사실이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하여 진정할 경우 이를 원칙적으로 각하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년 경과사건 조사</li> <li>• 군인의 경우 진정원인 사실이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하였어도 이를 각하지 아니하고 조사함 다만, 전역 후 1년 이상 경과하여 진정하면 각하함</li> </ul>	<b>국가인권위원회 군인보호총괄과</b> (02-2125-9661)
			<b>국방부 군인권총괄담당관</b> (02-748-6831)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 대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디지털 취약계층인 아동·청소년은 개인정보 범죤나 유출의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하는 환경에 노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동·청소년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li> <li>• 사업자가 준수해야 하는 개인정보 처리단계별 체크리스트 제공 및 상황별 개인정보 처리 관련 사항에 대한 실효성 제고</li> <li>• 보호자를 대상으로 개인정보 보호 교육 방법 및 보호자가 아동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사항을 안내하여 보호자의 인식을 개선</li> </ul>	개인정보 보호법 ('20.8.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보주체로서의 아동·청소년의 역할을 제고</li> <li>• 아동·청소년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연령대별·상황별 보호 수칙을 마련</li> </ul>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정책과 (02-2100-3052)
가명정보 활용지원 통합 플랫폼 서비스 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명정보를 활용하거나 관련 기술을 훈련하려는 자는 스스로 가명처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활용</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명정보 활용지원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 개시</li> <li>• 가명처리시스템 구매없이 온라인 가명처리 기능 활용 가능</li> <li>• 재현데이터를 이용하여 가명정보 활용기술 훈련 가능</li> <li>• 가명정보 결합 신청 전 결합률 미리 확인 가능</li> <li>• 결합하려는 기관·기업이 보유한 가명정보 매칭지원</li> </ul>	개인정보 보호법 ('20.8.5.)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데이터안전정책과 (02-2100-3074)

